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Legal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Refugees

최영신 · 김대근 · 채경희

발간사

한반도를 에워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는 공고하고 남과 북을 둘러싼 긴장도 여전합니다. 그 와중에 자유를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을 찾은 북한이탈주민이 2016년 12월 말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 정착 초기에 남북한의 체제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탈법적 상황의 일상화 경험 등으로 인해 왜곡된 법의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등 사회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과 기본권 보장 체계에 대해서도 낯설어하면서, 정착 필요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법의식이 한국사회의 적응에 어떠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나 정신으로서 법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인 법의식 개념을 세분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법의식의 내용을 상세하게 고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가 기존 연구에 비해 두드러진 점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법의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장애로 작용하는 법의식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법지식 정도를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법지식의 하위 영역을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범죄피해와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사적 분쟁 및 기타 사회법 관련 법지식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과의 심층면담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 파악 및 일반 국민과의 차이 비교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경제하에서 적게는 20년 이하, 많게는 수십 년 세월을 살다

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체제로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완전히 다른 사회체제의 차이로 인해 그들만의 독특한 법의식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초적 법지식의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 및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인식수준이 높으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았고, 세부적인 법지식에서는 많은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의 하위 집단 간 분석결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법의식 수준이 낮아지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한편 일반의 막연한 인식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관련 분쟁 상황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오히려 안정적인 상태라는 점을 밝혀낸 점도 이번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현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의 개선방안,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 조력 방안 등 유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법의식을 높이고,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연구를 위해 힘써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영신 박사, 김대근 박사, 채경희 교수, 김수민 인턴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조사 등 자료수집에 참여해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환**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최영신·김대근·채경희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1
제3절 연구의 방법	22
1. 문헌연구	22
2. 설문조사	24
3. 심층면담조사	30
 제2장 법의식의 개념과 주요 하위 영역 · 최영신·김대근 ...	33
제1절 법의식의 개념과 하위영역	35
1. 법의식의 개념	35
2. 법의식의 하위 영역과 구성요소	37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법지식의 세부 구성	41
1. 법지식의 하위 영역 고찰	41
2.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45
3. 범죄피해와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60
4. 사적 분쟁 및 기타 사회법 관련 법지식	66
 제3장 북한이탈주민 법의식의 특성과 차이 · 채경희·김대근 ..	69
제1절 북한법체계의 사회주의적 보편성과 특수성	71
1. 북한법체계의 사회주의적 보편성	71
2. 북한법체계의 특수성	73

제2절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차이로 인한 법의식 차이	74
1. 내 것과 네 것의 구분: “모든 것엔 주인이 있다고?”	74
2. 국가의 것은 공짜이고 내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	76
3. 계약서를 써 본적이 없다.	78
4. 노동 강도의 차이가 심하다.	80
5.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	81
제3절 독재정권으로 인한 법의식의 왜곡과 그 영향	82
1. 내가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니!	83
2. 초법적인 존재, 헌법 위에 있는 권력	85
3.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일이 가능하네요	88
4. 북한에서는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89
제4절 북한의 법문화로 인한 영향	91
1. 개인은 집단에 희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92
2. 법보다 가까운 주먹	94
3. 법을 지키면 손해인 사회	96
4. 모든 것은 여자의 책임(강간과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97

Ⅱ 제4장 |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분석 I : 기초적 법지식

• 최영신·김대근 101

제1절 헌법적 가치에 대한 법지식 수준	103
1.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법지식 수준	103
2.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108
3.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	114
4.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	117
5. 국가조직에 대한 법지식 수준	121
제2절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수준	124
1. 다발하는 범죄피해 및 발생 범죄의 유형과 법지식	124
2. 사기피해 및 가해 관련 법지식	128

3.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 관련 법지식 수준	133
4.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 수준	139
5. 마약범죄 및 성매매 관련 법지식 수준	143
6.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 수준	150
제3절 개인과 사회 영역 관련 법지식 수준	155
1. 개인과 사회 영역 관련 다발하는 범법행위 유형	155
2. 개인적 영역에 관련된 법지식 수준	159
3. 사회 영역에 관련된 법지식	170
제4절 소결	178
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지식 차이와 시사점	178
2.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법지식의 차이와 시사점	192

Ⅱ 제5장 |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분석Ⅱ: 법에 대한

태도와 법 관련 분쟁 경험 등 · 최영신·김대근 199

제1절 법의식의 영역별 수준 비교	201
1.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 :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1
2.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	205
3.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 : 법 사용의사	216
제2절 남한법과 북한법의 차이	221
1. 법의 역할에 대한 인식	221
2. 준법 및 법 관련 생활태도	222
제3절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223
1.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정도	223
2.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유형 비교	227
제4절 법률구조 및 법교육 경험	238
1. 법률구조 경험	238
2. 법교육 경험과 필요성	241

제5절 소결 : 법의식과 법 관련 경험의 차이와 시사점 247

- 1. 법의식의 영역별 차이와 시사점 247
- 2.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의 법과 남한의 법에 대한 인식 차이 250
- 3. 법 관련 분쟁 경험 차이와 시사점 252
- 4. 법률구조 및 법교육 경험 차이와 시사점 254

| 제6장 |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및 준법의식 제고 방안

• 최영신·김대근 259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61

- 1. 법지식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61
- 2. 법의식의 영역별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65
- 3. 범죄피해 경험 및 범법행위 관련 분쟁 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66

제2절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의 강화 268

- 1. 기존 법교육의 문제점 268
- 2. 법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방안 269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제고를 위한 사법 조력 방안 274

- 1. 북한이탈주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 274
-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280
- 3. 소송절차를 위한 사법 지원의 강화 286

참고문헌 293

Abstract 303

부록 321

[부록1]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연령별, 성별 표집인원 321

[부록2] 심층면담 질문 목록	323
[부록3] 북한이탈주민의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326
[부록4] 서울·경기·인천지역 일반 국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327
[부록5] 국민의 법의식에 관한 설문지	328

표 차례

〈표 1-1〉 설문조사 대상자의 지역별 표집인원	25
〈표 1-2〉 설문지의 주요 내용 구성	26
〈표 1-3〉 설문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28
〈표 1-4〉 심층면접대상자의 특성	31
〈표 2-1〉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연구를 위한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세부 내용 구성 ..	40
〈표 2-2〉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법지식의 세부내용 구성	41
〈표 4-1〉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04
〈표 4-2〉 민주적 법치국가이념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105
〈표 4-3〉 민주적 법치국가이념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107
〈표 4-4〉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08
〈표 4-5〉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	110
〈표 4-6〉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113
〈표 4-7〉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	114
〈표 4-8〉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115
〈표 4-9〉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116
〈표 4-10〉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	117
〈표 4-11〉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118
〈표 4-12〉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120
〈표 4-13〉 국가조직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21
〈표 4-14〉 국가조직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122
〈표 4-15〉 국가조직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123
〈표 4-16〉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발생 범죄유형 관련 법지식 수준	126
〈표 4-17〉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수준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26
〈표 4-18〉 사기피해 및 가해 관련 법지식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29
〈표 4-19〉 사기피해 및 가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30

〈표 4-20〉 사기피해 및 가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	131
〈표 4-21〉 사기피해 및 가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132
〈표 4-22〉 폭행 및 상해 관련 법지식의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34
〈표 4-23〉 폭행 및 상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	134
〈표 4-24〉 폭행 및 상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	136
〈표 4-25〉 폭행 및 상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138
〈표 4-26〉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39
〈표 4-27〉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140
〈표 4-28〉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142
〈표 4-29〉 마약범죄 및 성매매 관련 법지식의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44
〈표 4-30〉 마약범죄 및 성매매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45
〈표 4-31〉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146
〈표 4-32〉 성매매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47
〈표 4-33〉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148
〈표 4-34〉 성매매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150
〈표 4-35〉 기타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	151
〈표 4-36〉 기타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152
〈표 4-37〉 기타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155
〈표 4-38〉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및 사회영역에서의 범법행위 관련 법지식 수준 ..	156
〈표 4-39〉 개인 및 사회영역에서의 범법행위 관련 법지식 수준 비교 :	
북한이탈 주민과 일반 국민	158
〈표 4-40〉 결혼의 성립 관련 법지식의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59
〈표 4-41〉 결혼의 성립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	160
〈표 4-42〉 결혼의 성립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160
〈표 4-43〉 결혼의 성립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162
〈표 4-44〉 계약 관련 법지식의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63
〈표 4-45〉 계약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63
〈표 4-46〉 계약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164
〈표 4-47〉 계약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166
〈표 4-48〉 개인정보 관련 법지식의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	167

〈표 4-49〉 개인정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67
〈표 4-50〉 개인정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168
〈표 4-51〉 개인정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170
〈표 4-52〉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의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71
〈표 4-53〉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72
〈표 4-54〉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173
〈표 4-55〉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174
〈표 4-56〉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의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75
〈표 4-57〉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175
〈표 4-58〉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176
〈표 4-59〉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177
〈표 4-60〉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이 높은 집단과 세부 문항	179
〈표 4-61〉 범죄 피해 및 범죄 발생 관련 법지식이 높은 집단과 세부 문항	183
〈표 4-62〉 개인 및 사회영역 관련 법지식이 높은 집단과 세부 문항	190
〈표 5-1〉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202
〈표 5-2〉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203
〈표 5-3〉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204
〈표 5-4〉 법에 대한 친밀감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206
〈표 5-5〉 법에 대한 친밀감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207
〈표 5-6〉 법에 대한 친밀감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209
〈표 5-7〉 법에 대한 신뢰감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210
〈표 5-8〉 법에 대한 신뢰감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211
〈표 5-9〉 법에 대한 신뢰감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212
〈표 5-10〉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213
〈표 5-11〉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214
〈표 5-12〉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216
〈표 5-13〉 법 사용의사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217
〈표 5-14〉 법 사용의사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218
〈표 5-15〉 법 사용의사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219
〈표 5-16〉 남·북한법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의 평균 비교	221
〈표 5-17〉 남·북한에서의 법 준수 및 법 생활 관련 태도 차이의 평균비교	223
〈표 5-18〉 남자 집단의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정도	224
〈표 5-19〉 여자집단의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비율	226
〈표 5-20〉 남자 집단의 범죄피해의 유형 비교	227

〈표 5-21〉 남자집단의 경찰서에 갔던 범법행위의 유형 비교	229
〈표 5-22〉 남자 집단의 재판받았던 범법행위의 유형	230
〈표 5-23〉 남자 집단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범법행위의 유형 비교	232
〈표 5-24〉 여자 집단의 범죄피해의 유형 비교	233
〈표 5-25〉 여자 집단의 경찰서에 갔던 범법행위의 유형 비교	234
〈표 5-26〉 여자 집단의 재판받았던 범법행위 유형 비교	236
〈표 5-27〉 여자집단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범법행위 유형 비교	237
〈표 5-28〉 법률적 도움을 받은 정도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238
〈표 5-29〉 법률적 도움 받은 경로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240
〈표 5-30〉 법률구조공단의 인지 여부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241
〈표 5-31〉 법지식 습득 경로의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242
〈표 5-33〉 하나원 기초교육 및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243
〈표 5-33〉 법(률)교육 경험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244
〈표 5-34〉 법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245
〈표 5-35〉 법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246
〈표 6-1〉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법교육에 대한 문제점 인식	268
〈표 6-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85
〈표 6-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86

국문요약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 정착 초기에 서로 다른 법체계와 법적 내용의 무지로 인해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등 사회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비록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북한사회와는 전혀 다른 경제체계, 법률체계, 법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응초기의 심리적 불안감이 더해져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의 체제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탈법적 상황의 일상화 경험 등으로 인해 왜곡된 법의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영향이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법의식이 한국사회의 적응에 어떠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의식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기본적인 법의식과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간의 간극은 어떤 것인지를 포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적응을 초래하는 법의식의 세부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법의식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관련 경험과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은 향후 통일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법의식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경험은 통일에 수반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법의식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담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법의식 일반과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에 대한 선행 연구, ‘북한 법체계의 이해’를 위한 사회주의 및 북한의 법체계에 관련한 연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기관의 유권적 법해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 파악 및 일반 국민과의 차이 비교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에 따라 할당표집방법으로 800명을 선정하였다. 일반 국민은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에 기초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인구를 전집으로 하여 성별, 연령별, 학력별 비율에 따라 1004명을 선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는 훈련된 조사원이 대면하여 질문지를 읽고 설명하면 직접 설문지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반 국민은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웹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조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북한에서의 경험을 고려하여 법 관련 문화와 경험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북한이탈주민 12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자율적 시장경제와 수동적 계획경제에 의한 차이, ②1인 독재 및 집단주의에 익숙한 경험으로 인한 차이, ③북한의 법문화에 의한 영향 및 차이, ④자유민주주의 경험 부재로 인한 차이, ⑤탈북과정 및 제3국에서의 체류경험에 의한 차이, ⑥한국 입국 후 제한된 경험에 의한 차이, ⑦기타 북한이탈주민의 태생적 및 구조적 한계로 인한 차이 등이 포함된다.

3. 법의식의 개념과 법지식의 세부 구성

가. 법의식의 개념

법의식은 통상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의 자세나 정신’으로 이해된다.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법의식 관련 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인지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법의식 발달단계의 구분과 적용에 주로 관심을 집중하는 연구들이며, 다른 하나는 법의식을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태도’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법과 관련된 의식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연구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의식에 대한 두 번째 연구 흐름에 근거하여 법의식을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태도’라는 관점에서 법과 관련된 의식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법의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별로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법의식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법의식은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서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나 정신’으로서 법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법지식’과 ‘법에 대한 필요성’을 포함시켰고, 정서적 영역에는 ‘법에 대한 친밀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를, 그리고 행동적 영역에는 ‘법사용의사’와 ‘법적 효능감’을 포함시켰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법지식의 세부 구성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법의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장애로 작용하는 법의식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법지식 정도를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법지식의 하위 영역을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범죄피해와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사적 분쟁 및 기타 사회법 관련 법지식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첫째,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기본 법지식으로 요구되는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이 헌법적 국민이자, 시민이기 위해서는 헌법이 함의하고 있는 헌법적 기본 가치에 대한 인지, 곧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선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진정한 국민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약속인 헌법적 국민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범죄피해와 발생에 대한 이해’가 법지식으로 요구되는 이유는 형사법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구체적으로 집약된 규범이기 때문이다. 형사법의 효과로서 형벌은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을 제한 내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과 죄형법정주의 원칙하에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법은 구체화된 헌법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헌법적 가치 아래 당위 및 금지 규범의 전형으로서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셋째, ‘사적 분쟁 및 기타 사회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법치주의와 자본주의 법질서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겪는 가장 이질적인 부분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자유와 권리일 것이다. 특히 계약과 분쟁해결에 있어서 사적 자치의 범위와 국가 개입의 한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법의식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영역의 법지식을 내면화하는 것은 바로 각각의 영역이 추구하는 법적 가치를 내면하는 것이다.

4. 북한이탈주민 법의식의 특성과 차이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담자료의 분석결과, 계획경제하에서 적게는 20년 이하, 많게는 수십 년 세월을 살다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체제로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완전히 다른 사회체제의 차이로 인해 그들만의 독특한 법의식의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수동적인 계획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 능동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배워내야 하고, 모든 것을 정해주는 국가독점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의 선택과 책임을 감안해야 하며, 초법적인 존재를 의식한 법문화로부터 벗어나 법치의 문화를 알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체제와 문화를 배워가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북한이

탈주민의 법의식은 북한의 주민들과도, 우리 국민들과도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12명의 북한이탈주민과의 심층면담 조사자료의 분석결과는 그 차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선 시장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사적소유와 같은 소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무상’에 익숙하여 모든 재화와 용역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의 것은 내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자녀의 교육과 양육, 병원치료와 같은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연히 가지고 있다. 또한 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것은 계약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적지 않은 법적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아는 사람들끼리는 아무런 근거를 남겨놓지 않고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어 그 피해를 키우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에 무지하다. 그들은 회사의 주인에 대해 실제로 잘 모르고 있으며 북한의 국영 공장이나 기업소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직장생활에서 불성실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신선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 관한 부분이다.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것, 감시하지 않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도 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선거 전략에 적지 않게 이용당하기도 하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건전한 법의식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한편 법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북한에서 살다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교육을 통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럴까 하는 위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보다는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서 항상 집단의 이익이 앞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라는 북한의 집단주의 구호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어 개인주의 문화에 대해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편 폭력범죄인 폭행이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북한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어 대한민국에

입국 한 후에도 적지 않은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여성의 성폭행 피해를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비판적인 사고가 부족하다. 그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함께 온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는 여성이 많으며 가정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의식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특성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법문화의 차이로 인한 의식의 차이로 보인다. 이어서 경제체제의 차이로 인한 의식의 차이가 크다. 북한이탈주민은 뿌리를 옮긴 나무와 같다. 애송을 옮기면 적은 시간 내에 뿌리를 내려 살아날 수 있지만 수십 년 된 나무를 옮기면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나무를 잘 살아남게 하는 버팀목과 자양분은 바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의식 교육일 것이다.

5.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분석 I : 기초적 법지식

가.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수준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적 가치와 관련한 법지식에서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이나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고, 상대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으며, 국가조직과 관련된 법지식 수준은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다.

이들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지식 수준이 낮은 것은 북한사회의 법문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즉, 공산주의 문화 속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인식은 강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관념은 추상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기본권 관련 법지식 수준은 일반 국민보다 높다.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가의 역할과 사회연대를 강조하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쉽게 공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국가조직과 관련된 법지식 수준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수준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이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특히 형사사법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상식이 가장 취약하고, 이외에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와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도 일반 국민과 큰 격차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사기범죄와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에서는 세부 문항별로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형사사법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상식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구치소와 교도소의 구분, 국선변호인 제도의 이해가 포함되는데, 북한이탈주민은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지식은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을 통해 개별 권력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원리를 이해해야 비로소 습득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어려운 법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 범죄 관련하여 ‘개인 간의 싸움 처벌’ 및 ‘피해자 원인제공에 의한 폭행’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이 낮았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개인 간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적(私的)으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 관련 법지식이 현저히 낮는데, 이는 반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범죄조차도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일수록 빈번하다. 북한사회는 상대적으로 가부장권이 여전히 강하여 피해자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가정폭력 심각성에 대한 민감도 및 법지식은 미흡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 개인과 사회영역 관련 법지식 수준

개인 및 사회영역 관련 법지식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은 내용에 따라서 법지식 수준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은 결혼이나 계약 등 개인 영역의 권리 및 규범의식, 그리고 교통법규와 같이 사회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는 법지식 내용에 취약하다. 특히 계약 관련 법지식에서 (계약)‘②신체포기각서라도 썼다면 지켜야 한다, ③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와 같은 계약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법지식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다. ‘②신체포기각서라도 썼다면 지켜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정답보다 오답자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한 맹신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부당하거나 위법적인 계약에 대한 법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인정보와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높다. 사회 영역에서 두드러진 점은, 국가에 의한 급부 및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가에 대한 기망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는 점이다. 예컨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내지 ‘취업장려금’을 지원받는 행위의 비난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에서 제공한 물품(‘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을 임의로 처분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국가로부터 정착지원금을 제공받거나 임대주택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고, 취업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6.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분석Ⅱ: 법에 대한 태도와 법 관련 분쟁경험 등

가. 법의식의 영역별 차이에 대한 평가

법지식 수준 외 법의식 하위영역에서는 대체로 북한이탈주민의 수준이 더 높다. 특히 인지적 영역의 ‘법의 필요성 인식’ 문항에서는 현저히 그 수준이 높다. 정서적 영역 중 ‘법에 대한 친밀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도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국민보다 높다. 다만 ‘법에 대한 신뢰감’에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하위 집단 간 분석결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법의식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 정착 초기에 갖고 있던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 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의 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북한의 법과 남한의 법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과 북한에서의 법 및 법 관련 생활 경험에 대하여 매우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남한의 법을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한에서의 법 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북한에서보다 더 많이 준법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법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관련 분쟁 상황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남자 집단은 범죄피해 경험, 범법행위로 인한 경찰서 출두, 재판 경험이 비슷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고, 단지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에 대한 경험에서는 일반 국민이 북한이탈주민보다 현저하게 많았다.

여자 집단의 경우에는 남자 집단과 비교하여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비율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여자 집단은 남자 집단과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북한이탈주민 여자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경험’에서도 일반 국민 보다 그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다. 여자집단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범죄피해경험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여자 북한이탈주민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고 거주지 중심의 한정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세계가 협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활동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관련 분쟁 상황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오히려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 유형 중 폭행 및 상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범법행위 발생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이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라. 법률구조 및 법교육 경험 차이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은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경로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매우 제한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신변보호담당관이나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6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경찰보다는 주로 변호사, 인터넷 법률정보,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과 대조를 보인다. 이외에도 일반 국민은 시민단체나 복지관 상담사 등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자본의 빈곤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고, 사회적 인적 자본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주변의 지인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의 법률구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존재와 역할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은 필수임에도 조사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해당 기관의 법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 그 한계를 나타낸다. 북한이탈주민은 법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하나원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문제점(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한계, 남북한의 용어 차이로 인한 어려움, 교육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인한 한계 등)이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및 준법의식 제고 방안

가.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의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은 기존의 하나원 법교육과 더불어 지역적응단계에서의 법교육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하나센터의 법교육 강화방안은 기존의 하나원 법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부족, 다발하는 범법행위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은 지역적응교육의 일부로서 보다 많은 법교육 시간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법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유권적 기본권 관련 법지식, 형사사법 관련 법률상식, 그리고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이 낮은 상태이므로 이들의 취약한 법지식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1) 개인적 영역의 특수성 이해 및 관련 법의식의 제고

개인적 영역의 법지식과 관련한 법교육에서는 첫째로 대한민국의 법문화는 국가나 사회의 모든 부분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특히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둘째로 개인의 보호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법문화에서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로서 사적 자치(私的自治), 혹은 사적 자율성이 강조되고 자율성의 행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2) 형사사법 및 범법행위 발생 관련 취약한 법지식의 제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구치소와 교도소의 구분, 국선변호인제도의 인지 등 ‘형사사법 사법 관련 법률상식’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부족한 법지식 영역이다. 이러한 법률상식은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 분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권력 분립이 아닌 당 중심의 권력집중의 체제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이 각각의 권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대한민국의 사법(司法)작용이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와 관련하여 취약한 법지식에 대한 내용이 법교육의 세부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에서는 사기, 다단계, 보이스 피싱과 같은 경제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범죄 가해에 있어서는 폭행 및 상해범죄와 교통법규 위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제상황별로 세부적인 법지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법교육 관련 정보화 교육 강화

북한이탈주민은 법지식 및 법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컴퓨터를 활용한 법률정보 활용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화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2차적으로 법지식 습득 경로를 확장시키는 길이 될 수 있으므로, 법교육의 교육방법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법 관련 지식을 탐색하는 교육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화교육 역량이 강화된다면, 동시에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범죄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가능성을 모두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

1) 법률구조의 확대와 공공변호제도의 활용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은 공공, 민간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과 공공분야에 대한 협업체제 구축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 지원은 봉사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분야의 법률구조 확대와 공공변호제도의 활용이 활성화 되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무부, 대법원 등 해당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차원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하여 통합관리감독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2) 소송절차를 위한 사법 지원의 강화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분쟁적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도움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재판당사자가 된 경우 재판절차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법적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

고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지원을 개선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서론

최영신·김대근·채경희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2월 말 북한이탈주민¹⁾ 입국자수는 3 만명을 넘어섰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적 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수는 2007년에 1 만명을 넘어섰고, 이어 불과 3년 만인 2010년 말에 2만명을 돌파하였고, 2016년 9월말 현재 31,093명을 기록하였다.²⁾ 북한이탈주민수는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군사분계선과 해상을 통해 귀순한 귀순자와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는 2012년 이후 북한의 국경경비가 강화되고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등 위협요인이 많아지면서 그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이유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정신적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은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라는 점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강해성, 2011; 박순성 외, 2010; 김희경·최빛내, 2010; 송경호, 2009; 최영아·이주용·김정규, 2009; 박정란, 2006; 이금순 외, 2005; 이우영, 2005; 김영만, 2005; 김영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즉 북한을 이탈한 주민으로서 중국이나 제3의 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통일부 홈페이지>주요사업>주요사업통계, 정책지원과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2017년 10월말 검색

윤·박종철·이우영, 1996; 윤인진, 2004; 이금순, 2003).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법치주의 사회질서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한국사회적응 과정에서 전방위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계비나 취업 지원과 같이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외에도 이들의 의식 및 태도와 관련된 문화적, 정서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법교육이 제공되는 등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유옥 외, 2013; 최봉대, 2011; 최영신 외, 2010).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이나 사회통합에 대한 문제를 다룬 연구 중에서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나 범죄발생 문제를 다룬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범죄피해를 많이 경험하거나 범죄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부적응의 한 단면으로 파악한다(임창호, 2016; 윤준영, 2014; 신현주·박동수, 2013; 이창무 외, 2010; 장준오·고성호, 2010; 송경호, 2009; 장준오·이정환, 2006; 김윤영, 2007). 그런데 막상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나 범죄발생률을 직접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는데, 그 근거는 세 개 연구에 의존한 것이다. 이창무 외(2010)는 2000년 1월 이후 한국에 입국한 전국(제주도 제외)에 거주하는 만20세~65세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성인 남성 1,200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경험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범죄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0.8%이며, 이들 중 사기범죄피해는 61.8%, 폭행·상해범죄피해는 25.4%로 나타났다. 장준오·이정환(2006)은 2006년 전국 2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14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 214명 중에서 23.4%(50명)이 사기, 절도, 강도, 폭행 및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 91건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³⁾(장준오·이정환,

3) 장준오·이정환(2006)은 해당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23.4%)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3년 범죄피해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범죄피해율 11.0%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율 조사는 '지난 1년 동안의 범죄피해'를 조사한 것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은 남한에 온 후 당한 범죄피해를 모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의 범죄피해 경험을 일반 국민과 북한이탈주민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

2006:79). 김윤영(2007)은 경찰청 자료에 근거하여 경찰에 신고된 범죄피해율 분석했는데, 1998년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8,885명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117명이 범죄피해 경험이 있고, 이 중에서 5대 범죄 피해가 전체 범죄피해율의 50.4%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비율을 직접 언급한 위의 세 개 연구는 범죄피해율을 측정한 기준이 모두 다르고 범죄피해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을 직접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이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얼마나 높은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률에 대한 논의 역시 그 근거자료는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통계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로서 김윤영(2007)의 연구자료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영(2007)은 경찰청 자료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률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가히 가공할만한 수준이다. 1998년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8,885명 중에서 거의 19%에 해당하는 1,687명이 교통사범을 포함한 범죄 경력자이고, 이중에서도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10.1%(899명)가 살인, 강간, 상해 등의 강력범죄를 포함한 형사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하고 있다(경찰청 보안국, 2007: 김윤영(2007), 38면 재인용). 2006년도 자료에 근거한 북방문제연구소의 북한이탈주민 범죄발생률에 대한 분석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난다. 2006년 남한에 정착한 2,019명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285명(9.1%)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윤영, 2007: 39). 장준오·고성호(2010)은 2010년 현재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인 북한이탈주민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률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단지 북한이탈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과연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과 범죄발생률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지, 어느 정도 높은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 및 범죄발생률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정착기간

의 범죄피해율은 남자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여자 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국민의 범죄피해율이 높게 나타난다(제5장 참조).

에 따른 변화 추이를 함께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과 범죄발생률이 과연 얼마나 높은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 정착 초기에 서로 다른 법체계와 법적 내용의 무지로 인해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범법행위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말해준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 적응초기에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북한과 제3국, 한국을 비교하는 심리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사회적 지위 하락과 극도의 불안감, 분노가 폭발하면서 실업문제와 각종 범죄 및 법률위반 등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입국 한 후 5~6년이 경과하여야 점차 해소된다고 보았다(송경호, 2009: 62-4).

북한이탈주민은 비록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북한사회와는 전혀 다른 경제체제, 법률체제, 법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응초기의 심리적 불안감이 더해져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의 체제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탈법적 상황의 일상화 경험 등으로 인해 왜곡된 법의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영향이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과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법의식을 올바로 파악하여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법의식이 한국사회의 적응에 어떠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의식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기본적인 법의식과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간의 간극은 어떤 것인지를 포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적응을 초래하는 법의식의 세부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법의식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경험은 향후 통일을 대비한 실험적 모델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관련 경험은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남한과

북한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의식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경험은 통일에 수반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이 연구에서 활용한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조사의 구체적 방법과 세부 조사내용을 소개한다.

제2장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법의식의 개념과 하위영역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연구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 법의식의 하위영역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논의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지식을 법의식의 하위 영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제2장 제2절에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수준에서 내면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법지식의 내용적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법의식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1절에서는 북한법체계를 개관하면서 그 특성을 분석하고, 제2절에서 제4절까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담자료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법 관련 인식과 문제 상황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법의식의 고유한 특성과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드러내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법의식의 특성을 구체적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자료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인 법지식 수준에 대해 논의한다. 법지식은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그리고 ‘개인과 사회영역 관련 법지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별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의 법의식 수준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의 법의식 수준 비교,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법의식 수준 비교를 통해 집단 간에 차이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법지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의식의 하위 영역별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수준을 분석한다.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서적 영역에 속하는 ‘법에 대한 친밀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그리고 행동적 영역에 속하는 ‘법사용의사’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법과 북한법에 대한 인식 차이, 범죄피해 경험 및 법 관련 분쟁 경험, 법률구조 관련 경험, 그리고 법교육 경험 및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드러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수준을 일반 국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법의식의 하위영역별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을 제고하고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 강화를 위한 내용적, 방법적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방안,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소송절차를 위한 사법 지원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법의식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연구문제에 따라서 문헌연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담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영역은 ‘법의식 일반과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검토이다. 법의식에 일반에 대한 기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연구에 기초가 되는 법의식의 개념,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요소를 구성하는 기준을 제공해주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에 대한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그동안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법의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유한 법의식의 쟁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년간 진행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연구에서 법의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특히 2011년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I)-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최영신 외, 2010)’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에 대한 연구이므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법지식의 세부 영역을 구분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그 외 사회 각계에서 진행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어려움과 분쟁 해결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는 ‘북한 법체계의 이해’를 위하여 사회주의 및 북한의 법체계를 연구한 문헌의 검토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법의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사회화과정을 경험한 북한사회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북한법체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사회주의 법체계의 특성과 북한 체제의 고유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법체계는 사회주의 법체계의 역사적 전통 위에서 ‘주체사상’과 같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법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문화 일반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주의 법문화와 북한의 법문화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형성,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시적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기관의 유권적 법해석’에 대한 검토이다. 법기관의 유권적 법해석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법지식의 세부 영역에 대한 고찰에서,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 포함된 법지식의 내용적 측면을 드러내는 데 기준을 제시해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법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법적 현실을 분석해야 한다. 법적 현실이 가장 구체적 드러나는 지점은 사법적 분쟁, 특히 재판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분쟁이 되었던 법적 현실에 대한 우리 사법의 원칙적 태도와, 구체적 쟁점에 대한 해법에 이르기까지 사법적 결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을 검토하기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물론 하급심의 몇몇 판례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그들이 당연한 법적 문제들을 마치 ‘거울’처럼 명징하게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법적)현실과 추구해야할 당위를 성찰(reflection)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말로 ‘거울’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대상자의 선정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 국민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전집으로 하여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된 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할당표집방법으로 800명을 표집하였다.⁴⁾ 일차로 거주지역별(구단위) 북한이탈주민수를 기준으로 거주인원이 300명 이상인 수도권의 11개 지역을 선정하고 11개 지역의 거주인구 비율에 따라서 세부 지역별 표집인원을 할당하고, 다시 11개 지역별로 성별, 연령별 세부 인원을 할당하였다⁵⁾(부록1) 참조).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는 2017년도 7월 하순부터 8월말 사이에 훈련된 조사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1개 조사지역별로 한국정착기간이 길고 한국사회에 잘

4) 2017년도 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인원은 전국 거주인원(28,473명)의 64.1% (18,259명)인데, 공식적으로는 비수도권에 거주지를 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취업을 위해 상당수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실지 수도권 거주인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도 6월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서울특별시 거주비율은 24.5%(6,980명), 경기도는 30.1%(8,577명), 인천광역시는 9.5%(2,702명)이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자료 제공).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별 거주인원은 행정구역상 동단위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군·구단위의 거주인구 분포를 활용하였고, 성별, 연령별 인구 분포는 시·도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북한이탈주민 성별, 연령별 인원 비율을 각 11개 지역의 성별, 연령별 인원 비율에 적용하였다. 즉 서울시 양천구, 강서구, 노원구의 성별, 연령별 인원은 각 지역의 표집인원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거주인원의 성별, 연령별 인원 비율에 맞추어 할당하였다.

적응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도움을 받아 지역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할당된 성별, 연령별 인원 중에서 순차적으로 5~6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일정 장소에 모이도록 하고 조사원이 질문지를 읽고 설명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설문지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한적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개별면담방식의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인구를 전집으로 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할당 표집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먼저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자료에 근거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거주 인구 비례로 표집인원을 할당하고, 다시 성별, 연령별, 학력별 비율을 고려하여 웹설문조사를 통해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분포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설문조사 대상자의 지역별 표집인원

		북한이탈주민 빈도(%)	일반 국민 빈도(%)
합 계		800(100.0)	1,004(100.0)
서울	소 계	271(33.9)	423(42.1)
	양천구	94(11.8)	-
	노원구	93(11.6)	-
	강서구	84(10.5)	-
경기	소 계	372(46.5)	414(41.2)
	화성시	74(9.3)	-
	수원시	57(7.1)	-
	평택시	55(6.9)	-
	용인시	50(6.3)	-
	김포시	48(6.0)	-
	안산시	45(5.6)	-
	부천시	43(5.4)	-
인천	소 계	157(19.6)	167(16.6)
	남동구	157(19.6)	167(16.6)

나.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설문지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을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지에는 일반 국민과 공통된 질문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질문이 상당부분 추가되어 있다. 일부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맥락이 다른 경우에 문장을 수정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설문지의 주요 내용 구성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문항
I. 기본적인 인적 사항		성별, 연령, 학력, 탈북시기, 결혼상태, 자녀유무, 북한 거주지역, 한국체류기간, 탈북 후 제3국 체류기간, 경제 여건(기초생활수급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 등)		일반적 사항
II. 법의식	인지적 영역	1) 법지식	1-1) 헌법적 가치 관련 지식	II. 1 ~ 12 번
			1-2)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I. 1 ~ 4 번 III. 1 ~ 29 번
			1-3) 개인과 사회 영역관련 법지식	
	2)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IV. 1 ~ 4 번	
	정서적 영역	1) 법에 대한 친밀감		V. 1 ~ 4 번
		2) 법에 대한 신뢰감		V. 5 ~ 9 번
		3)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V. 10 ~ 13 번
	행동적 영역	1) 법 사용의사		VI. 1 ~ 4 번
2) 법적 효능감		VI. 5 ~ 8 번		
III. 남한과 북한에서 경험한 법 관련 경험 및 인식		법의 공정성, 준법의사, 법의 필요성 등 법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차이		VII. 1 ~ 9 번
IV. 법적 분쟁 경험 및 법률 지원 서비스 경험		1) 지난 1년 동안의 법적 분쟁 경험 - 범죄피해 경험 - 범법행위 유형 - 소송경험 등		VIII. 1 ~ 3 번
		2) 법적 분쟁의 유형별 위반 내용		
		3) 법률 구조 경험과 만족도		
V. 법교육 경험 및 법교육 수요		법에 대한 지식 습득 경로, 법률 지식 부족에 의한 불편 정도, 법교육 경험 및 효과에 대한 인식, 추가적인 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		IX. 1 ~ 5 번

설문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법의식(법지식, 법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법에 대한 친밀감, 신뢰감,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법 사용의사, 법적 효능감), 남한과 북한에서 경험한 법 관련 경험 및 인식, 법적 분쟁 경험 및 법률 지원 서비스 경험, 법교육 경험 및 법교육 수요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2장의 개념 관련 논의와, 제4장과 제5장의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다. 설문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다음의 <표 1-3>은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일반 국민 설문조사대상자와 비교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800명의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6월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8,473명의 2.8%에 해당하는 인원인데,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입국자 중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실시된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 2016)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별, 연령별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⁶⁾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수도권의 지역별(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에서는 인구총조사의 비율과 일치하지만, 학력별 분포에서는 본 연구의 일반 국민 설문조사대상자에서 대학교와 대학원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성인 집단에 비하여 이 연구의 조사대상집단은 고학력 집단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조사대상 패널집단이 고학력 집단으로 편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조사대상의 특성을 비교하기에 앞서 이 연구에서 조사된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북한이탈주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비율이 높고,⁷⁾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학력 집단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6) 이 연구에서 조사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월평균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5.3%인데 비하여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 2016)에서는 36.5%로 나타난다([부록3] 참조).

7) 설문조사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 여부나 월평균소득수준별로 법의식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반면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수준이 법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제4장, 제5장 참조).

〈표 1-3〉 설문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북한이탈주민	일반 국민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22 (27.8)	422 (42.0)
	여자	578 (72.3)	582 (58.0)
	합계	800(100.0)	1004(100.0)
연령	20대 이하	155 (19.4)	138 (13.7)
	30대	217 (27.1)	157 (15.6)
	40대	239 (29.9)	384 (38.2)
	50대 이상	189 (23.6)	325 (32.4)
	합계	800(100.0)	1004(100.0)
학력	중졸 이하	114 (14.3)	18 (1.8)
	고졸 이하	441 (55.1)	311 (31.0)
	대학교 이하	228 (28.5)	558 (55.6)
	대학원 이상	16 (2.0)	117 (11.7)
	미상	1 (0.1)	-
	합계	800(100.0)	1004(100.0)
결혼상태	미혼	292 (36.5)	304 (30.3)
	기혼 (사실혼 포함)	371 (46.4)	635 (63.2)
	기타 (사별, 이혼 등)	136 (17.0)	65 (6.5)
	미상	1 (0.1)	-
	합계	800(100.0)	1004(100.0)
기초생활 수급여부	수급 대상자	357 (44.6)	42 (4.2)
	대상자 아님	443 (55.4)	962 (95.8)
	합계	800(100.0)	1004(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42 (55.3)	88 (8.8)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89 (36.1)	310 (30.9)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3 (5.4)	200 (19.9)
	400만원 이상	15 (1.9)	406 (40.4)
	미상	11 (1.4)	-
	합계	800(100.0)	1004(100.0)
중국체류기 간	1년 미만	335 (41.9)	-
	1년 이상~5년 미만	192 (24.0)	-
	5년 이상~10년 미만	197 (24.6)	-

		북한이탈주민	일반 국민
		빈도 (%)	빈도 (%)
	10년 이상	76 (9.5)	-
	합계	800(100.0)	-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71 (8.9)	-
	2년 이상~5년 미만	144 (18.0)	-
	5년 이상~10년 미만	315 (39.4)	-
	10년 이상	270 (33.8)	-
	합계	800(100.0)	-

〈표 1-3〉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는 27.8%, 여자는 72.3%이다. 2017년 9월 기준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8,742명 중에서 여자는 21,045명으로 73.2%를 차지하므로,⁸⁾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분포는 전체 북한이탈주민과 비슷한 분포이다. 이에 비하여 일반 국민은 여자의 비율이 58% 정도이다. 일반 국민 설문조사대상자의 경우에 일반 국민 성비에 비하여 여자의 비율이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20대와 30대의 비율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40대와 50대의 비율은 일반 국민의 비율이 더 높다.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중졸과 고졸 이하 학력의 비율이 높고,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대학교, 대학원 이상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

결혼상태별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기혼자의 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낮고, 미혼과 기타(사별, 이혼 등)의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2016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24.4%인 점을 고려하면,⁹⁾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 정도 높은 편이다.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여자의 수급자 비율이 높은 편인데, 설문조사가 평일 낮 시간에 진행된 경우가 많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가구소득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8) www.unikorea.go.kr(2017년 11월 10일자 검색)

9) www.unikorea.go.kr(2017년 11월 10일자 검색)

상태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원 미만인 경우가 55.3%이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불과 7.3%에 불과하다. 이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이 8.8%이고, 300만원 이상이 60.3%로 높게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중국체류기간은 1년 미만이 42% 정도이고, '1년 이상~5년 미만이 24.0%, 5년 이상~10년 미만이 24.6%, 10년 이상이 9.5%를 차지한다. 중국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모두 34.4%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거주기간을 보면, 2년 미만인 경우가 8.9%이고, 2년 이상~5년 미만이 18.0%, 5년 이상~10년 미만이 39.4%, 10년 이상이 33.8%이다.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한국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모두 73.2%이다.

요컨대, 조사대상자 중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으며, 학력수준은 낮고, 미혼 또는 이혼이나 사별한 비율이 높으며, 경제수준도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가 60%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73%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심층면담조사

심층면담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법의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유한 법의식의 특성과 그러한 법의식이 형성된 맥락을 이해하고 일반 국민과의 법의식의 차이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심층면담은 주로 북한과 남한에서의 법률 관련 경험, 인권침해 경험, 제3국 체류경험, 남한사회 적응 관련 어려움,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경험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남한사회에의 적응 및 법 관련 의식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심층면접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 성인으로서 성별, 연령, 정착기간 및 출신지역,

그리고 북한에서의 직업을 고려하여 북한사회의 법 관련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특히 한국사회 정착기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2년 이상부터 10년 이상인 경우까지 다양한 기간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 1-4>는 심층면접을 진행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심층면접대상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영문자와 숫자로 그 대상자를 구분하였다.

<표 1-4> 심층면접대상자의 특성

	면담자	성별	연령	정착 기간	북한 직업	현 직업	출신 지역	면담 시기
1	M1	여	40대	4년	연구사	연구원	양강	2017. 5.
2	H1	남	60대	5년	행정 관료	NGO 활동가	평남	2017. 5.
3	O1	남	30대	2년	중등 교원	운수업 종사	함북	2017. 5.
4	J1	남	50대	6년	행정 관료	대학원생	함남	2017. 6.
5	K1	남	50대	8년	노동자	제조업 직원	함북	2017. 6.
6	P1	남	70대	12년	대학 교원	무직	황해	2017..6.
7	M2	남	50대	4년	행정 관료	관리사무 소 직원	함남	2017. 6.
8	C1	여	40대	4년	중등 교원	무직	평남	2017..6.
9	H2	남	50대	5년	중등 교원	물류센터 직원	함북	2017. 6.
10	S1	여	20대	2년	대학생	대학생	양강	2017. 10.
11	L1	여	20대	2년	대학생	대학생	평양	2017. 10.
12	C2	여	30대	3년	초등 교원	회사 사무직	함북	2017.10.

심층면담대상자는 모두 12명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별, 정착기간별, 직업별, 북한 거주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북한이탈주민의 법 관련 인식과 경험을 전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심층면담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7명, 여자가 5명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았는데, 이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남성을 심층면담대상자에 더 많이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1,093명에 이르

며 그 중 여성이 21,135명으로 71%에 달한다.¹⁰⁾ 북한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정치적 참여율이 높고 고학력자가 많기 때문에 법과 관련한 경험도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자 입국자 비율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남자 심층면담자를 선정하였다. 연령에서는 20대 2명, 30대 2명, 40대 2명, 50대 3명, 60대 1명, 70대 1명으로 구성하여 20대에서 70대까지 연령층별 인식과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정착기간 역시 연령층별 한국적응 상황을 고려하여 각 연령층별로 정착기간을 달리하였다. 20대나 30대와 같이 대한민국사회에 빠르게 동화될 수 있는 연령층에서는 정착기간이 2~3년 이내인 경우로, 40~60대에서는 4~8년 이내로 정하였으며, 70대의 경우 매우 느리게 동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0년 이상의 정착기간이 경과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였다.¹¹⁾ 또한 북한에서의 직업이 교사나 연구사, 행정관료 등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심층면담에서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법문화나 법체계 등과 관련한 인식과 경험을 설명해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출신지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함북과 양강 지역 출신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심층면담은 2017년 5월~6월 사이 8명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1인당 2시간씩 내외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1차로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10월말에 추가적으로 자료보완을 위한 2차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에서 질문은 북한과 남한에서의 법 관련 인식 및 경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가능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의 경험과 남한에서의 경험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심층면담에서 질문은 심층면담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질문을 변형하거나 특정 영역의 질문에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부록2 참조). 면담과정을 통해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법에 대한 의식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변화된 의식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를 영역별로 코드화하고 코드체계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10) www.unikorea.go.kr(2017년 10월 30일자 검색)

11) 북한이탈주민은 ‘뿌리를 옮긴 나무와 같다’고 표현한다. 묘목을 옮기면 이식된 토양에 빨리 적응하여 잘 살아날 수 있지만, 수십년 된 나무를 옮기게 되면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주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

법의식의 개념과 주요 하위 영역

최영신·김대근

법의식의 개념과 주요 하위 영역

제1절 법의식의 개념과 하위영역

1. 법의식의 개념

법의식은 통상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의 자세나 정신’으로 이해되는데, 이 개념은 학문적으로는 매우 모호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김해성 외, 2007: 13). 법의식은 법지식, 법감정, 법문화, 법정신, 법태도, 법관념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그로 인해 각각의 연구들이 ‘법의식’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기 다른 조사 내용과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어 그 결과물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범주상의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곽한영, 2011:2).

‘법의식’은 학문적으로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법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인지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법의식 발달단계의 구분과 적용에 주로 관심을 집중하는 연구들(강운정, 1991; 문용린, 1992)이며, 다른 하나는 법의식을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태도’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법과 관련된 의식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연구들(박성혁, 1992; 곽한영, 2007; 김해성 외, 2007; 이영수, 2008)이 여기에 해당한다(최영신·김윤나·김용성, 2009:66-68).

법의식을 ‘인지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법의식 발달단계의 구분과 적용에 주로 관심을 집중한 연구들은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이론(3단계)과 콜버그(Kolberg)의 도덕적 추론 발달단계(6단계)에 근거해서 한 개인의 법의식 발달과정을 이해하고자

한 경우이다. 강운정(1991)은 법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Kolberg의 [표준채점요강 (Standard Issues Scoring manual)]과 Tapp & Levine(1970)의 법의식 측정 면담검사 [TLRLI: Tapp&Levine Rule-Law Interview]를 참조하여 법에 관한 인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1개 주제(법과 규칙의 개념, 법과 규칙의 공정성, 법적 순응성에 대한 역동성, 규칙의 기능, 법과 규칙의 시행 근원, 법과 규칙의 위반성, 법과 규칙의 변화성, 법과 규칙의 일관성, 처벌의 불가피성, 처벌의 공정성, 최악의 탈선)를 중심으로 법의식을 측정하였고, 문용린(1992)은 앞서 제작한 강운정(1991)의 도구를 활용하여 탬과 레빈의 연구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여 연령별, 성별로 도덕성, 법의식, 비행경향성의 수준이 어떠하며, 도덕성·법의식 발달 수준과 비행경향성은 상호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발달심리학적 관점에 근거한 연구들은 법적 추론과정이 개인의 심리 내적 상황에만 의존해 법의식을 측정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른 하나의 흐름으로는 법의식을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태도'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법과 관련된 의식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연구들이 있다 (박성혁, 1992; 곽한영, 2007; 김해성 외, 2007; 이영수, 2008). 최근 법무부의 정책적 필요에 힘입어 청소년 법의식 지표를 개발한 연구(김해성 외, 2007)와 여자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효과를 평가한 연구(곽한영, 2007)은 법의식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법문화, 법감정, 법관념, 법정신 등의 개념들이 법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로서 법적 시민성을 표현하기에 개념상의 모호함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의식이나 자세를 개념화하기 위해서 좀 더 큰 구성요소와 맥락이 분명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법교육의 목표로 사회심리학적인 '태도' 개념을 도입한 '법의식' 개념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법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방법론이 설정될 수 있고, 그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최영신·김윤나·김용성, 2009:68).

김해성 외(2007)는 고든 올포트(Gordon Allport, 1954)의 태도 개념과 아젠과 피시번(Ajzen & Fishbein, 1980)의 태도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의식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올포트는 태도를 '어떤 사람(혹은 어떤 물건)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학습된 성향'이라고 정의하였고, 기존의 태도에 관한 정의에 포함된 인지, 정서라는 요소에 더불어 '행동'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였다. 올포

트의 정의는 ‘태도의 삼자모형(the triadic model of attitude)’으로 불리며 태도에 관한 고전적인 정의이자 모델로 자리 잡았다. 즉 어떤 대상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갖게 되어, 특정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일련의 잠재적 처리과정 전체를 ‘태도’로 칭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태도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므로 올포트의 정의 중 행동의 차원을 태도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태도’의 요소에 포함된 ‘행동’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으로 한정되어 설명되어야 하며 이러한 마음자세를 갖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나 복합적 요소의 작용으로 실제로 행동에 이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도에서 행동에 이르는 과정은 별도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가 아젠과 피시번(Ajzen & Fishbein, 1980)이다. 이들은 태도의 3요소에서 행동 대신 ‘행동의도’를 포함시켜 다양한 태도의 요소들은 행동의도의 형성으로 종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해성 외, 2007:17-19; 최영신·김윤나·김용성, 2009:68-69 재인용).

김해성 외(2007)은 이와 같은 ‘태도’ 개념을 법의식의 개념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의식을 구성하는 요소 역시 태도의 구성요소와 마찬가지로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al) 영역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의식에 대한 두 번째 연구 흐름에 근거하여 법의식을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태도’라는 관점에서 법과 관련된 의식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법의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별로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법의식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법의식은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서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나 정신으로서 법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이다.

2. 법의식의 하위 영역과 구성요소

가. 선행연구에 나타난 법의식의 하위영역과 구성요소

법의식의 하위영역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연구에서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구성요소가 어떻게 구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은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인식 방식, 법에 대한 필요성 등 법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임희섭(1974)은 법의식의 인지적 차원을 ‘법적 지식’으로, 그리고 이수성(1984)은 ‘법지식의 정도’로 보았다.

이와 비교하여 박성혁(1992)은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법지식 이외에 ‘법인식의 근대화정도’를 의미하는 ‘법이해도’를 포함시켰다. ‘법인식의 근대화정도’는 법인식의 유형이 전근대적 법인식인지, 혹은 근대적 법인식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근대적 법인식은 신적, 초월적 법률관, 징벌적 혹은 형벌적 기능을 강조하는 인식 형태를 의미하며, 근대적 법인식은 도구주의적, 계약적 법률관을 강조한다. 탭과 레빈의 연구(Tapp & Levin, 1977)도 피아제나 콜버그의 인지발달심리학적 관점을 확장하여 법에 대한 인식 및 개념화를 6단계로 유형화한 연구로서 법의식의 인지적 차원을 다룬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곽한영, 2007: 71), 앞서 언급한 강운정(1991)과 문용린(1992)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법의식의 인지적 차원을 다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곽한영(2007)은 법의 인지적 영역에 ‘법에 대한 지식’,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의식’을 포함시켰다.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법이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법에 대한 신뢰감과 함께 ‘법의 정당성 인식’을 구성하게 되고, 법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비행행동을 감소시키고 준법행동을 강화시키는 보호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곽한영, 2007: 100).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에는 법에 대한 친밀감이나 법에 대한 신뢰감 등이 포함된다. 임희섭(1974)은 법의식의 정서적 차원을 ‘법적 동일시감’으로 보았고, 이수성(1984)은 정서적 차원이라는 개념 대신에 평가적 차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그 구성요소로 ‘법적 소외감’과 ‘법적 신뢰감’을 포함시켰다. 김준호(1996)은 법의식을 ‘추론’과 ‘태도’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에서 ‘태도’는 정서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태도’에는 ‘법 사용환경의 정당성에 대한 정서적 평가, 중화기제의 형성,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형성’이 포함된다. 곽한영(2007)은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에 ‘법적 동일시감, 친근감, 신뢰감, 중화기제, 비행에 우호적인 태도’를 포함시켰다. ‘비행에 우호적인 태도’는 이후 기존 연구에서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로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은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의 종합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법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에 해당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즉 법과 관련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다. 여기에서 행동적 영역은 행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식에서 행동에 대한 인지와 신념, 행동의 결과에 대한 정서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가 종합되어 나타나는 ‘행동의도’를 의미한다(곽한영, 2007: 103-4). 임희섭(1974)은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을 ‘법적 능력’으로 보았으며, 김경희(1998)는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법적 효능감과 법 사용의사를 문제해결 능력으로 보았는데, 여기에서 문제해결능력은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박성혁(1993)은 학생들에게 법교육이 법적 관용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여기에서 법적 관용성은 행동적 차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곽한영, 2007: 72). 곽한영(2007)은 법의식의 행동적 차원에 ‘법적 효능감, 법 사용의사, 법적 관용성’을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법의식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해보면, 법의식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는 법적 지식, 법에 대한 인식, 법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법적 추론 단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서적 영역에는 법적 동일시감, 친근감, 신뢰감, 중화기제, 법위반에 우호적인 태도 등의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에는 법적 효능감, 법 사용의사, 법적 관용성 등이 해당된다(곽한영, 2007: 73).

나.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연구를 위한 법의식 하위영역의 구성

법의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별 구성요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의식 개념의 발전과 개별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세부 내용이 바뀌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법지식과 법에 대한 필요성을 포함시켰고, 정서적 영역에는 법에 대한 친밀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를, 그리고 행동적 영역에는 법사용의사와 법적 효능감을 포함시켰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연구를 위한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세부 내용 구성

법의식의 하위 영역			세부 내용
인지적 영역	법지식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 관련 법지식
			자유권적 기본권 관련 법지식
			정치적 기본권 관련 법지식
			사회적 기본권 관련 법지식
			국가조직 관련 법지식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사기(피해 및 가해)/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가정폭력/마약범죄와 성매매/형사사법 관련 법률상식
정서적 영역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인과 사회 관련 법지식	사적 영역에 관련된 법지식
			사회 영역에 관련된 법지식
		①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법을 꼭 알아야 한다. ②법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③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④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⑤법은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⑥현실에서는 법보다 주먹이나 돈의 힘이 더 세다. ⑦재판의 결과가 불공정한 경우도 많이 있다. ⑧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⑨법은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행동적 영역	법에 대한 친밀감	⑩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법을 어길 수 있다. ⑪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⑫도둑질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죄가 아니다. ⑬부자들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①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할 것이다. ②범죄현장을 목격하면 신고할 것이다. ③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법률전문가를 찾아가겠다. ④친구나 이웃이 분쟁에 휘말리면 법적 절차를 밟도록 권유할 것이다.	
		⑤나는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속을 가늠성이 있다. ⑥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⑦나는 법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으므로 내가 법의 주인이다. ⑧만약 내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나의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법의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장애로 작용하는 법의식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법지식 정도를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법지식의 세부 내용 구성은 <표 2-2>와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2절에서 별도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준에서 내면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법적 지식의 내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표 2-2〉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법지식의 세부내용 구성

법지식의 하위 영역		세부 내용
법지식	1.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 2개 문항
		(자유권적 기본권) 3개 문항
		(정치적 기본권) 2개 문항
		(사회적 기본권) 3개 문항
		(국가조직) 2개 문항
	2.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사기피해 및 가해) 4개 문항
		(폭행 및 상해) 5개 문항
		(가정폭력) 3개 문항
		(마약범죄와 성매매) 5개 문항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4개 문항
	3. 개인 및 사회 영역 관련 법지식	사적 영역에 관련된 법지식 : (결혼의 성립) 1개 문항, (계약) 3개 문항, (개인정보) 2개 문항
		사회 영역에 관련된 법지식 : (국가지원금) 3개 문항, (교통법규) 2개 문항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법지식의 세부 구성

1. 법지식의 하위 영역 고찰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지식을 내면화해야 한다고 보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법지

식의 하위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범죄피해와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사적 분쟁 및 기타 사회법 관련 법지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진정한 국민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약속¹²⁾인 헌법적 국민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헌법적 국민이자, 시민이기 위해서는 헌법이 함의하고 있는 헌법적 기본 가치에 대한 인지, 곧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고도 정확한 인식이 마땅히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헌법적 가치 아래 당위 및 금지 규범의 전형으로서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형사법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구체적으로 집약된 규범이기 때문이다. 형사법의 효과로서 형벌은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을 제한 내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과 죄형법정주의 원칙하에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법은 구체화된 헌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범죄피해와 발생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겪는 가장 이질적인 부분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자유와 권리일 것이다. 특히 계약과 분쟁해결에 있어서 사적 자치의 범위와 국가 개입의 한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법의식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 또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 전문),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헌법 제23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헌법 제119조)을 강조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사적 분쟁 및 기타 사회법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 영역의 법지식을 내면화하는 것은 바로 각각의 영역이 추구하는 법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12) 헌법재판소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적 합의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의 지도원리는 국가기관 및 국민이 준수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고, 헌법의 각 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며,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여 헌법에 대한 구성원의 법의식 내지 가치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헌재결 2001.9.27.2000헌마239 등).

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

우리 헌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결정문에서는 헌법에 대한 구성원의 법의식 내지 가치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적 합의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의 지도원리는 국가기관 및 국민이 준수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고, 헌법의 각 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며,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¹³⁾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는 곧 헌법적 가치에 대한 법지식의 수준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①민주적 법치국가의 이념 ②자유권적 기본권 ③사회적 기본권 ③국가조직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지식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이해라 함은 예를 들어 ‘국가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또는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지 여부다. 우리의 헌법적 가치라 함은 국가가 국민에 봉사하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나. 범죄피해와 발생에 대한 이해

한편 법의식이란 개념이 모호하지만, 이를 법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의견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면, 법의식을 ①법규범의 타당성, 즉 타당한 법규범이라는 인식과 의사 ②법규범에 대한 복종, 즉 법을 따르고 위반 시 제재가 당연한가로 좁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의식의 문제의식을 형법을 매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형법 규범을 타당한 금지 규범으로 (i)이해하는지 또 그 내용에 (ii)동의할 수 있는지 ②형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더라도 (i)위반 시 기꺼이 제재를 받을 감수성 내지 자세가 있는지, 또한 (ii)제재로서 형벌의 종류(자유형과 재산형의 차이 등)와 정도(법정형의 차이 등)를 기꺼이 따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와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과 태도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13) 현재 2001. 9. 27. 2000헌마238 등

다. 사적 분쟁 및 기타 사회법에 대한 이해

헌법의 통일 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국민적·국가적 과제요 사명임을 밝힘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이라는 해석이 도출된다.¹⁴⁾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은 전문에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선언하고,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있다. 즉,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하고, 이러한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를 ‘기본질서’로 선언한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¹⁵⁾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적 가치와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인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회법에 대한 법의식 이해가 필요하다.¹⁶⁾ 특히 계약과 같은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중략)... 이를 구체화하여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의

14) 헌재 1990. 4. 2. 89헌가113

15) 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등

16)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으로 ①기본적 인권의 존중, ②권력분립, ③의회제도, ④복수정당제도, ⑤선거제도, ⑥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⑦사법권의 독립을 들고 있다. “그 내용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헌재 1990. 4. 2. 89헌가113;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사용·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⁷⁾

2.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이자, ‘국가기관 및 국민이 준수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다.¹⁸⁾ 따라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의식을 함양하는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한정된 설문에서 모든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기는 불가능하다. 통상 헌법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부분과, ‘기본권 이론’, 그리고 ‘권력구조’ 부분을 나누어 서술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 이러한 구분에 의지하기로 한다.¹⁹⁾ 더 상세하게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원리로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괄하는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과, 기본권 이론으로서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그리고 권력구조에 대한 것으로서 ‘삼권분립과 국가조직 이념’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가.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서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

북한이탈주민들의 법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의 척도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동화와 통합의 법문화 형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제고 방안 마련해야 한다.

17) 헌재 1997. 8. 21. 88헌가19

18) 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등

19) 예를 들어, 한수웅, 헌법학(6판), 법문사, 2016

북한의 법 문화는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과 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사회문화적인 특성으로 대한민국의 법 문화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에 따라 집단 이익을 우선시 하는 북한에서는 개인이 희생되는 집단주의적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법적인 혜택을 받은 경험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법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법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옥임, 2013: 24). 또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법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국가차원의 도구’로 이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이 공정하지도 않고 처벌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무엇보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 헌법에 대해 무관심하며 헌법의 내용에 대하여 피상적인 정도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 인권의식이 부족하고 법이 지배와 처벌의 적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옥임, 2013: 24).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 자유권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주된 목적이며, 이를 보장하는 방안과 국가구성의 헌법적 기본원리²⁰⁾에 대한 의식에서부터 체제 극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탈북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체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정옥임, 2013: 84).

20) 우리 헌법 전문과(“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중략)...”라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최고의 헌법가치로 인정하였다(헌재결 2001.9.27.2000헌마238 등). 즉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하고, 이러한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를 ‘기본질서’로 선언한 것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이다.²¹⁾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기본적 인권의 존중 ②권력분립 ③의회제도 ④복수정당제도 ⑤선거제도 ⑥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⑦사법권의 독립을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민의 자기지배 사상을 천명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을 전제하고 있다.

2) 헌법적 가치로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으로서 먼저 ‘국가운영의 최고 결정자는 국민’임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통해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개념적 이해 및 그 기초위에서 형성되는 법의식과 법문화에 대한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기본권의 근본규범이며, 국가나 공동체가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反)전체주의적 성격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인간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봉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²²⁾ 이를 통해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의의를 확인해야 한다.

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자유권적,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

1) 기본권의 의의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는 혹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명문화하여 헌법에 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기본권이다. 근대 헌법의 역사는 국가의 권력구조와 통치형

21) 현재결 1990.4.2. 89헌가113 : 1994.4.28. 89헌마221 : 1998.5.28. 96헌가4 등 : 1996.4.25. 92헌바47.

22) 여기서 헌법상의 인간상은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이며, 우리 국민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민주시민을 말한다(헌재 96헌가5).

태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기본권이 바로 평등권이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의 기본원칙과 차별금지의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내지 헌법소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기본권이 평등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평등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이 국가의 자기관력 중심적인지,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함인지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가르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또한 민주적 법치국가의 핵심요소가 된다. 물론 이러한 기본권은 인권의 발전과 함께 해왔다. 우리 헌법에도 우선 생존권적인 기본권 관련하여 제34조 제1항(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과 제2항(국가는 사회보장·사회증진에 노력할 의무)이 규정되어 있다. 또 제36조 교육을 받을 권리 중 중등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조항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유입되어 정착하기까지 또 이들의 변화된 체제와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생존에 있어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규범력이 미치지 못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되지 못했으나, 실질적인 국민이 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이들이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일정정도의 단순히 정착금만으로는 그들의 생활을 충분히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이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적성에 맞는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하여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의 배려가 요구된다(최경옥, 1997: 141).

또 헌법 제10조 제1항 후단의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제외한 다른 기본권이 도출되는 기본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 조항은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행복’이라는 단어는 매우 다의적, 주관적, 객관적 의미, 이러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에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하는 문제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는 과연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 행복추구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리가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정신적·물질적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인 측면과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문화적 삶을 누릴 적극적인 측면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최경옥, 1997: 129).

행복추구권 관련하여 헌법 이론적으로 가장 논란인 기본권의 대사인효의 인정여부이다. 어쨌든 행복추구권은 대국가적효력과 대사인적효력 모두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도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이 모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국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보장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대국가적 효력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그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 과제이자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최경옥, 1997: 131). 또한 대사인적 효력 인정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그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자리매김하는 과제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 관련하여 대사인적 효력은 다음과 같은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화적 요소인 인간관계의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고독한 삶이 되고 스스로의 자아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자신의 존재도 결국 타인과 더불어 형성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교환하며 행복을 창조하는 과정이 되는데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상호이해의 행위가 행위조정의 메커니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의사소통적 이성이 사회적 삶의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의사소통적 행위들의 조직은 생활세계로부터 자원을 공급받고, 동시에 구체적 생활형식들을 재생산하는 매개수단을 형성하기 때문이다(위르겐 하버마스/이진우, 1995: 369). 둘째, 40-50년간의 문화적 이질성에서 오는 괴리감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문화라는 단어의 포괄성에는 교육, 이념, 경제, 예술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관습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사인 간의 보이지 않는 정신적

문제에 관한 제3자적 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어쩌면 그들이 자신을 가지고 자발적 내지 창조적으로 남한에서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되고 있다(최경옥, 1997: 133-135).

이러한 측면을 종합하여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문화적 이질성이나 기타 사회적 여건 등으로 실질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부분에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사회에 동화 내지 통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정책을 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인권적 측면에서 개인의 생존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경험하는 가장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오직 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험난한 경로를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다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특정 사상을 강요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이 될 것이다.

예컨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고문 금지 ③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의미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정 개인이나, 특권 계층에 의한 통치가 아닌 오로지 법에 의한 지배를 인정하고 이 법 앞에는 누구든지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및 차별금지 조항과 훈장에는 명예만이 따른다는 제11조 제3항이다. 인간 개개인이 그 고유의 존엄한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볼 수 있고, 차별은 모든 인격을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은데서 출발하며,²³⁾ 더 나아가 차별금지는 평등의 의미에 내포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 조항도 ‘법의 지배

23) 차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법의 내용으로 구체화하는 문헌으로는 Deborah Hellman, When is discrimination wrong?,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우리말로는 김대근 역, 차별이란 무엇인가 : 차별은 언제 나쁘고 언제 그렇지 않은가, 서해문집, 2016) 참조.

(rule of law)'를 명문화함으로써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치원리로서 민주주의는 법치국가를 전제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 즉 자기책임 하에 자기결정권을 지닌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은 바로 '법의 지배'를 받는 '법적 책임'을 다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죄형법정주의로서, 행위시법주의(소급효금지원칙)의 핵심인 '모든 국민은 죄질이 나쁘면 범행 사후에 법을 제정해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헌법 제13조에 따른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지에 대한 질문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고문 혹은 강요에 의한 자백금지 조항(헌법 제12조 제2항 전단)은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 더 나아가서는 근대 헌법의 발전과 투쟁의 산물인 정치적 자유와 관련이 깊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 전단이 1987년 현행 헌법에 들어오게 된 배경도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이 깊다. 주로 국가수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범죄의 자백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는, 공무원이나 공무수행자로부터 자백이나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할 권리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도 1인 독재를 위해 고문이 자행되고 있고, 알려진 바처럼 국제사회에서 때때로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의 정치수용소 등을 염두하고 '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을 수 있다면 체제변화를 경험한 북한이 탈주민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의식, 인식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야 하는지'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비롯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제의 금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 등의 법정주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개성신장의 수단이자, 사회통합을 위한 여론형성의 수단이며, 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와 기능을 가진다. 다만, 이와 같은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이나 양보되지 않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충돌하는 기본권과 형량하여 일반적 제한이 가해지는 기본권이다. 다만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받지 않는다.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는 첫째, 허가·제·검

열제의 금지, 둘째, 국영보도기관만을 허용하는 금지, 셋째, 행정기관의 임의적 등록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결정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에 내재된 본질적인 요청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수단이다. 당연히게도 정치적 기본권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헌법 수범규범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정치적 사상은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 권리는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최경옥, 1997: 141). 무엇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 기본권은 제1차적 욕구본능이고, 오늘날 민주정치는 국민이 국가에 의사형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며 이로 인해 국가기관의 정치과정에도 참여하고 또한 통제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최근 들어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가장 찬란하고 눈부시게 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해 형식적 법치주의를 따르며 헌정사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던 이른바 '촛불혁명'은 정치적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고 법이 아닌 1인 지배체제로 운영되는 북한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서로 다른 체제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기본권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사인(私人)에게는 '폭력'이나 '무력'행사를 어떤 경우에도 금하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 폭력' 행사권을 부여한 국가도 그 '폭력'을 행사함에 있어 엄격하고, 최소한의 요건 하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 조항 또한 정치적 기본권 보장 나아가 인권 보장의 척도를 나타낸다.

이처럼 전체주의 국가나, 권위주의 국가, 파시즘 형태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가장 크게 구별 되는 영역이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은 국가의 권력적 질서로부터 개인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절차에서 적절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또 법원의 오판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사후에라도 국가를 상대로 복원(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형사보상청구권)가 주어지는지와 같은 것이 그러한다. 일반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분류되며, 형사보상청구권은 사회권적 기본권 등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이해하는 넓은 의미의 절차 과정에서 이들 기본권이 가장 정치적이면서도 낮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범주화하여 강조하였다.

먼저 '수사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도 다른 기본권이 실현되는 데 있어 수단적인 기본권으로 작동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판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명시하였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관련하여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론 비록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 이념에서 나온 것이고 헌법재판소 또한 이를 확인하였다(헌재결 2001. 1. 31. 2001헌바43).

통상 국가보상청구권이라 함은 적법한 또는 무과실의 공권력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헌법에서 대표적으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헌법 제23조 제3항)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을 들 수 있다. 이는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개념이기도 하다(김백유, 2016: 1983). 먼저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제2항을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하지만 공평부담의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보장수급권을 규정한 제34조,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을 규정한 제23조 제1항, 재산권행사에 대한 사회적 구속성을 규정한 동조 제2항 등도 간접적인 근거규정이다(권영성, 2009: 628).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인신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결과책임을 인정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과는 구별된다. 재산권에는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사회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특별한 희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김백유, 2016: 1969).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가 형사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자를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보상의 상한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결과적으로 ‘만약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의 인식척도를 확인할 수 있다.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넓은 의미의 정치작용이라고 한다면 무기대응을 위한 형사재판에 참여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정치적 기본권의 한 내용으로 다룰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선변호인을 통한 변호인 조력을 실질화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선변호제도도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헌법,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 제반 규정을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양시훈, 2014: 6).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이 구속된 때 ②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③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④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⑤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⑥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이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그 밖에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특히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였다(헌법 제12조 제4항).

법원이 직접 변호인을 선정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실질적인 사법정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선변호인제도의 헌법적 취지라고 한다면(김종철, 2010: 12) 경제적 약자의 사법절차상 실질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평등 실현이나 사회보장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김성돈, 2001: 141). 특히 북한이탈주민에게 이러한 권리가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되고 있음을 아는 것은 법의식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국선변호인 제도를 알고 있는지’는 이러한 법의식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된다.

4)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사회로부터 구체적인 급부 등을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화하는 사회적 기본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규범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와 사회적 기본권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대표적인 표지라 함은 ①근로자의 단체행동권(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과 ②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생계를 이어갈 능력이 없는 신체장애인 등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다. 또 혼인과

가족생활 등 생활 전 영역에서 성평등을 지향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기본권에서 특히 중요한 기본권은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33조에 대한 인식척도 혹은 기본권 보장 요구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 정착 및 동화 정도를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단체행동권의 의의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헌재 1998. 7. 16. 97헌마23).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도, 당사자가 성실하게 교섭절차를 진행하였어도 더 이상의 견일치를 보이지 않아 교섭을 중단하고 근로자는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단체행동권은 성실한 단체교섭을 진행한 후 최후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력이다(조재현, 2010: 348).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는지’,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국가의 이익에 해악을 끼친다’는 문항은 이러한 헌법 규정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

한편 헌법 제34조는 국가에게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제34조 제2항)”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제34조 제3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제34조 제4항)”를 규정하고 있다. 또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4조 제5항). 그리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4조 제6항)”라고 하여 국민에게는 일련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국가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증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권영성, 2009: 660). 사회보장수급권 내지 사회보장권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신체장애·질병·노령·실직 등)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권영성, 2009: 660).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적 요소는 첫째, 사회적 위험, 둘째, 보호를 요하는 상태, 셋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넷째, 국가의 적극적 급부라

할 수 있다. ‘신체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아는 것은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이면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구체적 소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의 성격과 제도보장이자 원칙규범으로서 객관적 법질서의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규범의 내용은 첫째, 모든 사람은 국가의 간섭 없이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해 결정하고 영위할 자유를 가진다는 것, 둘째,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입법자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내용에 변화를 가할 수 있으나 제도보장이므로 그 본질적 내용을 입법자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셋째, 제36조 제1항은 가치결정적인 원칙규범으로서 입법자는 혼인 및 가족에 불리한 규정을 정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김은철, 2014: 135).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은 구성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초 하에 성립된 혼인과 가족제도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재 2000. 4. 27. 선고 98헌가16). 헌법재판소도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대한 헌법 원리를 설정하고 있는 등 규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은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고 민주적으로 성립·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헌재 1997. 7. 16. 선고 97헌가6).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사고방식이 보다 두드러질 수 있는 북한의 전근대적인 사회문화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질문을 통해 혼인생활 보호 및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인식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는 소수에 대한 차별금지 및 최근 늘어나고 있는 혐오와 관련해 향후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것이다.

다. 권력분립과 국가조직 이념

1) 권력분립의 의의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을 크게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한다. 헌법에 따라 입법부는 국회에, 집행부는 대통령을 최고 행정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사법부는 법원이 담당한다. 이 세 국가 기관은 상호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권력분립 원리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권력기관의 권력 또한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며, 국민이 일정 기간 위임해 정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삼권분립과 국가조직의 이념 및 구성의 원리는 정치적기본권과 연계하여 가장 중요한 헌법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권력분립과 국가조직의 목적은 국민의기본권 보호에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먼저 권력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지니며 그러한 역할과 기능은 독자적 범주를 지닌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입법은 본래 국회의 고유한 기능이라는 점(헌법 제40조)은 권력 분립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에 더해서 국회와 같은 대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선거와 투표와 같은 민주주의의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24조 선거권 조항과 참정권은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으로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과 같이 참정권과, 선거권과 공무담임권(피선거권, 공직해임권) 등의 간접 참정권이 존재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국민의 자가지배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실현 방안이기도 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기본권 중 하나다. 이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투표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국가조직을 구성하는 원리(권력분립)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인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양도 및 대리행사가 절대 금지되는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행정부 최고 수반인 대통령과 모든 법률은 헌법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지가 국가조직에 대한 이해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여건이 일반 국민에 비해 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종북’ 논란과 연관지어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에 앞서, 이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입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현실파악이 시급해 보인다. 또 정치에 관여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입후보자가 되려고 하였을 때, 국민들이 이들의 사상적, 정치적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다는 점, 당장 새로운 남한사회에서 생존에 급급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정치에 대한 혐오 감정 등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 외의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이 피선거권을 행사하기에는 정치적, 사회적 장애가 존재하는 현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최경옥, 1997: 138).

2) 국가조직의 이념과 목적

권력분립과 국가조직의 구성 원리에 있어서 최고통치권자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것도 중요한 (헌)법의식의 내용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헌재결 2004. 5. 14. 2004헌나1). 이에 행정부 최고 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모든 법률은 헌법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대통령의 권한 및 의무 규정인 헌법 제66조 제2항과 관련지어진다. 또한 ‘대통령은 재판에 관여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는지’, 및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행했을 경우 탄핵하는 것은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헌법상 국가 권력의 이념과 조직 원리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권력의 조직과 구성이 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화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법집행 기관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구금(拘禁)’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일시적으로 수사목적 내지 재판목적을 위한 구금시설인 구치소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종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도소는 명백히 다르다. 따라서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아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국가조직에 대한 이해를 물을

수 있다. 다소 지엽적일 수 있는 이러한 법지식은 특히 형사절차의 단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가권력이 작용하는 방식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인을 통해 법의식의 지식적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3. 범죄피해와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가. 국가의 형벌권의 의의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사인간의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에 의한 권리 보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혹은 범죄발생시 관련 법지식은 체제 적응과 사회통합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채무의 이행을 폭행과 협박과 같은 불법적인 자력구제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지' 대한 질문은 근대 국가가 형법이라는 폭력적인 수단을 독점하여 정의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 및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형사상 물리적 자력구제를 처벌하고 있는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및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조항도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개인 간의 싸움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자유주의 형사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폭행방법이 '상습' 또는 '2인 이상'의 공동일 때에는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와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 형사법의 책임주의와 비례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법의식의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나.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범죄

1) 가정폭력

일반적으로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체의 자유 및 생명권과 관련이 깊은 가정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기꺼이 법이 문지방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사회는 가정 내의 폭력에 있어서 집안 문제로 치부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은 관행으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인 여성의 인권이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식이 함양된 것과 무관하다. 특히 가정폭력범죄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크고, 가정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정세중, 2015 ; 300-301).

가정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형법상의 범죄개념에 포섭되고 행위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해야 타당하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벌 대신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수단인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이러한 점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라든지,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와 같은 사고는 비판받아야 하며, 실제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가 자식을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체벌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특례법’을 두어 특별히 가중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²⁴⁾

2) 성매매

2016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권에도 위배되지 않아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6. 3. 31, 2013헌가2)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

24) 이와 관련하여 방송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탈북자 원정화씨가 자신의 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입건 된 사건은 탈북자들의 이러한 법에 대한 인식이 왜 중요한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머니투데이, “‘탈북 여간첩’ 원정화, 불구속 입건 ‘딸 학대 혐의’”, 2015.3.2.

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형사처벌 이외에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점,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매매 당사자 모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에 침해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사회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미치는 영향, 제3자의 착취 문제 등에 있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성매매에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몰수 판결까지 내린 바 있다(대법 2013.5.23. 선고, 2012도 11586). 북한 사회에서도 성매매는 비판받으며 처벌되는 행위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매매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 받는다'는 점, 그리고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

뚜렷한 인권침해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개인적 법익의 처분 관련하여서도 형사처벌을 통해 국가는 개입해야 한다. 형법은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범인 것이다. 이 경우 개인적 자유와 사회 안전과 질서라는 법익사이의 충돌이 일어나는 데, 어디까지나 이런 충돌의 해결방안은 우선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기초로 이뤄진다. 이러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이러한 합의는 '사회적 법익'이라는 이름으로 형벌의 이유이자 한계로 작동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보험사기를 검토해본다. 마약에 대한 사용은 북한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게서도 발생하는 범죄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의 하나로 보험사기도 빈번하게 거론된다.²⁵⁾

또 사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신체포기각서’라던가 ‘법정이자를 넘어선 채무계약’, ‘차명 거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기초수급’ 및 ‘위조된 서류에 의한 취업장려금 수급’, ‘음주운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것에 대한 인식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한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 마약 범죄

현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목적은 보건상의 위해방지와 국민보건 향상이다(제1조). 개인적인 마약류(대마 포함)의 사용도 모두 금지하며 위반 시에 벌칙 규정을(제3조 각호, 제60조, 제61조)두고 있다. 일정한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 소유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에 대한 영리목적, 상습범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며 미수범과 예비죄도 처벌한다(제58조). 당연하게도 ‘한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는다’는 점,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준 경우에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한국에서 정착하기까지 빈곤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유혹되기 쉬운 범죄다.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되는 이유기이기도 하다.²⁶⁾

2) 보험사기

현대사회의 특징인 보험의 발달과 함께 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자동

25) 통상 보험사기는 ‘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개인적 범익에 대한 것이지만, ‘보험’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 부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범익에 대한 침해로 다루었다.

26) 통일뉴스, “탈북자 마약류 취급 범죄 증가 …하나원 교육 전문”, 2017.09.25.

차는 현대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전국민이 관련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자해, 친족상해 및 살해 등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사고를 빌미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도 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행위로 형법 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보험사기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행위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신의기, 2009 : 53). 무엇보다 자동차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의도적·고의적으로 사기행위를 벌이는 경우 보다는 불필요한 병원치료 및 장기입원 치료(일명 '나일론 환자')를 통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 경우에도 판례는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일관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회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범위는 보험금 전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도2134 판결).²⁷⁾ 이러한 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한 비난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을 실제로 행하는 경우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사이버 범죄

그 밖에 사회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자유권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는 방식의 전형이 사이버 범죄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등장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생활공간을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새로운 생활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범죄적 현상

27)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7185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지난 해 지급된 총 보험금(39조4000만원)의 1.8%에 해당한다(조선비즈, "[보험사기전쟁] 100억 노리고 아내 살해...대법원 무죄 판결 '갈지자 행보'", 2017.06.21.).

에 대하여 현상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용어가 타당하므로 결국 ‘사이버 범죄’란 “컴퓨터 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의미한다(정완; 2007; 1500). 이를 좀 더 세분화한다면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서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폭탄, DOS 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 공격하는 행위”인 ‘사이버테러형범죄’와²⁸⁾,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로서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유출 등의 행위”인 ‘일반사이버범죄’로 나눌 수 있다.²⁹⁾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인터넷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명예훼손사범 및 모욕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에서의 광범위한 인터넷 활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접수사건도 10년 전 대비 5.7배 급증하였고, 기소건수 또한 3.2배 정도 증가하였다(정진수 외, 2015 ; 9~1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낼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구성요건요소로 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게시판에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 댓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대법원은 또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주고 받은 일대일 대화에서도 공연성을 인정한 선례가 있어(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실생활에서 인터넷 사용에 관한 법지식 및 의식에 관한 제고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특별히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범죄’라는

28) 이러한 범죄를 특히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이버 금융사기’, 혹은 ‘신종금융사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김대근, 임석순, 김기범, 강상욱,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이버 금융사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참조.

29)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 <http://www.ctrc.go.kr> 참조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사적 분쟁 및 기타 사회법 관련 법지식

가. 사적인 법지식에 대한 이해

1) 계약주의와 사적자치 원칙

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보장과 제한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헌법 규정이 혼인관련 조항(제20조, 헌법 제36조 제1항)이다. 당연히 ‘위장결혼이나 강제결혼은 무효’라는 사실은 개인의 내밀한 사적영역이 어떠한 기망과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목표하고 있고 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헌법 및 민법의 기본원리로서 도출된다.³⁰⁾ 또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조선족의 위장결혼을 유죄 판결한 적 바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몰라 결혼의 가치를 쉽게 여겼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대법 96도2049).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직면하는 문제는 금전의 거래이다. 특히 근대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계약의 기본원리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금전의 거래는 당혹스러울 수 있다. 예컨대 ‘돈을 빌려줄 때는 서로 믿고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신체포기각서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든지 대한민국에서 낭패를 보기 쉬운 것이다. 빈번한 금전 거래의 특성상, ‘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및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은 오늘날 빈번한 경제범죄에 익숙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상식일 것이나,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낯선 사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 배우는 경험칙(經驗則)이 될 수 있다.

30)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장결혼이나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귀하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국적법 제 21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헌재결 2015헌바26, 2015.09.24.).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대부분 제3국을 거쳐 남한에 유입되는 과정 동안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남한 유입을 위해 위장 결혼 등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남한에서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로 인해 이들의 인권보호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져 이와 같은 법인식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세계일보, “결혼은 했지만 아내가 없습니다”, 2015.08.07.).

2) 사적 자치의 한계

한편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곽운직, 2011: 7). 여기서 파생하는 사적자치 원칙은 계약의 당사자 아닌 제3자의 권리침해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처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手記)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하였다. 통상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일지라도 당사자가 아닌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적자치의 결과일지라도 국가와 사회에 유해한 것은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그것이 자기의 정보에 대한 것이라도 범죄수단으로 쓰이거나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면 일정한 제약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내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나. 기타 사회 영역 법지식

우리 사회보장제도에서 공공부조제도,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그 중요성은 점차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사회서비스 공급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사회보험의 확대 또한 단기간에 공공부조제도의 지출부담을 덜어주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노대명, 2011: 84-85). 따라서 제도의 위험요소와 부담요소를 줄이는 것은, 제도 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 공공부조의 영역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악용 및 남용금지로부터 제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법 영역에 대한 인식은 사회유지·통합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예컨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게 되면 다시 반납해야 하는지’, 및 ‘서류를 위조하여 취업장려금을 받게 되면 처벌 받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2) 운전면허

자동차 운전면허의 부분은 사회 일반의 법지식으로서 다소 지엽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는 ‘확장된 발’로서 시민의 이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한 요소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도구이다. 동시에 자동차는 일종의 위험원으로서 법과 기술적 요소를 통한 통제기 불가피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라는 일상의 도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또한 필수적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운전면허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운전할 수 있다’, ‘한 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지 모두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관련 법규를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도로교통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하기 때문에(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음주측정의 거부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구속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법지식 일반은 북한이탈주민 자신은 물론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보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법의식의 특성과 차이

채경희·김대근

북한이탈주민 법의식의 특성과 차이

제1절 북한법체계의 사회주의적 보편성과 특수성

사회주의 이념에서 출발하여 역사적 경로를 거쳐 형성된 오늘날 북한의 법체계는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구 소비에트 연방의 법체계를 계수(繼受)하였지만, 북한의 지정학적 환경과 수령론 및 주체사상에 힘입어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된다. 다시말해 북한의 법체계 특히 북한 형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체계로서 북한법의 형성과정과 함께, 북한 체제의 역사적 경로에 기반한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1. 북한법체계의 사회주의적 보편성

비교적 오랜 시간을 거쳐 생성 발전해온 자본주의 법체계와 달리 사회주의 법체계는 혁명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거쳐 비교적 단기간에 형성되었고, 뚜렷한 이념적 지향을 갖게 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법체계의 모태가 된 소비에트의 법³¹⁾은 1917년 10월의 볼셰비키(Bolsheviki) 혁명과 1922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하 소련)’의 수립을 계기로 1924년 연방헌법을 채택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혁명과 전쟁을 거쳐 탄생한 폴란드루마니아헝가리불가리아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의 사회주

31) 소비에트 법은 사회주의 법의 모태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대륙법이 계수된 제정 러시아의 법 전통이 지라해 있었기 때문에 서구의 종교 및 윤리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는 하다. 특히 종교적 요소는 서구법 전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서구의 종교적 측면을 탐구하지 않고 서구법 전통의 혁명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법적 유추와 개념의 기틀을 만든 법적 메타포는 주로 종교적 특성이었다.”하는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p.165 참조.

의 국가들은 소련 헌법을 모방하여 각국의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일군의 사회주의 법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마르크스(Karl Marx)와 레닌(Владимир Ильич Ленин)에 의해 정식화된 유물론(materialism, 唯物論)에서 이른바 토대(base)는 일방적으로 상부구조(superstructure)에 영향을 미치며, 종교, 법 등의 상부구조는 허위의식(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법의 소멸을 강조했던 마르크스와 달리 레닌은 지배계급인 프롤레타리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자, 그 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전위(前衛)인 당의 정치적 기획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그 기능이 축소된다. 더 나아가 당은 영도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당의 지위는 권력의 통합-권력의 분리가 아닌- 을 표방한 ‘민주적 중앙집중제’ 원칙을 통해 확고해진다. 민주적인 중앙집중제 원칙을 통해 강한 정당성을 지니게 되는 당의 정책이 개별 법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모습은 사회주의 법체계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 또한 다른 사회주의 법체계와 마찬가지로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따라 당이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서 우위를 지닌다. 북한의 법체계에서도 당 규약, 당 강령 등으로 표현되는 당헌(黨憲)이 헌법보다 상위의 규범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북한에서 법은 - 다른 사회주의 법체계와 마찬가지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하고 이를 관철하는 수단이며, 정치의 종속적인 속성을 보이게 된다(정옥임, 2013: 19~24).

요컨대 북한의 법체계는 “①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르주아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폭력으로 보는 점 ②동시에 법은 특수한 사회 규범이자 사회 활동을 규제하는 의무적인 공동규범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 ③그러면서도 여전히 법은 상부구조로서 (물적)토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관계, 특수한 역사적 구성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고려될 수 없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존재”(박학모·김대근이규창, 2014: 50~51)할 뿐만 아니라, 전위(前衛)로서 당과 같은 중앙집권화된 위계조직의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법체계는 사회주의 법체계의 일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법체계의 특수성

한편 북한의 법체계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역사적 형성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에 일반화된 사회주의 법체계와는 다른 특성들을 갖는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1972년 이후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선노동당을 지도하게 되어 ‘김일성 교시’가 최상위의 규범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하위에 조선노동당 규약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하위에 북한 헌법이 자리 잡게 되었다(박학모·김대근·이규창, 2014: 49). 북한 헌법 전문(前文)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 가부장적 지위를 부여하고, 가족과 같은 정체성과 유대감을 강조해야 한다. 가부장적 지위와 가족적 질서를 통해 북한의 권력을 일련의 위계 질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계는 이른바 ‘수령론’(首領論)을 통해 정점을 이루게 된다. 당규약 전문(前文)에서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가부장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1972년의 북한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여 사람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수령론과 결합함으로써 보다 공고한 권력 체제-법치주의와 더욱 멀어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북한법체계의 특성은 북한의 형사법에서도 확인된다. 제1편 총칙과 제2편 각칙 그리고 총 11개장 31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북한 형법은 “우리나라에 세워진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실현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자들을 진압하며,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에 지장을 주는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우리 국가가 제정한 범죄 및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이다. 특히 북한 형법 제1조에서 ‘형법은 죄를 범한 자에게 본법에 규정한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범죄행위로부터 보위하는 것을 과업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 또한 북한 형법 제7조는 ‘죄라 함은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이다'라고 규정한 것, 형법 각칙에서 국가적·사회적 보호법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 형사법의 정치적 성격과 함께, 지난친 가벌성의 확장 등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근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가 북한 형사법에서 수용되지 않다가 최근 제한적이거나 수용된 일련의 개정 과정이다. 특히 2004년 개정에서 유추해석금지(명문으로 규정되기는 하였지만³²⁾,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수령론' 및 당의 우위성 등에 의해 죄형법정주의가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절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차이로 인한 법의식 차이

1. 내 것과 네 것의 구분: “모든 것엔 주인이 있다고?”

2017년 8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시장의 수가 468개가 넘는 것으로 미국의 상업위성사진으로 확인되었으며 비공식적인 것을 포함하면 그 개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³⁾ 그럼에도 북한사회는 아직까지도 전면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다고 할 수가 없다. 부분적으로 종합시장 형태의 장마당을 허용하여 유행시장을 도입하고 있지만 시장경제 시스템에는 적지 않은 무형시장을 포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준에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는 아직까지도 능동적인 시장경제와는 다른 수동적인 계획경제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없다. 우선 시장경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소유의 문제에서 북한주민들은 사적 소유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모든 것이 네 것과 내 것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시장경제 하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정 시간동안 혼란을 겪은 후에야 시장경제의 소유 제도를 이해하기에 이른다.

32) 1999년 형법 제10조를 삭제하고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동 형법 제6조)고 규정하였다.

33) 2017년 8월 11일자, MBC NEWS, imnews.imbc.com

계획경제는 자발성이, 개인들이 최대한으로 발현되지 못하게끔 규제 되죠. 오히려요. 그게 단점이라고 보고요. 주인이 없지요... 수요와 분배(공급)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데 북한은 계획경제 그 자체를 계획 목표 달성부터 상품판매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 내에서만 이뤄지게 되어있지. ... 그래서 아마 공산주의 특히 계획경제가 실패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34)

북한에 있을 때 공장 지배인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H1과의 인터뷰내용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는 종합시장과 같은 장마당을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국가계획위원회가 계획 목표량을 할당하고 생산된 제품을 국가가 다시 ‘국가창고’로 수거하였다가 공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로 인해 개인의 욕구나 이해관계가 생산이나 분배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단점이 계획경제 제도를 실패하게 한 요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주인인 국영 공장에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북한주민이 가지는 생각이다. 따라서 개인들의 자발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어떤 게 보이냐면요. 현장에 가면 사람마다 돈이 다 틀립니다. 노동자는 다 같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똑 같이 200만원이면 200만원씩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내 윗사람은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나도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고픈데요. 회사가 사장꺼니까 사장이 돈을 책정해서 주더라 말입니다. ... 35)

회사나 학교, 건물이나 땅의 주인이 국가 즉 전인민적 소유로 되어 있는 북한에서는 회사 내에서 모든 노동자는 똑 같은 월급을 받고 일한다. 공장의 지배인은 노동자를 채용하고 월급을 주는 고용주가 될 수 없으며 지배인과 노동자 모두는 국가가 고용한 피고용자에 불과하다.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의 지배인과 노동자의 관계는 사적소유가 인정되는 시장경제하에서 회사의 주인(Owner)과 노동자와의 관계보다 훨씬 평등하다. O1은 인터뷰에서 회사의 사장이 월급을 정하고 그 회사가 사장의 것이라는 데

34) H1과의 인터뷰, 2017년 5월 27일자

35) O1과의 인터뷰, 2017년 5월 27일자

대해 매우 놀랐다고 진술했다.

저는 근데 그게(내 것과 네 것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 좋다고 느끼기보다는 좀 어색해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몸에 배이지 않았으니 까, 좀 인식하라는 생각도 들고요.³⁶⁾

북한이탈주민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사적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보내고 시장경제시스템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단 시간 내에 시장경제시스템 특히 '사적소유의 인정'이라는 핵심적인 요소를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소유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법의식에서 일반 국민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2. 국가의 것은 공짜이고 내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

1990년대 중반 이전만 해도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무상교육, 무상치료, 무상주택, 무상복지와 같은 슬로건으로 사회주의사회의 우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북한의 언론들은 위와 같은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잘 구현된 사회라고 주장하여왔다. 북한이 사회주의국가를 선포한 1958년부터 8월부터 1990년대 이전까지 풍족하지는 않지만 사회주의적인 배급과 공급을 포함한 일정한 시책들을 사회에 구현해왔었다. 11년제 의무교육과 같은 초·중등 의무교육 뿐 아니라 고등교육까지³⁷⁾도 무료 교육제를 실시하였고, 교복과 교재의 무상보급을 실시하였다.

또한 '예방의학'을 위시한 무상치료제를 큰 자랑으로 여겼으며, 연로보장제도, 쌀 배급 외에도 주택공급제, 직장배정제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였다.

공급소나 배급소 앞에 늘어선 긴 줄과 물건 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는 과거 동유럽 국가 주민들의 모습은 흔히 계획경제와 공급제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북한사회에서도 가구당 남성숙옷이 배정되는 경우, 모녀간이 생활하는 가정에서도 남성숙옷을 무조건 공급 받아 챙겨두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것은 국가에

36) M1과의 인터뷰, 2017년 5월 27일자

37) 대학 입학이 모든 주민들에게 열려있지 않았으며 혜택을 받는 계층에서만 가능했다.

서 주는 것은 그 수요와는 별개로 반드시 받아 챙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은 무조건 그리고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계획경제 무상 공급하의 주민들의 자세이다.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유상의 원리가 작용하는 시장경제 사회와는 달리 재화와 용역을 국가가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상의 원리가 작용하는 계획경제 사회에서 일정한 시기를 보내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여전히 ‘국가의 것은 공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요청하기 보다는 모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로 나타나게 된다.

사실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여기 와서도 그냥 묶여 사는 거랑 똑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고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못해요. ...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관한 것들, 이걸 공짜라고 생각하고 기초생활수급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거죠. 못 받음 머저리라고 생각하는거죠.³⁸⁾

국가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선을 딱 설정하게 되는게 맞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다 국가 것은 다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그제 몸에 배어 있어요.³⁹⁾

H1과 M1은 북한이탈주민은 시장경제 사회에 진입하여도 여전히 국가의 것을 무조건 챙겨두는 사고방식과 관습을 버릴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 시책들을 공짜라고 생각하며 받지 않고 자립하면 자랑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보’로 생각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정책이 ‘보호’의 차원에서 ‘자립자활’로 바뀌었고 정착 6개월 후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관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으며 문제로 되고 있다.

38) H1과의 인터뷰, 2017년 5월 27일자

39) M1과의 인터뷰, 2017년 5월 27일자

3.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다.

계약의 사전적 의미는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를 말한다.⁴⁰⁾ 계약은 근대사회의 산물로 사유재산의 절대적 존중이라 원칙이 지켜지는 필요충분 조건일수도 있다. 또한 계약은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북한에 ‘계약’이라는 말이 있을까? 당연히 없다. 그것은 사유재산이 존중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법전이 채택된 것은 1990년 9월로 민사법제의 정비과정이 형사법제에 비해 매우 뒤늦게 정비되었기 때문이다.⁴¹⁾ 구소련과 중국⁴²⁾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사적소유제의 철폐와 함께 집단의 이익에 개인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집단주의제도를 형성하고 있기에 민사법제의 정비과정이 형사법제에 비해 상당히 소홀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의 주민들은 민사소송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약서 자체가 없잖아요. ... 개인 간에는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영수증 비슷하게 자필로 써주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식인데, 그것도 100명의 한 사람이 할까 말까... 대부분 그런 거 모르지요. ... 민법에 효력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나요? ... 민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거기까지(민사소송까지) 가려는 거요. 그 자체를 생각 못해요.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게 없지요. 개인 개인 간에...⁴³⁾

낫(얼굴)이 간지러워서 어떻게 씹니까?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는 그럴 일도 없고요,⁴⁴⁾(돈을 떼일 경우) 가서 해보거나 사람을 내세워서 해결하죠⁴⁵⁾

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41) 김동한, “민형사법: 제도와 현실” (세종연구소, 『북한의 사회문화』한울아카데미, 2006) 참조

42) 구소련에서 소비에트연방민사법은 1962년에 시행됨으로써, 러시아혁명이 승리한 1917년에서 무려 45년이 지난 이후이며, 중국 역시,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1986년에 이르러서야 민법통칙이 제정되었다.

43) H1과의 인터뷰, 2017년 5월 27일자

44) M1과의 인터뷰, 2017년 5월 27일자

45) H1과의 인터뷰, 2017년 5월 27일자

북한에서 개인들 간의 분쟁은 마치나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한 모습을 훼손하고 사회주의 대 가정을 해치는 매우 나쁜 행태로 규정하고 분쟁 자체를 묵살하였다. 해방 후부터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 주민들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는 국가적, 법적 기제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요새는 금액이 크면 계약서 비슷한 걸 씁니다. 딱히 계약서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 계약서가 어떤 때에 필요한가요?) 민사소송 이런 건 모르고 돈을 제때에 갚지 않을 때, 그걸 내놓고 갚으라고 협박하거나, 집의 물건들을 막 거두어가지고 올 때 ... 짹 소리 못하는거지요. 그거 없으면 언제 꾸어갔냐는 듯이 하니까 자필로 받아두는거죠⁴⁶⁾

J1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계약서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인 간에 약속이 있었음을 서로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법적 해결이 아니라 개인 간에 해결하고 있었다.

다만 재산권이나 물권과 같은 큰 분쟁이 아닐 경우에는 조선로동당 산하의 공장이나 기업소, 기관의 당 위원회를 찾아가 하소연하는 것에 그쳤으며, 당위원회의가 개인 개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사람과의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무조건 적인 화해를 권유하는 것에 머물러있었다.

우리 <민법>의 채권편 계약장에서 14종의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의 <민법>에는 제3편 채권채무제도의 제3장으로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과, 제4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대해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간, 공민들 상호간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말로 맺을 수 있다’(140조)라고 규정되어 있다.⁴⁷⁾

북한의 민사법은 개인의 법적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인 간에 작성된 계약서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북한 주민들은 민법이 그들의 폐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의 삶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연장되어 계약서를 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

46) J1과의 인터뷰, 2017년 6월 3일자

4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법전』(1990년 9월 5일), 김동한, “민형사법: 제도와 현실”(세종연구소, 『북한의 사회문화』한울아카데미, 2006)에서 재인용

한편 중국에서 신원도 확실하지 않는 모르는 사이(탈북 및 입국 브로커)에 강요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입국 후 어려움이나 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제3국을 체류하면서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입국비용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을 대부분 경험하게 되며 엄밀한 의미에서 매우 불리한 ‘노예계약’과 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게 된다.

4. 노동 강도의 차이가 심하다.

북한과 같은 계획경제하에서 노동에 익숙한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노동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잘 알려져 있다. 출근도장만 찍으면 월급과 배급표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 퇴근시간까지 ‘시간 떼우기’식 노동에 익숙해져 있다.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북한의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도 담배를 피운다는 명목으로 20~30분씩 하루 수차례 작업장 이탈을 하지만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역시 주인이 아닌 피고용주로서 눈을 감아주고 지내는 형편이다. 다시 말하여 북한사회에서 주인은 김정은 1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노동력을 상품화한 ‘부정적인 사회’로 묘사한다. 북한에서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다. 북한주민들은 자기 노동력의 가치를 높여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는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외로 일을 하다 보면 나는 한국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할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 하는데 가게 되면 따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젊은 사람들이랑 해도 제가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⁴⁸⁾

주인이 없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 구조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노동력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을 묵살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죠.⁴⁹⁾

48) O1과의 인터뷰, 2017년 5월 27일자

49) H1과의 인터뷰, 2017년 5월 27일자

회사의 주인이 바로 옆에 있어 눈에 보이는 시장경제와 주인이 국가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북한은 사적 소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에서도 차이가 난다. 시장경제하에서 노동자들은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오랫동안 수동적인 경제적인 구조에 놓여있게 되면 인간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측면들이 묵살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생산현장에서 다른 노동자들과의 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으며 억제되었던 자발성을 재발휘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5.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권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선택해 준다. 살아야 할 지역과 주거 공간, 일해야 할 직장과 공급받아야 할 물품, 공급해주는 상점과 쌀을 주는 배급소, 다녀야 할 학교와 치료받아야 할 병원까지 선택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적응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선택이다.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 결과를 책임진다는 것은 수동적인 삶은 살아온 이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인터뷰대상자 12명 중 8명은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국가가 자신에게 빌려주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배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는 본인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주거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직장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타인과 경쟁하여 입사하는 상황에 대해 당황해하고 있었다.

그럼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왔는데 그 정도(집이나 직장)는 못해주겠어요? 취업상담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도 해주어야지요.⁵⁰⁾

북한은 국가가 노동력을 배분하게 되는데, 인민위원회 노동과는 만 17세 이상의 근로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작업장과 매치시키는 노동배치를 한다. 이러한 노동배치가 본인의 요구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불평등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50) L1과의 인터뷰, 2017년 10월 21일자

순응하고 있으며 본인이 알아서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런 북한사회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서도 당연히 직장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국가의 경영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탈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녀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사회화’로 전환하여 국가가 전적으로 돌봐주고 있다. 이는 노동력이 다량으로 필요하여 만들어진 자구책인 ‘여성의 노동자화’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자들도 있으나 어찌되었건 북한의 부모는 만 5세 이후에는 오전 8시에 유치원이나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저녁 6시에 하교하는 자녀를 받아들이면 된다. 학교가 학생의 기본 수업뿐 아니라 과외까지도 전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업보다는 생산노동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 것 역시 국가가 학생의 과외를 책임지는 측면으로 학부모들은 이해하고 있다.

스스로의 선택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다녀야 할 직장을 알아보고, 자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고,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고, 즉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다단계나 보험에 타인의 의지에 의해 가입하는 것은 북한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본인의 충분한 경험에 의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책임적인 삶에 대한 경험부족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제3절 독재정권으로 인한 법의식의 왜곡과 그 영향

북한은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 republic of Korea)’이라고 불린다. 액면 그대로의 내용은 민주주의적인 공화제도이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인민은 노동자와 농민, 적대계급의 편에 서있지 않은 인텔리들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들에게만 주권이 주어지는 국가를 의미하였다. 정권수립 초기의 이러한 노

선도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었고, 결국 김일성의 생각만이 유일하게 옳으며 그 존재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10대원칙’과 ‘당의 유일적지도체계의 10대원칙’이 나오게 되었다.

북한주민은 사상과 이념에서 제3의 길이란 없다. 정형화된 북한의 정치체제를 지지 하든지 반대하고 숙청되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김일성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동지요, 그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북한의 모든 주민은 ‘아적(我敵)’ 관계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으며 동지는 혁명을 함께 해나가야 할 동반자이지만 적은 반드시 숙청해야 할 혁명의 대상이다.

북한은 지난 70년 이상 다원주의를 경험해 본적이 없다. 획일화, 일원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가 많은 것만 봐도 다양성과 다원성과의 괴리를 알 수 있다. 유일사상, 유일지도, 유일영도, 유일체제, 일색화, 일원화, 일편단심, 일심단결 등의 구호는 생활 속에서 행위규범으로 강요되었고 그 ‘하나’에 들어오지 못한 대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대상이다. 북한사회는 또한 정의와 부정의, 정답과 오답을 뚜렷이 구분해주고 모든 북한주민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선거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인 자유는 물론이고 사유재산의 자유, 거주 자유, 이동의 자유, 선택의 자유, 말과 행동의 자유, 등 경제적인 자유와 시공간적인 물리적 자유까지도 북한주민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자유이다.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은 늘 자신과 타인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꼬집어내도록 유도되었으며 타인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강요되었다. 그리고 타인의 잘못을 반드시 지적하고 수정해주어야 한다고 유도되어, 이를 “혁명적 동지”들 사이에 진정한 의리라고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민주주의 인식 부족, 다원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 결여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1. 내가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니!

해방 후 북한에는 김일성과 게릴라전을 함께 했던 공산당 계파뿐 아니라 소련파와 연안파, 남로당파와 갑산파 등 적지 않은 계파가 있었다. 초기 건국시기에 구소련의

사회주의 모델을 실현하고자 북한으로 모여들었던 공산주의자들은 북한과 평양이 곧 그들의 각축전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소련을 등에 업고 정권창출에 성공한 김일성은 한국전쟁시기에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파에 대한 숙청을 단행한다.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를 계기로 소련 내에 불어 닥친 스탈린격하운동이 북한 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해 8월 김일성의 해임을 거론한 소련파와 연안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거행한다.

1960년대 후반에도 갑산파에 이르기까지 숙청을 진행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이미 성장한 김정일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대통령선거’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지난 70년 이상을 김씨일가의 세습을 보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세뇌되어 있다.

처음에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한다고 하여 덩뎡했습니다. 그런걸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적응하느라고 정신도 없고, 누가 어떤지 잘 모르고,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습
니다. ... 두 번째는 참석했습니다.

제가 뽑은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선거장에 가서 많이 놀랐습니니다. 북한의
선거장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니까.⁵¹⁾

자유롭게 선거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 좋다가보다 이상해요.⁵²⁾

북한 주민들은 대통령선거를 경험해 본적이 없지만 우리의 총선에 해당하는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4년에 한번 치르게 된다. 그러나 여러 후보자들 중 한명을 선택하여 투표함에 넣는 자유민주주의적인 방식과는 판이하게 후보자도 1명이고, 누구인지 볼 사이도 없이 바로 투표함으로 넣어야 하는 무시무시한 환경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갈수록 분위기가 영 삼엄해지거든요. 2015년도에 마지막으로 선거 하고 왔는데, 선거
전 날 저녁에 어두어져서 부터는 길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단속하는
사람뿐이고요. (뭘 단속해요?) 야간 통행을 단속합니다. 선거장 주변에는 열쎌도 못하

51) J1과의 인터뷰, 2017년 5월 27일자

52) O1과의 인터뷰, 2017년 5월 27일자

게 하나까요. 선거장에서 무슨 장난을 할까봐. 다음날 선거함이 있는 선거장에 들어갔는데 다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사전에 다 감지하니까요. 여기는 원래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이 칸 막아놓은 것처럼 하고 다 보는 걸 우리는 알지요. 한 사람밖에 없지요. 반대가 없고 뭐. 그냥 감시한다는 거 다 알죠.⁵³⁾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5년 미만에는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어 타인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5월 핸드폰으로 계속 뭔가가 날아와요. 누구를 지지해라 이렇게요. 그러구 내가 북한에서 온 거 다 아는 것 같아요. 탈북자들은 무조건 종북하는 사람을 찍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탈북민들이 이제는 한국에 못 온다. 막 그러더라고요. 탈북자들이 막 이런 말 듣고 또 모여서 싸워요. 그 때 제가 그랬어요. ‘뭔 소리하나?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노무현 때도 탈북자들이 많이 왔잖나. 하여튼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⁵⁴⁾

북한이탈주민은 대체로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정치선전물과 친구의 말을 따라 선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초법적인 존재, 헌법위에 있는 권력

1960년대 후반 김일성의 유일영도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힌 북한에서는 모든 주민을 규율하고 온 사회를 규제하는 장치로 ‘당의 유일사상체제의 10대원칙’을 내놓았다. 그 외에도 조선로동당의 규약이나 지침, 그리고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 말씀, 최근에는 김정은의 각종 훈시가 법위에 존재하고 작용한다. 여기에 북한의 법제가 끼어들 여지는 없어 보인다.

53) O1과의 인터뷰, 2017년 5월 27일자

54) O1과의 인터뷰, 2017년 5월 27일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는 초법적인 존재임을 모든 북한주민은 충분히 알고 있다. 따라서 법을 어길지라도 그들의 신성을 소홀히 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북한을 방문했던 버지니아 주립대학생 워비어사건⁵⁵⁾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북한의 국가보위부는 초법적인 존재인 김씨 일가와 관련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기구로서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재판도 없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수용된다.

북한 전력문제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전력공급성이 외화로 돈을 받고 전기를 팔거든요. 금수산기념궁전 전력이 2호 일반으로 전기를 걸어놨는데, 정전이 확 되어버렸죠. 그니까 금수산기념궁전이 특별호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총살 당했어요. 전력공급성 부상이... 10대원칙 1조(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 딱 걸린거죠.⁵⁶⁾

북한에서 초법적인 존재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모시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는 J1의 증언내용에서도 나온바와 같이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제1조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처음에는 정치범으로 몰렸다가 7개월 동안 해명해가지고 일반범죄로 넘은 경우죠. 보위부는 아무런 재판이 없이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내가 자백하고 인정만 하면 그냥 수용소로 갈 판이었죠. 낙서(김씨에 대한 불만을 벽에 마구 써넣기도 함)하거나, 불만하거나, 성경책 들여오거나, 남조선 검은 돈과 연결돼 있거나, 안기부랑 연결돼 있거나 하면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⁵⁷⁾

북한에서의 정치범사건은 연령에 상관없이 처형되며 철없는 중학생들의 경우에도 그 가족까지 가혹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평안도에서 큰 정치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평성일고등중학교(수재학교) 학생들이 저걸

55) 북한을 방문했던 워비어는 2016년 1월 2일, 출국장에서 체포되었으며 17개월만에 귀환되었으나 끝내 사망한 사건이다. 워비어는 호텔 벽에 붙여져 있던 정치선전물을 떼었다는 죄명으로 노동교화형 15년에 처해졌다.

56) J1과의 인터뷰, 2017년 6월 3일자

57) K1과의 인터뷰, 2017년 6월 3일자

저지르게 됐죠. 수령이 없는 내각을 조직하고 어린 학생들이니까, 내가 총리하고 너는 무슨 성의 장을 하고 하는 식으로... 그게 2007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애네가 놀음으로 조직을 했는데... 지들끼리 모리면 뭐 총리동지, 뭐 부총리동무. 그러면서 그렇게 모여서 얘기가 됐는데 이게 사건화되었죠. 일고등 애들이니까 간빚집 애들이고 머리가 진짜 좋은 애들이니까. 우리도 다 인정하잖아요. 자기네끼리 그 조직내에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고, 재정은 어떻게 해야 하겠고, 이런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직보(김정일에게 바로 보고가 되는 상황)되어서 12명이 바로 보위부에 잡혀갔는데 12명이 끌려가서 취조받고나서 그 중에서 주모자 4명만 가족까지 다 정치범수용소로 갔지요. 그 아이들 나이가 16~17살이었죠.⁵⁸⁾

한편 북한에서의 정치범사건은 본인 자백으로 죄를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우 적게 끝까지 자백하지 않을 때 무죄로 풀려나기도 한다. 이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비방증상이나 신성모독이 큰 죄이기는 하지만 주로 신고에 의한 것으로 과학적 수사에 의존하지 않는 맹점을 가지고 있어 벌어지는 상황이다.

어느 인민반에 인민반장 남편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등장할 때, 말 잘못해서... (북한이) 김일성에게는 수령복, 김정일에게는 장군복, 뭐 그러다가 김정은이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서 대장복을 타고 났다고 써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인간 세상에 5복⁵⁹⁾ 밖에는 없는데, 수령복하고 장군복하고 하나 무슨 복 있고 대장복이 나오니까 남은 하나가 뭐가 있나 하고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니까 우린 뭐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이런 못하는 복만 받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앞에다가 김정은을 가리켜서 쪼꼬만 새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서 잡혀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맞으면서 자백을 받아내고자 했고, 이 사람이 끝내 그런 적이 없다고 빼서 8개월만에 겨우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신고한 한 인민반의 여자는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더라고요.⁶⁰⁾

초법적인 존재인 김씨일가나 북한의 조선로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들이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58) J1과의 인터뷰, 2017년 6월 3일자

59) 북한에서는 보통 5복을 먹을복, 입을복, 부모복, 죽는복, 처복 이라고 말한다.

60) J1과의 인터뷰, 2017년 6월 3일자

선거할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요. 선거장은 보통 한 달 전에 꾸며기 시작하잖아요. 그니까 이제 어떤 어느 순간을 이용해서 선거장에 불을 놓기도 하고요, 낙서를 써놓기도 하고요. 반향을 표시하지요. 평성이랑 청진이랑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 더 심해졌어요.⁶¹⁾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초법적인 권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놀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해보고자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 번의 대선과 총선을 겪다보면 인민민주주의와는 다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알게 되지만, 힘과 권력이 강한 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한다. 이런 것은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법의식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다.

3.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일이 가능하네요!

행정, 사법, 입법의 3권분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제7차당대회에서 김정은에게 공식적으로 붙인 직함은 9개에 달한다. 비공식적인 직함까지 포함하여 무려 17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외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조선로동당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1위원장, 조선인민군 원수, 최고인민회의 제13개 대의원, 당중앙군사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외에도 조선로동당 조직부장, 행정부장 등 몇 개의 부장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최고인민회의 의장직이거나 재판소 소장 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입법과 사법을 관장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조선로동당 행정부는 검찰소, 재판소, 보안성 등을 모두 관장하는 기관이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은 북한의 3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북한의 김씨일가 체제만을 경험하고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대통령이 법을 어겨 탄핵을 당하는 사태에 대해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예. 예 정말 많이 놀랍고 북한에서는 아예 엄두도 못낼 그런일인데 여기서 그런일(탄핵)이 실제로 진행되고 또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1) J1과의 인터뷰, 2017년 6월 3일자.

그런데 이진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대통령을 그런 측면까지 피어차고 들어가는 건 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⁶²⁾

참. 이런 일도 가능하네요. 우리는 탄핵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탄핵 시작할 때, 근데 법에 대해서 쪽 봤더요. 보니까 처음에 탄핵이 되려면 일정하게 대통령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 그게 납득이 되어야 돼요. 근데 대통령 치고는 범죄행위가 크게 없더라고요.⁶³⁾

(탄핵을 보면서) 조금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무자비한 걸 보고 더 독하지 않나 생각도 해요.⁶⁴⁾

인터뷰 대상자 중 50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직분이 있는데 굳이 탄핵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층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학습하고 대통령도 잘못을 했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탄핵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중 대통령의 탄핵을 민주주의사회에서 응당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북에서는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인터뷰대상자 12인은 하나 같이 북한에서는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돈이나 권력이 독립변수이고 법은 그의 종속변수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1995년에서 1998년까지의 ‘고난의 행군’은 모든 주민의 삶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으로 몰아갔다. 공장이나 기업소에 출근해서 일정시간을 노동에 종사하여도 배급이 나가지 않으니 주민들은 출근은 출근대로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자그마한 토지를 얻어 농사를 짓는 소토지 농사에 서부터 길거리 행상, 장마당에서의 장사, 먼 거리에서 날라다주는 달리기 등 각이한

⁶²⁾ J1과의 인터뷰, 2017년 6월 3일자.

⁶³⁾ P1과의 인터뷰, 2017년 6월 3일자.

⁶⁴⁾ L1과의 인터뷰, 2017년 10월 21일자.

이름이 붙은 생계형 행위는 시기마다 합법이 되기도 하고 불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북한주민의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이를 단속하는 법관들과의 친분관계나 뇌물수수에 따라 법적 처벌이 하늘 땅 차이를 가진다.

뭐 힘만 있으면 살인자도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 처가네 친척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들끼리 다투다가 주먹다짐이 나갔어요. 어떻게 잘 못 건드려서 상대가 죽었어요. 집에 찾아와서 계속 사정을 하는데, 우리도 집안 안에 살인자가 있으면 출세가 안 되잖아요. 모르는척 하기가 그래서 나섰지요. 일단 시 보안부에 엄청 뇌물을 먹어요. 그들도 잘 못 먹어서 나중에 터지면 안되니까. 믿을 만한 사람 내세워서... 하여간 정신 이상으로 하고, 상대도 몸이 너무 허약한 환자였던 것으로 해서 마무리했어요.⁶⁵⁾

누구의 삼촌이데, 살인자가 보안원이고 여자를 성폭행하고 죽였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우리들끼리 살인하고도 사는 방법이 있네. 라고 다 놀랐어요. 또 한번은 아들이 엄마를 살해했는데 어떻게 살려내데요. 북한은 살인하면 무조건 사형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인자가 됐던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저도 살인자만은 처벌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⁶⁶⁾

북한은 살인을 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한다.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불찰이 아닌 보행자의 불찰이라 할지라도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힘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뒷돈 많이 찔러주는 사람들은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무마되고 나오고, 뒷배경 없이 일 저지르면 죽기가 일쑤죠. ... 브로커들이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전화를 하다가 도청에 걸리거든요. 밤을 자고 일어나면 어느 집은 들어가고, 어느 집은 어떻게 되고 하면서 흥흥한데, 요새는 보위부라도 돈 고이면(바치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보위부는 철저한 줄 알았어요. 법관들이 오히려 돈을 더 크게 먹어요. 중대범죄는 중국돈으로 5만원 그

65) M2와의 인터뷰, 2017년 6월 3일자.

66) L1과의 인터뷰, 2017년 10월 21일자.

이상은 10만원 내면 나온다고 다 정해져 있어요. 한국과 거래하면 적대적이라 완전 죽일 것처럼 하더라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부위부 안에서 그런데 통해요⁶⁷⁾

일반범죄 뿐 아니라 북한의 국가보위부와 연결된 정치적인 범죄인 경우에도 최근에는 보위원과의 친분관계나 돈 액수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북한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에서의 삶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들의 법의식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4절 북한의 법문화로 인한 영향

북한은 지난 반세기동안 주민들에게 과거와의 단절, 외부와의 단절, 종교와의 단절을 강요하였다. 따라서 다른 국가, 다른 사회 사람들과 심한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폐쇄적인 법문화에 따른 닫힌 생각으로 이어진다.

1960년대부터 유교사상은 낡고 봉건적인 사상으로 낙인 되어 뿌리 빼야 한다는 명목 하에 그나마 남아있던 오래 된 서적들을 없애고,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들을 파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주체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 외 일체의 사상과 신앙은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었고 오래된 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보수주의자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은 전투적인 분위기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의 주민들로 하여금 공격적이고 비타협적으로 살도록 하고 있다. ‘전투’, ‘행군’, ‘운동’, ‘투쟁’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는 구호는 수도 없이 많다. ‘70일 전투’, ‘100일 전투’, ‘200일 전투’, ‘모내기전투’, ‘가을걷이 전투’, ‘농촌지원전투’,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3대혁명소조운동’,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 ‘고난의 행군’, ‘고난의 강행군’, ‘혁명의 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자’ 등 등.

타협은 공산주의적인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비굴한 행동으로 정형화된다. 북한에서 말하는 타협은 곧 신념이 없는 표현이요, 변질이라고 간주된다. 북한주민

⁶⁷⁾ C2과의 인터뷰, 2017년 10월 21일자

에 있어 공식적인 장소에서의 타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산주의도덕’에 길들여진 북한주민은 타협에 서툴다.

또한 북한은 집단의 이익에 개인이 희생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 개인주의는 곧 이기주의와 같이 나쁜 사상임을 강조한다. 북한에서 개인은 집단에 완전 귀속된다고 교양하며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이익이 포기하고 희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서 서로 다른 법문화로 인한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1. 개인은 집단에 희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1972년 헌법에 ‘집단주의원칙’이 처음으로 공민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된 이래 북한사회에서 집단주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규범이다. 수십 년 동안의 북한의 구호들 중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구호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이다. 구호의 내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가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보다 앞에 있다. 이것은 북한사회가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느리고 미미한 사회변화 속에서 집단주의적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 12명도 하나 같이 개인의 이익은 언제든지 집단의 이익에 희생당하며 그것을 모든 북한주민들은 당연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 큰 건물을 짓는데, 엄마의 친구가 거기에 많은 돈을 냈어요. 사실은 다 지으면 자기가 뭘 좀 해볼까 해서 그랬는데요. 짓구 나니까 나중에 국가에서 그냥 가져갔어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다 돈을 내고 지었는데, 사실은 국가가 빼앗아간거죠.⁶⁸⁾

개인이 건물을 짓는 모든 비용을 대고 건축하는데 참여하였지만 국가는 개인의 허락과 상관없이 재산을 갈취해간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최근 장마당을 통해 돈을 번 ‘돈주’나 ‘물주’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불안정하지만 주택이나 땅, 선박, 기계, 자동차와 같은 제법 돈이 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개인이 사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국가에 빼앗길 각오로 진행하고 있다.

68) S1과의 인터뷰, 2017년 10월 21일자.

여기 오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게 있는데, 북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숙박검열을 1주일에 2~3번 들어옵니다. (숙박검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자기 집에 친척도 들여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친척도 자기 고장에서 여행증명서를 떼어가지고 와서 묵어야지 그냥 차 타고 와서 묵으면 걸린단 말입니다. 집에도 누굴 들여놓지 않았나 해가지고 인민반장이 보안원이나 단속반을 데리고 새벽 3시던 4시던 문을 두드린단 말입니다.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래도 열어주지요. 그러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없나 살피고 혹시라도 녹화기라도 보고 있으면 가져가고, 그 새벽에 불리워가고,,, 아 짜증이 많이 나지요. 개인은 무슨 부속품이죠 뭐. 무슨 신성불가침 이런 건 꿈도 못 꿉니다.⁶⁹⁾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북한의 개인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없다. 늘 자신의 모든 것을 개방해야 하며 그것을 감추게 될 경우 ‘집단주의원칙’에 어긋나게 되며 법적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영장 없이 구속하지 못한다는 거 없습니다. 개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위부, 보안부, 단속반, 심지어 적위대까지 너무 많아 뭐가 뭔지 모릅니다. 길거리에서도 그냥 잡아가고 짐을 수색하고, 뭐가 나오면 빼앗고,,, 조금만 어찌면 수입대 지출이 맞지 않다고 그러고... 개인이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⁷⁰⁾

신체적 구속을 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절차가 없이도 가능하며 행인의 짐을 단속하는 것도 남발되어 있었다. 특히 힘이 없는 개인은 철저히 집단에 희생당해야 하며 그런 것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여명생활(조직생활)은 동원이 많죠, 내라는 과제가 많죠, 생활총화가 많아서 정말 힘듭니다... 요새는 돈을 내면 여명생활도 빠질 수 있습니다. 생활총화에서 자기를 다 까발려서 비판해야 하고 남도 비판해야 하고... (호상비판을 하려면) 일주일 내내 살펴봐야 되지요. 생활총화 때문에 이가 많이 상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⁷¹⁾

69) M2와의 인터뷰, 2017년 6월 3일자.

70) M2와의 인터뷰, 2017년 6월 3일자

71) C1과의 인터뷰, 2017년 6월 11일자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회동원이나 노력동원에 대한 참가여부 역시 개인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국가는 개인의 감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생활총화에 참여시키며 생활총화시간에는 타인에 대한 비판을 진행한다. 타인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타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생활총화 시간에 비판을 받은 당사자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 이는 항상 감정이 상하는 쪽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관습으로부터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 기보다는 지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개인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분위기와는 상충이 되며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2. 법보다 가까운 주먹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놀라움을 표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폭력이 중범죄라는 사실이다. 북한에서 폭력은 중범죄로 치지 않기 때문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정치적인 범죄에 비중을 두고 있는 북한사회에서 일반범죄는 경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폭력이나 사기와 같은 범죄들이 일상화 된 것은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평양도 남자들 보면 폭력적이예요. 우리 대학(김책공대)은 남자 학교잖아요. 90%가 남자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말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화장실에 데려다가 반쯤 죽여서 나오더라고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요) 간혹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보다 돈이 없으면 맞은 사람이 보안원에게 신고해요. 그러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요. 학생들도 맞을 짓을 해서 맞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해요⁷²⁾

비교적 최근에 북한의 대학을 다니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L1과의 인터뷰에서도 아직까지도 북한사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회이다. 북한 주민들은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들 속에서는 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주먹으로 해결하지요 뭐. 공장에서도 서로 주먹질하고 술먹다가도 주먹질하고...

72) L1과의 인터뷰, 2017년 10월 21일자.

그래도 별로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북한에는 원래 때린 사람도 나쁘지만 맞은 사람도 원인제공을 했다고 법에서 판단하니까 맞아도 신고하지 않지요. 또 신고했다고 해도 CCTV가 있습니까. 서로가 폭행당했다고 하면 밝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은 옆에서 본 제3자가 없으면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은 보통 보이지 않는 데서 때리지요.⁷³⁾

북한에서 폭력이 만연화 되어 있고 그 처벌이 약한 것은 주민들의 법의식도 있지만 과학적인 수사로 제대로 밝힐 수 없는 수사기관의 약점도 있었다. 또한 폭력은 때린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맞은 사람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법적 책임의 일정부분을 진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에 맞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세태이다.

북한은 아직도 나를 건드렸어?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부시고 파괴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 부모님도 사천불(\$4,000)인지를 누구 빌려줬는데 그 집 아들이 깡패더라구요. 우리 집에 전화해서 아빠 보고 ‘늬은이가 4천불 없으면 못사냐?’고 막 모욕을 해서 아빠 혈압이 180까지 오르고 그랬었어요. 제 친구 중에 깡패가 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하면서, 주소를 주고 가서 해결해주라고 부탁했더니, 가서 반쯤 죽여놔더라구요. 보통 북한에서는 돈 때문에도 그렇고 남편이 불륜을 하게 되면 또 누구 시켜서 때리고, 누가 맞았다 했을 때 여기보다 법이 세지 않으니까. 다 주먹으로 복수하죠⁷⁴⁾

북한 사회에서 정치적인 범죄 외에 주민들이 일반 범죄에 대한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것은 개인 간의 분쟁에 국가가 소홀히 대하고 있으며 주민들 역시 타인이나 남의 가정 일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법에 대한 친근감이 낮은 북한 주민들은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사기나 남편의 불륜까지도 주먹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73) K1과의 인터뷰, 2017년 6월 11일자

74) L1과의 인터뷰

고소보다는 몰려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법을 지키면 손해인 사회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권국가에서는 당국이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금기사항이 많아 금욕주의를 방불케 하고 있기에 주민들은 당국의 눈을 피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당국에게 보여 지는 공식적인 행사 장소에서는 당국에 요구하는 공식적인 행동을 하고 당국에게 보여 지지 않는 사석에서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수십년 이상 진행되어 온 감시제는 사람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공식규범과 비공식규범 사이에서 이중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행동하도록 하였으며 보이지 않을 때에는 적지 않은 불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양산하였다. 인터뷰대상자 12명은 하나 같이 북한사회에서 불법이 아닌 행동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거의 다 법에 어긋나니까요... 집에서 전기밥솥을 써도 위반이고 장마당, 시장에 가서 물건 팔아도 자릿세나 위치 때문에도 법에 어긋나고 이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안 걸리면 됐고 걸리면 재수 없고...⁷⁵⁾

북한에서는 일상적인 삶이 불법적인 요소를 동반한다. 가정에서 전기장판 사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전기밥솥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극으로 도입된 시장경제 요소들은 일관성이 없다. 시장에 대한 통제와 이완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어정쩡한 시스템은 주민들을 불법과 합법의 애매한 경계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불법은 너무나도 태두리가 크니까요. 거긴 뭐 먹고 사는 사람은 다 불법하는 사람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불법도 아닌데 불법도 많거든요. 산에 가서 그냥 누가 허락하지 않은 나무를 해와도 불법이고, 자기 육체를 움직여서 그 다음 허락을 안

75) S1과의 인터뷰, 2017년 10월 21일자.

해놓고도 불법이고, 땅에 농사를 지어서 먹는 사람도 불법이고. 여기처럼 투잡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없고, 허가해줬다가도 정책이 바뀌면 또 불법이 되고...⁷⁶⁾

북한에서는 소토지농사나 산에서의 나무하는 것도 불법과 합법사이에서 일관성이 전혀 없다. 언제는 허가가 되지만 언제는 허가가 되지 않고, 어떤 지역은 허가가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기도 하고,, 허가가 되었다가도 취소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그러니 모든 주민들은 남의 눈을 피해 불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법을 어기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예 거의 뭐... 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마 살아남기 힘들죠. 김정으로부터 저기 저 함북 온성에 있는 농장원에 이르기까지... 농장원은 도둑질해 먹을거고 간부는 뇌물 받아먹고 뭐 그런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생존하고 관련되 문제니까. 그게 불법을 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 법대로 앉아 있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법을 지키다 죽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막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머저리나 바보로 인식을 하잖아요.⁷⁷⁾

북한에서 법을 지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심지어 생존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살아남은 사람은 승냥이와 여우뿐이다.”라는 북한주민들의 얘기는 오직 법을 어긴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북한주민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중에도 그 연장선에서 남의 눈을 피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법의식이 약화된 경우를 볼 수가 있다.

4. 모든 것은 여자의 책임(강간과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는 당국의 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여 여성에게 남성과 꼭 같은 참정권을 주며 또 하나

76) O1과의 인터뷰, 2017년 5월 27일자.

77) J1과의 인터뷰, 2017년 6월 3일자.

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수립하게 된다. 구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나라들에서 여성의 해방은 ‘사적소유의 철폐’라는 혁명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 다시 말하면 여성의 노동자화를 통해 실현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주의에 따르게 된다. 실제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여성의 지위는 높은 것이 현실이었다. 마찬가지로 해방 후 인력난에 처해있던 북한이 여성에게 일정한 참정권과 동시에 남성과 꼭 같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정책을 펴게 된다. 그러나 1974년 이후, 김일성주의 및 혁명적 수령관을 도입하게 된 북한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대가정의 아버지로서, 높이 떠받들어야 할 가장으로 전환되면서 그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여사와 부인이었던 김정숙여사를 내세우기에 이르고 이들은 가족 내에서는 남편과 아들을 성심으로 섬기는 현모양처의 형상을, 밖에서는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를 남성과 함께 끌고 나가는 형상으로 여성의 노동자화라는 한쪽 방면의 정책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다.

197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만 17세 이상의 남성들이 대부분 10년 이상이 군사복무를 하게 되고 일반 사회에서 젊은 남성의 비율이 현격하게 낮아지게 된 것도 북한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남성이 귀한 존재가 되어 버린 북한 사회에서 여성은 강간이나 가정폭력을 당해도 그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북한의 대부분의 가정들에는 가정폭력이 상존해있으며 여성의 잘못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풍조이다. 인터뷰 대상자 12명은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아 여성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데 대해 하나 같이 증언하고 있다.

여자가 돈이 많고 간부집 딸이면 강간한 남자가 처벌을 받는데 아니면 거의 여자를 욕하잖아요. 힘있는 집 여자는 건드리지도 않지만... 여기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대학교 때에도 조심했어요. 엄청 착한 언니가 약혼한 남자친구랑 자서 임신을 했는데 언니만 퇴학당했어요. 남자는 대학을 잘 다니고요. 1년 있다가 또 다른 여자를 사귀더라구요. 둘 사이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 남자가 언니에게 애를 지우라고 했는데 언니가 그렇게 못한다고 했더니 남자가 여자를 퇴학 당하게 했어요. 북한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귀싸대기를 맞아도 니가 맞을 짓 했으니까 그랬겠지 하잖아요.⁷⁸⁾

78) L1과의 인터뷰, 2017년 10월 21일자

여성의 지위는 곧 부모의 지위에 비례하고 있었다. 힘 있는 집의 딸인 경우에는 함부로 강간의 대상이 되거나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힘 없는 여성일 경우에는 상황이 바뀐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결혼과 출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그 피해를 여성이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부부싸움이 만연해 있어요. 여기는 개인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약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그래서인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을 다치게 하고 자기가 다치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⁷⁹⁾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 가정에서 부부의 다툼은 곧 남편의 주먹질로 이어지곤 한다. L1은 이는 곧 자기나 타인에 대해 소중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자 때리는 남자들 정말 많아요. 그건 뭐 법도 아니고 일도 아니지요. 여자들이 강간당 해도 신고나 합니까. 현장에 카메라가 없으니 설사 여자가 신고했다고 해도 증명할 길도 없고 별일이 다 있지요. 농장이나 공장 현장 같은데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⁸⁰⁾

남편이 때리고 여성이 맞는 현상은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일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다. 여성이 강간을 당할 경우,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의 구조적인 한계로 보인다.

남자들이 술 먹고 북한에서처럼 가정 폭행하는 건 다 잡아가야 해요. 근데 다는 아니고 원인 제공을 했을 때에는 빼놓고 술 먹고 폭력하고 뭐 사실 뭐 여자가 약을 올리지요. 말도 이제 고약하게 하고 그럴때가 많은데요.⁸¹⁾

J1은 남성으로 가정폭행의 경우, 여성이 원인 제공을 했을 때에는 남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대체로 남성에게 약을 올리고 말을 고약하

79) S1과의 인터뷰, 2017년 10월 21일자

80) C2과의 인터뷰, 2017년 10월 21일자

81) J1과의 인터뷰, 2017년 6월 3일자

게 하여 맞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위의 여성들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에 저도 맞았습니다. 여기에 와서요. 남편에게...⁸²⁾

C1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함께 온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도 가정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의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82) C1과의 인터뷰, 2017년 6월 11일자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분석 I : 기초적 법지식

최영신·김대근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분석 I : 기초적 법지식

제4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에 대한 내용을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그리고 ‘개인과 사회영역 관련 법지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1절 헌법적 가치에 대한 법지식 수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법지식’ 수준은 세부영역을 1)민주적 법치국가 이념, 2)자유권적 기본권, 3)정치적 기본권, 4)사회적 기본권, 5)국가조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법지식 수준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다음의 <표 4-1>은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두 개의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표 4-1>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2개의 문항에서 모두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다. ‘①국가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는 문항의 평균값은 3.23점, ‘②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문항에서는 3.47점을 나타내고 있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에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⁸³⁾ 북한이탈주민은 대체로

83)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대체로 그렇다’는 3점, ‘매우

‘① 국가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와 ‘②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②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적 법치국가이념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1〉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각 문항별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두 개의 문항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 국가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는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은 3.23점, 일반 국민은 2.89점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고, ‘②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문항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은 3.47점으로서 일반 국민의 3.34점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 문항의 평균값 역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국가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	북한이탈주민	799	3.23	8.560***
	일반 국민	1004	2.89	
②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북한이탈주민	799	3.47	3.968***
	일반 국민	1004	3.34	

※ 응답내용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단계(1점에서 4점까지)로 측정하여, 해당 문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코딩함.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민주적 법치국가이념에 대한 인식이 일반 국민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존재기반에 의해 더욱 강화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탈북과정과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남한사회가 ‘민주적 법치국가이념’에 더욱 투철해야 한다는 소망을 투사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4점을 부여하여 각 문항의 내용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기초생활수급여부별, 월평균가구소득별, 중국체류기간별, 한국거주기간별로 각 문항의 집단별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4-2>는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인식 수준의 하위집단별 평균값의 차이검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2> 민주적 법치국가이념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국가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		②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3.20	221	3.53
	여자	577	3.24	578	3.45
		t=-0.630		t=1.456	
연령	20대 이하	155	3.28	155	3.55
	30대	217	3.19	216	3.51
	40대	238	3.18	239	3.38
	50대 이상	189	3.31	189	3.49
		F=1.384		F=2.565	
학력	중졸 이하	113	3.27	114	3.30
	고졸 이하	441	3.21	440	3.47
	대학 재학 이상	244	3.25	244	3.56
		F=0.312		F=5.963**	
기초생활수급여부	수급 대상자	357	3.24	357	3.45
	대상자 아님	442	3.23	442	3.49
		t=0.207		t=-0.725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42	3.22	442	3.4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88	3.23	288	3.48
	200만원 이상	58	3.31	58	3.55
		F=0.345		F=0.672	
중국체류기간	1년 미만	335	3.25	335	3.53
	1년 이상~5년 미만	192	3.25	191	3.47
	5년 이상~10년 미만	196	3.18	197	3.38
	10년 이상	76	3.21	76	3.46

		① 국가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		②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한국 거주기간		F=0.368		F=2.298	
	2년 미만	71	3.51	71	3.66
	2년 이상~5년 미만	144	3.30	144	3.63
	5년 이상~10년 미만	315	3.25	314	3.39
	10년 이상	269	3.10	270	3.43
		F=5.518**		F=6.089***	

* : p<0.05, ** : p<0.01, *** : p<0.001

〈표 4-2〉를 보면, ‘①국가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는 문항에서는 한국거주기간별로 그리고 ‘②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문항에서는 학력별, 한국거주기간별로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두 개의 문항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거주기간은 각 문항의 평균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국가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각 하위집단의 평균값은 낮게 나타난다.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문항의 평균값이 3.51점으로 가장 높았고, ‘2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에는 3.30점, ‘5년 이상~10년 미만’인 집단에서는 3.25점, ‘10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3.10점으로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평균값이 일관되게 낮아진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①국가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는 생각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②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문항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이 문항에서는 한국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집단의 평균값이 3.66점, ‘2년 이상~5년 미만’은 3.63점, ‘5년 이상~10년 미만’은 3.39점, ‘10년 이상’은 3.43점이다. 전반적으로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해당 문항의 평균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10년 이상’ 집단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3.43점으로서 한국거주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인 집단의 평균값(3.39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②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학

력별 하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학력이 높은 집단은 학력이 낮은 집단보다 ‘②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문항에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에서는 평균값이 3.30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에는 3.47점, ‘대학교 재학 이상’에서는 3.56점으로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문항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다.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사이에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 4-3>과 같이 일반 국민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월평균가구소득별로 각 문항의 집단별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4-3>에서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별 평균값의 차이 검증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하위집단 사이에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 2개의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하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 민주적 법치국가이념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국가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		②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2.91	422	3.35
	여자	582	2.87	582	3.33
		t=0.725		0.364	
연령	20대 이하	138	3.04	138	3.38
	30대	157	2.94	157	3.26
	40대	384	2.85	384	3.30
	50대 이상	325	2.84	325	3.40
		F=1.895		F=1.853	
학력	고졸 이하	329	2.83	329	3.32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2.91	558	3.35
	대학원 재학 이상	117	2.94	117	3.34
		F=0.887		F=0.285	

		① 국가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		②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3	2.77	203	3.28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95	2.89	395	3.33
	400만원 이상	406	2.94	406	3.38
		F=2.289		F=1.257	

* : p<0.05, ** : p<0.01, *** : p<0.001

2.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표 4-4〉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세 개의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할 수 있다’, ‘③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야 한다’는 세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각 문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점수가 높아진다.⁸⁴⁾

〈표 4-4〉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북한이탈주민	798	3.24	1.690
	일반 국민	1004	3.17	
② 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800	2.32	8.188***
	일반 국민	1004	1.95	
③ 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798	2.46	14.185***
	일반 국민	1004	1.85	

※ 응답내용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단계(1점에서 4점까지)로 측정하여, 해당 문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코딩함.

* : p<0.05, ** : p<0.01, *** : p<0.001

84)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대체로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을 부여하여 각 문항의 내용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표 4-4〉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문항의 평균값은 3.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②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할 수 있다’는 2.32점, ‘③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야 한다’는 2.46점을 나타낸다. ②와 ③의 문항에서는 각 문항에서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거나 ‘별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하여, ②와 ③의 문항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세 개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두 개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이 3.24점으로 일반 국민의 3.17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며, ②와 ③의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이 일반 국민보다 높는데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은 2.32점이고, 일반 국민의 평균값은 1.95점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②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할 수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에 많았다. ‘③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이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은 2.46점으로 일반 국민의 1.85점보다 높게 나타난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헌법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고문’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도서의 출간 금지’ 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의 법문화나 법감정이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 4-5〉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기초생활

여부별, 월평균가구소득별, 중국체류기간별, 한국거주기간별 하위집단의 평균값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각 문항별로 하위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문항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 학력별, 월평균가구소득별로 하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 보면 남자 집단의 평균값은 3.37점으로서 여자 집단의 3.1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집단에서는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평균값이 각각 3.25점과 3.33점으로 높은 편이고, 30대와 40대는 각각 3.18점과 3.1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학력별 집단에서는 '중졸 이하' 집단과 '대학 재학 이상' 집단에서 각각 3.27점과 3.36점으로 높은 편이고, '고등학교 재학이나 졸업'의 학력 집단이 2.1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월평균가구소득별 집단에서는 '100만원 미만'이 3.18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26점, '200만원 이상'이 3.48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다. 즉 '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지식 문항의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은 남자가 여자보다 법지식 수준이 높으며,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연령별 하위집단에서는 20대 이하나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30대와 40대보다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학력별 집단에서는 '중졸 이하'와 '대학 재학 이상' 집단이 '고졸 이하'의 집단보다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이외에 기초생활수준여부나 한국거주기간별 하위집단 간에는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표 4-5〉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할 수 있다.		③ 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야 한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3.37	222	2.17	222	2.44
	여자	576	3.18	578	2.38	576	2.47
		t=2.911**		t=-2.745**		t=-0.482	
연령	20대 이하	155	3.35	155	2.33	155	2.26
	30대	217	3.18	217	2.35	216	2.45
	40대	238	3.14	239	2.25	239	2.51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할 수 있다.		③ 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야 한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학력	50대 이상	188	3.33	189	2.35	188	2.59
		F=3.108*		F=0.573		F=3.339*	
	중졸 이하	114	3.27	114	2.33	114	2.73
	고졸 이하	440	3.16	441	2.32	439	2.46
	대학 재학 이상	243	3.36	244	2.30	244	2.34
		F=4.747**		F=0.068		F=6.139**	
기초생활수급 여부	수급 대상자	356	3.21	357	2.42	357	2.53
	대상자 아님	442	3.26	443	2.24	441	2.41
		t=-0.972		t=2.577*		t=1.72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41	3.18	442	2.38	442	2.53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8	3.26	289	2.26	287	2.44
	300만원 이상	58	3.48	58	2.14	58	2.17
		F=3.733*		F=2.428		F=3.879*	
중국 체류 기간	1년 미만	335	3.32	335	2.31	335	2.42
	1년 이상~5년 미만	190	3.28	192	2.39	191	2.38
	5년 이상~10년 미만	197	3.11	197	2.26	196	2.55
	10년 이상	76	3.09	76	2.33	76	2.62
		F=3.742*		F=0.516		F=1.811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71	3.42	71	2.30	71	2.48
	2년 이상~5년 미만	143	3.23	144	2.35	143	2.64
	5년 이상~10년 미만	315	3.25	315	2.35	314	2.51
	10년 이상	269	3.18	270	2.28	270	2.31
		F=1.655		F=0.294		F=4.136**	

※ 응답내용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단계(1점에서 4점까지)로 측정하여, 해당 문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코딩함.

* : $p<0.05$, ** : $p<0.01$, *** : $p<0.001$

‘②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할 수 있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기초생활수급여부에 따라 하위집단의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남자의 평균값은 2.17점으로 여자의 2.38점보다 낮아 범죄자에 대한 고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집단의 평균값은 2.24점으로 수급대상자의 2.42점보다 낮아 범죄자의

고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수급자들에 비하여 범죄자의 고문과 관련된 법지식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③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학력별, 월평균가구소득별, 한국거주기간별로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평균값이 2.26점, 30대가 2.45점, 40대가 2.51점, 60대 이상이 2.59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학력별 집단의 평균값은 ‘중졸 이하’가 2.73점, ‘고졸 이하’가 2.46점, ‘대학 재학 이상’이 2.34점으로서 학력이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월평균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2.53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44점, ‘200만원 이상’이 2.17점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해당 문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국거주기간별로는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부에 비판적인 도서의 출간 금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한국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집단의 경우에는 ‘5년 이상~10년 미만’인 집단과 유사한 평균값을 나타내어 전체적인 경향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요컨대, ‘정부에 비판적인 도서의 출간 금지’에 대하여 젊은 연령층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법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다.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4-6>에서와 같이 문항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문항에서는 하위집단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②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연령별, 월평균가구소득별로 하위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문항의 평균값이 낮아지므로 범죄자에 대한 고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일반 국민의 연령별, 학력별, 월평균가구

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연령별 집단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아지므로 정부에 비판적인 도서에 대한 출간 금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요컨대, 일반 국민의 경우에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과 관련하여, 범죄자에 대한 고문에 대한 법지식은 연령이 높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아지며, 정부에 비판적인 도서의 출간금지와 관련된 법지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낮으므로 법지식 수준은 높아진다.

〈표 4-6〉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할 수 있다.		③ 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야 한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3.18	422	1.89	422	1.84
	여자	582	3.16	582	1.99	582	1.86
		t=0.280		t=-1.761		t=-0.382	
연령	20대 이하	138	3.15	138	2.23	138	1.67
	30대	157	3.08	157	1.94	157	1.90
	40대	384	3.13	384	1.89	384	1.80
	50대 이상	325	3.26	325	1.90	325	1.96
		F=1.532		F=5.186**		F=4.897*	
학력	고졸 이하	329	3.09	329	2.01	329	1.99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3.18	558	1.92	558	1.79
	대학원 재학 이상	117	3.29	117	1.92	117	1.73
		F=1.955		F=0.929		F=7.417**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03	3.13	203	2.04	203	2.00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95	3.14	395	2.03	395	1.89
	400만원 이상	406	3.21	406	1.83	406	1.74
		F=0.717		F=6.246**		F=7.269**	

* : $p<0.05$, ** : $p<0.01$, *** : $p<0.001$

3.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문항은 2개인데,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법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면, <표 4-7>과 같이, ‘①수사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날 때 까지는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은 2.70점으로 일반 국민의 2.98점보다 낮다. 그리고 ‘②만약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4-7〉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	t
① 수사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보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795	2.70	-6.585***
	일반 국민	1004	2.98	
② 만약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800	3.55	0.407
	일반 국민	1004	3.54	

※ 응답내용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단계(1점에서 4점까지)로 측정하여, 해당 문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코딩함.

* : p<0.05, ** : p<0.01, *** : p<0.001

나.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의 <표 4-8>과 같이, 대부분의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①수사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날 때 까지는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별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②만약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국가의 보상에 대해서 학력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8〉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수사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보아야 한다.		② 만약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1	2.75	222	3.59
	여자	574	2.69	578	3.53
		t=0.808		t=1.214	
연령	20대 이하	155	2.75	155	3.52
	30대	217	2.67	217	3.57
	40대	238	2.62	239	3.54
	50대 이상	185	2.81	189	3.57
		F=1.799		F=0.209	
학력	중졸 이하	112	2.74	114	3.41
	고졸 이하	439	2.64	441	3.55
	대학 재학 이상	243	2.80	244	3.60
		F=2.390		F=3.252*	
기초생활수급여부	수급 대상자	355	2.71	357	3.51
	대상자 아님	440	2.70	443	3.58
		t=0.229		t=-1.387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40	2.71	442	3.51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6	2.67	289	3.58
	300만원 이상	58	2.79	58	3.67
		F=0.442		F=2.320	
중국 체류기간	1년 미만	334	2.72	335	3.56
	1년이상5년미만	190	2.74	192	3.54
	5년이상10년미만	196	2.71	197	3.58
	10년 이상	75	2.52	76	3.42
		F=1.144		F=1.174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71	2.59	71	3.42
	2년이상5년미만	141	2.65	144	3.54
	5년이상10년미만	314	2.75	315	3.58
	10년 이상	269	2.70	270	3.55
		F=0.830		F=1.115	

* : p<0.05, ** : p<0.01, *** : p<0.001

다.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이 <표 4-9>의 분석결과와 같이, 성별, 연령별, 월평균가구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월평균가구소득별 하위집단에서는 2개 문항 모두에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값이 증가하므로 법지식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수사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보아야 한다.		② 만약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3.10	422	3.50
	여자	582	2.89	582	3.56
		t=4.078***		t=-1.439	
연령	20대 이하	138	2.86	138	3.46
	30대	157	2.91	157	3.43
	40대	384	2.98	384	3.59
	50대 이상	325	3.05	325	3.56
		F=2.311		F=2.767*	
학력	고졸 이하	329	2.91	329	3.49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2.99	558	3.55
	대학원 재학 이상	117	3.09	117	3.61
		F=2.338		F=1.67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3	2.84	203	3.40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95	2.95	395	3.52
	400만원 이상	406	3.07	406	3.61
		F=5.398**		F=6.733**	

* : p<0.05, ** : p<0.01, *** : p<0.001

4.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문항은 3개인데,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각 문항별 평균값의 차이검증결과를 살펴보면, <표 4-10>과 같다. 평균값의 차이검증결과, '①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이 2.89점으로 일반 국민의 3.03점보다 낮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②신체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와 '③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은 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근로자의 자기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에 대한 권리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이 낮은 편이고,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나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 국가의 남녀평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0〉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799	2.89	-3.560***
	일반 국민	1004	3.03	
② 신체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800	3.60	7.555***
	일반 국민	1004	3.39	
③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799	3.44	3.590***
	일반 국민	1004	3.33	

※ 응답내용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단계(1점에서 4점까지)로 측정하여, 해당 문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코딩함.

* : p<0.05, ** : p<0.01, *** : p<0.001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을 살펴보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와 관련된 인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4-11>에서와 같이 문항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 '①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한국거주기간별 집단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2개 문항에서는 하위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①번 문항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값이 높으며, 20대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고,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 집단에서 평균값이 높고,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한 권리에 대한 법지식'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고,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높고,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이외에 ②와 ③문항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1>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② 신체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국가는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3.04	222	3.55	221	3.45
	여자	577	2.83	578	3.61	578	3.44
		t=2.937**		t=-1.475		t=0.208	
연령	20대 이하	155	2.94	155	3.59	155	3.47
	30대	217	2.80	217	3.60	216	3.42
	40대	239	2.82	239	3.62	239	3.40
	50대 이상	188	3.04	189	3.57	189	3.51
		F=3.131*		F=0.243		F=1.046	

		① 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② 신체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국가는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학력	중졸 이하	114	2.85	114	3.59	114	3.39
	고졸 이하	440	2.81	441	3.59	440	3.43
	대학 재학 이상	244	3.05	244	3.62	244	3.49
		F=5.621**		F=0.304		F=0.949	
기초 생활 수급 여부	수급 대상자	356	2.89	357	3.61	357	3.48
	대상자 아님	443	2.89	443	3.58	442	3.42
		t=0.008		t=0.786		t=1.285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41	2.89	442	3.58	441	3.44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9	2.88	289	3.59	289	3.39
	300만원 이상	58	2.90	58	3.69	58	3.60
		F=0.030		F=0.945		F=2.286	
중국 체류 기간	1년 미만	335	2.93	335	3.60	334	3.45
	1년 이상~5년 미만	192	2.88	192	3.63	192	3.47
	5년 이상~10년 미만	196	2.82	197	3.61	197	3.43
	10년 이상	76	2.91	76	3.43	76	3.41
		F=0.543		F=2.493		F=0.236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71	2.48	71	3.54	71	3.42
	2년 이상~5년 미만	144	2.83	144	3.60	143	3.47
	5년 이상~10년 미만	314	2.92	315	3.58	315	3.46
	10년 이상	270	2.99	270	3.63	270	3.41
		F=6.113***		F=0.592		F=0.331	

* : $p < 0.05$, ** : $p < 0.01$, *** : $p < 0.001$

다.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 수준이 학력별, 월평균가구소득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2>를 보면, 사회적 기본권 관련 법지식 문항 세 개에서 모두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지식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사회적 기본권 관련 법지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2〉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② 신체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국가는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3.08	422	3.37	422	3.32
	여자	582	3.00	582	3.40	582	3.33
		t=1.641		t=-0.513		t=-0.263	
연령	20대 이하	138	3.20	138	3.48	138	3.37
	30대	157	3.04	157	3.29	157	3.29
	40대	384	3.04	384	3.38	384	3.29
	50대 이상	325	2.94	325	3.40	325	3.37
		F=3.583*		F=2.451		F=1.079	
학력	고졸 이하	329	2.91	329	3.33	329	3.27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3.08	558	3.43	558	3.34
	대학원 재학 이상	117	3.16	117	3.33	117	3.41
		F=7.023**		F=3.649*		F=2.064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03	2.80	203	3.28	203	3.19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95	3.04	395	3.40	395	3.34
	400만원 이상	406	3.15	406	3.42	406	3.38
		F=13.594***		F=3.808*		F=5.184**	

* : $p<0.05$, ** : $p<0.01$, *** : $p<0.001$

이외에 ‘①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문항에서는 학력별, 연령별 하위집단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법지식 수준이 낮아지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법지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신체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문항에서는 학력별 하위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령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5. 국가조직에 대한 법지식 수준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국가조직 관련 법지식 문항이 2개 포함되어 있는데, 선거의 기본원칙과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의 <표 4-13>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국가조직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표 4-13> 국가조직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	t
①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투표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799	1.30	-1.768
	일반 국민	1004	1.37	
② 대통령과 모든 법률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799	3.61	0.799
	일반 국민	1004	3.58	

※ 응답내용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단계(1점에서 4점까지)로 측정하여, 해당 문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코딩함.

* : $p<0.05$, ** : $p<0.01$, *** : $p<0.001$

‘①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투표할 수도 있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평균값이 각각 1.30과 1.37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해당 문항에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하여 ‘②대통령과 모든 법률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이 3.61점, 일반 국민이 3.58점으로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개의 국가조직에 대한 법지식 문항에서는 모두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국가조직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4-14>와 같이 대부분의 하위집단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단지 ‘①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투표할 수도 있다’는 문항에서

월평균가구소득별 하위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평균값이 낮았는데, 이는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직접선거의 기본원칙을 부정한 ①문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4〉 국가조직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 해서 내가 투표할 수도 있다.		② 대통령과 모든 법률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1.32	222	3.62
	여자	577	1.29	577	3.60
		t=0.496		t=0.409	
연령	20대 이하	155	1.39	155	3.54
	30대	217	1.24	217	3.65
	40대	239	1.31	239	3.59
	50대 이상	188	1.29	188	3.64
		F=1.170		F=1.058	
학력	중졸 이하	114	1.41	114	3.51
	고졸 이하	441	1.30	441	3.61
	대학 재학 이상	243	1.26	243	3.65
		F=1.530		F=1.598	
기초생활 수급여부	수급 대상자	356	1.36	356	3.58
	대상자 아님	443	1.26	443	3.63
		t=1.870		t=-1.01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41	1.38	441	3.56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9	1.24	289	3.63
	300만원 이상	58	1.12	58	3.78
		F=5.007**		F=2.940	
중국 체류기간	1년 미만	335	1.30	335	3.62
	1년 이상~5년 미만	191	1.30	191	3.55
	5년 이상~10년 미만	197	1.28	197	3.66
	10년 이상	76	1.38	76	3.55
		F=0.322		F=1.039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71	1.25	71	3.46
	2년 이상~5년 미만	144	1.34	144	3.64
	5년 이상~10년 미만	315	1.29	315	3.66
	10년 이상	269	1.31	269	3.57
		F=0.266		F=2.061	

* : p<0.05, ** : p<0.01, *** : p<0.001

다.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월평균가구소득별 하위집단을 제외하면 국가조직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값이 하위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 편이지만,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하위집단 간에 국가조직에 대한 법지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표 4-15〉 국가조직에 대한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투표할 수도 있다.		② 대통령과 모든 법률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1.45	422	3.58
	여자	582	1.31	582	3.58
		t=2.912**		t=-0.005	
연령	20대 이하	138	1.48	138	3.52
	30대	157	1.55	157	3.47
	40대	384	1.32	384	3.61
	50대 이상	325	1.28	325	3.62
		F=6.034***		F=2.637*	
학력	고졸 이하	329	1.40	329	3.55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1.33	558	3.58
	대학원 재학 이상	117	1.44	117	3.68
		F=1.608		F=1.93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3	1.45	203	3.48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95	1.42	395	3.60
	400만원 이상	406	1.28	406	3.62
		F=4.984**		F=3.305*	

* : $p < 0.05$, ** : $p < 0.01$, *** : $p < 0.001$

‘①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투표할 수도 있다’는 문항에서는 성별, 연령별, 월평균가구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자는 남자보다 직접선거를 부정하는 ①번 문항에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직접선거를 부정하는 문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직접선거에 대한 법지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대통령과 모든 법률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연령별, 월평균가구소득별로 하위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집단의 평균값이 높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다. 일반 국민은 연령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에 대한 법지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수준

1. 다발하는 범죄피해 및 발생 범죄의 유형과 법지식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국민법교육 프로그램(II)](최영신 외, 2010)에서는 2010년 당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북한이탈주민에게 다발하는 범죄피해와 발생 범죄의 유형, 그리고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발하는 여러 범법행위 유형을 확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확정했던 범죄 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최근의 경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지식에 대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다음의 <표 4-16>은 북한이탈주민에게서 다발하는 범죄피해나 범죄의 유형과 각 범죄 유형 관련 법지식 문항을 정리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나 범죄발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은 사기, 폭행·상해(성폭력 포함), 가정폭력, 마약범죄, 성매매이다. 이 중에서 사기, 폭행·상해(성폭력 포함), 가정폭력 범죄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와 범죄 발생이 모두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약범죄와 성매매범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많이 저지르는 범죄유형에 해당한다. 각 범죄유형과 관련된 법지식이 많지만, 이 중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피해나 범죄발생을 많이 경험하는 세부 유형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사기범죄는, '①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②가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 ④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는 네 개의 문항으로 법지식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각 문항의 평균값이 0.67에서 0.93점으로 비교적 점수가 높은 편이다.

폭행·상해(성폭력 포함)는 '①개인 간의 싸움을 처벌 받지 않는다, ②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③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④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⑤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다'는 다섯 개 문항으로 법지식을 측정하였다. 폭행·상해(성폭력 포함) 문항 중에서 평균값이 가장 낮은 문항은 '④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로서 0.31점이다. 나머지 세 개의 문항은 0.66점, 0.67점, 0.68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가정폭력은 '①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 ②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③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는 세 개의 문항으로 법지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 문항은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질문이 아니라, 각 문항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묻는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약범죄는 '①한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 ②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는다, ③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세 개의 문항으로 법지식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세 번째 문항인 '③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가 0.44점으로 매우 낮은 평균값을 보인다.

성매매 범죄는 '①성매매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 받는다, ②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의 두 개 문항으로 법지식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②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는 문항의 평균값은 0.91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인다.

〈표 4-16〉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발생 범죄유형 관련 법지식 수준

구분	관련 문항	평균※
사 기	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0.67*
	② 가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0.80
	③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	0.93
폭행/상해 (성폭력 포함)	④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0.31
	② 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0.66
	③ 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0.67
	① 개인 간의 싸움을 처벌 받지 않는다.	0.68
마 약	③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0.44
	① 한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	0.85
	②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는다.	0.87
성매매	① 성매매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 받는다.	0.76
	②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0.91
사 기	④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3.57**
폭행/상해 (성폭력 포함)	⑤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다.	3.33
가정폭력	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	3.28
	②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3.42
	③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3.76

※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가 정답인 경우 1점을, 오답인 경우 -1점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 문항의 평균값이 1.00이 넘는 경우는 문항에 대한 태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단계로 측정하여 점수화하였으며, 해당 문항의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코딩함.

* : p<0.05, ** : p<0.01, *** : p<0.001

〈표 4-17〉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수준 비교: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순위	북한이탈주민		일반 국민	
	관련 문항	평균※	관련 문항	평균
1	(폭행·상해)④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0.31	(마약)③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 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0.58
2	(마약)③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 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0.44	(폭행·상해)④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0.60
3	(폭행·상해)②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0.66	(폭행·상해)③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0.69
4	(폭행·상해)③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0.67	(폭행·상해)②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0.79

순위	북한이탈주민		일반 국민	
	관련 문항	평균※	관련 문항	평균
5	(사기)①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0.67	(성매매)①성매매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 받는다.	0.79
6	(폭행·상해)①개인 간의 싸움을 처벌 받지 않는다.	0.68	(사기)①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0.79
7	(성매매)①성매매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 받는다.	0.76	(사기)②가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0.81
8	(사기)②가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0.80	(폭행·상해)①개인 간의 싸움을 처벌 받지 않는다.	0.81
9	(마약)①한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	0.85	(마약)①한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	0.85
10	(마약)②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는다.	0.87	(사기)③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	0.87
11	(성매매)②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0.91	(마약)②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는다.	0.90
12	(사기)③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	0.93	(성매매)②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0.92

※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가 정답인 경우 1점을, 오답인 경우 -1점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표 4-17〉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다발하는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문항의 평균값이 높은 순서로 정리한 것이다.⁸⁵⁾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문항 12개 중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법지식이 가장 낮은 문항은 (폭행·상해)④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이다. 평균값이 0.31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인다. 이에 비하여 평균값이 가장 높은 문항은 (사기)③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는 문항으로 평균값이 0.93점으로 높게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은 보험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하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주 경험하는 범죄피해와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문항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12개의 문항 중에서 평균값이 0.50점 이하인 경우가 (폭행·상해)④와 (마약)

85)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가 정답인 경우 1점을, 오답인 경우 -1점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0점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③의 2개 문항이고, 0.70점 이하인 문항도 (폭행·상해)③, (폭행·상해)②, (사기)①, (폭행·상해)①의 4개 문항이다. 나머지 5개 문항은 문항의 평균값이 0.80점 이상으로 써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올바른 법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범죄 관련 12개의 법지식 문항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인 문항이 (마약)③문항으로서 0.58점을 나타냈고, (폭행·상해)③과 (폭행·상해)④의 2개 문항에서 평균값이 0.70점 이하를 보인다. 나머지 9개 문항은 모두 평균값이 0.70점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일반 국민이 범죄 관련 법지식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표 4-17>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관련 법지식은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여러 유형의 범죄 관련 법지식 중에서 특히 (폭행·상해)④에 해당하는 성폭력 관련 법지식과 (마약)③의 마약운반 관련 법지식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 사기피해 및 가해 관련 법지식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사기범죄는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빈발하는 범죄피해의 유형이면서 동시에 많이 범하게 되는 범죄유형인 것으로 지적된다.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돈거래가 빈발하는데, 많은 경우 처음부터 돈을 되값을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북한이탈주민은 상호간에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한편으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사기범죄의 피해와 가해와 관련된 법지식 문항은 4개인데, 이 중에서 3개의 문항은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한 개의 문항은 4점 척도를 이용하여 법지식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지를 측정하였다.

다음의 <표 4-18>은 사기피해와 가해 관련 법지식 문항의 응답결과를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세 개의 문항에서 모두 각 문항별로 정답을 제시한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①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20.4%로서 일반 국민의 10.8%에 비하여 10%정도 높다. 다른 2개의 문항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높다. 각 문항별 정답자의 비율에서는 ①, ②문항에서는 일반국민이 높고, ③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4-18〉 사기피해 및 가해 관련 법지식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명)	아니다 (%)	그렇다 (%)	모르겠다 (%)	X^2
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796)	6.2	73.5	20.4	35.170***
	일반 국민	(1004)	4.9	84.4	10.8	
	합 계	(1800)	5.4	79.6	15.0	
② 가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799)	86.0	6.3	7.8	10.570**
	일반 국민	(1004)	88.1	7.6	4.3	
	합 계	(1803)	87.2	7.0	5.8	
③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	북한이탈주민	(799)	94.5	1.6	3.9	22.706***
	일반 국민	(1004)	92.2	5.6	2.2	
	합 계	(1803)	93.2	3.8	2.9	

* : $p<0.05$, ** : $p<0.01$, *** : $p<0.001$

사기 관련 법지식 문항의 평균값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4-19〉와 같다. 사기범죄 관련 4개 문항에서 두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검증결과를 살펴보면, 2개의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다른 2개 문항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일반 국민의 평균값이 높아 북한이탈주민보다 법지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③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는 문항에서는 일반 국민보다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다른 2개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평균값이 약간 다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표 4-19〉 사기피해 및 가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796	0.67	-4.619***
	일반 국민	1004	0.79	
② 가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799	0.80	-0.329
	일반 국민	1004	0.81	
③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	북한이탈주민	799	0.93	3.319**
	일반 국민	1004	0.87	
④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북한이탈주민	800	3.57	-0.648
	일반 국민	1004	3.62	

※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가 정답인 경우 1점을, 오답인 경우 -1점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문항의 평균값이 1.0이 넘는 경우는 문항에 대한 태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단계로 측정하여 점수화하였으며, 해당 문항의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코딩함.

* : $p<0.05$, ** : $p<0.01$, *** : $p<0.001$

나.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다음의 〈표 4-20〉는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사기피해 및 가해 관련 법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그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사기범죄 관련 법지식 문항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위집단은 학력별 집단이다. 세 개의 문항 모두 학력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세 개의 문항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①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중졸 이하'가 '고졸 이하' 집단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다. 학력별 집단을 제외한 다른 하위집단에서는 사기범죄 관련 법지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4-20〉 사기피해 및 가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② 가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		④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1	0.70	222	0.76	221	0.90	222	3.55
	여자	575	0.66	577	0.81	578	0.94	578	3.57
		t=0.700		t=-1.280		t=-1.260		t=-0.550	
연령	20대 이하	154	0.71	155	0.77	155	0.91	155	3.59
	30대	214	0.64	217	0.78	216	0.93	217	3.62
	40대	239	0.69	239	0.83	239	0.92	239	3.53
	50대 이상	189	0.66	189	0.80	189	0.95	189	3.54
		F=0.542		F=0.461		F=0.602		F=0.829	
학력	중졸 이하	112	0.71	113	0.60	114	0.85	114	3.41
	고졸 이하	439	0.62	441	0.83	440	0.94	441	3.58
	대학 재학 이상	244	0.75	244	0.82	244	0.94	244	3.61
		F=3.973*		F=8.962***		F=4.087*		F=3.548*	
기초생활수급 여부	수급 대상자	356	0.64	356	0.79	357	0.92	357	3.54
	대상자 아님	440	0.70	443	0.80	442	0.94	443	3.59
		t=-1.413		t=-0.374		t=-1.003		t=-0.964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40	0.65	441	0.78	442	0.92	442	3.5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8	0.70	289	0.82	288	0.94	289	3.56
	300만원 이상	57	0.75	58	0.81	58	0.95	58	3.55
		F=1.229		F=0.425		F=0.662		F=0.011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70	0.76	71	0.87	71	0.93	71	3.61
	2년 이상~5년 미만	143	0.64	144	0.76	144	0.93	144	3.54
	5년 이상~10년 미만	313	0.68	315	0.82	314	0.94	315	3.60
	10년 이상	270	0.66	269	0.77	270	0.92	270	3.53
		F=0.717		F=1.102		F=0.157		F=0.778	

* : p<0.05, ** : p<0.01, *** : p<0.001

다.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다음의 〈표 4-21〉은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에 사기범죄 관련 법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하위집단별 평균값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21〉 사기피해 및 가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② 가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		④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0.80	422	0.77	422	0.80	422	3.52
	여자	582	0.79	582	0.83	582	0.91	582	3.69
		t=0.198		t=-1.801		t=-3.513***		t=-4.467***	
연령	20대 이하	138	0.75	138	0.75	138	0.85	138	3.61
	30대	157	0.75	157	0.81	157	0.82	157	3.54
	40대	384	0.81	384	0.84	384	0.91	384	3.68
	50대 이상	325	0.82	325	0.78	325	0.85	325	3.58
		F=1.136		F=1.085		F=1.663		F=2.611	
학력	고졸 이하	329	0.75	329	0.78	329	0.84	329	3.58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0.80	558	0.81	558	0.89	558	3.63
	대학원 재학 이상	117	0.90	117	0.88	117	0.82	117	3.63
		F=3.446*		F=1.566		F=2.173		t=0.87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03	0.75	203	0.78	203	0.79	203	3.60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95	0.78	395	0.77	395	0.87	395	3.56
	400만원 이상	406	0.83	406	0.85	406	0.90	406	3.68
		F=1.614		F=2.400		F=3.868*		F=3.682*	

* : p<0.05, ** : p<0.01, *** : p<0.001

일반 국민의 경우에, 사기범죄 관련 법지식 문항 중에서 ‘①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학력별 하위집단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다. ‘고졸 이하’의 평균값은 0.75점, ‘대학 재학 또는 졸업’은 0.80점, ‘대학원 재학 이상’은 0.90점으로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다.

그리고 ‘③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와 ‘④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서는 일반 국민의 성별, 월평균가구소득별로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문항에서는 여자 집단의 평균값이 남자보다 높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두 문항에서 여자의 법지식 수준이 남자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기범죄 관련 법지식 수준이 대체로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④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서는 월평균소득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이 소득이 더 높은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3.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 관련 법지식 수준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범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이 범하게 되는 범죄 유형의 하나로 지적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와서 폭력을 국가에서 처벌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북한사회는 개인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최영신 외, 2010: 95) 폭력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4-22>는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범죄 관련 법지식 문항의 응답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응답결과를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4개의 문항 모두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으며, 정답에 응답한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개인 간의 싸움을 처벌받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하여 ‘아니다’고 응답한 정답자의 비율은 북한이탈주민이 78.3%로서 일반 국민의 87.4%에 비하여 9%정도 낮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북한이탈주민이 11.0%로서 일반 국민의 6.6%보다 높다.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범죄 관련 다른 나머지 3개의 문항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정답의 응답비율은 낮고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특히 ‘④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다’고 정답에 응답한 비율은 54.0%로서 일반 국민의 75.1%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3.3%로서 일반 국민의 10.0%보다 매우 높은 상태이다.

〈표 4-22〉 폭행 및 상해 관련 법지식의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명)	아니다 (%)	그렇다 (%)	모르겠다 (%)	χ^2
① 개인 간의 싸움을 처벌 받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797)	78.3	10.7	11.0	26.288***
	일반 국민	(1004)	87.4	6.1	6.6	
	합 계	(1801)	83.3	8.1	8.6	
② 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797)	75.5	9.7	14.8	36.193***
	일반 국민	(1004)	86.0	7.2	6.9	
	합 계	(1801)	81.3	8.3	10.4	
③ 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북한이탈주민	(799)	9.3	76.1	14.6	15.524***
	일반 국민	(1004)	11.3	79.9	8.9	
	합 계	(1803)	10.4	78.2	11.4	
④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800)	54.0	22.8	23.3	94.508***
	일반 국민	(1004)	75.1	14.9	10.0	
	합 계	(1804)	65.7	18.4	15.9	

* : $p<0.05$, ** : $p<0.01$, *** : $p<0.001$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범죄의 개별 법지식 문항별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4-23〉과 같이 나타난다.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범죄 관련 5개의 법지식 문항 중에서 두 집단 사이에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4개 문항에 해당한다. 단지 '③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평균값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나머지 4개 문항에서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23〉 폭행 및 상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개인 간의 싸움을 처벌 받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797	0.68	-4.778***
	일반 국민	1004	0.81	
② 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797	0.66	-4.469***
	일반 국민	1004	0.79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③ 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북한이탈주민	799	0.67	-0.579
	일반 국민	1004	0.69	
④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800	0.31	-7.796***
	일반 국민	1004	0.60	
⑤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다.	북한이탈주민	800	3.33	-6.756***
	일반 국민	1004	3.53	

※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가 정답인 경우 1점을, 오답인 경우 -1점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문항의 평균값이 1.0이 넘는 경우는 문항에 대한 태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단계로 측정하여 점수화하였으며, 해당 문항의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코딩함.

* : $p(0.05)$, ** : $p(0.01)$, *** : $p(0.001)$

나.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다음의 <표 4-24>는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범죄 관련 법지식 문항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5개의 법지식 문항의 평균값을 각 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문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성별, 연령별, 학력별, 기초생활수급여부별, 월평균가구소득별 하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개인 간의 싸움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 문항에서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하위집단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남자는 여자보다 해당 문항의 법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남자들이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개인 간의 싸움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여자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문항의 평균값이 낮아 법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다.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 간의 싸움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법지식이 높았다.

‘②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학력별, 월평균가구소득별 하위집단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남자의 해당 문항의 평균값이 높아 법지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연령별로는 앞의 ①의 문항처럼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법지식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20대 이하의 경우에는 30대에 비하여 낮은 법지식 수준을 보여준다. 월평균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③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평균값에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의 법지식은 여러 하위집단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4-24〉 폭행 및 상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① 개인 간의 싸움을 처벌 받지 않는다.		② 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③ 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④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받지 않는다.		⑤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0.83	222	0.73	222	0.70	222	0.44	222	3.29
	여자	575	0.62	575	0.63	578	0.66	577	0.26	578	3.35
		t=5.133***		t=2.228*		t=0.944		t=2.822**		t=-1.121	
연령	20대 이하	155	0.79	155	0.67	155	0.63	155	0.32	155	3.47
	30대	217	0.76	216	0.75	217	0.69	217	0.41	217	3.43
	40대	237	0.61	238	0.66	238	0.62	239	0.31	239	3.26
	50대 이상	188	0.57	188	0.53	189	0.73	189	0.20	189	3.20
		F=5.148**		F=4.060**		F=1.271		F=2.422		F=8.208***	
학력	중졸 이하	113	0.53	114	0.62	114	0.57	114	0.15	114	3.32
	고졸이하	440	0.66	440	0.64	440	0.66	441	0.31	441	3.31
	대학 재학 이상	243	0.77	242	0.71	244	0.73	244	0.39	244	3.39
		F=5.117**		F=1.169		F=2.522		F=3.487*		F=1.309	
기초 생활수급 여부	수급 대상자	356	0.65	356	0.59	356	0.68	357	0.22	357	3.28
	대상자 아님	441	0.70	441	0.71	443	0.66	443	0.39	443	3.37
		t=-1.155		t=-2.541*		t=0.342		t=-2.904**		t=-2.019*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40	0.64	440	0.60	441	0.67	442	0.23	442	3.30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8	0.71	288	0.70	289	0.66	289	0.42	289	3.37
	300만원 이상	58	0.79	58	0.88	58	0.74	58	0.43	58	3.53
		F=1.978		F=6.131**		F=0.400		F=5.455**		F=3.781*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71	0.83	71	0.70	70	0.53	71	0.17	71	3.34
	2년 이상~5년 미만	144	0.66	144	0.66	144	0.67	144	0.29	144	3.26
	5년 이상~10년 미만	313	0.68	313	0.65	315	0.67	315	0.34	315	3.40
	10년 이상	269	0.64	269	0.65	270	0.71	270	0.33	270	3.30
		F=1.629		F=0.133		F=1.460		F=0.906		F=2.131	

* : p<0.05, ** : p<0.01, *** : p<0.001

‘④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학력별, 기초생활수급여부별, 월평균가구소득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자가 여자보다 법지식이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는다라는 법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다.

‘⑤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여부별, 월평균가구소득별로 하위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해당 문항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법지식이 높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집단이 수급자 집단보다 법지식 수준이 높으며,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법지식이 높게 나타난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집단의 경우에,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다’는 법지식을 잘 알고 있다.

다.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범죄 관련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평균값의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25>와 같다.

<표 4-25>에서 일반 국민의 성별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문항은 ③번과 ⑤번 문항이다. ③번 문항은 남자의 평균값이 높고 ⑤번 문항은 여자의 평균값이 높다. 즉 남자들은 ‘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는 법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여자들은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다’는 법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다.

연령별 하위집단의 평균값을 보면, ‘③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는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다. 나이가 어릴수록 해당 법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월평균가구소득별 집단에서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범죄 관련 법지식 문항의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 개 문항 중

네 개 문항에서 모두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폭행 및 상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개인 간의 싸움 은 처벌 받지 않는다.		② 상대방이 폭행 의 원인을 제공했 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③ 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 받는 다.		④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 와 합의하면 처벌 받지 않는다.		⑤ 사소한 말과 행 동으로 타인을 놀 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0.80	422	0.76	422	0.77	422	0.61	422	3.44
	여자	582	0.82	582	0.81	582	0.63	582	0.60	582	3.60
		t=-0.608		t=-1.407		t=3.413**		t=0.272		t=-4.014***	
연령	20대 이하	138	0.79	138	0.73	138	0.80	138	0.54	138	3.51
	30대	157	0.75	157	0.71	157	0.72	157	0.57	157	3.50
	40대	384	0.85	384	0.83	384	0.70	384	0.64	384	3.58
	50대 이상	325	0.81	325	0.80	325	0.61	325	0.60	325	3.49
		F=1.331		F=2.382		F=2.929*		F=0.758		F=1.570	
학력	고졸 이하	329	0.76	329	0.74	329	0.64	329	0.58	329	3.48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0.84	558	0.81	558	0.71	558	0.62	558	3.55
	대학원 재학 이상	117	0.84	117	0.81	117	0.70	117	0.58	117	3.57
		F=2.504		F=2.157		F=0.979		F=0.259		F=1.858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03	0.70	203	0.70	203	0.66	203	0.44	203	3.47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95	0.82	395	0.80	395	0.70	395	0.59	395	3.50
	400만원 이상	406	0.86	406	0.82	406	0.68	406	0.69	406	3.60
		F=6.668**		F=3.026*		F=0.302		F=7.961***		F=4.372*	

* : p<0.05, ** : p<0.01, *** : p<0.001

요컨대,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별 집단에서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범죄 관련 법지식 문항 중 일부에서 법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월평균가구소득별 집단에서는 4개의 법지식 문항에서 법지식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의 경우에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범죄 관련 법지식은 성별,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 수준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남한정착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영신 외, 2010).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 문항은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경찰신고, 아내학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문항에 대한 태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하여 법지식에 근접한 정도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 4-26>은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된 법지식 문항의 평균값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값의 차이검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4-26〉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800	3.28	-5.690***
	일반 국민	1004	3.48	
②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799	3.42	-2.824**
	일반 국민	1004	3.51	
③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800	3.76	1.067
	일반 국민	1004	3.73	

※ 문항에 대한 태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단계로 측정하여 점수화하고, 해당 문항의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코딩함.

*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4-26>의 세 가지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된 문항은 2개이며, 나머지 한 개 문항은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①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와 ‘②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이 일반 국민보다 낮아 법지식 수준이 더 낮다고 할 수 있으며, ‘③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으며,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아내에 대한 구타나 폭력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오히려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72%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내구타에 대한 법지식 수준이 다른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기 위하여 각 문항의 평균값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27>과 같다.

‘①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는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하위집단 변인은 연령, 기초생활수급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해당 문항의 평균값은 낮아져서 법지식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집단의 경우와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을수록,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녀교육을 명분으로 자녀를 체벌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지식을 알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27>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		②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③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3.35	222	3.37	222	3.76
	여자	578	3.25	577	3.44	578	3.77
		t=1.639		t=-1.317		t=-0.211	
연령	20대 이하	155	3.41	155	3.49	155	3.81
	30대	217	3.40	217	3.45	217	3.79
	40대	239	3.30	238	3.39	239	3.77
	50대 이상	189	3.01	189	3.37	189	3.68
		F=10.479***		F=1.251		F=1.714	

		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처벌을 할 수도 있다.		②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③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학력	중졸 이하	114	3.19	114	3.46	114	3.68
	고졸 이하	441	3.26	440	3.38	441	3.73
	대학 재학 이상	244	3.36	244	3.46	244	3.86
		F=2.204		F=1.416		F=5.310**	
기초생활수급여부	수급 대상자	357	3.14	357	3.37	357	3.69
	대상자 아님	443	3.40	442	3.46	443	3.82
		t=-4.578***		t=-1.896		t=-3.198**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42	3.16	422	3.41	422	3.71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9	3.43	289	3.40	289	3.84
	300만원 이상	58	3.52	57	3.56	58	3.78
		F=13.170***		F=1.420		F=4.297*	
한국거주기간	2년 미만	71	3.38	71	3.45	71	3.77
	2년 이상~5년 미만	144	3.35	144	3.43	144	3.76
	5년 이상~10년 미만	315	3.23	314	3.48	315	3.73
	10년 이상	270	3.27	270	3.34	270	3.80
		F=1.139		F=2.264		F=0.576	

* : $p<0.05$, ** : $p<0.01$, *** : $p<0.001$

‘②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지식의 수준은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기초생활수급여부별, 가구소득별, 한국거주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③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학력별, 기초생활수급여부별, 월평균가구소득별로 평균값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해당 문항의 법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는 집단의 법지식 수준이 높으며, 월평균가구소득에서는 소득이 높은 경우에 법지식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월평균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값이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 수준은 세부 문항별로 차이가 있는데, 연령, 학력, 기초생활수급여부, 월평균가구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다.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일반 국민의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 수준은 하위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4-2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의 성별 집단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문항에 따라서 연령별, 학력별, 월평균가구소득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①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여자의 법지식 수준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학력이 높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②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여자의 법지식 수준이 남자보다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은 편이다. 다만 30대의 ②번 문항의 평균값은 다른 연령층보다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낸다. ‘③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에서는 여자의 법지식 수준이 남자보다 높고 다른 하위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일반 국민의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 수준은 성별에 따라 세 개의 문항에서 모두 여자의 법지식 수준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외에 자녀의 체벌과 관련된 법지식은 일반 국민의 학력과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편이고, 가정폭력의 경찰 신고에 대한 법지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법지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표 4-28〉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		②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③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3.37	422	3.40	422	3.60
	여자	582	3.57	582	3.58	582	3.83
		t=-4.407***		t=-4.522***		t=-5.564***	
연령	20대 이하	138	3.43	138	3.63	138	3.69
	30대	157	3.41	157	3.42	157	3.64

		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		② 가정폭력은 경찰 에 신고해야 한다.		③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40대	384	3.57	384	3.56	384	3.77
	50대 이상	325	3.45	325	3.43	325	3.75
		F=2.930*		F=5.245**		F=2.024	
학력	고졸 이하	329	3.42	329	3.48	329	3.73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3.52	558	3.52	558	3.75
	대학원 재학 이상	117	3.51	117	3.52	117	3.68
		F=2.316		F=0.504		F=0.628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03	3.40	203	3.51	203	3.62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95	3.44	395	3.47	395	3.75
	400만원 이상	406	3.57	406	3.54	406	3.77
		F=5.082**		F=1.348		F=4.079*	

* : $p<0.05$, ** : $p<0.01$, *** : $p<0.001$

5. 마약범죄 및 성매매 관련 법지식 수준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표 4-29〉은 마약범죄와 성매매 관련 법지식 문항의 응답결과를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마약범죄 관련 문항은 앞의 세 개 문항이고 성매매 관련 법지식 문항은 뒤의 2개 문항이다. 이 다섯 개의 문항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각 문항의 정답 비율은 낮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은 편이다. ‘①한 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는 문항에서 ‘그렇다’고 정답에 응답한 비율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이 각각 88.3%와 89.3%로 비슷하고 나머지 문항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다.

〈표 4-29〉 마약범죄 및 성매매 관련 법지식의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명)	아니다 (%)	그렇다 (%)	모르겠다 (%)	X^2
① 한국에서는 마약을 가 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 는다.	북한이탈주민	(800)	2.9	88.3	8.9	4.998
	일반 국민	(1004)	4.1	89.3	6.6	
	합 계	(1804)	3.5	88.9	7.6	
②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 고 마약을 복용하면 처 벌 받는다.	북한이탈주민	(797)	3.0	90.1	6.9	10.204**
	일반 국민	(1004)	3.0	93.4	3.6	
	합 계	(1801)	3.0	91.9	5.1	
③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 반해준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797)	59.8	15.9	24.2	21.769***
	일반 국민	(1004)	70.3	12.3	17.4	
	합 계	(1801)	65.7	13.9	20.4	
④ 성매매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 받는 다.	북한이탈주민	(797)	3.8	80.1	16.2	48.417***
	일반 국민	(1004)	7.3	86.1	6.7	
	합 계	(1801)	5.7	83.4	10.9	
⑤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 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 게 처벌 받는다.	북한이탈주민	(793)	1.5	92.9	5.5	6.551*
	일반 국민	(1004)	2.4	94.2	3.4	
	합 계	(1797)	2.0	93.7	4.3	

* : $p<0.05$, ** : $p<0.01$, *** : $p<0.001$

〈표 4-30〉는 마약범죄와 성매매범죄 관련 법지식 수준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값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30〉를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5개 문항에서 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문항은 ‘③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 준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한 개 문항뿐이다. 이 문항의 경우에 일반 국민의 평균값이 0.58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0.44점보다 높게 나타나 일반 국민의 법지식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보다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 준 경우에도 처벌 받게 된다’는 법지식을 보다 많이 알고 있다.

〈표 4-30〉 마약범죄 및 성매매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한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	북한이탈주민	800	0.85	0.055
	일반 국민	1004	0.85	
②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는다.	북한이탈주민	797	0.87	-1.765
	일반 국민	1004	0.90	
③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 준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797	0.44	-4.091***
	일반 국민	1004	0.58	
④ 성매매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 받는다.	북한이탈주민	797	0.76	-0.982
	일반 국민	1004	0.79	
⑤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북한이탈주민	793	0.91	-0.251
	일반 국민	1004	0.92	

※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가 정답인 경우 1점을, 오답인 경우 -1점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 : $p < 0.05$, ** : $p < 0.01$, *** : $p < 0.001$

나.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간에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집단별 평균값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4-31〉과 같다.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 문항 3개 중에서 하위집단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문항은 '③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 준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문항이며 연령별 하위집단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다른 하위집단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은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다만 '30대 이하'의 평균값은 '40대 이하' 집단보다 낮았다. 즉 마약 운반과 관련된 법지식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이 높을수록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법지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50대 이상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마약인 것을 모르고 마약을 운반한 행위는 처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1〉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한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		②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는다.		③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 준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0.84	221	0.86	221	0.44
	여자	578	0.86	576	0.88	576	0.44
		t=-0.653		t=-0.654		t=0.100	
연령	20대 이하	155	0.83	155	0.86	155	0.54
	30대	217	0.90	215	0.86	217	0.42
	40대	238	0.83	239	0.87	238	0.48
	50대 이상	189	0.85	188	0.90	187	0.32
		F=1.474		F=0.389		F=2.973*	
학력	중졸 이하	114	0.85	112	0.88	113	0.41
	고졸 이하	441	0.84	441	0.87	440	0.40
	대학 재학 이상	244	0.87	243	0.86	244	0.52
		F=0.374		F=0.086		F=1.859	
기초생활수급여부	수급 대상자	357	0.85	356	0.85	355	0.41
	대상자 아님	443	0.86	441	0.88	442	0.46
		t=-0.298		t=-1.016		t=-0.843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42	0.86	440	0.85	440	0.43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9	0.86	288	0.89	288	0.44
	300만원 이상	58	0.78	58	0.91	58	0.50
		F=1.020		F=0.905		F=0.197	
한국거주기간	2년 미만	71	0.86	70	0.90	71	0.48
	2년 이상~5년 미만	144	0.80	143	0.88	144	0.51
	5년 이상~10년 미만	315	0.88	314	0.86	314	0.35
	10년 이상	270	0.86	270	0.87	268	0.49
		F=1.095		F=0.270		F=2.298	

* : p(0.05, ** : p(0.01, *** : p(0.001

다음의 〈표 4-32〉는 성매매 관련 법지식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어떻게 다른지 평균값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①성매매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 받는다’는 문항에서는 성별, 월평균가구소득별 하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자의 평균값이 남자보다 높아 여자 집단의 법지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가구소득별 집단에서는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이하 가구소득별 집단에서는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월평균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100만원 미만' 집단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법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②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는 문항에서는 연령별 하위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20대 이하' 집단을 제외하면 비교적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30대 이하의 평균값이 0.95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이 0.91점으로 낮았다. '20대 이하' 집단의 평균값은 0.84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성매매와 관련된 경험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다른 하위집단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2〉 성매매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① 성매매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 받는다.		②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0.69	221	0.88
	여자	575	0.79	572	0.93
		$t=-2.251^*$		$t=-1.439$	
연령	20대 이하	155	0.73	153	0.84
	30대	216	0.75	216	0.95
	40대	238	0.79	239	0.93
	50대 이상	188	0.77	185	0.91
		$F=0.635$		$F=4.060^{**}$	
학력	중졸 이하	114	0.77	112	0.88
	고졸 이하	440	0.76	437	0.92
	대학 재학 이상	242	0.76	243	0.92
		$F=0.023$		$F=0.932$	
기초생활수급여부	수급 대상자	356	0.76	354	0.90
	대상자 아님	441	0.77	439	0.92
		$t=-0.222$		$t=-1.006$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41	0.77	437	0.89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88	0.73	287	0.93
	300만원 이상	57	0.91	58	0.95

		① 성매매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 받는다.		②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F=3.167*		F=1.554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71	0.77	70	0.93
	2년 이상~5년 미만	142	0.67	144	0.89
	5년 이상~10년 미만	315	0.78	310	0.91
	10년 이상	269	0.79	269	0.93
		F=2.030		F=0.436	

* : $p<0.05$, ** : $p<0.01$, *** : $p<0.001$

다.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에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4-33>에서와 같이 일반 국민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하위집단에서 모두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의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②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는다’는 문항에서 월평균가구소득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므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마약 복용을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법지식에 대해 인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33>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한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		②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는다.		③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 준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0.85	422	0.90	422	0.56
	여자	582	0.85	582	0.91	582	0.59
		t=-0.111		t=-0.108		t=-0.735	
연령	20대 이하	138	0.86	138	0.91	138	0.49
	30대	157	0.76	157	0.83	157	0.51
	40대	384	0.87	384	0.93	384	0.59
	50대 이상	325	0.87	325	0.91	325	0.65
		F=2.394		F=2.242		F=2.369	

		① 한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		②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는다.		③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 준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학력	고졸 이하	329	0.85	329	0.88	329	0.58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0.85	558	0.92	558	0.59
	대학원 재학 이상	117	0.87	117	0.91	117	0.54
		F=0.138		F=0.923		F=0.258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03	0.83	203	0.84	203	0.49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95	0.85	395	0.92	395	0.58
	400만원 이상	406	0.87	406	0.92	406	0.63
		F=0.718		F=3.937*		F=2.738	

* : $p<0.05$, ** : $p<0.01$, *** : $p<0.001$

〈표 4-34〉는 성매매 관련 법지식에 대한 일반 국민 하위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검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성매매에 대한 법지식에서는 2개 문항 모두 여자의 평균값이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나타낸다. 여자는 남자보다 성매매범죄에서 성매수자와 성매도자가 모두 처벌된다는 점과,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연령별 하위집단에서는 ‘①성매매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 받는다’는 문항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다만, 해당 문항에서 30대 이하의 법지식 수준은 20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가구소득별 집단에서는 ‘②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는 문항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난다. 즉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법지식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34〉 성매매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성매매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 받는다.		②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0.73	422	0.89
	여자	582	0.83	582	0.94
		t=-2.490*		t=-2.187*	
연령	20대 이하	138	0.77	138	0.91
	30대	157	0.67	157	0.86
	40대	384	0.81	384	0.94
	50대 이상	325	0.82	325	0.93
		F=3.165*		F=2.007	
학력	고졸 이하	329	0.78	329	0.91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0.77	558	0.92
	대학원 재학 이상	117	0.87	117	0.97
		F=1.539		F=1.29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3	0.75	203	0.83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95	0.77	395	0.92
	400만원 이상	406	0.82	406	0.96
		F=1.067		F=10.290***	

* : p<0.05, ** : p<0.01, *** : p<0.001

6.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 수준

앞서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 다발하는 범죄피해와 발생 범죄 유형인, 사기,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 가정폭력, 마약범죄와 성매매 범죄 관련 법지식의 집단별 수준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개별 범죄유형에 대한 법지식 이외에 형사사법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상식에 대한 법지식 수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사회의 형사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상식으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구치소와 교도소의 구분, 국선변호인제도의 인지정도, 인터넷상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지정도를 포함시켰다.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다음의 <표 4-35>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값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35> 기타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	t
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알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800	2.34	-12.700***
	일반 국민	1004	2.83	
②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알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800	2.62	-8.027***
	일반 국민	1004	2.94	
③ 국선번호인 제도를 알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799	2.28	-17.992***
	일반 국민	1004	3.03	
④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범죄이다.	북한이탈주민	800	3.30	-2.234*
	일반 국민	1004	3.38	

※ 각 문항의 응답결과별로 '전혀 알지 못한다'는 1점, '별로 알지 못한다'는 2점, '대체로 알고 있다'는 3점, '잘 알고 있다'는 4점을 부여함.

* : $p<0.05$, ** : $p<0.01$, *** : $p<0.001$

<표 4-35>을 보면,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관련 네 개의 문항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 집단에 비하여 평균값이 낮다. 특히 '③국선번호인 제도를 알고 있다'의 평균값이 2.28점으로 가장 낮으며, '①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②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④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범죄이다'의 순으로 평균값이 높아진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구치소와 교도소의 구분, 국선번호인제도의 인지정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세 가지 문항 중에서도 국선번호인제도에 대한 인지정도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에 법지식 수준의 차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밖에 인터넷상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지정도에 대한 문항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의 형사사법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상식으로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구치소와 교도소의 구분, 국선변호인제도의 인지정도, 그리고 인터넷상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지정도에서 일반 국민에 비하여 법지식 수준이 현저히 낮으며, 상대적으로 인터넷상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지정도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법지식 수준의 차이가 적은 편이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한국사회의 형사사법 관련 법률상식에 대한 법지식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살펴보면, 다음의 <표 4-36>과 같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상식에 대한 4개 문항의 법지식 수준은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별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하위집단을 살펴보면, 4개의 문항 모두에서 남자의 법지식 수준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며, 네 번째 문항을 제외한 3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연령별 하위집단에서는 법률상식 관련 4개의 문항에서 모두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법률상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③국선변호인 제도를 알고 있다’는 문항에서는 ‘30대 이하’ 집단의 평균값이 2.49점으로 ‘20대 이하’ 집단의 평균값 2.48점보다 약간 높았다. 그렇지만 연령집단별로 낮은 연령집단의 법지식 수준이 높은 경향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36> 기타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②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③ 국선변호인 제도를 알고 있다.		④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범죄이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2.55	222	2.85	221	2.41	222	3.31
	여자	578	2.26	578	2.53	578	2.23	578	3.29
		t=4.251***		t=4.512***		t=2.304*		t=0.294	

		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②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③ 국선번호인 제도를 알고 있다.		④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범죄이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연령	20대 이하	155	2.49	155	2.88	155	2.48	155	3.45
	30대	217	2.46	217	2.76	217	2.49	217	3.35
	40대	239	2.27	239	2.43	239	2.11	239	3.23
	50대 이상	189	2.16	189	2.47	188	2.09	189	3.20
		F=5.804***		F=11.159***		F=10.248***		F=3.138*	
학력	중졸 이하	114	2.06	114	2.38	114	1.96	114	2.99
	고졸 이하	441	2.26	441	2.58	441	2.19	441	3.31
	대학 재학 이상	244	2.62	244	2.80	243	2.60	244	3.43
		F=20.042***		F=9.277***		F=20.870***		F=10.060***	
기초생활수급 여부	수급 대상자	357	2.22	357	2.48	357	2.21	357	3.22
	대상자 아님	443	2.44	443	2.73	442	2.34	443	3.36
		t=-3.426***		t=-3.741***		t=-1.788		t=-2.200*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42	2.24	442	2.51	442	2.21	442	3.24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9	2.47	289	2.75	289	2.36	289	3.37
	300만원 이상	58	2.41	58	2.86	57	2.51	58	3.41
		F=6.106**		F=8.00***		F=3.372*		F=2.451	
한국거주기간	2년 미만	71	2.31	71	2.39	71	2.18	71	3.20
	2년 이상~5년 미만	144	2.26	144	2.70	143	2.13	144	3.28
	5년 이상~10년 미만	315	2.24	315	2.55	315	2.17	315	3.29
	10년 이상	270	2.50	270	2.71	270	2.52	270	3.34
		F=4.772**		F=3.268*		F=7.972***		F=0.623	

* : $p<0.05$, ** : $p<0.01$, *** : $p<0.001$

학력별 하위집단의 경우에는 4개의 문항에서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법지식이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통계적으로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별 집단의 영향이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드러난다. 기초생활수급여부별 집단에서는 4개의 문항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집단이 수급대상자 집단보다 법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3개 문항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가구소득별 집단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

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3개 문항에서는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에 대한 문항에서는 가구소득별 평균값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며, 다른 2개 문항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거주기간별 하위집단에서는 평균값의 집단별 차이가 있지만 한국 거주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는 ‘국선번호인제도의 인지정도’에 대한 문항 뿐이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형사사법 관련 기본적인 법률상식과 관련된 법지식 수준은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다.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일반 국민의 형사사법 관련 법률상식에 대한 법지식 수준이 하위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의 <표 4-37>과 같다. 성별 집단에서는 ‘①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알고 있다’는 문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남자가 여자보다 법지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월평균가구소득별 하위집단에서는 4개의 문항 모두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연령별, 학력별 하위집단 간에는 ‘④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범죄이다’는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일반 국민들은 형사사법 관련 법률상식에 대한 법지식 수준이 하위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특히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법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남자 집단의 법지식 수준이 여자보다 높고, ‘인터넷상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지정도’에서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표 4-37〉 기타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②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③ 국선변호인 제도를 알고 있다.		④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범죄이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42	2.93	422	2.96	422	3.06	422	3.35
	여자	582	2.76	582	2.92	582	3.00	582	3.40
		t=3.840***		t=0.801		t=1.410		t=-1.062	
연령	20대 이하	138	2.85	138	2.91	138	2.98	138	3.58
	30대	157	2.73	157	2.89	157	2.91	157	3.32
	40대	384	2.83	384	2.93	384	3.05	384	3.36
	50대 이상	325	2.88	325	2.99	325	3.08	325	3.34
		F=1.539		F=0.820		F=2.490		F=5.400**	
학력	고졸 이하	329	2.69	329	2.86	329	2.89	329	3.31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2.87	558	2.96	558	3.08	558	3.40
	대학원 재학 이상	117	3.05	117	3.10	117	3.20	117	3.46
		F=1.539		F=0.820		F=2.490		F=5.4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03	2.63	203	2.80	203	2.90	203	3.31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95	2.82	395	2.90	395	3.01	395	3.36
	400만원 이상	406	2.95	406	3.05	406	3.11	406	3.43
		F=12.839***		F=5.108**		F=11.827***		F=3.183*	

* : $p<0.05$, ** : $p<0.01$, *** : $p<0.001$

제3절 개인과 사회 영역 관련 법지식 수준

1. 개인과 사회 영역 관련 다발하는 범법행위 유형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범하게 되는 범법행위는 크게 형사법 위반 행위인 범죄행위와 개인 및 사회영역에서의 범법행위로 구분해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개인적 영역에서 주로 범하는 범법행위 유형은 결혼, 계약, 개인정보와 관련한 것이며, 사회영역에서의 범법행위 유형은 국가지원금과 교통법규와 관련한 것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최영신 외, 2010)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자주 범하는 결혼, 계약, 개인정보 관련

범법행위와 국가지원금 및 교통법규 관련 범법행위의 세부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법지식은 자유주의 하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적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는지, 또 이에 대한 국가개입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다음의 <표 4-38>은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북한이탈주민이 개인 및 사회영역에서 자주 범하는 범법행위 유형별 법지식 수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 4-38>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및 사회영역에서의 범법행위 관련 법지식 수준

구 분		문 항	평 균 [※]
개인 영역	결혼의 성립	(결혼)위장결혼이나 강제결혼은 무효이다.	0.70
	계 약	(계약)②신체포기각서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지켜야 한다.	-0.27
		(계약)③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0.19
		(계약)①돈을 빌려줄 때는 서로 믿고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0.83
	개인정보	(개인정보)①내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0.82
		(개인정보)②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0.93
사회 영역	국가지원금	(국가지원금)②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게 되면 다시 반납해야 한다.	0.84
		(국가지원금)③서류를 위조하여 취업장려금을 받게 되면 처벌 받는다.	0.88
		(국가지원금)①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다.	0.94
	교통법규	(교통법규)②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0.55
		(교통법규)①한 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차량 이든지 모두 운전할 수 있다.	0.85

※ 각 문항의 응답결과가 정답인 경우 1점을, 오답인 경우 -1점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위장결혼을 통하여 쉽게 국내에 입국하는 사례를 목격하기도 하고(최영신 외, 2010: 118), 북한이탈주민 여성 중에는 중국체류기간 동안 인신매매를 당하여 강제결혼은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위장 결혼에 가담하거나, 결혼 관련 법률에 대한 무지로 강제결혼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개인적 어려움에 직면해있기도 한다.

〈표 4-38〉에서 개인적 영역의 법률지식에 해당하는 결혼, 계약, 개인정보 관련 문항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문항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계약과 관련된 법지식 문항의 평균값이 매우 낮으며, 문항 간에 차이가 큰 편이다. (계약)②신체포기각서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지켜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0.27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문항에 정답을 맞힌 응답자보다 오답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③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문항의 경우에도 평균값이 0.19점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정답에 응답한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위장 결혼이나 강제결혼은 무효이다'가 0.70점을 나타낸다. 이외에 (계약)①문항과 개인정보 관련 문항은 평균값이 0.80점보다 높아 비교적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해당 문항에 대해 올바른 법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영역에서는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 문항의 평균값은 세 가지 문항 모두 0.80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 문항에서는 (교통법규)②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값이 0.55점으로 낮은 값을 나타낸다.

요컨대, 〈표 4-38〉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은 개인 및 사회영역 관련 법지식에 있어서 개별 문항별로 법지식 수준에 차이가 매우 높으며, 특히 계약 관련 법지식 수준이 매우 낮고,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은 세부 내용별로 차이가 많아 일부 내용에 대한 법지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음의 〈표 4-39〉은 북한이탈주민이 자주 범하는 개인 및 사회영역에서의 범법행위 관련 법지식 문항의 평균값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것이다.

〈표 4-39〉 개인 및 사회영역에서의 범법행위 관련 법지식 수준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순위	북한이탈주민		일반 국민	
	관련 문항	평균※	관련 문항	평균※
1	(계약)②신체포기각서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지켜야 한다.	-0.27	(계약)②신체포기각서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지켜야 한다.	0.56
2	(계약)③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0.19	(교통법규)②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0.64
3	(교통법규)②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0.55	(계약)③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0.74
4	(결혼)위장결혼이나 강제결혼은 무효이다.	0.70	(국가지원금)①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다.	0.80
5	(개인정보)①내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0.82	(국가지원금)③서류를 위조하여 취업장려금을 받게 되면 처벌 받는다.	0.81
6	(계약)①돈을 빌려줄 때는 서로 믿고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0.83	(계약)①돈을 빌려줄 때는 서로 믿고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0.82
7	(국가지원금)②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게 되면 다시 반납해야 한다.	0.84	(개인정보)①내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0.82
8	(교통법규)①한 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지 모두 운전할 수 있다.	0.85	(국가지원금)②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게 되면 다시 반납해야 한다.	0.84
9	(국가지원금)③서류를 위조하여 취업장려금을 받게 되면 처벌 받는다.	0.88	(교통법규)①한 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지 모두 운전할 수 있다.	0.85
10	(개인정보)②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0.93	(개인정보)②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0.86
11	(국가지원금)①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다.	0.94	(결혼)위장결혼이나 강제결혼은 무효이다.	0.88

※ 각 문항의 응답결과가 정답인 경우 1점을, 오답인 경우 -1점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각 문항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평균값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계약)②신체포기각서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지켜야 한다' 문항으로 -0.27점으로 오답의 비율이 더 높으며, (계

약)③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문항의 경우에도 평균값이 0.19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인다. 한편 평균값이 0.90점 이상인 문항도 2개(개인 정보)②, (국가지원금)①이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균값이 0.56점(계약)②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이 0.88점(결혼)으로 평균값의 범위가 넓지 않다.

요컨대, 개인 및 사회영역에서의 범법행위와 관련된 법지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문항의 내용별로 법지식이 수준에 큰 차이가 있는데 비하여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법지식의 문항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가 크지 않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법지식의 세부 내용별로 법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은 상대적으로 법지식의 세부 내용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고 법지식 수준이 일정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개인적 영역에 관련된 법지식 수준

가. 결혼의 성립

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체류기간동안 인신매매과정에서 강제로 결혼을 하거나 사기결혼을 당하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또한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위장결혼에 가담하여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의 <표 4-40>은 결혼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①위장결혼이나 강제결혼은 무효이다'는 문항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응답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4-40> 결혼의 성립 관련 법지식의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명)	아니다 (%)	그렇다 (%)	모르겠다 (%)	X^2
① 위장결혼이나 강제결혼 은 무효이다.	북한이탈주민	(800)	9.3	78.9	11.9	55.042***
	일반 국민	(1004)	3.5	91.1	5.4	
	합 계	(1804)	6.0	85.7	3.3	

* : $p<0.05$, ** : $p<0.01$, *** : $p<0.001$

〈표 4-40〉을 보면, ‘①위장결혼이나 강제결혼은 무효이다’는 문항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정도 낮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다. 〈표 4-41〉에서 결혼의 성립 관련 법지식의 평균값 차이검증 결과를 보아도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은 0.70점으로 일반 국민의 0.88점보다 낮은 점수로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결혼의 성립과 관련된 법지식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4-41〉 결혼의 성립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위장결혼이나 강제결혼은 무효이다.	북한이탈주민	800	0.70	-6.944***
	일반 국민	1004	0.88	

* : $p<0.05$, ** : $p<0.01$, *** : $p<0.001$

2)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사이에 결혼의 성립과 관련된 법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의 〈표 4-42〉와 같이 나타난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결혼의 성립과 관련한 법지식 수준은 연령별 하위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다른 변인의 하위집단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 하위집단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30대 이후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다. 다만, 20대의 경우에는 30대와 40대보다 높은 평균을 보인다. 30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결혼 관련 법지식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42〉 결혼의 성립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위장결혼이나 강제결혼은 무효이다.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0.75
	여자	578	0.68
		t=1.532	

		① 위장결혼이나 강제결혼은 무효이다.	
		사례수	평균
연령	20대 이하	155	0.72
	30대	217	0.63
	40대	239	0.67
	50대 이상	189	0.79
		F=2.686*	
학력	중졸 이하	114	0.58
	고졸 이하	441	0.71
	대학 재학 이상	244	0.73
		F=2.392	
기초생활 수급여부	수급 대상자	357	0.67
	대상자 아님	443	0.72
		t=-1.18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42	0.68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89	0.71
	300만원 이상	58	0.76
		F=0.513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71	0.55
	2년 이상~5년 미만	144	0.74
	5년 이상~10년 미만	315	0.71
	10년 이상	270	0.70
		F=1.592	

* : $p<0.05$, ** : $p<0.01$, *** : $p<0.001$

3)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결혼의 성립과 관련된 법지식이 성별, 연령별, 월평균가구소득별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의 <표 4-43>은 일반 국민의 주요 변인별 하위집단의 평균값 차이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법지식 수준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세부 집단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으며, 월평균가구소득 별로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 성립과 관련한 법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학력별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43〉 결혼의 성립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위장결혼이나 강제결혼은 무효이다.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0.83
	여자	582	0.91
		t=-2.579*	
연령	20대 이하	138	0.72
	30대	157	0.86
	40대	384	0.93
	50대 이상	325	0.89
		F=9.128***	
학력	고졸 이하	329	0.86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0.88
	대학원 재학 이상	117	0.90
		F=0.43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3	0.81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95	0.90
	400만원 이상	406	0.88
		F=3.595*	

* : p<0.05, ** : p<0.01, *** : p<0.001

나. 계약

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는 계약과 관련한 법지식 문항이 3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문항은 문항별로 응답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표 4-44〉를 보면, ‘①돈을 빌려줄 때는 서로 믿고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에 정답, 오답, 그리고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에 큰 차이가 없지만, 다른 두 개의 문항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응답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②신체포기각서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지켜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아니다’라고 정답에 응답한 비율이 북한이탈주민은 22.2%, 일반 국민은 70.3%이고, ‘모르겠

다'고 응답한 비율은 북한이탈주민이 29.2%, 일반 국민이 15.5%를 나타내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③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문항의 경우에도 앞의 ②번 문항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돈을 빌려줄 때에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부당한 계약이나 법정 이자의 한도와 같이 계약과 관련한 세부 지식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다.

〈표 4-44〉 계약 관련 법지식의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명)	아니다 (%)	그렇다 (%)	모르겠다 (%)	X^2
① 돈을 빌려줄 때는 서로 믿고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북한이탈주민	(799)	89.1	5.8	5.1	1.430
	일반 국민	(1004)	88.5	7.0	4.5	
	합 계	(1803)	88.8	6.4	4.8	
② 신채포기각서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지켜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799)	22.2	48.7	29.2	429.298***
	일반 국민	(1004)	70.3	14.1	15.5	
	합 계	(1803)	49.0	29.5	21.6	
③ 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북한이탈주민	(799)	26.0	44.7	29.3	269.909***
	일반 국민	(1004)	8.2	81.7	10.2	
	합 계	(1803)	16.1	65.3	18.6	

*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4-45〉 계약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돈을 빌려줄 때는 서로 믿고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북한이탈주민	799	0.83	0.717
	일반 국민	1004	0.82	
② 신채포기각서라도 썼다면 지켜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799	-0.27	-22.705***
	일반 국민	1004	0.56	
③ 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북한이탈주민	796	0.19	-15.799***
	일반 국민	1004	0.74	

*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4-45〉에서 계약 관련 문항별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평균값의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②번과 ③번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두 문항에서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

도 평균값이 다른 문항보다 낮은 편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므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비슷한 정도의 법지식을 갖고 있지만, 신체포기각서와 같은 부당한 계약, 혹은 법정이자의 상한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계약 관련 법지식 수준은 현저히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계약과 관련한 법지식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집단별 평균값의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46>와 같이 계약 관련 문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6> 계약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돈을 빌려줄 때는 서로 믿고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② 신체포기각서라도 썼다면 지켜야 한다.		③ 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1	0.83	221	-0.22	221	0.27
	여자	578	0.84	578	-0.28	575	0.16
		t=-0.190		t=1.053		t=1.703	
연령	20대 이하	155	0.86	155	-0.09	154	0.24
	30대	217	0.83	216	-0.27	215	0.14
	40대	238	0.82	239	-0.28	239	0.18
	50대 이상	189	0.83	189	-0.38	188	0.20
		F=0.170		F=3.884**		F=0.478	
학력	중졸 이하	113	0.77	114	-0.46	114	0.22
	고졸 이하	441	0.83	441	-0.29	437	0.13
	대학 재학 이상	244	0.87	243	-0.12	244	0.27
		F=1.510		F=7.999***		F=2.398	
기초 생활 수급 여부	수급 대상자	357	0.82	357	-0.33	357	0.24
	대상자 아님	442	0.85	442	-0.21	439	0.14
		t=-0.787		t=-2.077*		t=1.755	

		① 돈을 빌려줄 때는 서로 믿고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② 신체포기각서라도 썼다면 지켜야 한다.		③ 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42	0.84	442	-0.29	440	0.21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8	0.83	288	-0.27	287	0.11
	300만원 이상	58	0.78	58	-0.10	58	0.31
		F=0.438		F=1.324		F=2.011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71	0.89	71	-0.34	71	0.31
	2년 이상~5년 미만	144	0.87	144	-0.41	142	0.25
	5년 이상~10년 미만	315	0.82	315	-0.27	313	0.13
	10년 이상	269	0.82	269	-0.16	270	0.19
		F=0.667		F=3.36*		F=1.213	

* : $p<0.05$, ** : $p<0.01$, *** : $p<0.001$

‘①돈을 빌려줄 때는 서로 믿고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와 같은 법지식은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해당 문항의 평균값이 0.83점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금전 거래 시에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비적으로 ‘②신체포기각서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지켜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학력별, 기초생활수급여부별, 한국거주기간별 하위집단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해당 법지식 수준이 높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집단이 수급자 집단보다 법지식 수준이 높으며,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 ‘③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문항에서는 하위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표 4-47>과 같이 계약과 관련한 법지식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비하여 하위집단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더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난다.

〈표 4-47〉 계약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돈을 빌려줄 때는 서로 믿고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② 신체포기각서라도 썼다면 지켜야 한다.		③ 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0.75	422	0.53	422	0.80
	여자	582	0.86	582	0.58	582	0.69
		t=-3.231**		t=-1.043		t=3.062**	
연령	20대 이하	138	0.71	138	0.29	138	0.71
	30대	157	0.80	157	0.52	157	0.69
	40대	384	0.86	384	0.65	384	0.76
	50대 이상	325	0.82	325	0.59	325	0.74
		F=2.653*		F=9.055***		F=0.480	
학력	고졸 이하	329	0.81	329	0.53	329	0.66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0.82	558	0.58	558	0.78
	대학원 재학 이상	117	0.82	117	0.57	117	0.74
		F=0.089		F=0.332		F=3.74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03	0.74	203	0.41	203	0.67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95	0.80	395	0.56	395	0.76
	400만원 이상	406	0.87	406	0.64	406	0.74
		F=4.081*		F=6.649**		F=1.334	

* : p<0.05, ** : p<0.01, *** : p<0.001

‘①돈을 빌려줄 때는 서로 믿고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문항에 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법지식 수준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법지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월평균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아진다. ‘②신체포기각서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지켜야 한다’는 문항에서도 하위집단별로 ①번 문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데,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③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법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은 집단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의 경우에는 ‘대학 재학이나 졸업’ 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다.

다. 개인정보

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개인정보 관련 법지식 문항은 두 개인데, <표 4-48>를 보면 ‘①내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문항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정답, 오답 등의 응답 비율이 비슷하고, ‘②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답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표 4-48〉 개인정보 관련 법지식의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명)	아니다 (%)	그렇다 (%)	모르겠다 (%)	χ^2
① 내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북한이탈주민	(800)	87.8	6.3	6.0	1.329
	일반 국민	(1004)	88.7	6.5	4.8	
	합 계	(1804)	88.3	6.4	5.3	
②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북한이탈주민	(799)	95.0	2.4	2.6	13.752**
	일반 국민	(1004)	91.5	6.0	2.5	
	합 계	(1803)	93.1	4.4	2.6	

* : $p<0.05$, ** : $p<0.01$, *** : $p<0.001$

〈표 4-49〉 개인정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내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북한이탈주민	800	0.82	-0.310
	일반 국민	1004	0.82	
②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북한이탈주민	799	0.93	3.585***
	일반 국민	1004	0.86	

* : $p<0.05$, ** : $p<0.01$, *** : $p<0.001$

<표 4-49>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 법지식의 평균값 차이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②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이

0.93점으로 일반 국민의 0.86점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적응과정에서 자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개인정보 관련 법지식의 평균값이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살펴보면 <표 4-50>과 같이 ①문항과 ②문항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①내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문항은 일반 국민과 평균값에서 차이가 없지만, 북한이탈주민의 학력별, 기초생활수급여부별, 월평균가구소득별로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평균값이 더 높아 법지식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학력별, 월평균가구소득별 하위집단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②번 문항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별로 평균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4-50〉 개인정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내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②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0.86	222	0.92
	여자	578	0.80	577	0.93
		t=1.852		t=-0.372	
연령	20대 이하	155	0.84	155	0.91
	30대	217	0.86	217	0.95
	40대	239	0.79	239	0.93
	50대 이상	189	0.78	799	0.90
		F=1.036		F=0.746	
학력	중졸 이하	114	0.69	114	0.88
	고졸 이하	441	0.84	440	0.93
	대학 재학 이상	244	0.82	244	0.94

		① 내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된 것이 없다.		②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기초생활 수급여부		F=3.755*		F=1.398	
	수급 대상자	357	0.76	356	0.93
	대상자 아님	443	0.86	443	0.93
월평균 가구소득		t=-2.756**		t=0.060	
	100만원 미만	442	0.76	441	0.9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89	0.88	289	0.92
	300만원 이상	58	0.86	58	0.98
한국 거주기간		F=4.556*		F=0.910	
	2년 미만	71	0.83	71	0.89
	2년 이상~5년 미만	144	0.84	144	0.95
	5년 이상~10년 미만	315	0.81	315	0.95
	10년 이상	270	0.81	269	0.90
		F=0.180		F=1.474	

* : $p<0.05$, ** : $p<0.01$, *** : $p<0.001$

3)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에 개인정보 관련 법지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4-51>와 같이, 성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는 남자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두 개의 법지식 문항에서 모두 평균값이 높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서 여자가 남자보다 개인정보 관련 법지식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②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서는 일반 국민의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정보의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51〉 개인정보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내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된 것이 없다.		②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0.76	422	0.80
	여자	582	0.87	582	0.90
		t=-3.170**		t=-2.858**	
연령	20대 이하	138	0.80	138	0.81
	30대	157	0.80	157	0.83
	40대	384	0.84	384	0.90
	50대 이상	325	0.82	325	0.84
		F=0.399		F=1.492	
학력	고졸 이하	329	0.81	329	0.85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0.84	558	0.86
	대학원 재학 이상	117	0.79	117	0.83
		F=0.559		F=0.21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3	0.77	203	0.76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95	0.84	395	0.86
	400만원 이상	406	0.83	406	0.89
		F=1.382		F=4.856**	

* : p<0.05, ** : p<0.01, *** : p<0.001

3. 사회 영역에 관련된 법지식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영역에서 자주 범하는 범법행위는 국가지원금과 교통법규 관련 범법행위가 대표적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조건 챙기고 보자는 생각이 강하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부부가 아닌 것으로 신고하여 중복하여 받거나, 정착지원금을 더 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비를 수급하는 일 등이 발생한다(최영신 외, 2010: 660-666). 또한 교통법규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보험 등과 관련된 문제사태가 발생하게 된다(최영신 외, 2010: 119-121).

가. 국가지원금

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에 포함된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 문항은 3개인데, <표 4-52>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이 각 문항에 대하여 법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정답, 오답, ‘모르겠다’의 비율을 정리한 것이고, <표 4-53>은 법지식 문항의 평균값의 차이검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52〉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의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명)	아니다 (%)	그렇다 (%)	모르겠다 (%)	X^2
①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800)	95.3	1.0	3.8	45.583***
	일반 국민	(1004)	86.2	5.9	8.0	
	합 계	(1804)	90.2	3.7	6.1	
②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게 되면 다시 반납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800)	4.0	88.1	7.9	5.126
	일반 국민	(1004)	5.1	89.4	5.5	
	합 계	(1804)	4.6	88.9	6.5	
③ 서류를 위조하여 취업장려금을 받게 되면 처벌 받는다.	북한이탈주민	(798)	3.4	91.4	5.3	8.804*
	일반 국민	(1004)	6.3	87.5	6.2	
	합 계	(1802)	5.0	89.2	5.8	

* : $p<0.05$, ** : $p<0.01$, *** : $p<0.001$

국가지원금 관련 세 개의 문항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①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다’와 ‘③서류를 위조하여 취업장려금을 받게 되면 처벌 받는다’는 문항에서 정답에 응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②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게 되면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정답 응답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 4-53>에서 문항별로 평균값의 차이검증 결과를 보면, ①과 ③은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②문항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평균값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국가지원금 관련 2개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법지식 수준

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한국사회 정착 초기에 국가지원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하나원 등에서의 교육을 통해 해당 법률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지원금 관련 범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들이 모두 국가지원금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법지식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범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53〉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800	0.94	7.284***
	일반 국민	1004	0.80	
②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게 되면 다시 반납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800	0.84	-0.106
	일반 국민	1004	0.84	
③ 서류를 위조하여 취업장려금을 받게 되면 처벌 받는다.	북한이탈주민	798	0.88	3.011**
	일반 국민	1004	0.81	

* : $p<0.05$, ** : $p<0.01$, *** : $p<0.001$

2)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4-54〉에서와 같이 세 개 문항 모두에서 연령별 집단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 개 문항 모두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①문항의 50대 이상의 평균값이 40대보다 낮게 나타난다. '①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성별, 기초생활수급대상여부별로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평균값이 높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수급대상자가 아닌 집단보다 평균값이 높다. 즉 이 문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50대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법지식 수준이 높다.

〈표 4-54〉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게 되면 다시 반납해야 한다.		③ 서류를 위조하여 취업장려금을 받게 되면 처벌 받는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0.89	222	0.81	221	0.90
	여자	578	0.96	578	0.85	577	0.87
		t=-2.883**		t=-1.119		t=1.172	
연령	20대 이하	155	0.87	155	0.76	155	0.77
	30대	217	0.95	217	0.82	217	0.89
	40대	239	0.97	239	0.86	238	0.91
	50대 이상	189	0.95	189	0.90	188	0.91
		F=4.686**		F=2.813*		F=4.249**	
학력	중졸 이하	114	0.90	114	0.85	114	0.79
	고졸 이하	441	0.95	439	0.88	441	0.83
	대학 재학 이상	244	0.95	244	0.90	244	0.89
		F=1.448		F=2.535		F=0.504	
기초 생활 수급 여부	수급 대상자	357	0.95	357	0.84	356	0.87
	대상자 아님	443	0.94	443	0.84	442	0.89
		t=-2.883**		t=-1.119		t=1.17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42	0.93	442	0.84	440	0.88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9	0.95	289	0.83	289	0.88
	300만원 이상	58	0.97	58	0.86	58	0.95
		F=0.674		F=0.089		F=0.818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71	0.94	71	0.79	71	0.85
	2년 이상~5년 미만	144	0.94	144	0.92	143	0.91
	5년 이상~10년 미만	315	0.94	315	0.81	315	0.87
	10년 이상	270	0.95	270	0.86	269	0.88
		F=0.092		F=2.277		F=0.471	

* : p<0.05, ** : p<0.01, *** : p<0.001

3)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표 4-55〉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게 되면 다시 반납해야 한다.		③ 서류를 위조하여 취업장려금을 받게 되면 처벌 받는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0.75	422	0.85	422	0.78
	여자	582	0.84	582	0.84	582	0.84
		t=-2.791**		t=0.131		t=-1.552	
연령	20대 이하	138	0.67	138	0.84	138	0.82
	30대	157	0.75	157	0.83	157	0.76
	40대	384	0.85	384	0.87	384	0.86
	50대 이상	325	0.82	325	0.82	325	0.78
		F=4.602**		F=0.527		F=2.362	
학력	고졸 이하	329	0.78	329	0.81	329	0.77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0.82	558	0.85	558	0.85
	대학원 재학 이상	117	0.79	117	0.89	117	0.78
		F=0.473		F=1.176		F=2.499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03	0.70	203	0.82	203	0.75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95	0.81	395	0.83	395	0.81
	400만원 이상	406	0.84	406	0.86	406	0.85
		F=4.932**		F=0.667		F=2.169	

* : p<0.05, ** : p<0.01, *** : p<0.001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별로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4-55〉과 같이 ‘①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문항에서만 성별, 연령별, 월평균가구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자가 남자보다 해당 문항의 법지식 수준이 높으며, 50대 이상 집단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아진다. 일반 국민의 이러한 하위집단별 차이는 가구소득별 집단을 제외하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유사하다.

나. 교통법규

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 문항 2개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은 각각 어느 정도 정답에 응답했는지 살펴보면, <표 4-56>에서와 같이, '①한 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지 모든 운전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집단 간에 정답 비율에 큰 차이가 없고, '②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정답에 응답한 비율이 10%이상 낮다.

〈표 4-56〉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의 정답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명)	아니다 (%)	그렇다 (%)	모르겠다 (%)	X^2
① 한 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지 모든 운전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800)	89.6	4.8	5.6	10.784**
	일반 국민	(1004)	90.9	6.3	2.8	
	합 계	(1804)	90.4	5.6	4.0	
②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799)	10.8	65.7	23.5	44.661***
	일반 국민	(1004)	12.3	76.1	11.7	
	합 계	(1803)	11.6	71.5	16.9	

* : $p<0.05$, ** : $p<0.01$, *** : $p<0.001$

〈표 4-57〉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한 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지 모든 운전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800	0.85	0.092
	일반 국민	1004	0.85	
②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799	0.55	-2.741**
	일반 국민	1004	0.64	

* : $p<0.05$, ** : $p<0.01$, *** : $p<0.001$

<표 4-57>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평균값의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②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낮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음주측정 거부와 운전면허취소와의 관계에 대한 법지식 수준은 일반 국민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북한이탈주민은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의 하위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표 4-58>에서와 같이, ‘①한 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지 모든 운전할 수 있다’는 문항의 경우에만 하위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문항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낮을 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은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차량의 종류별로 운전면허증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표 4-58〉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한 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지 모든 운전할 수 있다.		②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0.91	222	0.50
	여자	578	0.83	577	0.57
		t=2.395*		t=-1.133	
연령	20대 이하	155	0.94	155	0.57
	30대	217	0.87	217	0.46
	40대	239	0.85	239	0.55
	50대 이상	189	0.75	188	0.64
		F=4.915**		F=2.343	
학력	중졸 이하	114	0.64	114	0.63
	고졸 이하	441	0.85	441	0.50
	대학 재학 이상	244	0.95	243	0.60
		F=17.431***		F=2.534	
기초생활수급여부	수급 대상자	357	0.82	356	0.59
	대상자 아님	443	0.88	443	0.52
		t=-1.777		t=1.414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42	0.83	441	0.5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9	0.88	289	0.53
	300만원 이상	58	0.93	58	0.48
		F=2.020		F=0.678	

		① 한 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지 모든 운전할 수 있다.		②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71	0.92	71	0.69
	2년 이상~5년 미만	144	0.87	144	0.57
	5년 이상~10년 미만	315	0.84	314	0.51
	10년 이상	270	0.83	270	0.55
		F=0.724		F=1.475	

* : $p < 0.05$, ** : $p < 0.01$, *** : $p < 0.001$

3)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일반 국민의 경우에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 수준이 하위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4-59>에서와 같이 성별, 연령별, 월평균가구소득별로 하위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한 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지 모든 운전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법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연령별 집단에서는 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 문항에서는 40대와 50대 이상의 법지식 수준이 높고, 30대의 법지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월평균가구소득별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 법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②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59〉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한 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지 모든 운전할 수 있다.		②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0.77	422	0.63
	여자	582	0.90	582	0.64
		t=-3.748***		t=-0.317	
연령	20대 이하	138	0.80	138	0.71
	30대	157	0.74	157	0.69

		① 한 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지 모두 운전할 수 있다.		②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40대	384	0.90	384	0.68
	50대 이상	325	0.85	325	0.53
		F=4.508**		F=4.095**	
학력	고졸 이하	329	0.84	329	0.58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0.86	558	0.65
	대학원 재학 이상	117	0.81	117	0.74
		F=0.398		F=2.76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3	0.76	203	0.53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95	0.87	395	0.66
	400만원 이상	406	0.87	406	0.67
		F=3.452*		F=3.041*	

* : p<0.05, ** : p<0.01, *** : p<0.001

제4절 소결

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지식 차이와 시사점

가. 헌법적 가치에 대한 법지식 차이와 시사점

1) 분석 결과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법지식 수준을 비교해보면, 헌법적 가치의 세부 영역과 문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지식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4-60>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12개의 법지식 문항 중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이 각각 법지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문항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4-60〉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이 높은 집단과 세부 문항

법지식이 높은 집단	설문 문항	
북한이탈주민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대한 인식)	①국가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 ②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사회적 기본권)	②신체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녀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 국민	(자유권적 기본권)	②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할 수 있다. ③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야 한다.
	(정치적 기본권)	①수사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보아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	① 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두 집단 간 차이 없음	(자유권적 기본권)	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치적 기본권)	② 약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다 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①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투표할 수도 있다.
		②대통령과 모든 법률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

〈표 4-60〉을 보면,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 문항은 모두 4개로서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 관련 2개 문항과 사회적 기본권 관련 2개 문항이다.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①국가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 ②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사회적 기본권)②신체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문항들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⁸⁶⁾ 헌법적 가치 관련 12개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들은 모두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써 공적 조직인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나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에 비하여 법지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문항은 4개인데, (자유권적 기본권)‘② 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할 수 있다, ③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

86) 제4장 제1절 참조.

야 한다. (정치적 기본권)①수사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보아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①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문항이다. 자유권적 기본권②, ③과 정치적 기본권①,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①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외에 나머지 4개 문항, (자유권적 기본권)①과 (정치적 기본권)②, 그리고 (국가조직)①, ② 문항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지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의미와 시사점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적 가치와 관련한 법지식에서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이나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고, 상대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으며, 국가 조직과 관련된 법지식 수준은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다.

먼저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과 관련하여 설문 결과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최근 남한의 현실이 민주적 법치국가라는 규범적 이상에서 멀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과 재난에서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후문)를 다했는지에 대한 회의가 컸고,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이른바 비선(秘線)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주권주의를 비롯한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국가 이념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의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 제1항을 비롯,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인용한 바 있다.⁸⁷⁾ 이와 같은 분석은 아래에서 상술하는 것처럼, 남한 거주 기간이 긴 북한이탈주민일수록 ‘국가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라는 문항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다는 점, 및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학력이 높은 집단이 학력이 낮은 집단보

87) 현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문항에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많이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요컨대, 이러한 설문 결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당위적 기대와 규범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남한의 일반 국민들의 회의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의 특징은 북한사회의 법문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공산주의 사회문화를 통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 인식은 강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관념은 지극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규범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자유권적 기본권의 세부적인 실천 지침, 예컨대 설문에서처럼 고문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출판물에 대한 검열 금지 원칙에 있어서는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점은 실상 북한이탈주민의 (현)법의식이 ‘이상에 대한 기대’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에 대해 추상적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자유권적 기본권의 세부 규범들은 서구의 자유주의 사회조차 오랜 투쟁의 역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의식 제고에 있어서 자유의 구체적이고 실천적 규범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무죄추정 원칙에 대해 법지식이 높지 않은 것은 먼저 이들이 ‘수사 중’인 범죄혐의자에 대해 일정한 정서(반감)를 갖고 있으며, 수사와 재판의 절차상 차이를 잘 모르거나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주민들 모두에게서 법지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그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응당 타당하다는 일반적인 정서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한 법지식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를 통한 급부의 제공과 사회적 연대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국가의 역할과 사회의 연대를 강조한 이들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해를 보여주었던 것과 달리,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상적 이해를 넘어서 헌법적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조력과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에서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집단행동이 드물다는 점, 본래 근로자의 집단 행동권은 국가와 사용자의 대립구도(국가 vs. 사용자) 하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근로자의 집단 행동권을 국가와 근로자의 대립구도(국가 vs 근로자)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조직과 관련된 법지식 수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접선거 원칙을 담고 있는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투표할 수도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국호로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점, 또한 각각의 체제에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선거와 투표가-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관되고 유사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과 모든 법률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헌법재판(탄핵심판)과 정권교체 과정에서 학습된 결과, 남한 주민은 물론이고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법의식의 이해가 높아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1) 분석 결과

설문조사에 포함된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문항은 모두 21개 문항이다. 사기피해 및 가해 관련 4개 문항, 폭행 및 상해 관련 5개 문항, 가정폭력 관련 3개 문항, 마약범죄 및 성매매 관련 5개 문항,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관련 4개 문항이 포함된다.

〈표 4-61〉 범죄 피해 및 범죄 발생 관련 법지식이 높은 집단과 세부 문항

법지식이 높은 집단	설문 문항	
북한이탈주민	(사기피해 및 가해)	③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
일반 국민	(사기피해 및 가해)	①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폭행 및 상해)	①개인 간의 싸움을 처벌받지 않는다.
		②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④성폭력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⑤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다.
	(가정폭력)	①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 ②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마약범죄 및 성매매)	③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 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역)
	(형사사법 관련 법률상식)	①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②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③국선변호인 제도를 알고 있다.		
④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범죄이다.		
두 집단 간 차이 없음	(사기피해 및 가해)	②가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폭행 및 상해)	③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가정폭력)	③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마약범죄 및 성매매)	①한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는다.
		②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받는다.
		④성매매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받는다.
		⑤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표 4-61〉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집단별로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수준이 높은 문항을 정리한 것이다. 21개 문항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 문항은 (사기피해 및 가해)‘③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는 문항 한 개 뿐이고, 12개 문항에서는 일반 국민이 북한이탈주민보다 법지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8개 문항은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법지식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 12개의 문항 중에서 특히 더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 문항이다. 국선번호인제도의 대한 이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인식,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인식,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 모두 일반 국민과 법지식 수준에 차이가 크다.

다음으로 폭행 및 상해 관련 5개 문항 중에서 (폭행 및 상해)①개인 간의 싸움을 처벌 받지 않는다, ②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다, ④성폭력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⑤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다’는 4개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가정폭력 관련 문항, (가정폭력)①자녀의 교육을 위해 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 ②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의 2개 문항, 그리고 마약범죄 관련 문항, (마약범죄)③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 준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이 일반 국민보다 낮았다. 이외에 다른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법지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은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확연하게 낮은 상태이며, 특히 형사사법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상식에서 가장 취약하고, 이외에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와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에서도 일반 국민과 큰 차이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사기범죄와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에서는 세부 문항별로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지식 문항, ‘(사기피해 및 가해)③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정답 비율이 높아 법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유사한 범죄행위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법지식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2) 의미와 시사점

먼저 사기 관련 법지식에서 주목할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형사불법인 사기(형법 제347조)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민법 제390조 등)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처음부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 즉 사기의 고의를 갖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처분을 받는 것이 형사상 불법인 사기이다. 반면 금전 거래를 한 후에 여러 사정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즉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남한 주민은 물론 북한이탈주민 들의 경우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이 높지 않은 것은 단순 채무불이행 조차도 민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의 영역이라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폭행 등 자력구제의 방법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다음 설문 분석 참조), 채무불이행이든 사기범죄든 국가에 의해 공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력구제에 보다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 범죄 관련해서는 직관적으로 ‘두 명 이상이 한 집단 폭행’, 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폭행(형법 제261조)의 경우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누구나 생각한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남북한 주민의 법의식에 차이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개인 간의 싸움은 처벌 받지 않는다’ 및 ‘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이 낮은 이유는 분쟁을 공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대응하는 폭행을 정당한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는 형식범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이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심지어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⁸⁸⁾고 하여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이를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⁸⁸⁾ 혹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⁹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인 것이다.

특히 유의미한 것은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이 현저하게 낮은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2012년 형법을 비롯한 성폭력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모두 폐지되었다. 이는 성범죄와 같은 반사회적인 법익 침해를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서는 안 되고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 및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친고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과 법의식의 변화는 우리 시민사회의 오랜 논의와 숙고의 산물로서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친고죄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폭력을 개인의 일탈 및 정조에 대한 침해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합의의 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설문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주민에게서 큰 차이는 없지만 소소한 의미는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남북한의 경우처럼 공히 지배적인 가부장적 문화가 보다 일반화된 사회일수록 자녀를 개인, 특히 가부장의 소유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가부장의 영역은 국가와 사회가 침범할 수 있는 고유의 것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이러한 가부장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조차 가정폭력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같은 이유에서 가정폭력범죄는 또한 은폐되기 쉽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동학대 및 유기의 범죄,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보도가

88)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89)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9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빈번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전근대인 가부장주의에서 상당부분 벗어나고 있다는 점, 및 개인의 인권과 양성 평등이 강조되면서 이들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심지어 부부사이에 강간범죄의 가능성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법원도 부부강간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전향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⁹¹⁾

일관된 관점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서도 흥미로운 분석을 도출할 수 있다. 최근 탈북민들의 증언 등을 통해 북한 내의 마약 사범이 증가했음을 공공연한 사실이다. 때문에 북한에서도 마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들도 마약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취급에 있어서 행위의 유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단순 소지나 그 정을 모르고 운반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매매 및 알선, 수출입 및 제조는 물론 단순투약과 소지에 대해서도 처벌한다. 그 불법의 정도는 수출입 및 제조의 경우가 가장 중하고 매매 및 알선의 경우도 중하게 처벌하는 편이지만, 단순투약 및 소지의 경우는 다른 행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 이는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운반 등의 행위가 일종의 마약 유통으로 보아 그 불법성을 높게 평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이다. 2013년 개봉한 방은진 감독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는 마약인 줄 모르고 운반해준 평범한 가정주부가 마약사범으로 몰려 프랑스에서 구금되었던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바 있다. 이 영화를 통해 마약에 대한 단순 소지 및 운반은 심지어 그 정을 모르고 소지 및 운반을

91)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등의 유통에 대해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단순 투약보다는 운반이 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와 불법성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비로소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형사사법에 대한 남북한 주민들의 법의식 차이이다. 앞서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형사불법인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별하지 못한다. 많은 경우 형사불법과 민사불법은 형식적으로 구별되며, 그에 따른 소송절차, 입증의 방식과 정도, 효과는 매우 상이하다. 더 나아가 일반인들이 형사소송의 동적 과정에서 수사과 재판, 그리고 교정의 절차에 대해 명확히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러한 법적 단계의 구별은 입법, 행정 사법과 같은 권력이 명확히 분화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먼저, 사적 자치와 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손해의 공평한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재판과, 국가의 형벌권을 통해 교정적 정의의 실현과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서로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법적 정의를 구체화한다. 또한 수사와 재판을 분리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도모하는 근대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명확히 구별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예컨대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을 위한 구금 장소인 구치소와 재판이 종료되어 형을 집행하는 장소인 교도소는 그 법적 지위와 효과가 상이한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 내에서도 법전문가인 검사와 대등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역시 법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강조하는 것도 일종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는 일종의 무기 대등이라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입법적 지혜인 것이다.

그러나 권력 분립이 아닌 당 중심의 권력집중의 체제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 각각의 권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쉽게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범영역을 구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 절차, 특히 형사재판의 절차에 따른 국가권력의 역할과 작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대한민국의 사법(司法)작용

이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소송처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등에 있어서는 한 당사자인 국가와 대등할 정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제도로써, 심지어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일깨워야 하는 것이다.

다. 개인과 사회영역 관련 법지식

1) 분석 결과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 포함된 개인 및 사회영역 관련 법지식 문항은 모두 11개인데, 결혼 관련 1개 문항, 계약 관련 3개 문항, 개인정보 관련 2개 문항, 국가지원금 관련 3개 문항, 교통법규 관련 2개 문항이 포함된다.

북한이탈주민은 개인 및 사회영역 관련 법지식에 있어서 문항에 따라서 법지식 수준에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62>와 같이, 4개 문항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낮았으며, 3개 문항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오히려 높았고, 나머지 4개 문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분야의 법지식은 자유주의 하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적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는지, 또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혼인과 계약은 사적 자치가 강조되는 개인의 영역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표시가 기망이나 강제와 같은 온전히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의사표시의 해석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일정부분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와 같은 것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 목적과 범죄 예방을 위해 처분의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표 4-62〉 개인 및 사회영역 관련 법지식이 높은 집단과 세부 문항

법지식이 높은 집단	설문 문항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②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국가지원금)	①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다.
		③서류를 위조하여 취업장려금을 받게 되면 처벌 받는다.
일반 국민	(결혼의 성립)	①위장결혼이나 강제결혼은 무효이다.
	(계약)	②신체포기각서라도 썼다면 지켜야 한다.
		③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교통법규)	②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두 집단 간 차이 없음	(계약)	①돈을 빌려줄 때는 서로 믿고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	①내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된 것이 없다.
	(국가지원금)	②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게 되면 다시 반납해야 한다.
	(교통법규)	①한 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지 모두 운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 및 사회영역 관련 법지식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영역은 계약, 결혼, 그리고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이다. 특히 계약 관련 법지식에서 (계약)‘②신체포기각서라도 썼다면 지켜야 한다. ③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와 같은 계약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법지식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다. ‘②신체포기각서라도 썼다면 지켜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정답보다 오답자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한 맹신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정당하거나 위법적인 계약에 대한 법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인정보와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높았다. (개인정보)‘②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국가지원금)‘①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다. ③서류를 위조하여 취업장려금을 받게 되면 처벌 받는다’는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답 응답률이 높았다.

2) 의미와 시사점

특히 개인의 사적 자치가 강조되더라도 일정 부분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국가 개입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법의식의 확립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기망에 의한 착오의 의사표시(위장결혼), 강제적인 의사표시(강제결혼)은 국가가 그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신체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강제하는 것(신체포기각서)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과 개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지나친 이자를 받는 것 또한 계약자유에의 한계로서 그 효과를 일정부분 제한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의 형성일지라도 문서에 의한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것도 사적 자치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의 적응과정에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경향이 강하다. 혹시라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북한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 개인의 재물인 휴대폰과 통장 또한 자유로운 처분행위의 대상이지만, 원활하고 투명한 거래라는 공익을 위해서 ‘내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영역에서 두드러진 것은 국가에 의한 급부 및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가에 대한 기망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는 점이다. 예컨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내지 ‘취업장려금’을 지원받는 행위의 비난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에서 제공한 물품(‘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국가로부터 정착지원금을 제공받거나 임대주택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고, 취업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이 높은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이유 중 하나이

다. 다만 도로교통법의 영역과 같은 다소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의 법지식이 다소 구체적일 수는 있으나, 운전과 같은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지식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통한 이해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법지식의 차이와 시사점

가. 헌법적 가치에 대한 법지식의 차이와 시사점

1) 한국거주기간과 중국체류기간별 차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 관련 법지식(① 국가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 ②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에 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낮은 (자유권적 기본권)③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판을 금지해야 한다'와 (사회적 기본권)④ 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출판의 자유에 대한 법지식 수준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국민보다 낮은 법지식 수준을 보이는 헌법적 가치 관련 문항에서 일부 문항은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중국체류기간은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문항 12개 중에서 유일하게 (자유권적 기본권)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수록 해당 문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탈북 이후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길수록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체류기간 동안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와 같은 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자주 노출되면서 생활의 실제 사태에서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상황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성별, 연령별, 학력별 법지식의 차이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에 따라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법지식의 차이 나타나는 문항은 자유권적 기본권 2개 문항과 사회적 기본권 1개로서 (자유권적 기본권)‘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①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가 해당된다. 이 세 가지 문항 모두 남자의 법지식 수준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난다. 남자는 여자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범죄자에게 고문을 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에게 집단행동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자유권적 기본권)‘③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야 한다’와 (사회적 기본권)‘①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문항에서 하위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판의 자유에 대한 문항에서는 연령이 어린 집단의 법지식 수준이 높으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인식에서는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에서 법지식 수준이 높았다.

학력별로 하위집단에서는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중에서 (자유권적 기본권)‘③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만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정부에 비판적인 도서의 출간 금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기초생활수급여부 또는 가구소득별 법지식의 차이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문항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여부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나는 문항은 (자유권적 기본권)‘②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할 수 있다’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집단의 법지식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높다. 또한 (자유권적 기본권)‘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③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도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각 문항의 법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도서의 출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외에 (국가조직)‘①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투표할 수도 있다’는 문항에서도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직접투표의 원칙에 대한 법지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자유권적 기본권)①, ②, ③문항은 기초생활수급여부 또는 월평균가구소득별로 법 지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가구소득별 하위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자유권적 기본권) ②, ③문항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1) 한국거주기간별 차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거주기간에 따라서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영역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 영역이다. 사실상 형사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상식은 직접적으로 범죄피해와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네 가지 유형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사기피해 및 가해,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 가정폭력, 마약범죄 및 성매매)과 관련된 법지식의 경우에는 한국거주기간이라는 변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네 가지 범죄피해 및 발생 관련 법지식 문항에서는 한국거주기간별로 법지식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중국체류기간은 앞서 분석한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과는 다르게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의 평균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2) 성별, 연령별, 학력별 법지식의 차이와 시사점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에 따라 법지식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은 폭행 및 상해, 성매매,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에 대한 법지식이다. 폭행 및 상해 관련 3개 문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법지식 수준이 높았으며, 형사사법 관련 법률상식은 3개 문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법지식이 높았다. 다만 성매매 관련 법지식 문항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법지식이 높았다.

연령별 하위집단에서는 폭행 및 상해, 가정폭력, 마약범죄, 법률상식 관련 문항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연령이 낮은 집단은 나이가

많은 집단에 비하여 폭행 및 상해 관련 법지식(개인 간 싸움에 대한 처벌, 폭행 원인 제공자에 대한 폭행의 처벌, 언어폭력에 대한 감수성) 수준이 더 높고, 자녀체벌에 대한 법지식도 높다. 또한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한 경우에도 마약운반을 처벌한다는 법지식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며, 형사사법 관련 법률상식을 더 많이 알고 있다. 다만 성매매 관련 법지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학력별 하위집단의 법지식 수준은 사기피해 및 가해, 폭행 및 상해, 가정폭력,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법지식이 높았다.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기피해 및 가해 관련 법지식 수준이 높고, 폭행 및 상해의 일부 문항(개인 간 싸움의 처벌, 합의 여부와 관계없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법지식이 높으며, 아내구타를 가정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에 대한 법지식 수준이 높다.

3) 기초생활수급여부 또는 가구소득별 법지식의 차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수준별 하위집단의 법지식 수준을 살펴보면, 몇몇 범죄유형 관련 문항에서 집단 간 법지식의 차이가 나타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폭행 및 상해 관련 법지식 문항(②, ④, ⑤)과 형사사법에 대한 법률상식 관련 법지식 수준이 높았다. 성매매 관련 법지식도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았다. 다만, 사기피해 및 가해,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은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없었다.

다. 개인 및 사회영역 관련 법지식

1) 한국거주기간별 하위집단의 법지식 차이

개인 및 사회영역 관련 법지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거주기간별로 법지식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계약)‘②신체포기각서라도 썼다면 지켜야 한다’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가장 낮은 문항으로 정답자보다 오답자의 비율이 더 크다(〈표 4-38〉, 〈표 4-46〉 참조).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이 개인 간의 금전거래 시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비슷하게 인식

하고 있지만, 부정당한 계약이나 불법적인 계약에 대한 법지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행히 북한이탈주민의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체포기각서와 같은 부당한 계약에 대한 법지식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성별, 연령별, 학력별 하위집단의 법지식의 차이와 시사점

개인 및 사회영역 관련 법지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문항은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과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없다’는 법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남자는 여자보다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운전면허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법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연령별 집단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문항과 연령이 낮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문항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결혼관련 법지식과 국가지원금 관련 법지식 문항은 연령이 높을수록 법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계약과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법지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20대를 제외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장결혼이나 강제결혼이 무효라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임대아파트의 전대 금지, 기초생활수급비의 부당수령, 취업장려금의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불법행위임을 잘 알고 있다.

학력별 집단에서는 계약, 명의도용, 운전면허와 관련된 법지식 문항에서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법지식이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포기각서와 같은 부당한 계약과 관련한 법지식이 높아지고, 자동차의 종류별 운전면허의 종류에 대한 법지식도 높아진다. 명의도용 관련 문항에서는 중졸이하 학력에서 법지식 수준이 가장 낮았고 그 이상 학력이 높은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3) 기초생활수급여부 또는 가구소득별 법지식의 차이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수급여부별로 법지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계약)‘②신체포기각서라도 썼다면 지켜야 한다’는 문항과 (개인정보)‘①내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된 것이 없다’는 문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집단에서 법지식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국가지원금)‘①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법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수급대상자가 아닌 집단과 비교하여 임대아파트를 전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5장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분석Ⅱ: 법에 대한 태도와 법 관련 분쟁 경험 등

최영신·김대근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분석Ⅱ: 법에 대한 태도와 법 관련 분쟁 경험 등

제1절 법의식의 영역별 수준 비교

이 연구에서는 법의식의 하위 영역을 세 개의 영역, 즉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구성요소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의식 수준을 비교하였다. 앞장에서는 법의식의 중요한 요소로서 구체적 법지식, 특히 법의 정보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법의식을 확인하였다면, 이하에서는 법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논의한다.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서적 영역에 속하는 ‘법에 대한 친밀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그리고 행동적 영역 속하는 ‘법사용의사’에 대해 살펴본다.

1.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 :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 연구에서는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을 일반적 ‘법지식’과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는데, 앞의 제4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에 대한 내용을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포함되는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의 차이검증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4개의 문항으로 측정했는데, ‘①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법을 꼭 알아야 한다, ②법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③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④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별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5-1>과 같다.

〈표 5-1〉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	t
①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법을 꼭 알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799	3.62	11.106***
	일반 국민	1004	3.32	
② 법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북한이탈주민	800	3.74	8.850***
	일반 국민	1004	3.50	
③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800	3.82	8.944***
	일반 국민	1004	3.62	
④ 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800	3.72	7.249***
	일반 국민	1004	3.53	

* 각 문항별로 응답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대체로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을 부여함.

* : p<0.05, ** : p<0.01, *** : p<0.001

<표 5-1>를 보면,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4개의 문항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은 평균값이 3.0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은 법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은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인데,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현저히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표 5-2>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한국거주기간별로 평균값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집단에서는 ①, ③, ④의 문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나머지 한 개 문항 역시 여자의 평균값이 높다. 한국거주기간별로는 ②, ③의 문항에서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평균값이 낮아진다. 다른 두 개의 문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평균값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5-2〉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법을 꼭 알아야 한다.		② 법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③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④ 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1	3.52	222	3.70	222	3.74	222	3.64
	여자	578	3.66	578	3.76	578	3.85	578	3.75
		t=-3.087**		t=-1.484		t=-3.132**		t=-2.574*	
연령	20대 이하	155	3.57	155	3.74	155	3.78	155	3.67
	30대	216	3.61	217	3.76	217	3.84	217	3.67
	40대	239	3.65	239	3.69	239	3.82	239	3.71
	50대 이상	189	3.66	189	3.79	189	3.85	189	3.83
		F=1.013		F=1.819		F=1.009		F=4.324*	
학력	중졸 이하	114	3.75	114	3.77	114	3.88	114	3.75
	고졸 이하	440	3.58	441	3.71	441	3.80	441	3.69
	대학 재학 이상	244	3.64	244	3.78	244	3.83	244	3.77
		F=3.874*		F=1.864		F=1.504		F=2.040	
기초 생활 수급 여부	수급 대상자	357	3.67	357	3.72	357	3.83	357	3.73
	대상자 아님	442	3.59	443	3.75	443	3.82	443	3.71
		t=2.058*		t=-0.901		t=0.336		t=0.64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41	3.64	442	3.72	442	3.83	442	3.72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9	3.62	289	3.76	289	3.80	289	3.70
	300만원 이상	58	3.52	58	3.79	58	3.86	58	3.81
		F=1.283		F=1.003		F=0.645		F=1.291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71	3.75	71	3.85	71	3.89	71	3.79
	2년 이상~5년 미만	144	3.67	144	3.81	144	3.86	144	3.77
	5년 이상~10년 미만	314	3.61	315	3.74	315	3.84	315	3.71
	10년 이상	270	3.56	270	3.67	270	3.77	270	3.69
		F=2.006		F=3.652*		F=2.681*		F=1.331	

* : p<0.05, ** : p<0.01, *** : p<0.001

요컨대, 북한이탈주민은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별로는 여자 집단이 남자보다 높으며,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진다. 이외에 연령별, 학력별, 기초생활수급여부별 집단 간에는 각각 1개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만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일반 국민의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표 5-3>에서와 같이 연령별, 월평균가구소득별로 하위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연령별 하위집단에서는 ②, ③, ④의 문항에서 ‘20대 이하’ 집단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아져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월평균가구소득별 집단에서는 4개 문항 모두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각 문항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①, ③, ④의 문항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서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성별과 한국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북한이탈주민과는 다르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법을 꼭 알아야 한다.		② 법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③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④ 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3.26	422	3.47	422	3.58	422	3.50
	여자	582	3.36	582	3.53	582	3.64	582	3.55
		t=-2.381*		t=-1.357		t=-1.711		t=-1.409	
연령	20대 이하	138	3.37	138	3.43	138	3.54	138	3.49
	30대	157	3.25	157	3.38	157	3.48	157	3.41
	40대	384	3.34	384	3.54	384	3.64	384	3.56
	50대 이상	325	3.30	325	3.55	325	3.69	325	3.58
		F=1.079		F=3.371*		F=6.129***		F=3.355*	

		①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법을 꼭 알아야 한다.		② 법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③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④ 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학력	고졸 이하	329	3.29	329	3.47	329	3.61	329	3.49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3.33	558	3.52	558	3.63	558	3.55
	대학원 재학 이상	117	3.32	117	3.54	117	3.59	117	3.57
		F=0.520		F=0.807		F=0.198		F=1.11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03	3.24	203	3.43	203	3.54	203	3.47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95	3.30	395	3.49	395	3.61	395	3.50
	400만원 이상	406	3.37	406	3.55	406	3.67	406	3.60
		F=3.604*		F=2.564		F=3.446*		F=3.959*	

* : $p<0.05$, ** : $p<0.01$, *** : $p<0.001$

2.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

이 연구에서는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을 ‘법에 대한 친밀감’, ‘법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의 세부영역별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인식차이,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인식차이,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인식차이를 살펴본다.

가. 법에 대한 친밀감

‘법에 대한 친밀감’은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①법은 복잡하고 까다롭다, ②법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 다른 경우가 많다, ③나는 법이 매우 두렵다, ④경찰을 보면 괜히 몸이 움츠러든다’는 문항이다. 이 4개의 문항은 모두 법에 대한 친밀감을 부정하는 서술이므로 각 문항의 점수가 법에 대한 친밀감의 정도를 나타내도록 응답 결과를 역으로 재부호화하여 사용하였다.

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표 5-4〉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이 ‘법에 대한 친밀감’이 어떠한지를 살펴

보면, 앞의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응답결과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평균값을 보인다. 문항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하 1.79점에서 최고 3.23점까지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특히 ‘①법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문항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법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데 동의하고 있어 ‘법에 대한 친밀감’의 평균값은 낮아진 것이다. ‘②법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 다른 경우가 많다, ③나는 법이 매우 두렵다’는 문항 역시 동의하는 응답비율이 높아 평균값은 낮다. 설문조사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법은 복잡하고 까다롭고, 일반 국민의 상식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이 매우 두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에 ‘법에 대한 친밀감’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③나는 법이 매우 두렵다, ④경찰을 보면 괜히 몸이 움츠러든다’는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④번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평균값의 차이가 가장 많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은 ‘법에 대한 친밀감’에 대한 4개 문항에서 모두 일반 국민의 평균값보다 높아 법에 대한 친밀감의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일반 국민보다 ‘경찰을 보면 괜히 몸이 움츠러든다거나 법이 두렵다’는 생각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4〉 법에 대한 친밀감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	t
① 법은 복잡하고 까다롭다(역).	북한이탈주민	800	1.86	1.913
	일반 국민	1004	1.79	
② 법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 다른 경우가 많다(역).	북한이탈주민	800	2.10	1.804
	일반 국민	1004	2.03	
③ 나는 법이 매우 두렵다(역).	북한이탈주민	800	2.74	2.538*
	일반 국민	1004	2.64	
④ 경찰을 보면 괜히 몸이 움츠러든다(역).	북한이탈주민	800	3.23	4.666***
	일반 국민	1004	3.04	

* 각 문항별로 응답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대체로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을 부여하고, (역)은 이를 반대반향으로 재부호한 것을 의미함.

* : $p(0.05)$, ** : $p(0.01)$, *** : $p(0.001)$

2)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법에 대한 친밀감’이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5-5>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학력별, 한국거주기간별 하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5〉 법에 대한 친밀감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법은 복잡하고 까다롭다(역).		② 법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 다른 경우가 많다(역).		③ 나는 법이 매우 두렵다(역).		④ 경찰을 보면 괜히 몸이 움츠러든다(역).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1.87	222	2.14	222	2.78	222	3.31
	여자	578	1.85	578	2.08	578	2.73	578	3.20
		t=0.416		t=1.027		t=0.701		t=1.550	
연령	20대 이하	155	1.91	155	2.17	155	2.97	155	3.45
	30대	217	1.79	217	2.04	217	2.73	217	3.27
	40대	239	1.89	239	2.07	239	2.62	239	3.12
	50대 이상	189	1.85	189	2.13	189	2.72	189	3.14
		F=1.018		F=1.122		F=4.832**		F=5.110**	
학력	중졸 이하	114	1.78	114	2.01	114	2.56	114	3.09
	고졸 이하	441	1.89	441	2.11	441	2.72	441	3.19
	대학 재학 이상	244	1.82	244	2.11	244	2.87	244	3.37
		F=1.442		F=0.801		F=4.703**		F=5.018**	
기초생활수급여부	수급 대상자	357	1.90	357	2.09	357	2.71	357	3.12
	대상자 아님	443	1.82	443	2.10	443	2.77	443	3.32
		t=1.571		t=-0.212		t=-0.934		t=-3.221**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42	1.89	442	2.10	442	2.71	442	3.13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9	1.78	289	2.07	289	2.77	289	3.30
	300만원 이상	58	1.88	58	2.16	58	2.79	58	3.57
		F=2.144		F=0.351		F=0.394		F=7.730***	
한국거주기간	2년 미만	71	2.21	71	2.38	71	3.06	71	3.34
	2년 이상~5년 미만	144	1.90	144	2.12	144	2.78	144	3.27
	5년 이상~10년 미만	315	1.80	315	2.07	315	2.69	315	3.15
	10년 이상	270	1.80	270	2.04	270	2.71	270	3.28
		F=6.798***		F=3.688*		F=3.392*		F=1.540	

* : $p<0.05$, ** : $p<0.01$, *** : $p<0.001$

북한이탈주민은 ④번 문항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법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③번 문항의 경우에도 40대 이하에서는 그러한 경향을 나타낸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법에 대한 친밀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학력별 하위집단에서는 ③, ④번 문항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법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월평균가구소득별로도 ④번 문항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법에 대한 친밀감이 높게 나타난다.

한국거주기간별 하위집단에서는 네 개의 문항에서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에 대한 친밀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①, ②, ③문항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에 대한 친밀감이 낮아진다는 것은 매우 특기할만하다.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은 법에 대한 친밀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3)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에 법에 대한 친밀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5-6>과 같이 성별, 연령별, 학력별, 월평균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③, ④문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법에 대한 친밀감이 높고, 연령별 집단에서는 ①과 ③문항에서 30대 이상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법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20대 이하 집단은 비교적 30-40대 연령층에 비하여 법에 대한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월평균가구소득별로는 ①, ②, ③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①문항에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보다 가운데 집단에서 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낮아 법에 대한 친밀감이 높게 나타나고, ②와 ③문항에서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법에 대한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는 ②문항에서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법에 대한 친밀감이 높게 나타나며,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다.

요컨대, 일반 국민은 법에 대한 친밀감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문항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법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진다.

〈표 5-6〉 법에 대한 친밀감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법은 복잡하고 까다롭다(역).		② 법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 다른 경우가 많다(역).		③ 나는 법이 매우 두렵다(역).		④ 경찰을 보면 괜히 몸이 움츠러든다(역).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1.81	422	2.02	422	2.56	422	2.91
	여자	582	1.78	582	2.04	582	2.70	582	3.13
		t=0.729		t=-0.587		t=-2.705**		t=-4.061***	
연령	20대 이하	138	1.88	138	2.11	138	2.64	138	3.04
	30대	157	1.78	157	2.00	157	2.50	157	2.97
	40대	384	1.72	384	2.00	384	2.62	384	3.04
	50대 이상	325	1.85	325	2.06	325	2.72	325	3.06
		F=3.835*		F=1.088		F=2.981*		F=0.477	
학력	고졸 이하	329	1.78	329	1.91	329	2.58	329	2.97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1.78	558	2.07	558	2.67	558	3.08
	대학원 재학 이상	117	1.89	117	2.19	117	2.64	117	3.04
		F=1.595		F=8.314***		F=1.239		F=1.696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03	1.76	203	1.86	203	2.52	203	2.94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95	1.87	395	2.06	395	2.65	395	3.03
	400만원 이상	406	1.74	406	2.09	406	2.69	406	3.10
		F=4.560*		F=7.830***		F=3.062*		F=2.690	

* : p<0.05, ** : p<0.01, *** : p<0.001

나. 법에 대한 신뢰감

‘법에 대한 신뢰감’은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①법은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②현실에서는 법보다 주먹이나 돈의 힘이 더 세다, ③재판의 결과가 불공정한 경우도 많이 있다, ④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⑤법은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가 포함된다. 법에 대한 신뢰감이 북한 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에,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그리고 일반 국민의 하위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표 5-7〉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법에 대한 신뢰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값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법에 대한 신뢰감에 대한 5개 문항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평균값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며, 1개 문항(③재판의 결과가 불공정한 경우도 많이 있다)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4개 문항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평균값의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감은 앞에서 살펴본 ‘법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법에 대한 친밀감’보다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 1개 문항을 제외하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감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표 5-7〉 법에 대한 신뢰감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	t
① 법은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북한이탈주민	800	3.04	0.363
	일반 국민	1004	3.01	
② 현실에서는 법보다 주머니나 돈의 힘이 더 세다.(역)	북한이탈주민	799	2.64	1.737
	일반 국민	1004	2.50	
③ 재판의 결과가 불공정한 경우도 많이 있다.(역)	북한이탈주민	798	2.34	2.441*
	일반 국민	1004	2.20	
④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799	3.32	-0.424
	일반 국민	1004	3.34	
⑤ 법은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북한이탈주민	800	3.44	0.444
	일반 국민	1004	3.42	

* 각 문항별로 응답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대체로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을 부여하고, (역)은 이를 반대반향으로 재부호한 것을 의미함.

* : p<0.05, ** : p<0.01, *** : p<0.001

2)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법에 대한 신뢰감의 하위집단별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5-8〉에서와 같이, 무엇보다도 한국거주기간별 하위집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가 눈에 띈다. 다섯 개의 문항에서 모두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중에서 ③과 ⑤번 문항은 하위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법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며, 하위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표 5-8〉 법에 대한 신뢰감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법은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② 현실에서는 법보다 주먹이나 돈의 힘이 더 세다.(역)		③ 재판의 결과가 불공정한 경우도 많이 있다.(역)		④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⑤ 법은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3.04	222	2.64	222	2.34	222	3.32	222	3.44
	여자	578	3.01	577	2.50	577	2.20	577	3.34	578	3.42
		t=0.363		t=1.737		t=2.441*		t=-0.424		t=0.444	
연령	20대 이하	155	2.94	155	2.58	155	2.23	154	3.21	155	3.36
	30대	217	2.88	216	2.41	217	2.23	217	3.33	217	3.38
	40대	239	3.02	239	2.54	239	2.23	239	3.33	239	3.41
	50대 이상	189	3.22	189	2.65	187	2.29	189	3.46	189	3.55
		F=4.679**		F=2.221		F=0.336		F=3.461*		F=2.868*	
학력	중졸 이하	114	3.11	114	2.56	114	2.27	114	3.47	114	3.42
	고졸이하	441	2.95	441	2.56	439	2.26	441	3.29	441	3.41
	대학 재학 이상	244	3.09	243	2.49	244	2.20	243	3.35	244	3.45
		F=2.629		F=0.390		F=0.576		F=3.064*		F=0.212	
기초 생활 수급 여부	수급 대상자	357	3.05	356	2.51	357	2.19	357	3.34	357	3.38
	대상자 아님	443	2.99	443	2.56	441	2.29	442	3.33	443	3.46
		t=0.834		t=-0.696		t=-1.881		t=0.083		t=-1.436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42	3.03	441	2.51	442	2.20	441	3.36	442	3.37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9	3.01	289	2.56	287	2.30	289	3.31	289	3.48
	300만원 이상	58	2.90	58	2.59	58	2.29	58	3.28	58	3.50
		F=0.478		F=0.246		F=1.894		F=0.776		F=2.669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71	3.18	71	2.66	71	2.48	71	3.41	71	3.41
	2년 이상~5년 미만	144	3.14	144	2.71	144	2.33	144	3.39	144	3.58
	5년 이상~10년 미만	315	2.98	314	2.49	313	2.23	314	3.31	315	3.40
	10년 이상	270	2.95	270	2.47	270	2.15	270	3.33	270	3.38
		F=2.102		F=2.534		F=4.674**		F=0.750		F=2.873*	

* : p<0.05, ** : p<0.01, *** : p<0.001

3)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표 5-9>에서와 같이,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 수록 법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자는 여자보다 ②와 ⑤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별 집단에서는 20대를 제외하면, ①과 ⑤문항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법에 대한 신뢰감이 높게 나타나면,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표 5-9> 법에 대한 신뢰감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법은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② 현실에서는 법보다 주먹이나 돈의 힘이 더 세다. (역)		③ 재판의 결과가 불공정한 경우도 많이 있다. (역)		④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⑤ 법은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2.57	422	2.00	422	1.86	422	2.88	422	3.04
	여자	582	2.53	582	1.89	582	1.81	582	2.93	582	2.94
		t=0.578		t=2.207*		t=1.297		t=-1.278		t=2.489*	
연령	20대 이하	138	2.47	138	1.88	138	1.70	138	2.88	138	2.95
	30대	157	2.39	157	1.94	157	1.83	157	2.83	157	2.89
	40대	384	2.47	384	1.93	384	1.85	384	2.89	384	2.96
	50대 이상	325	2.74	325	1.97	325	1.86	325	2.98	325	3.07
		F=6.465***		F=0.411		F=2.073		F=2.018		F=3.305*	
학력	고졸 이하	329	2.49	329	1.92	329	1.81	329	2.94	329	2.98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2.57	558	1.95	558	1.83	558	2.91	558	2.99
	대학원 재학 이상	117	2.56	117	1.96	117	1.92	117	2.84	117	2.96
		F=0.669		F=0.136		F=1.338		F=0.886		F=0.142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03	2.52	203	1.99	203	1.80	203	2.88	203	2.93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95	2.54	395	1.95	395	1.86	395	2.90	395	2.97
	400만원 이상	406	2.56	406	1.90	406	1.82	406	2.94	406	3.02
		F=0.114		F=0.776		F=0.614		F=0.538		F=1.469	

* : p<0.05, ** : p<0.01, *** : p<0.001

다.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에 속하는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①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법을 어길 수 있다, ②법을 어기면

서도 잘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③도둑질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죄가 아니다, ④부자들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는 문항이 포함된다.

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에 해당되는 4개 문항의 평균값은 일반 국민의 경우에 ‘②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는 문항이 2.83점으로 3.0점보다 낮고, 나머지 문항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 3.0점을 넘어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 대체로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의 각 문항별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①과 ②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국민보다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법을 어길 수 있다거나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낮다는 것이다. 다른 2개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0〉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법을 어길 수 있다.(역)	북한이탈주민	799	3.32	3.036**
	일반 국민	1004	3.20	
②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역)	북한이탈주민	800	3.02	4.024***
	일반 국민	1004	2.83	
③ 도둑질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죄가 아니다.(역)	북한이탈주민	800	3.57	-0.825
	일반 국민	1004	3.60	
④ 부자들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역)	북한이탈주민	800	3.27	-0.187
	일반 국민	1004	3.28	

* : $p<0.05$, ** : $p<0.01$, *** : $p<0.001$

2)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의 <표 5-11>과 같이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하위집단 요인은 학력별 하위 집단이다. ①, ③, ④문항에서는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평균값이 높아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다른 하위집단 요인에서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③도둑질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죄가 아니다’는 문항에서는 학력별 집단 이외에도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여부별, 월평균가구소득별 하위집단에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낮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집단에서,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다. 즉 나이가 젊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도둑질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죄가 아니다’는 생각에 대하여 보다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

<표 5-11>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법을 어길 수 있다.		② 법을 어기면 서도 잘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③ 도둑질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죄가 아니다.		④ 부자들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3.40	222	3.12	222	3.65	222	3.36
	여자	577	3.29	578	2.98	578	3.53	578	3.24
		t=1.667		t=1.801		t=2.181*		t=1.822	
연령	20대 이하	155	3.41	155	3.07	155	3.73	155	3.33
	30대	217	3.31	217	2.94	217	3.63	217	3.28
	40대	239	3.28	239	3.03	239	3.50	239	3.27
	50대 이상	188	3.31	189	3.06	189	3.44	189	3.22
		F=0.742		F=0.814		F=4.650**		F=0.462	
학력	중졸 이하	114	3.10	114	3.04	114	3.34	114	3.10
	고졸 이하	440	3.29	441	2.97	441	3.57	441	3.24
	대학 재학 이상	244	3.48	244	3.10	244	3.66	244	3.41
		F=8.728***		F=1.439		F=6.176**		F=5.783**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356	3.25	357	2.97	357	3.47	357	3.22

		①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법을 어길 수 있다.		② 법을 어기면 서도 잘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③ 도둑질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죄가 아니다.		④ 부자들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수급 여부	대상자 아님	443	3.37	443	3.06	443	3.64	443	3.31
		t=-1.929		t=-1.387		t=-2.909**		t=-1.45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41	3.28	442	3.01	442	3.50	442	3.19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9	3.35	289	3.01	289	3.66	289	3.36
	300만원 이상	58	3.38	58	3.07	58	3.67	58	3.41
		F=0.731		F=0.109		F=4.389*		F=4.546*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71	3.35	71	3.13	71	3.66	71	3.35
	2년 이상~5년 미만	143	3.36	144	3.05	144	3.68	144	3.32
	5년 이상~10년 미만	315	3.28	315	2.98	315	3.50	315	3.18
	10년 이상	270	3.34	270	3.02	270	3.55	270	3.33
		F=0.387		F=0.539		F=2.003		F=1.918	

* : p<0.05, ** : p<0.01, *** : p<0.001

3)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에 있어서 <표 5-12>에서와 같이 성별, 연령별 하위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4개 문항에서 모두 여자의 평균값이 남자보다 높으므로 여자가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 하위집단에서는 ①, ②, ④의 3개 문항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다. 20대 이하는 제외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값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요컨대, 일반 국민은 여자가 남자보다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12〉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법을 어길 수 있다.		② 법을 어기면 서도 잘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③ 도둑질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죄가 아니다.		④ 부자들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3.11	422	2.74	422	3.48	422	3.21
	여자	582	3.26	582	2.90	582	3.68	582	3.33
		t=-3.102**		t=-2.469*		t=-4.244***		t=-2.292*	
연령	20대 이하	138	3.15	138	2.71	138	3.57	138	3.13
	30대	157	3.05	157	2.66	157	3.51	157	3.11
	40대	384	3.22	384	2.88	384	3.62	384	3.32
	50대 이상	325	3.27	325	2.91	325	3.62	325	3.38
		F=3.222*		F=3.353*		F=1.134		F=5.592**	
학력	고졸 이하	329	3.17	329	2.76	329	3.60	329	3.25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3.23	558	2.88	558	3.60	558	3.30
	대학원 재학 이상	117	3.14	117	2.82	117	3.54	117	3.26
		F=1.066		F=1.352		F=0.451		F=0.427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03	3.16	203	2.72	203	3.53	203	3.18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95	3.21	395	2.84	395	3.55	395	3.27
	400만원 이상	406	3.22	406	2.88	406	3.67	406	3.34
		F=0.447		F=1.785		F=4.298*		F=2.749	

* : p<0.05, ** : p<0.01, *** : p<0.001

3.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 : 법 사용의사

이 연구에서는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으로 법적 분쟁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의미하는 ‘법 사용의사’,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법적 효능감’을 포함시켰는데,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법적 효능감’을 위한 개발한 4개의 문항 사이에 신뢰도(크롬바흐 α)가 0.30으로 0.60보다 낮아 ‘법적 효능감’이라는 하위 영역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의 하위 지표로 ‘법 사용의사’만을 제시한다.

‘법 사용의사’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①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할 것이다, ②범죄현장을 목격하면 신고할 것이다, ③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법률전문가를 찾아갈 것이다, ④친구나 이웃이 분쟁에 휘말리면 법적 절차를 밟도록 권유할 것이다’는 문항이 포함된다. ‘법 사용의사’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사이에, 그리고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비교

〈표 5-13〉에서 ‘법 사용의사’에 포함된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 평균값이 3.0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 ‘법 사용의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개의 문항에서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은 일반 국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법 사용의사’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법적 분쟁상황에 직면하면 법에 호소하고, 범죄현장의 목격시 신고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의사가 있으며, 주변사람들에게도 법적 절차를 권유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3〉 법 사용의사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796	3.48	10.335***
	일반 국민	1004	3.18	
② 범죄현장을 목격하면 신고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800	3.54	10.963***
	일반 국민	1004	3.23	
③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법률전문가를 찾아갈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800	3.48	9.402***
	일반 국민	1004	3.20	
④ 친구나 이웃이 분쟁에 휘말리면 법적 절차를 밟도록 권유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799	3.38	7.070***
	일반 국민	1004	3.17	

* : $p<0.05$, ** : $p<0.01$, *** : $p<0.001$

나.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법 사용의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5-14>에서와 같이 성별, 한국거주기간별 하위집단 사이에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4개의 문항에서 모두 여자의 평균값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①과 ③문항의 경우에는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또한 한국거주기간별 하위집단에서도 ‘법 사용의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모든 문항에서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법 사용의사’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는데, 4개 문항 중에서 3개 문항(①, ②, ④)에서는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하게 나타난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하거나, 범죄현장을 목격하면 신고하거나, 친구나 이웃이 분쟁에 휘말리면 법적 절차를 밟도록 권유하겠다는 생각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법적 분쟁상황에서 충분하게 법률서비스 받지 못했다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표 5-14> 법 사용의사의 평균 비교 : 북한이탈주민 하위집단

		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할 것이다.		② 범죄현장을 목격하면 신고할 것이다.		③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법률전문가를 찾아갈 것이다.		④ 친구나 이웃이 분쟁에 휘말리면 법적 절차를 밟도록 권유할 것이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222	3.41	222	3.50	222	3.41	221	3.32
	여자	574	3.51	578	3.56	578	3.51	578	3.40
		t=-2.079*		t=-1.377		t=-2.046*		t=-1.716	
연령	20대 이하	155	3.53	155	3.58	155	3.49	155	3.41
	30대	216	3.47	217	3.58	217	3.45	216	3.44
	40대	237	3.45	239	3.50	239	3.49	239	3.35
	50대 이상	188	3.49	189	3.51	189	3.50	189	3.32
		F=0.585		F=1.218		F=0.238		F=1.493	
학력	중졸 이하	113	3.46	114	3.53	114	3.48	113	3.34
	고졸 이하	439	3.49	441	3.53	441	3.49	441	3.38
	대학 재학 이상	243	3.47	244	3.57	244	3.46	244	3.40
		F=0.259		F=0.374		F=0.261		F=0.406	

		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할 것이다.		② 범죄현장을 목격하면 신고할 것이다.		③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법률전문가를 찾아갈 것이다.		④ 친구나 이웃이 분쟁에 휘말리면 법적 절차를 밟도록 권유할 것이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기초 생활 수급 여부	수급 대상자	356	3.50	357	3.53	357	3.47	357	3.36
	대상자 아님	440	3.47	443	3.55	443	3.49	442	3.39
		t=0.675		t=-0.600		t=-0.442		t=-0.71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41	3.48	442	3.53	442	3.48	442	3.36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6	3.49	289	3.56	289	3.47	288	3.41
	300만원 이상	58	3.41	58	3.52	58	3.55	58	3.36
		F=0.383		F=0.312		F=0.413		F=0.479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71	3.59	71	3.61	71	3.54	71	3.45
	2년 이상~5년 미만	144	3.56	144	3.66	144	3.55	144	3.49
	5년 이상~10년 미만	312	3.50	315	3.53	315	3.46	314	3.38
	10년 이상	269	3.39	270	3.47	270	3.45	270	3.30
		F=3.502*		F=4.025**		F=1.060		F=3.065*	

* : $p<0.05$, ** : $p<0.01$, *** : $p<0.001$

다.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비교

일반 국민의 ‘법 사용의사’는 <표 5-15>에서와 같이, 일반 국민의 연령별, 월평균가구소득별 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 국민의 연령별 집단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값이 연령에 따른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단지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표 5-15> 법 사용의사의 평균 비교 : 일반 국민 하위집단

		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할 것이다.		② 범죄현장을 목격하면 신고할 것이다.		③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법률전문가를 찾아갈 것이다.		④ 친구나 이웃이 분쟁에 휘말리면 법적 절차를 밟도록 권유할 것이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성별	남자	422	3.15	422	3.24	422	3.15	422	3.14
	여자	582	3.20	582	3.22	582	3.24	582	3.19
		t=-1.282		t=0.485		t=-2.065*		t=-1.233	
연령	20대 이하	138	3.17	138	3.22	138	3.15	138	3.11
	30대	157	3.10	157	3.10	157	3.07	157	3.04

		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할 것이다.		② 범죄현장을 목격하면 신고할 것이다.		③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법률전문가를 찾아갈 것이다.		④ 친구나 이웃이 분쟁에 휘말리면 법적 절차를 밟도록 권유할 것이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40대	384	3.24	384	3.28	384	3.27	384	3.25
	50대 이상	325	3.15	325	3.23	325	3.21	325	3.16
		F=2.237		F=2.984*		F=3.717*		F=4.708**	
학력	고졸 이하	329	3.12	329	3.17	329	3.14	329	3.09
	대학 재학 또는 졸업	558	3.21	558	3.25	558	3.22	558	3.21
	대학원 재학 이상	117	3.23	117	3.28	117	3.26	117	3.18
		F=2.580		F=2.017		F=2.108		F=3.872*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03	3.11	203	3.16	203	3.09	203	3.14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95	3.15	395	3.19	395	3.15	395	3.10
	400만원 이상	406	3.24	406	3.30	406	3.31	406	3.24
		F=3.093*		F=4.415*		F=10.397***		F=4.780**	

* : p<0.05, ** : p<0.01, *** : p<0.001

그런데 일반 국민의 월평균가구소득별 하위집단에서는 평균값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면서 집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다. 3개의 문항(①, ②, ③)에서 일반 국민은 월평균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법 사용의사’가 높아진다. 다만 ④문항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의 ‘법 사용의사’가 가장 높았지만, 가구소득이 중간인 집단의 평균값이 가구소득이 하위인 집단보다 약간 낮은 평균값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은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법 사용의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하위집단 간 ‘법 사용의사’의 차이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거주기간 요인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데 비하여 일반 국민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남한법과 북한법의 차이

북한이탈주민이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갖고 있는 북한과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법의 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준법 및 법 관련 생활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로 한다.

1. 법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이 남한과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경험을 통해 내면화한 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표 5-16>에서와 같이, 남한법과 북한법 간에 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6>을 보면 5개의 모든 문항에서 북한에 살 때와 남한에 살 때 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①법은 나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문항은 북한에 살 때와 남한에 살 때의 평균값의 차이가 가장 크다. 북한에 살 때의 평균값이 1.81점인데, 이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살 때 ‘법은 나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2점)에 응답하여 북한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비교하여 남한에 살 때는 평균값이 3.27점으로서 대부분이 ‘대체로 그렇다’(3점), 또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했다. ‘②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와 ‘③법은 잘 알아야 살아가는 데 편리하다’는 문항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표 5-16> 남·북한법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의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구분	사례수	평균 [※]	t
① 법은 나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준다.	북한에서 살 때	794	1.81	-36.365***
	남한에서 살 때	794	3.27	
②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북한에서 살 때	793	1.75	-34.070***
	남한에서 살 때	793	3.13	
③ 법은 잘 알아야 살아가는 데 편리하다.	북한에서 살 때	789	2.34	-24.994***
	남한에서 살 때	789	3.43	

설문문항	구분	사례수	평균 [※]	t
④ 법은 나의 일상생활과 별 상관이 없다.	북한에서 살 때	791	2.28	3.857***
	남한에서 살 때	791	2.08	
⑤ 헌법보다 높은 권력이 있다.	북한에서 살 때	791	2.94	15.117***
	남한에서 살 때	791	2.10	

※ 각 문항별로 응답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대체로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을 부여함.

* : $p<0.05$, ** : $p<0.01$, *** : $p<0.001$

‘④법은 나의 일상생활과 별 상관이 없다’는 문항에서는 남한에 살 때의 평균값이 더 낮은데, 이는 남한에서 살 때 북한에서보다 ‘법은 나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⑤헌법보다 높은 권력이 있다’는 문항에서는 북에서 살 때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체제에서 헌법 위에 당과 절대권력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남한에 살 때 역시 평균값이 북한에 살 때보다 낮은 점수이기는 하지만, 2.10점인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는 남한사회 역시 헌법 위에 절대권력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과 북한에서의 법생활 경험을 토대로 두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법이 북한법과 비하여 더 많이 ‘나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주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법을 알아야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나의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으며, 헌법보다 높은 권력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2. 준법 및 법 관련 생활태도

〈표 5-17〉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과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준법 및 법 관련 생활태도를 비교한 것이다. 4개의 문항 모두 북한에서의 생활과 남한에서의 생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살면서 ‘법을 지키려고 더 노력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며, 법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고자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살면서 북한에 살 때에 비하여 ‘법이라는 말을 들어도 두려운 생각을 덜 하고 있다’.

〈표 5-17〉 남·북한에서의 법 준수 및 법 생활 관련 태도 차이의 평균비교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나는 법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북한에서 살 때	790	2.76	-21.388***
	남한에서 살 때	790	3.60	
② 나는 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운 생각이 든다.	북한에서 살 때	793	2.55	8.454***
	남한에서 살 때	793	2.15	
③ 나는 법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여 불편하다.	북한에서 살 때	793	2.24	-9.749***
	남한에서 살 때	793	2.63	
⑤ 나는 법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고자 노력한다.	북한에서 살 때	794	2.12	-21.098***
	남한에서 살 때	794	2.95	

* : p<0.05, ** : p<0.01, *** : p<0.001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보다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준법생활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법지식의 부족으로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면서 법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앞의 〈표 5-16〉에서 확인한 것처럼 북한법에 비하여 남한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생활을 하면서 법이라는 말을 들어도 두려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1.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정도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어려움의 하나로서 범죄피해율이 높다거나 범죄행위 발생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곤 한다. 설문조사자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의 경험 정도와 그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범죄피해와 범법행위 경험은 성별로 경험비율에 차이가 많고,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성별 비율이 크게 다르므로⁹²⁾ 남자집단과 여자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한다.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남자 집단 비교

〈표 5-18〉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남자들이 1년 동안 경험했던 범죄피해 경험정도, 범법행위로 인해 경찰서에 간 경험 정도, 범법행위로 인한 재판 경험 정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 정도 등을 비교한 것이다.

1년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남자 222명 중에서 15.3%(34명)가,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남자 422명 중에서 19.7%(83명)이다. 범법행위로 인해 경찰서에 갔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남자가 20.3%(45명), 일반 국민 남자가 17.3%(73명)이고, 재판을 받았던 경험은 북한이탈주민 남자가 8.6%(19명), 일반 국민 남자가 8.1%(34명)이다. 경찰서에 가거나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남자가 15.3%이고 일반 국민 남자가 26.9%(139명)이다.

요컨대, 범죄피해경험은 일반 국민이 더 높고, 범법행위로 인해 경찰서를 가거나 재판을 받았던 경험은 북한이탈주민이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직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에서는 일반 국민이 북한이탈주민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범죄피해 경험, 범법행위로 인한 경찰서 출두, 재판 경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단지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에 대한 경험’은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국민보다 현저하게 낮다. 일반 국민이 북한이탈주민보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 많았다는 것이다.

〈표 5-18〉 남자 집단의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정도

설문문항	집단	빈도 (%)	경험 있음 (%)	경험 없음 (%)	χ^2
① 범죄피해를 경험함	북한이탈주민	222 (100.0)	34 (15.3)	188 (84.7)	1.854
	일반 국민	422 (100.0)	83 (19.7)	339 (80.3)	

92) 일반 국민의 성비는 5:5 정도이지만,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여자는 70%를 상회하고, 이 연구의 설문조사대상자 역시 여자의 비율이 72% 정도를 차지한다.

설문문항	집단	빈도 (%)	경험 있음 (%)	경험 없음 (%)	χ^2
	합 계	644 (100.0)	117 (18.2)	527 (81.8)	
② 내가 범법행위를 해서 경찰서에 갔던 경험이 있음	북한이탈주민	222 (100.0)	45 (20.3)	177 (79.7)	0.858
	일반 국민	422 (100.0)	73 (17.3)	349 (82.7)	
	합 계	644 (100.0)	118 (18.3)	526 (81.7)	
③ 내가 범법행위를 해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음	북한이탈주민	222 (100.0)	19 (8.6)	203 (91.4)	0.048
	일반 국민	422 (100.0)	34 (8.1)	388 (91.9)	
	합 계	644 (100.0)	53 (8.2)	591 (91.8)	
④ 경찰서에 가거나 재판을 받지 않았지만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음	북한이탈주민	222 (100.0)	34 (15.3)	188 (84.7)	22.996***
	일반 국민	422 (100.0)	139 (32.9)	283 (67.1)	
	합 계	644 (100.0)	173 (26.9)	471 (73.1)	

* : $p < 0.05$, ** : $p < 0.01$, *** : $p < 0.001$

나.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여자 집단 비교

여자 집단은 앞서 살펴본 남자집단과 비교하여 범죄피해 경험 정도, 범법행위로 인한 재판 경험 정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 정도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집단 모두 경험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여자 집단은 두 집단 사이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 정도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경험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 여자의 범죄피해 경험정도 일반 국민 여자에 비하여 40%수준에 머무른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도 40%정도를 낮다. 이외에 범법행위로 인해 경찰서에 갔던 경험비율은 비슷하고 재판을 받은 경험은 약간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표 5-19〉 여자집단의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비율

설문문항	집단	빈도 (%)	경험 있음 (%)	경험 없음 (%)	χ^2
① 범죄피해를 경험함	북한이탈주민	576 (100.0)	33 (5.7)	543 (94.3)	23.379***
	일반 국민	582 (100.0)	83 (14.3)	499 (85.7)	
	합 계	1158 (100.0)	116 (10.0)	1042 (90.0)	
② 내가 범법행위를 해서 경찰서에 갔던 경험이 있음	북한이탈주민	576 (100.0)	27 (4.7)	549 (95.3)	0.010
	일반 국민	582 (100.0)	28 (4.8)	554 (95.2)	
	합 계	1158 (100.0)	55 (4.7)	1103 (95.3)	
③ 내가 범법행위를 해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 음	북한이탈주민	575 (100.0)	18 (3.1)	557 (96.9)	0.565
	일반 국민	582 (100.0)	14 (2.4)	568 (97.6)	
	합 계	1157 (100.0)	32 (2.8)	1125 (97.2)	
④ 경찰서에 가거나 재판 을 받지는 않았지만 법 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 황이 있었음	북한이탈주민	575 (100.0)	87 (9.9)	488 (90.1)	20.704***
	일반 국민	582 (100.0)	151 (25.1)	431 (74.9)	
	합 계	1157 (100.0)	238 (19.9)	919 (80.1)	

* : $p<0.05$, ** : $p<0.01$, *** : $p<0.001$

요컨대, 북한이탈주민은 남자와 여자 모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현저하게 낮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생활과 일상생활이 제한된 관계 내에서 이루지고 활동성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활동영역이 협소하고 새로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 상황에 노출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여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 여자보다 범죄피해 경험비율은 현저하게 낮았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 여자들이 직업이 없거나 제한된

거주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한정된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유형 비교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했던 범죄피해 유형 혹은 범법행위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일반 국민이 경험하는 범죄피해 유형이나 범법행위 유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남자 집단 비교

1) 범죄피해 유형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남자 집단에서 경험하는 범죄피해 유형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5-20>과 같다. 조사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남자 중에서 15.3%(34명)이 1년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들 중에서 33명이 범죄피해 유형에 대해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남자가 경험한 범죄피해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는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로서 42.4%(14명)이며, 두 번째로는 폭행 및 상해가 24.2%(8명), 그 다음으로 교통법규 관련이 18.2%(6명), 계약 관련이 12.1%(4명), 개인정보 관련(명의도용 등)이 6.1%(2명), 나머지 가정폭력과 마약 관련 범죄가 각각 1명(3.1%), 기타가 2명(6.1%)을 차지한다.

<표 5-20> 남자 집단의 범죄피해의 유형 비교

순위	북한이탈주민 남자		순위	일반 국민 남자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1	경제범죄 (사기/다단계 등)	14(42.4)	1	교통법규	33(39.8)
2	폭행 및 상해	8(24.2)	2	계약 관련	22(26.5)
3	교통법규	6(18.2)	3	경제범죄 (사기/다단계 등)	21(25.3)
4	계약 관련	4(12.1)	4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14(16.9)

순위	북한이탈주민 남자		순위	일반 국민 남자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5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2(6.1)	5	세금 관련 (관세 등)	14(16.9)
6	가정폭력	1(3.0)	6	폭행 및 상해	10(12.0)
7	마약 관련	1(3.0)	7	국가지원금 관련	7(8.4)
8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	8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5(6.0)
9	국가지원금 관련	-	9	가정폭력	2(2.4)
10	국가보안법 관련	-	10	국가보안법 관련	2(2.4)
11	외환 관리	-	11	외환 관리	2(2.4)
12	세금 관련 (관세 등)	-	12	마약 관련	2(2.4)
13	성매매	-	13	성매매	2(2.4)
14	기 타	2 (6.1)	14	기 타	2(2.4)
	사례수	33명		사례수	83명

〈표 5-20〉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유형과 비교하여 일반 국민의 범죄피해유형은 훨씬 다양한 유형에 걸쳐 있고,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보고한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 남자 중에서 범죄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범법행위 유형은 ‘교통법규 관련’으로 전체의39.8%(33명)이 해당하며, 다음으로 계약 관련이 26.5%(22명),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가 25.3%(21명), 개인정보 관련과 세금 관련이 각각 16.9%(14명), 폭행 및 상해가 12.0%(10명), 국가지원금 관련이 8.4%(7명)이다. 이외에 일반 국민 남자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남자들이 보고하지 않은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가정폭력, 국가보안법 관련, 외환관리, 마약관련, 성매매 등 다양한 범법행위 유형이 보고되었다.

북한이탈주민 남자의 경우,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와 폭행 및 상해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데 비하여 일반 국민의 교통법규와 계약 관련, 개인정보, 세금 관련 범법행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 남자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비하여 다양한 범죄피해 유형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경찰서에 갔던 범법행위 유형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남자 집단에서 지난 1년 동안 경찰서에 갔던 범법행위 유형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5-21>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남자의 경우에 경찰서에 가게 된 범법행위 유형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법규로서 34.1%(15명)에 해당하며, 두 번째로는 폭행 및 상해가 31.8%(14명), 세 번째로는 경제범죄가 20.5%(9명)를 차지한다. 이외에 계약 관련,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가정폭력, 마약 관련, 성매매 등이 1명씩 차지한다.

일반 국민 남자의 경우에도 경찰서를 가게 된 범법행위 유형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법규 관련 범법행위로서 54.3%(38명)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가 21.4%(15명), 폭행 및 상해가 15.7%(11명), 계약 관련이 12.9%(9명)를 차지한다. 이외에 성매매, 개인정보 관련, 국가지원금 관련, 국가보안법 관련이 4명, 가정폭력이 2명이고,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마약 관련, 외환관리가 각각 1명씩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남자 집단이 경찰서에 갔던 범법행위 유형 분포를 비교해보면, 상위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유형은 교통법규, 폭행 및 상해, 경제 범죄로 두 집단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폭행 및 상해의 비율은 북한이탈주민 남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또한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범법행위 유형이 북한이탈주민에 비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범죄피해 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생활이나 생활영역 등 활동영역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5-21> 남자집단의 경찰서에 갔던 범법행위의 유형 비교

순위	북한이탈주민 남자		순위	일반 국민 남자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1	교통법규	15 (34.1)	1	교통법규	38 (54.3)
2	폭행 및 상해	14 (31.8)	2	경제범죄 (사기/ 다단계 등)	15 (21.4)
3	경제범죄 (사기/다단계 등)	9 (20.5)	3	폭행 및 상해	11 (15.7)
4	계약 관련	1 (2.3)	4	계약 관련	9 (12.9)
5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1 (2.3)	5	성매매	4 (5.7)

순위	북한이탈주민 남자		순위	일반 국민 남자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6	가정폭력	1 (2.3)	6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4 (5.7)
7	마약 관련	1 (2.3)	7	국가지원금 관련	4 (5.7)
8	성매매	1 (2.3)	8	국가보안법 관련	4 (5.7)
9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	9	가정폭력	2 (2.9)
10	국가지원금 관련	-	10	이혼 등 가족관계 맞상속 관련	1 (1.4)
11	국가보안법 관련	-	11	마약 관련	1 (1.4)
12	외환 관리	-	12	외환 관리	1 (1.4)
13	기 타	1 (2.3)	13	기 타	4 (5.7)
	사례수	44명	14	사례수	70명

3) 재판을 받았던 범법행위 유형

다음의 <표 5-22>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남자 집단이 지난 1년 동안 재판을 받았던 범법행위 유형을 비교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남자 응답자 중에서 재판을 받았던 범법행위 유형을 보고한 인원은 19명인데, 재판을 받았던 범법행위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폭행 및 상해로서 47.4%(9명)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가 21.1%(4명), 교통법규가 15.8%(3명)이고, 가정폭력, 마약 관련, 성매매가 각각 1명씩 해당된다.

<표 5-22> 남자 집단의 재판받았던 범법행위의 유형

순위	북한이탈주민 남자		순위	일반 국민 남자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1	폭행 및 상해	9 (47.4)	1	교통법규	11 (32.4)
2	경제범죄 (사기/다단계 등)	4 (21.1)	2	계약 관련	7 (20.6)
3	교통법규	3 (15.8)	3	경제범죄 (사기/다단계 등)	6 (17.6)
4	가정폭력	1 (5.3)	4	성매매	4 (11.8)
5	마약 관련	1 (5.3)	5	폭행 및 상해	3 (8.8)
6	성매매	1 (5.3)	6	세금 관련 (관세 등)	3 (8.8)

순위	북한이탈주민 남자		순위	일반 국민 남자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7	계약 관련	-	7	가정폭력	2 (5.9)
8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	8	마약 관련	2 (5.9)
9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	9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2 (5.9)
10	국가지원금 관련	-	10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2 (5.9)
11	국가보안법 관련	-	11	국가보안법 관련	2 (5.9)
12	외환 관리	-	12	외환 관리	2 (5.9)
13	세금 관련(관세 등)	-	13	국가지원금 관련	2 (5.9)
14	기 타	-	14	기 타	2 (5.9)
	사례수	19명		사례수	34명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교통법규가 32.4%(11명), 계약 관련이 20.6%(7명),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가 17.6%(6명), 성매매가 11.8%(4명)이고, 나머지 유형은 10% 이하이다. 일반 국민 남자 중에서 폭행 및 상해로 재판을 받은 비율은 8.8%(3명)로 북한이탈주민의 47.4%(9명)와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남자는 폭행 및 상해, 경제범죄,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재판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84% 정도를 차지하여 주로 세 가지 범법행위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일반 국민은 재판을 받은 범법행위 유형이 다양한 유형에 걸쳐 있으며, 폭행 및 상해의 비율은 북한이탈주민에 비하여 낮고 교통법규나 계약 관련 범법행위는 월등히 높다.

4)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범법행위 유형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이 지난 1년 동안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범법행위 유형을 빈도가 높은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5-23>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남자의 경우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범법행위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법규로서 31.3%(10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범죄(사기, 다단계)가 25%(8명), 폭행 및 상해가 18.8%(6명)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외에 계약, 개인정보 관련, 마약 관련,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범법행위 유형으로 나타난다.

일반 국민 남자의 경우에는 계약 관련이 33.6%(4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교통법규가 23.6%(33명),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가 19.3%(27명), 세금 관련이 17.9%(25명), 개인정보 관련이 15.0%(21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일반 국민 남자 집단은 다양한 범법행위 유형으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남자 집단은 모두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범법행위 유형은 재판을 받았던 범법행위 유형에서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남자의 경우에 교통법규, 경제범죄, 폭행 및 상해는 두 유형분포에서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며, 일반 국민 남자는 계약관련, 교통법규, 경제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앞서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범법행위 유형이 훨씬 다양하다.

또한 <표 5-23>에서는 앞에서 경찰서를 갔던 경우나 재판을 받았던 경우와 비교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사례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민감성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5-23> 남자 집단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범법행위의 유형 비교

순위	북한이탈주민 남자		순위	일반 국민 남자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1	교통법규	10 (31.3)	1	계약 관련	47 (33.6)
2	경제범죄 (사기/다단계 등)	8 (25.0)	2	교통법규	33 (23.6)
3	폭행 및 상해	6 (18.8)	3	경제범죄 (사기/다단계 등)	27 (19.3)
4	계약 관련	2 (6.3)	4	세금 관련(관세 등)	25 (17.9)
5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2 (6.3)	5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21 (15.0)
6	마약 관련	2 (6.3)	6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11 (7.9)
7	가정폭력	1 (3.1)	7	폭행 및 상해	8 (5.7)
8	성매매	1 (3.1)	8	국가지원금 관련	6 (4.3)
9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	9	가정폭력	4 (2.9)

순위	북한이탈주민 남자		순위	일반 국민 남자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10	국가지원금 관련	-	10	성매매	4 (2.9)
11	국가보안법 관련	-	11	외환 관리	3 (2.1)
12	외환 관리	-	12	국가보안법 관련	2 (1.4)
13	세금 관련(관세 등)	-	13	마약 관련	1 (0.7)
14	기 타	1 (3.1)	14	기 타	2 (1.4)
	사례수	32명		사례수	140명

나.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여자 집단 비교

1) 범죄피해 유형

앞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여자 집단의 범죄피해 경험정도는 일반 국민 여자 집단이 북한이탈주민 여자 집단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두 집단의 범죄피해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5-24>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여자의 범죄피해 유형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자 집단은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 폭행 및 상해, 계약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반 국민 여자 집단은 개인정보 관련, 교통법규, 경제범죄, 폭행 및 상해, 가정폭력, 계약 관련,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등 범죄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4〉 여자 집단의 범죄피해의 유형 비교

순위	북한이탈주민 여자		순위	일반 국민 여자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1	경제범죄 (사기/다단계 등)	18 (39.4)	1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27 (32.5)
2	폭행 및 상해	7 (24.2)	2	교통법규	23 (27.7)
3	계약 관련	7 (21.2)	3	경제범죄 (사기/다단계 등)	22 (26.5)
4	가정폭력	1 (3.0)	4	폭행 및 상해	16 (19.3)
5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1 (3.0)	5	가정폭력	12 (14.5)
6	교통법규	2 (6.1)	6	계약 관련	12 (14.5)
7	국가지원금 관련	2 (6.1)	7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12 (14.5)

순위	북한이탈주민 여자		순위	일반 국민 여자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8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1 (3.0)	8	국가지원금 관련	7 (8.4)
9	세금 관련 (관세 등)	1 (3.0)	9	세금 관련 (관세 등)	3 (3.6)
10	마약 관련	-	10	마약 관련	2 (2.4)
11	성매매	-	11	성매매	2 (2.4)
12	기 타	2 (6.1)	12	기 타	3 (3.6)
	사례수	33명		사례수	83명

2) 경찰서에 갔던 범법행위 유형

북한이탈주민 여자 집단에서 지난 1년 동안 경찰서에 갔던 범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표 5-25>와 같이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가 23.1%(6명), 폭행 및 상해가 19.2%(5명), 국가지원금 관련과 교통법규가 각각 11.5%(3명)를 차지한다. 북한이탈주민 여자 집단은 남자 집단과 비교하여 ‘국가지원금 관련’ 범법행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여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 이와 관련한 불법수급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25>에서 일반 국민 여자 집단의 경우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법행위 유형은 폭행과 상해, 교통법규가 각각 25.9%(7명)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이 22.2%(6명), 계약 관련과 개인정보 관련이 각각 18.5%(5명)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국가지원금 관련, 가정폭력,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가 포함된다.

〈표 5-25〉 여자 집단의 경찰서에 갔던 범법행위의 유형 비교

순위	북한이탈주민 여자		순위	일반 국민 여자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1	경제범죄 (사기/다단계 등)	6 (23.1)	1	폭행 및 상해	7 (25.9)
2	폭행 및 상해	5 (19.2)	2	교통법규	7 (25.9)
3	국가지원금 관련	3 (11.5)	3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6 (22.2)
4	교통법규	3 (11.5)	4	계약 관련	5 (18.5)
5	계약 관련	2 (7.7)	5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5 (18.5)

순위	북한이탈주민 여자		순위	일반 국민 여자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6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2 (7.7)	6	국가지원금 관련	3 (11.1)
7	가정폭력	1 (3.8)	7	가정폭력	2 (7.4)
8	마약 관련	1 (3.8)	8	경제범죄 (사기/다단계 등)	1 (3.7)
9	성매매	1 (3.8)	9	성매매	1 (3.7)
10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	10	마약 관련	-
11	기 타	3 (11.5)	11	기 타	2 (7.4)
	사례수	26명		사례수	27명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여자 집단을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와 국가지원금 관련 범법행위로 인해 경찰서에 갔던 경험이 많은데 비하여, 일반 국민은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그리고 계약 및 개인정보 관련 범법행위의 비율이 높고 한 사람이 2번 이상 범법행위로 인해 경찰서에 간 경우가 많았다. 일반 국민 여자는 북한이탈주민 여자에 비하여 경찰서에 가게 되었던 범법행위 유형이 다양하며, 2회 이상 경찰서에 간 경우가 많다.

3) 재판을 받았던 범법행위 유형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자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범법행위로 인해 재판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북한이탈주민 575명 중 3.1%(18명)이며, 이들이 보고한 해당 범법행위 유형은 <표 5-26>과 같다. 범법행위로 재판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 여성 중에서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가 차지하는 비율로 33.3%(6명)로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이 22.1%(4명)이고, ‘계약 관련 범법행위’와 ‘폭행 및 상해’가 각각 11.1%(2명)을 차지한다. 이외에 국가지원금 관련, 세금 관련, 성매매가 1건씩 차지한다.

일반 국민 여자의 경우에는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582명 중에서 2.4%(14명)가 지난 1년 동안 범법행위로 인해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 했으며, 이들이 주로 범한 범법행위 유형을 보면,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과 ‘계약 관련’ 범법행위가 각각 28.6%(4명)으로 비율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폭행 및 상해, 계약 관련이 각각

21.4%(3명)를 차지한다.

일반 국민 여자 집단의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범법행위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14명)로서 북한이탈주민의 3.1%(18명)보다 낮았지만, 전체 범법행위 건수는 22건으로 북한이탈주민의 19건보다 많았다. 일반 국민 여자 중에는 1년에 2건 이상 재판을 받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26〉 여자 집단의 재판받았던 범법행위 유형 비교

순위	북한이탈주민 여자		순위	일반 국민 여자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1	경제범죄 (사기/다단계 등)	6 (33.3)	1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4 (28.6)
2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4 (22.2)	2	계약 관련	4 (28.6)
3	계약 관련	2 (11.1)	3	폭행 및 상해	3 (21.4)
4	폭행 및 상해	2 (11.1)	4	교통법규	3 (21.4)
5	국가지원금 관련	1 (5.6)	5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2 (14.3)
6	세금 관련 (관세 등)	1(5.6)	6	경제범죄 (사기/다단계 등)	1 (7.1)
7	성매매	1(5.6)	7	국가지원금 관련	1 (7.1)
8	가정폭력	-	8	세금 관련 (관세 등)	1 (7.1)
9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	9	가정폭력	1 (7.1)
10	교통법규	-	10	국가보안법 관련	1 (7.1)
11	국가보안법 관련	-	11	외환 관리	1 (7.1)
12	외환 관리	-	12	성매매	-
13	기 타	2(11.1)	13	기 타	-
	사례수	18명		사례수	14명

4)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범법행위 유형

북한이탈주민 여자 집단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범법행위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81명이 87건의 범법행위 유형을 보고하였다. 〈표 5-27〉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보고한 범법행위 유형은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가 22.2%(18명),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이 18.5%(15명), 폭행 및

상해가 14.8%(12명), 계약 관련이 11.1%(9명)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교통법규, 개인정보 관련, 국가지원금 관련, 세금 관련, 성매매가 포함된다.

〈표 5-27〉 여자집단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범법행위 유형 비교

순위	북한이탈주민 여자		순위	일반 국민 여자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범법행위 유형	빈도(평균)
1	경제범죄 (사기/다단계 등)	18 (22.2)	1	계약 관련	49 (39.1)
2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15 (18.5)	2	경제범죄 (사기/다단계 등)	31 (20.5)
3	폭행 및 상해	12 (14.8)	3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29 (19.2)
4	계약 관련	9 (11.1)	4	교통법규	26 (17.2)
5	가정폭력	7 (8.6)	5	세금 관련 (관세 등)	22 (14.6)
6	교통법규	7 (8.6)	6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21 (13.9)
7	개인정보 관련 (명의 도용 등)	4 (4.9)	7	폭행 및 상해	19 (12.6)
8	국가지원금 관련	3 (3.7)	8	가정폭력	15 (9.4)
9	세금 관련 (관세 등)	3 (3.7)	9	국가지원금 관련	9 (6.0)
10	성매매	1 (1.2)	10	외환 관리	4 (2.6)
11	국가보안법 관련	-	11	성매매	1 (0.7)
12	외환 관리	-	12	국가보안법 관련	1 (0.7)
13	마약 관련	-	13	마약 관련	1 (0.7)
14	기 타	8 (9.9)	14	기 타	6 (4.0)
	사례수	81명		사례수	151명

일반 국민 여자집단의 경우에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 다양한 범법행위 유형에 걸쳐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범법행위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계약 관련으로 39.1%(49명)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경제범죄가 20.5%(31명), 개인정보 관련이 19.2%(29명), 교통법규가 17.2%(26명), 세금 관련이 14.6%(22명),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이 13.9%(21명), 폭행 및 상해가 12.6%(19명)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국가지원금 관련, 외환 관리, 성매매, 국가보안법, 마약 관련 등이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범법행위

유형에 포함된다.

〈표 5-27〉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여자 집단은 일반 국민 여자집단과 비교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범법행위 유형도 몇 가지 유형에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여자 집단의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이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범법행위 유형의 순위에 차이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폭행 및 상해의 비율이 높고,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계약, 개인정보, 교통법규, 세금 관련 비율이 높다.

제4절 법률구조 및 법교육 경험

1. 법률구조 경험

북한이탈주민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는지, 누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는지 알아보고 일반 국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법률적 도움을 받은 정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법률적 도움을 받았는지 알아보면 다음의 〈표 5-28〉과 같다.

〈표 5-28〉 법률적 도움을 받은 정도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충분히 도움 받음 (%)	조금 도움 받음 (%)	전혀 도움 받지 못함 (%)	χ^2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은 정도	북한이탈주민	(121)	23.1	39.7	37.2	4.682
	일반 국민	(290)	16.6	50.7	32.8	
	합 계	(411)	18.5	47.4	34.1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설문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 응답자 797명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21명으로 15.1%를 차지한다. 해당 북한이탈주민이 어느 정도 법률적 도움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충분히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3.1%, 조금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9.7%,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37.2%이다. 이와 비교하여 일반 국민은 충분히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6.6%로 북한이탈주민보다 낮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8%로서 북한이탈주민보다 낮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률적 도움을 받은 정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법률적 도움의 제공자

〈표 5-29〉는 북한이탈주민이 법률적 도움을 받은 경로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법률적 도움의 제공자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할 수 있다. 법률적 도움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75명 중에서 40%(30명)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다른 경찰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1.3%(16명)이고, 변호사가 17.3%(13명), 법률구조공단이 10.7%(8명), 주변의 아는 사람이 8.0%(6명)이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법률적 도움을 받았던 195명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가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는데, 그 비율은 22.6%(44명)이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법률정보를 통한 도움이 22.1%(43명), 주변의 아는 사람이 17.9%(35명), 경찰이 13.3%(26명), 법률구조공단이 12.8%(25명)로 비율이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경로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신변보호담당관이나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60%이상으로 압도적이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경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법률정보를 찾아보거나 지인의 도움을 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과 대조를 보인다. 일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비하여 시민단체나 복지관 상담사 등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자본의 소유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인적 자본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주변의 지인을 통한 법률적 도움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29〉 법률적 도움 받은 경로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구분	관련 문항	집단	
		북한이탈주민 명(%)	일반 국민 명(%)
1	신변보호담당관	30 (40.0)	-
2	경찰(서)	16 (21.3)	26 (13.3)
3	변호사	13 (17.3)	44 (22.6)
4	법률구조공단	8 (10.7)	25 (12.8)
5	주변 아는 사람	6 (8.0)	35 (17.9)
6	인터넷 법률 정보	-	43 (22.1)
7	시민단체	-	6 (3.1)
8	복지관(상담사 등)	-	6 (3.1)
9	기타	2 (2.7)	10 (5.1)
	사례수	75명	195명

다.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인지 정도

다음의 <5-30>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인지 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32.1%는 법률구조공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일반 국민은 60.1%가 법률구조공단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의 법률구조를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역할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5-30〉 법률구조공단의 인지 여부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알고 있음(%)	알지 못함(%)	χ^2
법률구조공단의 인지 정도	북한이탈주민	797	32.1	67.9	139.025***
	일반 국민	1004	60.1	39.9	
	합 계	1801	47.7	52.3	

* : $p<0.05$, ** : $p<0.01$, *** : $p<0.001$

2. 법교육 경험과 필요성

북한이탈주민들이 법지식 및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주로 어디이며, 그동안 법교육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그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법교육에 대한 수요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법지식 및 법 관련 정보의 습득 경로

북한이탈주민이 법지식 및 법 관련 정보를 주로 습득하는 경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표 5-3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이 주로 접하는 법지식 습득 경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31〉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법지식의 주요 습득 경로가 ‘①TV등 방송매체(라디오, 신문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67.3%이고, 일반 국민은 58.9%로 8%정도 차이가 나며, 법지식의 주요 습득 경로가 ‘②인터넷(휴대폰, 컴퓨터)’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은 43.7%, 일반 국민은 70.8%로 27%정도 큰 차이를 보인다. 나머지 법지식의 주요 습득 경로로서 ‘가족’, ‘친구나 지인’, ‘직접 사고 경험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북한이탈주민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법지식 및 법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제한적이며 주로 ‘TV등 방송매체(라디오, 신문 포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하는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27%정도 낮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주변의 가족, 친구와 지인들도 법지식 및 법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는 일반 국민에 비하

여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이탈 주민에게 도움을 제공한 대상이 제한적이었던 점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표 5-31〉 법지식 습득 경로의 비율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명)	경험 있음 (%)	경험 없음 (%)	χ^2
① TV등 방송매체 (라디오, 신문 포함)	북한이탈주민	(798)	67.3	32.7	13.491***
	일반 국민	(1004)	58.9	41.1	
	합 계	(1802)	62.6	37.4	
② 인터넷 (휴대폰, 컴퓨터)	북한이탈주민	(798)	43.7	56.3	134.634***
	일반 국민	(1004)	70.8	29.2	
	합 계	(1802)	58.8	41.2	
③ 가족	북한이탈주민	(798)	9.1	90.9	40.761***
	일반 국민	(1004)	20.0	80.0	
	합 계	(1802)	15.2	84.8	
④ 친구나 지인	북한이탈주민	(798)	24.7	75.3	27.303***
	일반 국민	(1004)	36.2	63.8	
	합 계	(1802)	31.1	68.9	
⑤ 직접 사고 경험을 통 해서	북한이탈주민	(798)	9.4	90.6	15.429***
	일반 국민	(1004)	15.6	84.4	
	합 계	(1802)	12.9	87.1	
⑥ 거의 접하지 못함	북한이탈주민	(798)	7.3	92.7	0.228
	일반 국민	(1004)	7.9	92.1	
	합 계	(1802)	7.6	92.4	
⑦ 기타	북한이탈주민	(798)	3.9	96.1	6.542*
	일반 국민	(1004)	1.9	98.1	
	합 계	(1802)	2.8	97.2	

* : $p<0.05$, ** : $p<0.01$, *** : $p<0.001$

나. 법교육 경험과 법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

1) 법교육 경험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느 정도 법교육을 받았으며, 기존에 받은 법교육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은 하나원과 하나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의 일부로서 하나원 기본교육⁹³⁾의 일부로서 다루어지며, 그 다음 단계로는 지역 하나센터를 통하여 하나원을 출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지 전입 직후에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⁹⁴⁾의 일부로서 시행되고 있다.

〈표 5-32〉 하나원 기초교육 및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구 분	하나원 기초교육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육주제	세부내용
생활 법률	보험·금융사기 예방 사례교육 (2시간)	- 은행 이동점포 활용 - 금융사기(다단계) 예방을 위한 사례교육	생활 속 소비자 종합정보 (2시간)	- 올바른 물품구입요령 - 다단계 및 불법피라미드 피해사례 - 각종 계약시 주의사항
	준법교육 (2시간)	- 준법의식 제고 - 북한이탈주민에게 다발하는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예방을 위한 법률교육		
	법률피해 구제사례교육 (2시간)	- 북한이탈주민 권리구제를 위한 실무사례 교육 - 북한이탈주민이 자주 묻는 생활법률 사례교육(맞춤식 생활법률교육)	법률사례 상담 (2시간)	- 북한이탈주민의 질의를 통한 법률상담교육 - 북한 잔류 가족 송환 관련 - 대북송금 - 국가지원금

자료 : *통일부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교육기획과

** 통일부(2017).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매뉴. 48면; 통일부 정책지원과

〈표 5-33〉를 보면, 하나원 기초교육 중 법률교육은 6시간이고, 하나센터의 법률교육은 4시간이다. 법률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하나원 법교육의 경우 보험·금융사기 예방교육, 준법교육(북한이탈주민에게 다발하는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예방 법률교육), 법률피해 구제사례 교육이 각각 2시간씩이고, 지역사회 하나센터의 법교육에서는 생활 속 소비자 종합정보(다단계 및 불법피라미드 피해사례, 계약시 주의사항)가 2시간, 법률사례상담(북한 잔류가족 송환 관련, 대북송금, 국가지원금 등)이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93) 12주 406시간 교육으로서 연령대·성별 7개반(영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으로 운영되며 주로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 탐색, 초기 정착지원, 생애설계 프로그램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됨(통일부, 2017).

94) 2주(60시간) 교육(국회예산정책처, 2016: 7)

다음의 <표 5-32>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교육 경험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법교육은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국민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하나원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받고 있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22%정도는 법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하나센터 역시 지역사회 적응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활적응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는 법교육이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북한이탈주민 조사대상자의 58%가 법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매우 흥미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행 법(률)교육을 법(률)교육으로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5-33> 법(률)교육 경험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명)	경험 있음 (%)	경험 없음 (%)	χ^2
①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800)	78.4	21.6	-
②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799)	42.2	57.8	-
③ 학교 (대학 등)	북한이탈주민	(798)	19.3	80.7	50.996***
	일반 국민	(1004)	34.5	65.5	
	합 계	(1802)	27.7	72.3	
④ 지역사회 (지자체 등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	(798)	13.7	86.3	0.639
	일반 국민	(1004)	12.5	87.5	
	합 계	(1802)	13.0	87.0	
⑤ 직장	북한이탈주민	(798)	15.4	84.6	6.138*
	일반 국민	(1004)	19.9	80.1	
	합 계	(1802)	17.9	82.1	
⑥ 시민단체	북한이탈주민	(798)	9.5	90.5	3.293
	일반 국민	(1004)	7.2	92.8	
	합 계	(1802)	8.2	91.8	
⑦ 기타	북한이탈주민	(373)	5.9	94.1	0.704
	일반 국민	(1004)	4.8	95.2	
	합 계	(1377)	5.1	94.9	

* : $p < 0.05$, ** : $p < 0.01$, *** : $p < 0.001$

북한이탈주민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하나원이나 하나센터 이외에 일반 학교(대학 등), 지역사회, 직장,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법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대학에서의 법교육은 일반 국민의 경험 비율이 북한이탈주민보다 현저하게 높으며, 직장에서의 법교육도 일반 국민의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외에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의 법교육 경험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2) 법교육에 대한 효과 평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5-33>과 같다. 학교, 지역사회, 직장, 시민단체 등에서 경험했던 법교육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비교한 것인데, 학교, 지역사회, 직장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이 일반 국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 법교육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 법교육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의 법교육을 제외하고 다른 단체에서의 법교육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5-34〉 법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 비교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학교(대학 등)	북한이탈주민	156	2.95	4.146***
	일반 국민	346	2.67	
②지역사회(지자체 등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	108	2.94	1.114
	일반 국민	125	2.84	
③직장	북한이탈주민	121	2.93	1.206
	일반 국민	200	2.82	
④시민단체	북한이탈주민	74	2.81	-0.284
	일반 국민	72	2.85	
⑤기타	북한이탈주민	21	2.57	-1.313
	일반 국민	48	2.94	

* : $p<0.05$, ** : $p<0.01$, *** : $p<0.001$

다. 법교육 수요

설문조사에 응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상태에서 법교육이 제공된다면 법교육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5-35>와 같다. <표 5-35>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함께 하는 법교육보다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나센터에서 제공하는 법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러 다른 단체에서의 법교육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법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고,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사정상 받기 어렵다’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보다 하나센터에서의 법교육을 선호하며, 다른 단체에서의 법교육을 적극적으로 받고 싶다고 하는 의견이 절반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법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표 5-35> 법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명)	법률교육에 대한 수요			χ^2
			① 적극적으로 받을 것임 (%)	② 필요하지만 사정상 받기 어려움(%)	③ 법교육이 필요하지 않음(%)	
①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797)	58.0	29.4	12.7	128.028***
② 학교 (대학 등)	북한이탈주민	(790)	40.6	29.4	28.7	
	일반 국민	(1004)	42.0	48.6	9.4	
	합 계	(1794)	41.4	40.7	17.9	
③ 지역사회 (지자체 등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	(793)	45.6	30.1	24.2	116.479***
	일반 국민	(1004)	45.2	47.3	7.5	
	합 계	(1797)	45.4	39.7	14.9	
④ 직장	북한이탈주민	(790)	47.6	26.2	26.2	87.859***
	일반 국민	(1004)	45.2	43.1	11.7	
	합 계	(1794)	46.3	35.7	18.1	
⑤ 시민단체	북한이탈주민	(793)	41.9	30.1	28.0	108.853***
	일반 국민	(1004)	37.5	50.7	11.8	
	합 계	(1802)	39.5	41.6	18.9	
⑥ 기타	북한이탈주민	(391)	34.3	39.6	26.1	24.817***
	일반 국민	(1004)	21.4	47.8	30.8	
	합 계	(1395)	25.0	45.5	29.5	

* : p<0.05, ** : p<0.01, *** : p<0.001

제5절 소결 : 법의식과 법 관련 경험의 차이와 시사점

1. 법의식의 영역별 차이와 시사점

이 장에서는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의 구성요소로서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서적 영역에 해당하는 ‘법에 대한 친밀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그리고 행동적 영역의 구성요소인 ‘법 사용의사’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법의식의 영역별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의식 차이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 매우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4개의 문항 모두에서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법을 꼭 알아야 하고, 법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에 해당하는 ‘법에 대한 친밀감’ 역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높다. ‘법에 대한 친밀감’에 대한 4개 문항 중에서 2개 문항은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경찰을 보면 괜히 몸이 움츠러든다거나 법이 두렵다’는 문항에서 일반 국민과의 평균값 차이가 컸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찰에 대한 친밀감이 일반 국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대한 신뢰감’은 앞에서 살펴본 ‘법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법에 대한 친밀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개 문항만 두 집단 사이에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나머지 4개 문항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은 ‘법에 대한 신뢰감’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에 있어서도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으며,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은 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 사용의사’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다.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법적 분쟁상황에 직면하면 법에 호소하고, 범죄현장의 목격시 신고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가 더 있으며, 주변사람들에게도 법적 절차를 권유하고 싶어 한다.

법의식의 하위영역별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의식 수준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친밀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법 사용의사 모두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국민보다 법의식 수준이 높다. 상대적으로 법에 대한 신뢰감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법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인정하고 있으며, 법에 대해 더 친밀하게 생각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에서도 더욱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법적 상황에서 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더 강하게 갖고 있지만, 법에 대하여 신뢰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별 차이

1) 한국거주기간별 하위집단의 법지식 차이

법의식의 하위 영역별 분석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거주기간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법의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 모두에서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의식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매우 특기할만한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 오래 거주할수록 법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이 낮아지고, 법에 대한 친밀감과 법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지며, 법 사용의사도 낮아진다. 다만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는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이후 한국사회 정착 초기에 우리나라 법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긍정적인 인식이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약화되고, 법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이 약해지며, 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2) 성별, 연령별, 학력별 하위집단의 법지식 차이와 시사점

성별 집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법 사용의사’에서는 여자 집단이 남자보다 평균값이 높으며, ‘법에 대한 친밀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법에 대한 신뢰감’과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에서도 성별 집단에 따라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연령별 집단에서 법에 대한 친밀감은, 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법에 대한 신뢰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나이가 많을수록 법에 대한 이미지가 친근하지 않지만 법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법에 대한 신뢰감은 높아진다.

학력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법의식 영역은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에 대한 친밀감의 일부 문항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법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기초생활수급여부 또는 가구소득별 법지식의 차이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분석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수급여부 또는 가구소득별로 법의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특성과는 다르게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월평균가구소득 요인이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인식 차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차이를 드러내준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친밀감', '법 사용의사'가 높게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가구소득별 하위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은 (법에 대한 친밀감) '④경찰을 보면 괜히 몸이 움츠러든다'는 문항이 유일한다. 이 문항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평균값이 높으며,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가구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두려움이 낮고 경찰을 친밀하게 생각하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의 법과 남한의 법에 대한 인식 차이

가. 법과 국가의 동일시 및 체제에 대한 기대감

북한이탈주민은 남한과 북한에서의 법 관련 생활경험을 근거로 하여 두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법이 북한법과 비교하여 '나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주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법을 알아야 살아가는 데 편리하고, 나의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으며, 헌법보다 높은 권력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5-17〉 참조).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사회에서 내면화한 법의식을 분석한 연구(최봉대, 2011)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법’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국가차원의 도구’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생활을 통제하는 기관인 당, 국가보위부, 보안부, 검찰소, 재판소, 교화소, 구류장 등을 들고 있고, 이는 법이 인민들에게 보호, 보장기능으로서보다 처벌, 감시기능으로서 더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묻는 질문에 압도적 다수가 ‘김정일의 말씀과 지시’라고 응답함으로써 독특한 북한식 독재지배체제 내에서 법이 갖는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김정일의 말씀과 지시가 갖는 권위와 영향력이 법 이상으로 절대적이라는 것이다(최봉대, 2011:82).

또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보다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준법생활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법지식의 부족으로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면서 법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앞서 확인한

것처럼 북한의 법에 비하여 남한의 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표 5-17〉 참조) 남한에서는 생활을 하면서 법이라는 말을 들어도 상대적으로 덜 두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앞의 제4장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갖는 법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법을 국가(대한민국)와 동일시하고, 국가를 통한 자유와 복지에의 가능성을 희구(希求)하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들은 법을 북한과 사뭇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권력)와 동일시하면서, 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갖지만, 곧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일련의 실망이 법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 및 우리의 과제

동시에 최근 남한의 상황은 북한이탈주민의 그러한 기대에 썩 부응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인지적 영역인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영역인 ‘법에 대한 친밀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그리고 행동적 영역인 ‘법 사용의사’와 ‘법적 효능감’에 대한 수치가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법의식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이 보다 공고화되고 실질화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한국사회 자체의 지속적인 법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련의 법의식 조사결과는 한국에서도 법준수 정도가 매우 낮으며, 법집행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도 아주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 물론 북한사회와는 아주 다른 양태와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는 한국에서도 법지배의 실현 정도가 비교적 낮음을 나타내며 법의 지배를 위한 하부구조로서의 시민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통일사회의 모습은 남북한 주민 모두의 시민적 역량에 의해 가변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유념하고, 성찰적인 법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최봉대, 2011:89).

한편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성별과 한국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북한이탈주

민과는 다르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의 필요성, 법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 준법태도 및 법사용의사와 효능감에서 높아지는 것은 일반 국민은 국가(대한민국)와 법을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법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법의 실천성에 대한 기대를 이념적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법 관련 분쟁 경험 차이와 시사점

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정도

범죄피해와 범법행위 경험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을 구분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을 비교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남자는 지난 1년 동안의 범죄피해 경험, 범법행위로 인해 경찰서를 갔던 경험, 그리고 범법행위로 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일반 국민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해당 경험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 남자와 일반 국민 남자는 범죄피해 경험, 범법행위로 인한 경찰서 출두, 재판 경험이 비슷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고, 단지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에 대한 경험’에서는 일반 국민이 북한이탈주민보다 현저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국민 남자는 북한이탈주민 남자보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여자 집단의 경우에는 남자 집단과 비교하여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비율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 현저하게 낮다. 또한 여자 집단은 남자 집단과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북한이탈주민 여자의 경우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경험’에서도 일반 국민 여자보다 그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북한이탈주민 여자의 범죄피해 정도는 일반 국민 여자의 40%수준에 머문다. 또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경우도 일반 국민의 40%정도로 매우 낮다. 이외에 범법행위로 인해 경찰서에 갔던 경험이나 재판을 받은 경험은 북한이탈주민 여자와 일반 국민 여자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은 남자와 여자 모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한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생활과 일상생활이 제한된 관계 내에서 이루지고 활동성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생활세계의 활동영역이 협소하고 새로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 상황에 노출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여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 여자보다 범죄피해 경험 정도도 현저하게 낮았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 여자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고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정된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나.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의 주요 유형

1) 남자 집단의 차이

남자 집단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범죄피해 유형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범죄피해 유형은 훨씬 다양한 범법행위 유형에 걸쳐 있고,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보고한 비율도 높다. 북한이탈주민은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와 폭행 및 상해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데 비하여 일반 국민의 교통법규와 계약 관련, 개인정보, 세금 관련 범법행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 국민 남자는 다양한 범죄피해 유형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경찰서에 갔던 범법행위 유형’과 ‘재판을 받았던 범법행위 유형’, 그리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범법행위 유형’을 비교해보면, 각 분포에서 순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범법행위 유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교통법규, 폭행 및 상해, 경제범죄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또한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폭행 및 상해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반면 일반 국민은 경찰서에 갔던 경우든지, 재판을 받은 경우든지, 혹은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경우든지 교통 법규와 계약 관련 범법행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관련된 범법행위 유형이 북한이탈주민에 비하여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여자 집단의 차이

여자 집단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범죄피해와 범법행위 유형을 비교해보면, 남자 집단과 비슷한 특징이 발견된다. 범죄피해와 범법행위 유형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그 유형이 몇 가지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은 해당 범죄피해나 범법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범죄피해의 경험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자 집단은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 폭행 및 상해, 계약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반 국민 여자 집단은 개인정보 관련, 교통법규, 경제범죄, 폭행 및 상해, 가정폭력, 계약 관련,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등 범죄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여자 집단이 경찰서에 갔던 범법행위 유형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와 국가지원금 관련 범법행위로 인해 경찰서에 갔던 경험이 많은데 비하여, 일반 국민은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그리고 계약 및 개인정보 관련 범법행위의 비율이 높고 한 사람이 2번 이상 범법행위로 인해 경찰서에 간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 여자 집단은 일반 국민 여자집단과 비교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범법행위 유형도 몇 가지 유형에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범법행위 유형의 순위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폭행 및 상해의 비율이 높고,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계약, 개인정보, 교통법규, 세금 관련 비율이 높다.

4. 법률구조 및 법교육 경험 차이와 시사점

가. 법률구조 경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한 비율은 남자가 15.3%, 여자가 9.9%이다(〈표 5-18〉, 〈표 5-18〉참조).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았다’는 경우가

23.1%, ‘조금 도움을 받았다’가 39.7%,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가 37.2%이다. 북한 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은 법률적 도움을 받은 정도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40%), 다른 경찰(21.3%), 변호사(17.3%), 법률구조공단(10.7%), 주변의 아는 사람 (8.0%)을 통해서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교하여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변호사(22.6%), 인터넷 법률정보(22.1%), 주변의 아는 사람(17.9%), 경찰 (13.3%), 법률구조공단(12.8%)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은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경로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신변보호담당관이나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60%이상으로 압도적이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주로 경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법률정보를 찾아보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과 대조를 보인다. 이외에도 일반 국민은 시민단체 나 복지관 상담사 등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자본의 소유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고, 사회적 인적 자본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주변의 지인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의 법률구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존재와 역할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나. 법교육 경험과 법교육 수요

북한이탈주민은 법지식 및 법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를 주로 ‘TV등 방송매체 (라디오, 신문 포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다른 경로는 제한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하는 비율은 일반 국민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이다.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주변의 가족, 친구,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법지식 및 법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도 극히 제한적이다. 일반 국민이 ‘TV등 방송매체(라디오, 신문 포함)’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터넷상의 법률정보를 찾아 활용하거나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들의 도움을 광범위하게 접하고 활용하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특정 몇몇 대상에 집중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원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22%정도는 법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하나원 출소 후 지역사회적응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의 생활적응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는 법교육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조사대상자의 58%는 하나센터의 법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행 법(률)교육을 법(률)교육으로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학교 법교육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다. 시민단체의 법교육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법교육에 대해서도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하나원에서 이루어지는 법교육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법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고’(72%), ‘남북한의 용어 차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70%), ‘교육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한계가 있고’(56%), 그리고 ‘법교육시간이 너무 짧다’(50%)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다른 기관이나 단체보다 하나센터에서의 법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센터 이외에도 다른

단체에서의 법교육을 적극적으로 받고 싶다고 하는 의견이 절반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법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각 기관이나 단체의 법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그 비율이 월등히 높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현재의 생활 상태에서 특별히 법교육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며, 또 과반수 이상은 적극적으로 법교육을 받고자 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하위집단별로 법교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그러한 욕구에 기반한 법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및 준법의식 제고 방안

최영신·김대근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및 준법의식 제고 방안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 법지식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가. 헌법적 가치 관련 법지식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적 가치와 관련한 법지식에서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이나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고, 상대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으며, 국가조직과 관련된 법지식 수준은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북한사회의 법문화로 인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탈주민은 공산주의 사회문화를 통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관념은 지극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컨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규범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자유권적 기본권의 세부적인 실천 지침, 예컨대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고문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출판물에 대한 검열 금지 원칙에 있어서는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의식이 '이상(理想)에 대한 기대'에 불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세부 규범들은 서구의 자유주의 사회조차 오랜 투쟁의 역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왔다는 점, 및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조차 헌법 규범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의해 개별의 자유권적 기본권이 정립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헌법적 가치의 세부지침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의식 제고에 있어서 자유의 구체적이고 실천적 규범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매우 절실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이 확연하게 낮은 상태이다. 특히 형사사법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상식이 가장 취약하고, 이외에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와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도 일반 국민과 큰 격차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사기범죄와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에서는 세부 문항별로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형사사법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상식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구치소와 교도소의 구분, 국선변호인 제도의 이해가 포함되는데, 북한이탈주민은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형사불법과 민사불법은 형식적으로 구별되며, 그에 따른 소송절차, 입증의 방식과 정도, 효과는 매우 상이한데 이를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인들이 형사소송이라는 동적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 그리고 교정의 절차에 대해 명확히 구별하는 일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적 지식은 민주적 법치국가 이념을 통해 개별 권력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비로소 습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력 분립이 아닌 당 중심의 권력집중의 체제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 각각의 권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쉽게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법영역을 구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 절차, 특히 형사재판의 절차에 따른 국가권력의 역할과 작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로 보인다. 이러한 법적 단계의 구별은 입법, 행정 사법과 같은 권력이 명확히 분화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가조직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권력과 분립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보다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범죄 관련 ‘개인 간의 싸움은 처벌받지 않는다’ 및 ‘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의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이 낮은 이유는 북한사회에서 개인 간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적(私的)으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이 현저하게 낮았다. 이 또한 반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범죄(예컨대, 성범죄)조차도 사적으로 해결하는 지향성을 일부 보이는 것이다. 한편 이 문항에 대한 물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변화하는 법지식에 대한 정보의 수용 속도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높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2012년 형법을 비롯한 성폭력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모두 폐지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성범죄 관련 규범과 법의식의 변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의식의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서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일수록 자녀를 개인, 특히 가부장의 소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가부장의 영역은 국가나 사회가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부장 사회일수록 가정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조차 가정폭력을 범죄로서 인식하지 못한다. 북한사회는 남한 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부장권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민감도나 법지식은 미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점은 또한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 혹은 사적 분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법지식 수준을 보이는 범죄피해 및 범죄행위 관련 법지식은 북한이탈주민이 개별 법지식에 취약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법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 개인과 사회 영역 관련 법지식

개인 및 사회영역 관련 법지식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영역은 계약, 결혼, 그리고 교통법규 관련 법지식이다. 북한 이탈주민은 결혼이나 계약 등 개인의 영역에서의 권리나 규범에 대한 의식이 취약하며, 사회 영역의 법지식에서는 교통법규와 같이 사회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는 법지식 내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계약 관련 법지식에서 (계약) '②신체포기각서라도 썼다면 지켜야 한다, ③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와 같은 계약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법지식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다. '②신체포기각서라도 썼다면 지켜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정답보다 오답자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한 맹신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공정하거나 위법적인 계약에 대한 법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및 사회 영역에서는 개인의 사적 자치가 강조되더라도 일정 부분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므로 국가 개입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확립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망에 의한 착오의 의사표시(예컨대, 위장결혼), 강제적인 의사표시(예컨대, 강제결혼)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니므로 국가가 일정부분 개입하여 그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신체의 일부를 포기하게 (강제)하면서까지 계약을 강제하는 것(예컨대, 신체포기각서)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또한 개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지나친 이자를 받는 것 또한 계약자유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국가가 개입하여 그 효과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의 형성일지라도 문서에 의한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것도 사적 자치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의식의 영역별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법지식 수준을 제외하고 법의식의 하위영역별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법의식 수준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높게 나타난다.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이 모두 매우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았다.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법에 대한 친밀감’과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국민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법에 대한 신뢰감’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법에 대한 신뢰감’은 1개 문항에서만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법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인정하고 있으며, 법에 대해 더 친밀하게 생각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에서도 더욱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법적 문제 상황에서 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다. 다만, 법에 대하여 신뢰하는 정도는 일반 국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의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에서 모두 법의식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친밀감, 법에 대한 신뢰도, 법 사용의사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의식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에서만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이후 한국사회 정착 초기에 대한민국 법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긍정적인 인식이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약화되고, 법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도도 약해지고, 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법문화에 의한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초기에 갖고 있던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점차 약화됨에 따라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친밀감, 법에 대한 신뢰도, 법 사용의사가 모두 낮아지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탄핵 국면에서 드러난 그동안의 국가권력에 의한 탈법적인 권력남용,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손상된 법질서가 바로 잡히고 국가 형벌권이 정의롭게 집행되는 과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법문화의 영향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범죄피해 경험 및 범법행위 관련 분쟁 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 남자와 일반 국민 남자는 범죄피해 경험, 범법행위로 인한 경찰서 출두, 재판 경험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단지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에 대한 경험'에서는 일반 국민이 북한이탈주민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여자 집단의 경우에도 남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에 대한 경험'에서는 일반 국민이 북한이탈주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더불어 여자 집단에서는 일반 국민의 범죄피해 경험이 북한이탈주민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외에 범법행위로 인한 경찰서 출두, 재판했던 경험은 북한이탈주민 여자 집단과 일반 국민 여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은 남자와 여자 모두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현저히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 등 생활세계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생활과 일상생활이 매우 제한된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활동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생활세계의 활동영역이 협소하고 새로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므로 법률적인 문제 상황에 노출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것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적어지는 데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범죄피해 경험도 여자 일반 국민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여자 북한이탈주민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고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정된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관련 분쟁 상황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오히려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률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막연한 우려는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더 많은 범죄피해를 경험한다거나 범죄발생률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자 집단만을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는 일반 국민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70%를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는 우려할만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남자와 여자 집단의 범법행위 유형에서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폭행 및 상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 발생이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주목받게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 및 범법행위 발생을 과장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폭행 및 상해범죄의 발생률은 주변의 시선을 주목시킴으로써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해석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는 일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폭행과 상해의 범죄가 대개 상호 싸움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 또 폭행과 상해는 -재산 범죄와 달리, 또 재산 범죄와 결합한 것이 아니라면- 우발적이거나 격정적인 상태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보다 많은 스트레스와 억압적 환경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 스트레스와 억압적 환경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많은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배제의 경험에서 비롯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이 일반 국민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세계의 다양한 영역에 함께 참여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2절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의 강화

1. 기존 법교육의 문제점

하나원에서 제공되는 법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최초의 법교육이고, 교육시간도 가장 긴 편이다. 그런데 하나원에서의 법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의 생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원 시설 입소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직후 매우 긴장된 심리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제약이 지적되어 왔다. 다음의 <표 6-1>은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하나원 법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정리한 것인데, 앞서 지적한 하나원 법교육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6-1>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법교육에 대한 문제점 인식

설문 문항	사례수*	그렇다 (%)	아니다 (%)
① 한국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	653	470 (72.0)	183 (28.0)
② 남북한의 용어 차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움	654	453 (69.3)	201 (30.7)
③ 교육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한계가 있음	651	364 (55.9)	287 (44.1)
④ 교육시간이 너무 짧음	653	326 (49.9)	327 (50.1)

※ 하나원 법교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포함함.

하나원 법교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72%(470명)는 ‘한국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법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응답했고, 70% 정도는 ‘남북한의 용어 차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으며, 56% 정도는 ‘교육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50% 정도는 ‘법교육시간이 너무 짧다’고 응답했다.

하나원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받고 있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22%정도는 법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표 5-33> 참조). 이는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행 법(률)교육을 ‘법(률)교육’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심리적
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숙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원에서 실시되는 법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한국 생활
을 경험하기 이전에 시설수용단계에서 실시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구조적인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은 기존의 하나원 법교육 이외에 지역적응단계에
서의 법교육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를 중
심으로 한 지역별 하나센터의 법교육 강화방안은 기존의 하나원 법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에도 지역별 하나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기집중교육의 일부로서 4시간의 법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하나센터의 초기집
중교육에 포함된 법교육은 ‘생활 속 소비자 종합정보’(다단계 및 불법피라미드 피해사
례, 계약 시 주의사항)가 2시간, ‘법률사례상담’(북한 잔류가족 송환 관련, 대북송금,
국가지원금 등)가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⁹⁵⁾. 그런데 하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4시
간의 교육시간은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 수요를 충족 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
로 평가된다⁹⁶⁾.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부족, 다발하는 범법행위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은 지역적응교육의 일부로서 보다 많은 시간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센터를 통한 법교육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표 5-35〉 참조).

2. 법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의
법의식 영역에서 일반 국민과 비교하며 높은 법의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부
영역의 법지식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유권적 기본권 관련 법지식, 형사사법

95)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교육은 하나원 퇴소 이후 거주지 생활적응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
로 초기집중교육과 지역적응교육으로 구분된다. 하나센터의 초기집중교육은 8(9)일 동안 50시
간의 지역적응지원 프로그램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초기집중교육은 거주지 보호기간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통일부b, 2017: 43).

9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하나원에서의 법률교육과 지역사회
하나센터의 법률교육이 중복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하현선, 2016: 62), 이는 북한이탈
주민의 법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관련 법률상식, 그리고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이 낮은 상태이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약한 법지식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 개인적 영역의 특수성 이해 및 관련 법의식의 제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지식에 비해 자유권적 기본권 관련 법지식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북한사회의 법문화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사회에서 개인보다는 집단과 국가를 우위에 두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주의적 공동선을 강조하는 (법)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선언적추상적인 담론에 불과해 보일 수 있다. 실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관념이 추상적 수준에서 선언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어떤 행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인적 자유와 권리의 행사는 일정부분 ‘책임’과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하다(자율성의 내재적 한계). 더 나아가 개인 간의 사적 자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는 개인 간의 계약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부분 개입할 수 있고, 특히 범죄와 같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자율성의 내재적 한계). 요컨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개인적 영역의 법지식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법문화는, 북한의 법문화와 달리, 국가나 사회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국가나 사회의 모든 부분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특히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러한 기본권들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들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그러한 기본권들은 헌법에 명문으로 목록화되어 있거나 다른 기본권들을 통해 도출되고, 심지어는 헌법 제37조 제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개인의 보호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법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는 사적 자치(私的 自治) 혹은 사적 자율성이다. 사적 자치(私的 自治) 혹은 사적 자율성이라는 원리는 일종의 자유주의의 이념으로서 개인의 모든 판단과 개인 간의 모든 합의는 원칙적으로 개인 혹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이로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자유 내지 자율성이다. 물론 이러한 자유 내지 자율성은 내재적인 한계와 외재적인 한계가 따른다. 먼저 내재적인 한계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 내지 자율성의 행사에는 일정한 책임이 따르고, 발생한 결과에 대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재적인 한계로는 자유로운 판단과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경우, 예컨대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의 경우와 같이 개인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에서 국가는 일정부분 개입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나. 형사사법 및 범법행위 발생 관련 취약한 법지식의 제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구치소와 교도소의 구분, 국선변호인제도의 인지 등 ‘형사사법 사법 관련 법률상식’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부족한 법지식 영역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법률상식은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 분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권력 분립이 아닌 당 중심의 권력집중의 체제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이 각각의 권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쉽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대한민국의 사법(司法)작용이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소송처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등에 있어서는 한 당사자인 국가와 대등할 정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법적 장치가 국선변호인제도와 같이 하나의 제도로서, 심지어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일깨워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와 관련하여 취약한 법지식에 대한 내용이 법교육의 세부내용으로서 보완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법적 분쟁에서 특히 범죄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기, 다단계, 보이스 피싱과 같은 경제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죄 가해에 있어서는 폭행 및 상해범죄와 교통법

규 위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절실한 법의식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계약과 같은 금전 거래를 둘러싼 법적 지식과 태도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앞의 제4장에서 확인된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은 계약과 사기, 채권-채무 관계와 투자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법의 구체적 영역인 민사분쟁과 구제수단 및 형사분쟁과 구제수단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계약의 형식을 빌은 의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금전소비대차로 오해하고 투자를 해서 원금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밟아야 할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

때문에 금전거래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학습을 통해 배워서 사기 등의 피해를 막아야 함은 물론이다. 더 나아가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등의 법률구조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특히 폭행 및 상해,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폭행 및 상해 관련 범법행위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다발하는 범법행위이므로 한국사회에서는 폭행과 상해가 개인 간의 분쟁이라도 공식적으로 취급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폭행 및 상해,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등 세부적인 법지식이 취약한 각 범죄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적 발전에 따른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법적 이해도 매우 절실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대개 보이스 피싱, 피싱, 파밍과 같은 사이버 범죄는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 공권력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복종을 갖는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그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공권력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도 익숙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교통법규와 같이 빈번하게 개정되는 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러

한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쉽게 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교통법규 위반 등),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대하여 총체적 불신과 절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법교육 관련 정보화 교육 강화

북한이탈주민이 법지식 및 법 관련 정보를 주로 습득하는 경로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법지식 및 법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난다(〈표 5-31〉 참조).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TV 등 방송매체(라디오, 신문 포함)'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터넷 활용, 주변의 가족, 친구와 지인들을 통해 법지식 및 법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도 일반 국민에 비하여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도움을 받은 대상이 제한적이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하는 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27%정도 낮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반 국민의 경우 71%정도가 자신이 필요한 법률적 정보를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검색하여 활용하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44%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화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2차적으로 법지식 습득 경로를 확장시키는 길이 될 수 있으므로, 법교육의 교육방법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법 관련 지식을 탐색하는 교육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화교육 역량이 강화된다면, 동시에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범죄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가능성을 모두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제고를 위한 사법 조력 방안

1. 북한이탈주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

가. 현행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법지원제도의 운영 현황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받는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받았을 때 사법적 권리구제장치인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통해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고,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사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으로 차별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북한에서 태어나고 살아왔기 때문에 생애 초기 형성되고 익힌 법치주의와 법문화가 다르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살면서, 제대로 된 국민으로서 지위를 보장받고, 보다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다 섬세한 사법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만끽하게 된 자유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들 탈북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수의 지위에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사법적 지원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은 통일 이후 남북한 사법제도의 통합 준비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이수석, 2012 ; 316). 우리로선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통일 후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면서 경험하게 될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경험을 통해 통일 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학인, 2014; 19~20).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일반적 법률 지원

일반적으로 법률 지원은 법률 상담과 소송 등에 있어서의 법률구조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법률 지원은 연혁적으로 민간부분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원활동들을 국가가 제도화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통상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법률 지원 활동에 국가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를 띤 후 입법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법률 지원의 체계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①형사 소송에 있어서의 국선변호인 제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송 대리 제도의 운영, ②법률 상담 실시를 위한 지원 조직의 구축, ③사법 서비스를 위한 물적 기반의 조성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를 주체에 따라 살펴보면 ①법원에 의한 민사소송구조(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 비용 및 변호사 보수 중 상당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 ②국선변호사제도(형사사건), ③법무부 주관의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 및 법률 상담터제도, ④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구조 활동 및 민간차원의 법률 구조 체제로 구축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의 법률 구조의 대표적인 예는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법률구조법 제정을 통해 입법화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창설되었다.

구체적으로 법률구조법(제1조, 제2조)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과 지원업무의 범위가 정해져있고, 이에 따라 국가에도 법률복지 증진 의무가 부여된다(동법 제2조의2). 법률구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징수를 금지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데(동법 제7조), 북한이탈주민도 동 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는 수수료 징수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에 대해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는데, 이는 무료법률구조의 한계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현실적인 법률 구조가 이뤄지기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정옥임, 2013 ; 40-43).⁹⁷⁾

97) 법무부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이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시기관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2012년 5월부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취약계층의 하나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시 법률서비스 제공방안으로 참조할 수 있다는

2) 공공분야의 법률 지원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구조 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법률구조법), 그리고 법무부의 법률상담 지원 등을 들 수 있다.⁹⁸⁾

법원에 의한 민사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 보장 실현,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이학인, 2014 ; 125). 또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과 제133조에서 소송구조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은 제24조 내지 제27조에서 소송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서는 소송의 사무처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견해도 있지만(정옥임, 2013 ; 41), 결국 실질적인 도움은커녕 북한이탈주민에 맞춰지고 특화된 변변한 법률서비스 제도가 역부족하다는 현실만을 방증한 것은 아닌가 한다.

98) 이는 통상 사법부(각급법원)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통행사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법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은 주로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행사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법원은 일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송구조 제도와 국선변호인제도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긴 하다. 또한, 각급 법원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상담관과 민원상담위원을 배치하여 일반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상 지위가 인정 되므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이와 같은 지원제도와 지원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법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사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원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14년과 2015년에 각급 법원별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행사는 주로 법원 견학, 재판 견학(민·형사 재판), 법관 및 해당분야부서(예를 들어 서울 가정법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과 직원) 관계자와 간담회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이 밖에 북한이탈주민을 시민사법위원 등으로 위촉하여 법원 모니터링 등의 임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밖에 특별한 날을 정해 이벤트(예를 들어, 야구데이 행사 같은)를 가지는 법원도 있다. 법원 지방법원 같은 경우 2014년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생활에서 접촉이 잦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의 요청으로 법관이 직접 찾아가 법률소양 증진을 위한 강의를 하는 법관강좌 개설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과 법 관련 기관 소개, 법원의 구조와 역할, 재판절차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기 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법원 홍보 동영상 시청, 재판 방청, 법원청사 견학 등의 법교육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며, 때때로 법원장 등 법원 인사들과 면대면 대화가 이뤄지기도 한다. 춘천이나 대전 청주 등 각급 법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초청 행사를 개최하는 법원도 있다. 그러나 대개가 비슷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에서 행하는 법률지원 사업은 대개가 비슷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이학인, 2014 ; 119-125).

이에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소송구조예규 제3조의2에서는 소송구조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무자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 2014년 9월부터 소송구조 신청인이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도 무자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예규가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은 승소가능성 요건만 갖추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도 일반적으로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에 관한 구조를 받을 수 있고, 특히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무자력 요건에 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승소가능성 요건 심사만으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사건 관련한 유의미한 통계가 없어, 이를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정옥임, 2013 ; 43-45 ; 이학인, 2014 ; 125-126).⁹⁹⁾

이 밖에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선변호인 제도¹⁰⁰⁾와 통일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중심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와 같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이학인, 2014 ; 126 ; 정옥임, 2013 ; 42-47).

3) 민간분야의 법률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특화된 민간분야의 법률 지원 중 대표적인 사례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들 수 있다.

99) 이에 대한 원인으로 소송구조예규 개정이 최근여야 이뤄진 점과 홍보부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이학인, 2014 ; 126).

100)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한 국선변호인에 관한 예규를 두고 상세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와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2002년 12월 20일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로 출범하여 15인의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2003년 2월 17일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운영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법률 상담 진행, 법률 지원 활동지침서발간, 북한이탈주민지원 단체에 전담 변호사 지정, 전국 하나센터에 전담 변호사 지정 등으로 세분되는 바, 그 중 특히 주요 활동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①법률상담, ②법률구조, ③법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민간부분에서 이뤄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으로는 삼성법률봉사단의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이뤄지고 있는 난민·북한이탈주민·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지원 등이 있다(정옥임, 2013 ; 48-50).

나. (가칭)통합법률지원센터의 설립의 필요성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은 꽤 여러 형태로,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법률지원의 실질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 이를 상설하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을뿐더러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이나, 민간영역에서의 지원이나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홍보, 교육, 체험, 간헐적인 사법부 관계자와의 면담 등의 형태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 얼마나 긍정적인 작용하며,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지원이 그 태생에 맞게 달라야 하면서 동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서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지원 내용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둘째,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분야에 대한 협업체제 구축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각 법률 지원의 관리 감독의 문제도 있는 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이 공신력 있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율적인 관리 감독 체제의 구축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요컨대 통일부와 법무부, 대법원 등에 의해 법률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보다는 해당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차원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하여 통합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정옥임, 2013 ; 50 동지).

다. 법률구조의 확대와 공공변호제도의 활용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은 주로 개인의 희생이나 특별한 신념에 따라 나눔, 봉사정신에 기반하여 이뤄지다 보니 법률지원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이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당장 당면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특수한 법률 지원 수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 끝에 법률지원이 이뤄지는 게 아니어서 법률지원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실효성을 중점에 두고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당장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만 해도 공단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범죄의 유형이 갈리거나,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는 데 공단 소속 변호사의 업무가 가중하고, 전공분야를 살리기 어려워 북한이탈주민에게 특화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상담과 법률구조를 진행하는 변호사, 상담직원이 입국 브로커 문제 등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특수한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지적된다(정옥임, 2013 ; 51).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분야의 법률구조 확대와 공공변호제도의 활용이 활성화 되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듯이 일반 국민은 60.1%가 법률구조공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은 불과 32.1%가 법률구조공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의 법률구조를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역할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연혁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에서 월남귀순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였다. 이후 1979년 귀순자만을 대상으로 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의 제정을 통해 귀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후 1993년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을 제정하여 기존 귀순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던 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였으며, 1994년 이후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귀순자들의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귀순자 지원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통일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¹⁰¹⁾ 제정하였다(하현선, 2016 ; 5-23).

이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2014년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을 수립하였고, 매년 관계 중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착지원시설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다. 1999년 7월 안성에 설치된 하나원이 있고, 이후 2012년 12월 화천에 제2의 하나원이 설치되었다.

나.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증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및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01) 이 법 제1조에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데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정·시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의 문제점을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호 주체의 실효성과 보호의 모호함

먼저, 보호에 있어서 직접신청주의를 고수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실상 선별적인 보호의 태도를 취하는 현재의 이 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전원수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보호와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지자체의 주민이 되는 시점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기관간 역할 분담 실현을 위한 입법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여전히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헌법 규정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을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도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중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재외국민보호 의무 이행 문제도 항상 연계되어 있다.¹⁰²⁾

2) 법체계의 흠결

무엇보다 현행법은 보호를 직접 신청한 북한이탈주민 모두를 보호의 대상으로 포섭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제9조 제1항), 이 규정이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의 적법성 문제와 연결지어 수권 법률의 명확성, 법률체계적합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손운석, 2016, 100-103)¹⁰³⁾.

3) 사회적응프로그램의 부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보호대상

102)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언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손운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국내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5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08. 97-99).

103)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4호와 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자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분리하여 다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손운석, 2016 ; 103).

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법문화와 질서에 적응할 것을 강조하는 반면, 이들이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제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이다.

특히, 정착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의 보완이 요구되는데,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동등하게 법적용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예컨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결혼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생활하는 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적용되어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편견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은 규범적으로 대한민국국민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외국인과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큰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응제도를 가미하여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손운석, 2016 ; 104 동지). 이를 위한 국가기관의 현실적 역할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회 체제 - 즉 남한사회에 대한-의 적응을 위한 교육, 상담, 자문 등의 기초적이면서 영구적인 분야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률구조법에서 적용되는 법률구조 사항이 법률 지원에서도 중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해 중첩적으로 규정된 법률조항은 과감하게 삭제 혹은 개정을 통한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과 개정(안)

1) 법률적 개선의 방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에 기한 제도와 사회보장제

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들어와서는 사회보장적 지원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사회보장법 체계로 편입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맞춰 행정지원이 이뤄지도록 법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 제도의 개념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원 제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지원방안과 제도도 -현실적인 사회적응프로그램 관련- 누락되어있다.

2) 차별과 편견의 배제 강조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개선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들이 겪는 각종 차별은, ‘경제적인 어려움’ 다음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라 포용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 제3항에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의 보호대상을 전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이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로 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도모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손윤석, 2016 ; 105-106).

3) 생활보호의 실효성 모색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치한 법정비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실태조사 항목에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 수급여부, 가구소득 및 재산 등을 추가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하현선, 2016, 71).

이유로 이 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2014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는 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주거, 생활과 정착지원, 교육실태, 가족, 경제활동상태, 취업 지원제도 활용, 건강 및 의료 등 조사 분야가 광범위하다. 그러나 정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의 월평균 임금소득액을 묻고 있을 뿐 그 외 소득에 관한 질문내용은 전혀 없어,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응답자(50%가 채 못 미치는)의 임금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 외에 거주기간별 생계급여 수급여부 등은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므로 연령별·성별 수급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소득만 50만원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

남한으로 유입된 정착자들을 조사하는 다른 국가기관(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나, 노인실태조사와 같은 경우 모두 가구 총 소득과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대상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¹⁰⁴⁾과 비교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상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를 포착하기에는 조사항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시 개인별 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도록 이 법의 제22조 제3항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표 6-2 참조, 하현선, 2016 ; 71).

10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와 '노인복지법' 제1조의2는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6-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의견
제22조(거주지 보호)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거주지 보호)③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
1.~ 4.(생략)	1.~ 4.(현행과 같음)
〈신설〉	5.소득, 지출, 자산, 생계급여 지원여부 등 가족의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5.(생략)	6.(현행 제5호와 같음)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4) 보호대상자의 범위 실질화

또 현행법 제23조 제3항은 실태조사 대상을 “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보호기관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은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22조 제3항의 “보호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제도화 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된다.

같은 법 제30조 제4항 제8호는 북한이탈재단의 사업으로서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과정에서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 북한이탈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법 제1조의 목적조항 그리고 제16조에서 직업훈련을 보호대상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도 실시하는 점, 제18조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군의 특별임용,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고용, 제24조의2에 따른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예비학교 설립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실태조사의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전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5) 기본계획의 모니터링

또 이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통일부가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관계

부처인 통일부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의 사후 감사를 받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해야 한다(표 6-3 참조 하현선, 2016 ; 72-73).

〈표 6-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의견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②(생략)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②(생략)
③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신설〉	⑤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⑥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소송절차를 위한 사법 지원의 강화

가. 소송절차 상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재판당사자가 된 경우 재판절차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법적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법과 공권력에 대해 작지 않은 두려움을 보여주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사법제도와 재판절차 등 사법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나 북한이탈주민은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남한에서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선 변호사 선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재판과정에서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중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남한 정착과정에서 겪는 곤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설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법이 나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생각을 북한에서보다 남한에서 더욱 긍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라든지, ‘법은 잘 알아야 살아가는 데 편리하다’, ‘나는 법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질문에 대해서도 남한에서 더 긍정적인 응답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의 제4장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갖는 법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법을 국가(대한민국)와 동일시하고, 국가를 통한 자유와 복지에의 가능성을 희구(希求)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 초기 하나원에서의 일련의 교육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절실한 법교육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남북한 용어의 차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한국사회를 몰라서 이해하기 힘들었고’, ‘교육시간 또한 짧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일단 남한의 표준 언어에 대한 교육과 남한사회 문화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적응을 위한 교육은 단시간에 이뤄지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와 형벌에 대한 지식, 그리고 계약 등 개인과 사회에 대한 제반 법률지식과 이해가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될 필요가 있다. 실제 이러한 법의식이 구체적인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소송 절차를 통해 경험되도록 해야 하고,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분쟁적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도움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나. 국선변호인 제도의 활용 및 개선방안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민형사 소송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만한 여력이 없는 법률서비스 요부조자에게 국선변호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선변호제도에 대한 비판 내지 문제의식-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선변호인들의 수입료 문제라던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변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대안으로 오랜 시간 논의 끝에 국선전담변호사제도¹⁰⁵⁾가 도입되었다(양시훈, 2014 ; 10-19). 이러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지원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스템의 상시화를 통한 입법목적 달성이 가장 최선이자, 정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즉 정상화한 시스템이 가장 상식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제도와 같은 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구조를 전담하게 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공공변호제도(Public Defender System)는 기존의 무료 변호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전문기관을 두어, 소속 변호사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형사)공공변호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국선변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효과적으로 도모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다. 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 개선

1)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된 법적인 문제는 주로 생활 관련 문제다. 주로 채무,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와 관련 된 사항들, 결혼·이혼·가족관계 등록 등 가족법 상의 문제,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등 노동 문제, 사기 등 경제범죄에

105)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시범 실시되기 시작한 2004년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국선변호사건만을 처리하는 변호사제도를 시행할지 여부 및 시행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그 제도를 운영할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 논의가 있었다. 그 내용은 첫째, ‘국가변호사’라는 명칭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이를 관장하는 조직은 검찰에 대응하여 법무부 산하에 두되, 우선적으로 대도시부터 시행하자는 방안 둘째, ‘공공변호인’이라는 명칭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이를 관장하는 조직은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 산하기관으로 하여 공공변호인에게 판사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하되, 우선적으로 대도시부터 시행하자는 방안 셋째, 스태프변호사(Staff lawyer)를 중심으로 하는 퍼블릭디펜더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그 사무소는 법률구조위원회 산하 독립기관 또는 법원이나 법무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며, 퍼블릭디펜더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디케어시스템(judicare system)을 시행하되 법률구조위원회에서 정한 계약조건으로 변호인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자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종래의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선임변호인제도를 유지하면서 법원과 개업변호사 간의 계약을 통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법원행정처,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Ⅲ) -제1차~제13차 회의자료-, 2004 ; 504-511).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문제, 폭행 등 형사법적인 문제 및 교통사고 등이다(대한변호사협회, 2011 ; 3).

무엇보다 남북한의 경우처럼 공히 지배적인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가부장의 영역은 국가와 사회가 침범할 수 있는 고유의 것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이러한 가부장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조차 가정폭력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같은 이유에서 가정폭력범죄는 또한 은폐되기 쉽다. 법이 문지방을 넘을 수 없다는 봉건적 가치관의 폐해는 남북한 모두 공통의 영역이지만, 최근 들어 가정의 문제는,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 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빈곤할수록 가정불화 및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가정 폭력도 학업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그러하다(이주홍, 2001).

2) 가정폭력 전담 부서의 필요성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정불화와 가정폭력 등은 이미 사법부에서도 재판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은 남한에서 나고 자라는 부부들끼리의 결합에서 생기는 가정불화와 폭력과는 다른 양상을 띠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북한이탈주민과 원래부터 남한 출신의 부부가 만났을 경우 초기에 형성되고 경험한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 폭력 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결합 혹은 남한사람과 남한사람의 결합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가사분쟁 조절, 특히 민사 영역과 형사 영역이 결합된 형태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정에 대한 특수한 법리형성과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필요로 할 것이다.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 관련한 전문 법률가들의 양성과 이들의 지원을 받은 처리 절차의 개선도 시급해 보인다.

3) 사전 예방 및 국가 개입의 조기화 가능성 검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라는 문항에 '대체로 그렇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응답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높다는 점은 가정폭력에 대해 그 심각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가정폭력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이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은 더 크고, 시간적으로도 선제적일 필요가 있다. 통상의 경우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구조 및 대응이 늦어진다면,

시간의 지체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는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 구조시기를 당기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고,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넘어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감시체제에서 인권침해의 사회에서 장시간 생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의 개발 -혹은 환기- 어쩌면 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법현실은 아동의 인권에 대한 높은 감수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라. 통일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재판 전담부 설치 가능성 검토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제고와 나아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서 지원 등을 통한 실효화 방안 마련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문제는 당해 업무의 주관 부서를 결정(또는 신설)하는 것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간의 협업체제 및 업무분담 체제와 함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협의기구의 구성 문제 역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근거법 규정의 정비도 요구된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가 확정되면 북한이탈주민의 법무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이 필요하고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건의 재판전담부도 설치를 검토해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소수, 주변으로 자리한 다문화 가정 재판 전담부의 신설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 민족이지만 오랜 세월 다른 민족으로 사실상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의 체제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른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법률지원이 시급하다. 법률 지원 제도의 수립은 일반적인 북한 정착지원제도와는 정책적 조화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지원의 내용과 수준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서 과도하게 특혜적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의 편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 효율적인 방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제고, 법률상담, 법률 구조 등 관련 분야가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산발적이지 않고 일관된 법률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그 일환의 하나로써 전담 재판부 설치도

가능한 제도적 상상력인 것이다. 또한 통일은 오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통일을 대비해 국가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전문성을 갖춘 전담 재판부의 설치와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고, 법률시장에 유입되는 법률가의 포화상태로 인해 법률가 취업이 옛날과 다르게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이런 인력들을 통일 전담 재판부 구성원으로 양성하는 방안은 인력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법률가 양성 교육기관에서부터 이를 염두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연구, 개발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 법률가들을 양성하게 된다면 통일 준비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체제의 진정한 통일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¹⁰⁶⁾

106) 다만, 북한이탈주민에게만 적용되는 법률 구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정옥임, 2013 ; 109). 이 견해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경제적, 법률적 약자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구조 제도인 민사소송법상의 구조제도, 형사소송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어, 기타 변호사단체 등의 법률 구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현실적인 필요성 역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또 법률 구조의 법체계와 관련해서도 법률구조법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구조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법체계나 법률구조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정옥임, 2013 ; 110). 그러나 제도가 있다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려야 할 대상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박물관의 유리창 안에 전시된 전시품 같은 법률들이 있다. 이는 유리창을 깨고 실질적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즉 현실화 방안이 결여된 제도가 있다면, 이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된다. 이 제도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수범대상자를 직접 타겟으로 보다 구체화, 현실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집단을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차원에서도 별도의 법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 규범마련으로는 부족하고 제도를 강제하는 규범의 실현을 현실화 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법작사회적 구성원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유입되고 동화되게 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운정(1991). 법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해성(2011). 북한이탈 여성의 남한사회 초기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계희열(2003). 헌법학(上). 서울 : 박영사.
- 곽윤직(2011). 채권총론. 서울 : 박영사.
- 곽한영(2007).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여자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한영(2011). “법의식 연구의 경향에 관한 연구-법의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6(2), 2-23.
- 구수경(1993). “성폭력특별법에 관한 여성학적 고찰”, 여성연구 제4집, 부산여자대학교.
- 권영성(2003).占헌법학학 원론. 서울 : 범문사.
- 권영애(2000). “통일에 따른 법의 자율성 및 법의식의 변화”, 한·독사회과학논총, 10(2), 1-27.
- 권영태(2007). 북한의 법교육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다현(2007).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영향 연구 : 고등학교 ‘법과 사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근 역(2016). 차별이란 무엇인가 : 차별은 언제 나쁘고 언제 그렇지 않은가. 서해문집.
- 김미정(2010). 고등학생의 사회적 신뢰가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백유(2016). 헌법과 헌법정치. 서울 : 한성대학교출판부.
- 김범구(2010). “이주민 대상 법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16(3), 115-137.
- 김선동·이주하·박성혁(2013). “북한이탈 청소년의 법의식 연구 : 제3국 체류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8(1), 57-80.
- 김성돈(2001). “형사절차상 피해자-가해자조정 (Victim-Offender Mediation) 제도의 도입방안”, 원광법학, 18, 47-75.

- 김성중(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집 12(2).
- 김성훈·최재용·이운호(2015).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통일과 평화, 7(1), 49-94.
- 김연수(2010). “수형자의 법의식과 수형생활 순응도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5(2), 159-191.
- 김윤영(2007).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7(3), 71-99.
- 김윤영(2011).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 및 인권보호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 25(1), 157-199.
- 김은철(2014). “婚姻과 家族에 대한 憲法的 保護”, 법학논총, 21, 131-159.
- 김종철(2010). “사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헌법학연구, 15, 105-145.
- 김주선(2009). 법교육 방법이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 - 고등학교에서의 강의식 법교육과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준호·이동원(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165.
- 김준호(2004). “청소년 비행의 태도에 관한 연구 : 법의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120.
- 김 철(1989). 러시아 소비에트 법 - 비교법문화적 연구. 서울 : 민음사.
- 김해성 외(2007). 청소년 법의식 지표개발 연구. 한국법교육학회.
- 김현철(2010). “국민 법의식의 변화와 법교육”, 저스티스, 32-43.
- 김현희(2014). “인종주의와 한국사회의 법문화 : ‘다문화사회’의 법의식”, 비교문화연구, 20(2), 5-46.
- 노대명·전지현(2011).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용준(2010). “수형자의 법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4(2), 149-179.
- 명재진(2003). “통일 이후의 변화와 정책과제 : 독일통일 후의 법제도 변화”, 한국통일연구(Korean unification studies), 8(1), 153-171.
- 민경배(2006). “체제전환국 법제의 특징과 구조”. 통일문제연구, 18(2), 217-263.
- 민경배(2008).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비경제분야의 법제변화”, 공법학연구, 9(2), 91-112.
- 문용린(1992). 학생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와 대처방안. 체육청소년부.

- 박동수(2015).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고찰”, 입법정책, 9(1), 1-33.
- 박성혁(1992). 초중고생의 법태도 발달과 법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혁(1993). “21세기 시민사회와 사회과교육 : 법교육 목표로서의 법적 관용성발달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17(단일호), 69-82.
- 박순성(2010).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북한연구학회보, 14(2), 77-104.
- 박영자(2011).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민족가치의 성찰, 그리고 사회통합”, 미드리, 5, 6-21.
- 박정란(2006). 여성 새터민의 직업가치와 진로의사결정과정 연구.
- 박윤숙(2009).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해결방안”,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대회, 31-47.
- 박은정(1998). “북한법 기본원리와 통일법이념 모색”,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북한협동과정실, 1, 84-115.
- 박종선(2013). “청소년의 법의식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 한국과 미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학연구, 14(4), 343-362.
- 박종선(2016).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와 인권”, 평화학연구, 17(3), 67-93.
- 박종철·김영운·이우영(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박학모·김대근·이규창(2014).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83.
- 사법개혁위원회(2004).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III). 법원행정처.
- 성옥제(201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세종연구소(2006). 북한의 사회문화. 한울아카데미.
- 손윤석(20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55, 95-122.
- 송경호(2009).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 신미녀(2009).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한국사회정착에서 제기되는 문

- 제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5(2), 119-143.
- 신의기(2009). “교통사고환자의 장기입원과 사기행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519-543.
- 신정음(2011). “법교육과 법의식의 발달과 관계”, 교과교육학연구, 15(4), 893-910.
- 신현주·박동수(2013).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교정복지연구, 29, 71-92.
- 심성보(2012). 법과사회 교육이 고등학생의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시훈(2014).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
- 양정훈(2005). “북한(사회)의 폭력성이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607-630.
- 염유식(2009). “한국 법의식 조사에 대한 연구 방법론 검토 : 2008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37, 215-239.
- 유 욱(2011).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 이해방법 : 북한 헌법상의 법령, 정령, 결정 등 입법형식을 중심으로”, 법무부 학술저널, 6.
- 유욱·이찬호·이경환(2013).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제고 및 법률 지원 추진체계 정립방안 연구.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연구총서.
- 유해숙·이현숙(2014).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인식 비교연구”, 인천학연구, 20, 325-365.
- 윤대규(1992). “법과사회 조망: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사회주의 법원리의 변화”, 법과 사회, 6, 209-219.
- 윤인진(2004). “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지원방안”, 최협 외(역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401-423.
- 윤준영(2014).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변화와 법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순(2003).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116.
- 이금순 외(200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1-7.
- 이수석(2012).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와 북한체제 전망”, 평화학연구, 13(4).

- 이수성(1984). “한국 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25(2·3), 68-94.
- 이승규(2017).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수(2008). 법교육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우영(2005). “북한 사회연구 혹은 사회학적 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8(1), 121-140.
- 이창무 외(2010).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 방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주홍(2001).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인(20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
- 이해정(2007). 북한사회에서 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홍(2012). 북한에서의 경제적 규범의 변화와 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창호(2016).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9, 215-246.
- 임희섭(1974).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15(1), 33-81.
- 장병일(2017). “남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성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3, 907-946.
- 장인숙 외(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 장인숙 외(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 장준오·고성호(2010).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0(6), 1-164.
- 장준오·이정환(2006).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224.
- 정광진(2016). “통일준비차원에서 북한주민의 법 인식 교정을 위한 지향점 도출 연구”, 한양법학, 27(4), 223-246.
- 정병화·김영진·김영환(2016).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인권 실효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7, 395-418.

- 정성우 외(2016).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 인권위원회.
- 정세종(201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 76-103.
- 정옥임(2013).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제고 및 법률 지원 추진체계 정립방안 연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정완(2007). “사이버범죄의 현상”, 형사정책, 19(2), 9-32.
- 정진수·강태경·김형길(2015). “명예훼손죄·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0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71).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조용관(2006).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통해 본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이해.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 조재현(2012). 북한헌법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홍석·변학수(2008). “한국과 독일의 법의식의 문화적 토대”, 공법학연구, 9(4), 61-80.
- 최경옥(1999). “한국헌법상 탁복자의 지위”, 헌법학연구, 1(8), 106-142.
- 최경옥(2014). “이주법; 중국동포와 한국국적취득의 문제점 -2003헌마806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9.
- 최봉대(2011).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최빛내·김희경(2011). “탈북 여성의 외상 경험과 성격병리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95-212.
- 최영신 외(2009).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I) :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1-436.
- 최영신 외(2010).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I)-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0(22), 1-834.
- 최영아·이주용·김정규(2009). “남성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심리적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통일정책연구, 18(2), 215-248.
- 최윤진·지영섭(2016). “청소년의 법의식과 인권의식에 있어서 인지, 정서,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법인권교육연구, 9(2), 217-241.
- 통일부(2017a). 2017년 정착지원 실무편람.

- 통일부(2017b). 2017년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
- 하현선(201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한수웅(2016). 헌법학(제6판). 서울 : 법문사.
- 현대호·김명아(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원.
- 황의정·최대석(2015).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동북아법연구, 9(2), 1-31.
- 홍덕기(2001). “탈북귀순 청소년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 학교 및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외국문헌〉

- 위르겐 하버마스(1995). 새로운 불투명성(이진우역). 서울 : 문예출판사.
- Chriikin(1990). Fundamentals of the Socialist Theory of the State and Law(맑스주의 국가와 법이론)송명주 역. 서울 : 새날.
- Allport. G.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Perseus Books.
- Harold J. Berman(1983). Law and Revolution: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언론보도〉

- 머니투데이, “‘탈북 여간첩’ 원정화, 불구속 입건 ‘딸 학대 혐의’”, 2015.3.2
- 세계일보, “결혼은 했지만 아내가 없습니다”, 2015.08.07.
- 연합뉴스, “김도읍 ‘탈북자 자살 해마다 는다...가정불화 최다’”, 2016.09.22
- 자유아시아방송, “탈북자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2013.11.23
- 조선비즈, “[보험금사지전쟁]①100억 노리고 아내 살해...대법은 무죄 판결 ‘갈지자 행보’”, 2017.06.21
- 통일뉴스, “탈북자 마약류 취급 범죄 증가...하나원 교육 전무”, 2017.9.25.
- www.unikorea.go.kr(2017년 11월 10일자 검색)
- www.unikorea.go.kr(2017년 11월 10일자 검색)
- www.unikorea.go.kr(2017년 10월 30일자 검색)
- 2017년 8월 11일자, MBC NEWS, imnews.imbc.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판례〉

대법 96도2049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7도2134 2007.5.11.

대법원 2007도8155 2008.2.14.

대법원 2008도10831 2009.1.30.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대법원 2008도2422 2008.7.1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2011두24675 2016.1.28.

대법원 2012도11586 2013.5.23.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대법 2013.5.23. 선고, 2012도 11586.

대판 누 1221, 1996.11.12.

헌재결 1990.4.2. 89헌가113.

헌재 1992.1.28. 91헌마111.

헌재결 92헌바48 1993.7.29.

헌재결 1994.4.28. 89헌마221.

헌재결 1996.4.25. 92헌바47.

헌재결 92헌바6 1997.1.16.

헌재결 89헌가19 1997.8.21.

헌재결 1998.5.28. 96헌가4.

헌재 2000. 4. 27. 선고 98헌가16.

헌재결 2000헌마238 등 2001.9.27.

헌재결 2000헌마239 등 2001.9.27.

헌재결 2000헌바43 헌재결 2001.1.31.

헌재결 2001. 1. 31. 2001헌바43.

헌재결 2001.9.27.2000헌마239.

헌재결 2004헌나1 2004.5.14.

헌재결 2015헌바26 2015.9.24.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관련사이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 <http://www.ctr.c.go.kr>

통일부 www.unikorea.go.kr

남북하나재단 www.koreahana.or.kr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Refugees

Choi, Young-shin · Kim, Dae-keun · Chae, Kyung-hee

1. Purpose and necessity of research

A large number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have had trouble adjusting to South Korean society at early stages of settlement, such as suffering criminal damages or committing illegal activities themselves, mainly because of different legal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ir ignorance of laws in South Korea. North Korean refugees, though they share the same language with that of South Korea, are highly likely to suffer because South Korea has a utterly different legal system and legalization, as well as a vastly different economic system. With their psychological anxiety following early stages of adjustment, North Korean refugees are more vulnerable to criminal damages or involvement in criminal offenses. In short, the disparity in societal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uman rights abuses faced by North Korean defectors when they escape from their country, and manipulation of laws that has prevailed in the North are highly likely to lead to a distorted Legal Consciousness, resulting in vulnerability to criminal damage and invol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an analysis as to how Legal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refugees affects their adjustment to South Korean society by taking a closer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law-abiding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in the process of adjusting

to South Korea. To do this, I shall explore fundamental Legal Consciousness required to the adjustment to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gap between basic Legal Consciousness and the level of North Korean refugees' legal consciousness. By elaborating what causes North Korean defectors' maladjustment in everyday lives of South Korean society, this paper will suggest practical plans to enhance Legal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search of North Korean refugees' experiences and current status related to legal consciousness is expected to be useful in investigating what kind of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overcome in the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n addition, North Korean refugees' experiences of adjustment to South Korean society with regard to the consciousness of law will provide insights that could be used to prevent a great number of trials and errors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es.

2. Research Methods

This paper utilizes literature investigation,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 citizens, and in-depth interview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order to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legal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present thereby ways to encourage their law-abiding spirits.

First of all, for the research of literature, this paper explores prior studies on the general meanings of Legal Consciousness, North Koreans' consciousness on laws, and scholarly explorations of socialism and North Korea's legal system so as to have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as well a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law institutions, such as courts or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erms of survey,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 citizens were

asked to fill in the survey in order to grasp how North Korean refugees are aware of the law system and compare levels of Legal Consciousness between the two groups. Those surveyed include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over 19 and have stay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one year, and 800 of them were selected by using quota sampling method according to region-, sex-, and age-specific rates. Also, among South Koreans who are over the age of 19 and resi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1004 people were selected according to gender-,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specific ratios. Trained surveyors read questionnaire and explained to North Koreans who then fill in the questions themselves, while South Koreans were asked to fill in the web questionnaire via email.

For in-depth interviews, 12 North Koreans refugees who were considered having a general understanding of law-relevant culture and experiences were selected, with consideration f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ir experiences in North Korea. The in-depth interview mainly dealt with the followings: 1) differences between autonomous market economy and planned economy; 2) disparities arising from getting accustomed to dictatorship and collectivism; 3) impact of legalization in North Korea; 4) lack of experiences of liberal democracy; 5) experiences suffered while escaping North Korea and travelling through other countries; 6) restrictions faced after the arrival in South Korea; and 7) disparities due to North Koreans' native and structural limitations.

3. Concept of Law consciousness and Components of Legal Knowledge

3.1. Concept of Law consciousness

The consciousness of law is considered the public's attitudes or spirit on laws (this concept is criticized for its ambiguity). There are roughly two approaches to research with regard to Legal Consciousness: one is to focus

on developmental stages of law consciousness and their application from the framework of cogni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the other is to explore Legal Consciousness as a concept which contains a number of areas relevant to legal consciousness from the point of a socio-psychological concept of “attitude.”

This study is intended to take the latter approach by illuminating the concept of Legal Consciousness as various law-relevant areas in the framework of attitudes—a socio-psychological concept—and present elements according to cognitive, emotional, behavioral areas of legal consciousness. So, Legal Consciousness in this paper refers to a socio-psychological concept of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attitudes on law that come from the public’s mindset or spirit regarding the legal system.”

To do this, in this paper the cognitive area of Legal Consciousness contains legal knowledge and necessity of law, while the emotional area includes a sense of friendliness on law, trust on the legal system, and favorable attitudes about law obedience. In the area of behavior, intention to use law and legal efficacy are included.

3.2. Components of Legal Knowledge Useful for North Korean Defectors’ Adjustment to South Korea

This present paper shall deal at greater length with levels of legal knowledge that falls in the category of a cognitive area of Legal Consciousness, which is assumed to be particularly low in North Korean refugees, in order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adjustment to South Korean society and legal consciousness, as well as details of Legal Consciousness that serve as an obstacle for them to integrate in their new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have a basic understanding of laws and regulations in South Korea for them to adapt themselves to new environments and enhance their consciousness of how the

legal system works. Legal knowledge required for North Korean refugees' adaptation to their new environments in South Korea is sub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s: 1) legal knowledge related with constitutional value; 2) legal knowledge with regard to crimes and their damages; and 3) legal knowledge regarding private disputes and other social laws.

First, a general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 value is required as legal knowledge because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have a clear consciousness of the basic implications of the constitutional law and its value in order for them to serve as responsible citizens of South Korea who are entitled to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In other words, North Korean residents in South Korea are required to be aware of the constitutional law, a set of regulations and rules established among the citizens, to serve as genuine members of society they have settled in. Second, legal knowledge with regard to crimes and their damages is also required because the criminal law refers to the legal norms among members of society as to what is allowed to do and what is not. Punishment, as effect of the criminal act, should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that the abuse of governmental authority can lead to the restriction or infringement of an individual's life, body, freedom, property, etc. In this context, the criminal act is of significance as concrete forms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reby underlying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criminal law. Third, legal knowledge regarding private disputes and other social law makes it easi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e of law as well as law and order in a capitalist country. North Korean defectors seem to find it most hard to figure out freedom and rights enjoyed in a capitalist system while staying and trying to be accustomed to South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private autonomy and the limitations of state intervention in dealing with contracts and solution of disputes are considered an essential part that North Korean refugees consider

puzzling.

Internalizing those three areas of legal knowledge means internalizing legal values which each domain seeks for.

4.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Legal Consciousness

The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refugees found that as they had lived for as short as less than 20 years or as long as more than decades in North Korea's planned economy before coming to the South only to struggle in a country driven by market economy, liberal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the diametrically opposite system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caused North Korean defectors to build their own unique level of Legal Consciousness.

North Korean escapees are supposed to learn how market economy works rather than planned economy, consider making choices and their consequent responsibility in a liberal democracy polar apart from a state monopoly, and learn culture of rule of law instead of rule of above the law. It seems clear that Legal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process of learning new systems and culture in South Korea, marks off from that of both North Koreans and South Koreans.

The fact is supported by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Most of all, they lack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ownership system, including private ownership—a fundamental element of market economy—and they find it hard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f capitalism in which all goods and services are purchased in return for money, instead of gratuitous distribution in North Korea. Therefore, they are likely to equate what a state owns with their own property, and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cost of education and bringing up of children, as well as medical bills of members of society. Furthermore, they do not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contracts. As they are not fully aware of the fact that everything—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is performed according to contracts, it is highly likely for them to suffer significant legal damages. A good example of such cases is that it is so commonplace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have transactions with money or things without leaving any evidence or contracts, resulting in suffering damages. North Korean escapees are not familiar with the fact that “everything is owned by someone.” Indeed, they do not comprehend the idea of ownership of companies, and instead consider them as state-owned factories or companies in North Korea. Such consciousness often leads them not to take their performance at work seriously, resulting in misunderstandings in work life.

Also, North Korean defectors are not familiar with the idea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North Korea, it is unimaginable to vote directly for electing president, cast a secret ballot, and even the fact that the president is subject to punishment when violating laws. Still, North Koreans defectors ignorant of the political system in South Korea are manipulated for electoral strategies, which in turn undermines the form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sound consciousness of laws.

North Korean escapees, who had lived in a country where the rule of law is not equally applied before arriving in South Korea, learn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a constitutional state, but they are doubtful of the fact. However, they acknowledge that the social disadvantages in South Korea are more likely to enjoy the protection of laws than those in North Korea.

The prevailing idea of North Korean escapees is that collective interest always precedes an individual’s interest. As the collectivist slogan of “one for all” is deeply embedded in the psyche and culture of North Korea, North

Korean refugees have twofold ideas about individualistic culture. Furthermore, assault is not considered a serious crime in North Korea, leading to not less damages suffered by North Korean defectors while staying in South Korea. More seriously, they lack critical thinking, such as assigning blame to woman when it comes to sexual abuses. After arrival in South Korea, many North Korean women are subject to domestic violence by their husbands, but the issue is not considered a big deal, thereby call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Legal Consciousness.

As the aforementioned, the most serious aspect of North Koreans' legal consciousness seems to be the disparity in consciousness due to markedly different legaliz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llowed by the gap arising from different economic systems between them. North Korean refugees are likened to transplanted trees. When transplanted, young trees are highly likely to survive by taking root in the groun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whereas trees of a few decades old take no less time putting down roots or fail to survive in a new environment. The props and nutritive material for such trees to survive well refer to education of legal consciousness for North Korean defectors.

5. The Analysis (I) of Legal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Refugees: Basic Legal Knowledge

5.1. Level of Legal Consciousness Related to the Constitutional Law

In terms of Legal Consciousness with regard to the constitutional law, North Korean escapees showed, compared to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a higher level of consciousness in the concept of a democratic, law-governed state, and citizens' rights to the state, a lower level in understanding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an individual's rights, and a similar degree in legal knowledge 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ir low level of legal knowledge seems to be related to North Korea's legalization. In short, in a communist culture, the consciousness of the public's rights to the state can be evident, while the concept of an individual's freedom and rights is abstract.

With legal knowledge of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North Korean refugees exhibited a higher level than their counterparts in South Korea. It can be easily assumed that North Korean escapees who experienced a socialist system find it easier to understand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with focus on governmental roles and social solidarity.

In terms of legal knowledge 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two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sparity.

5.2. Level of Legal Consciousness Related to Criminal Damage and Crime Occurrence

When it comes to Legal Consciousness related to criminal damage and crime occurrence, North Korean refugees were found to have a markedly low level compared to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In particular, they showed the lowest-level consciousness of common sense regarding laws in the field of criminal judicature, and a huge gap in levels of understanding assault, bodily injury (including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compared to South Koreans surveyed. In terms of fraud and narcotic crimes, over half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surveyed showed no different levels of consciousness compared with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Basic common sense in law in the field of criminal judicature includes the division between civil action and criminal action, the classification between detention centers and prisons, and an understanding of the court-appointed defense attorney system, and North Korean refugees showed a significantly low level of consciousness of the above-mentioned facts. As such legal

knowledge is obtained only after grasping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among the branches in a constitutional democracy, it might be hard for North Korean escapees to comprehend.

In terms of assault and bodily injury (including sexual assault), North Korean defectors demonstrated a low level of legal knowledge especially on punishment for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and assault whose cause is attributed to the victim. It is presumed that North Koreans are accustomed to addressing disputes in a private way instead of public settlement. They also showed a significantly low level of knowledge about the abolition of crimes prosecutable only upon complaint when it comes to sexual assault, which highlights that they tend to address such anti-social sex offenses privately as well.

Domestic violence is likely to be rampant in a patriarchal society. It seems that as North Korea is still male-dominated and even victims do not take domestic violence seriously as a crime, the level of their sensitivity to and knowledge of family violence is very low.

5.3. Level of Legal Consciousness Related to Individuals and Society

In terms of individuals and society, North Korean defectors demonstrated mixed levels of Legal Consciousness according to content. They showed a low degree of consciousness with regard to an individual's rights and rules, such as marriage or contracts, as well as laws whose details are defined according to changes in society, such as traffic regulations. In particular, regarding legal knowledge of contracts, they had a markedly low level, as indicated in the results of questions such as "You must observe even a waiver of the body once you have signed it," and "The limit of interest is defined by law when you borrow money." Especially, the number of North Koreans surveyed who got the former questionnaire wrong far exceeded those who got it right, which means North Koreans have blind faith in the binding of contracts. It seems

to be essential for them to be educated about unjust or illegal contracts.

On the contrary, North Korean escapees were found to have a higher level of legal knowledge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ubsidies compared to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One noticeable thing is that North Korean refugees, accustomed to a socialist system focusing on social solidarity, are critical of the acts of seeking personal interest by committing fraud on the government. For instance, they are well aware of the possibility of bearing the blame when receiving subsidies such as assistance for basic living cost or employment incentives by deceit or other unlawful means. Also, they are well aware of the fact that it is unlawful to deal with goods issued by the government (rented apartment with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t your disposal. That is because in many cases they receive settlement incentives, a rented apartment, or employment incentives, leading to a high level of knowledge of such subsidies.

6. The Analysis (II) of Legal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Refugees: Attitudes on Laws and Experiences of Legal Disputes

6.1. Evaluation of Differences by Legal Consciousness Area

In terms of subareas of Legal Consciousness, other than legal knowledge, North Korean defectors showed a relatively higher degrees. In particular, in the question of “the consciousness of the necessity of laws,” they demonstrated a remarkably higher level. In the emotional area—“a sense of friendliness of laws” and “favorable attitudes about law abidance”—they also showed a higher level compared to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Also,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noticeable gap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trust on laws.”

The analysis of results of subgroups of North Korean escapees, however, found that the longer they stayed in South Korea, the lower level of Legal

Consciousness they showed, meaning that their expectations and positive views on South Korean society have gradually grown negative. To enhance their Legal Consciousness, the idea of a law-governed democracy should be established.

6.2. Evaluation of Differences in consciousness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Laws

North Korean defectors reported markedly different evaluations of laws and law-related experiences each in South and North Korea. They consider that laws in South Korea are fair and guarantee an individual's safety and rights, rating positively law-relevant life in South Korea. North Korean escapees are making greater effort to observe laws in South Korea than in North Korea and gain more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laws. This shows their general expectations on the legal system in the South while integrating in.

6.3. Evaluation of Criminal Damages and Disputes over Illegal Activities

The male groups in bo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 citizens who were surveyed reported to have a similar level of criminal damages, appearances to the police station due to illegal activities, and experiences of going on trial. But North Korean escapees demonstrated a remarkably higher degree in "experiences of situations in which legal assistance was needed."

The female groups in bo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 citizens, compared to their male counterparts, showed much lower levels in criminal damage and involvement of illegal activities. Also, another noteworthy is that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lower rate compared to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in "experiences of criminal damage," as well as "experiences of situations in which legal assistance was needed." They were found to suffer a remarkably lower rate of criminal damage, which seems to attribute to the fact that many of them are recipients of the

assistance for basic living cost and their living area is limited only to their neighborhoods.

North Korean escapees were found to have a lower rate of experiences in which legal assistance was needed, and it might be because they live within the limit of their residences and neighborhoods.

In terms of criminal damage and disputes over illegal activities, North Korean defectors can be assessed to be stable compared with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However, assault and bodily injury account for a higher rate in the types of illegal activities committed by North Korean escapees—a fact that might affect how their criminal involvement looks more serious than it actually is.

6.4. Evaluation of Difference in Legal Aid and Education of Law

Compared to South Koreans surveyed, North Korean defectors were found to have very limited channels for legal assistance. An overwhelming 60 percent of them reported to have received assistance from protective custody officers or police officers. In a stark contrast, South Koreans were found to gain support from lawyers, online legal information channels, or acquaintances rather than police officers. Also, they were found to use various ways to gain legal assistance, such as civic groups or consultants at community welfare centers. Such a gap can attribute to a lack of economic, social resources of North Korean escapees. In other words, they have a limited economic competence as well as social and human resources, leading to a limited source of legal assistance such as lawyers or acquaintances.

In addition, North Korean defectors were found to have a lower level of consciousness about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compared to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Since the Corporation is designed to provide legal assistance to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appropriate education is needed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better understand and make use of the institution.

Although legal education at the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Refugees (Hanawon) and Regional Settlement Center (Hana Center) is essential for North Korean defectors, a large number of those surveyed responded that they had never received legal education, pointing out the limitation of the institutions' roles. They assessed positively the effect of legal education, but a few issues involving legal education at Hanawon—limit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society, difficulties arising from terminology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 lack of mental readiness—should be resolved.

7. Methods to Enhance North Korean Refugees' Legal Consciousness and Law-abiding Spirit

7.1. Plans to Improve Legal Educ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Legal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improved by strengthening education of laws at the stage of regional settlement, along with the existing education programs at Hanawon. The programs at regional Hana Centers can serve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problems of legal education provided from Hanawon. Given North Korean escapees' lack of legal knowledge and a recent spate of crime types, a greater period of leg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form of regional settlement education.

In terms of content of legal education, as they showed a markedly low level in understanding the idea of fundamental rights, common sense about criminal judicature, and criminal damage and crime occurrence, legal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can complement such vulnerability.

7.1.1. Understanding of Distinctiveness of Individual Areas and Enhancement of Relevant Legal Consciousness

When it comes to legal knowledge on individual areas, the followings should gain greater focus: 1) legalization in South Korea is to guarantee an individual's freedom and rights, especially fundamental rights; and 2)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s one of important principles in legaliz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xercise of autonomy involves responsibility.

7.1.2. Enhancement of Vulnerable Legal Knowledge on Criminal Judicature and Illegal Activities

The division between civil action and criminal action, the classification between detention centers and prisons, and an understanding of the court-appointed defense attorney system are the domains of which North Korean refugees showed a significantly low level of consciousness. As such legal knowledge is obtained only after grasping the separation of powers—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risdiction—, it might be hard for North Korean escapees accustomed to one-party dictatorship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among the three branches in a constitutional democra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for them about the fact that jurisdiction in the South works through check and balance among governmental powers, as well as detailed legal knowledge.

In addition, information with regard to criminal damage and illegal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to North Korean refugees as complementary education. Economic crimes, such as fraud, pyramid selling, and voice phishing, account for a large ratio of criminal damages, while assault, bodily injury, and violation of traffic regulations make up for a great ratio of infliction of injury, thereby highlighting the necessity of detailed legal knowledge on each situation.

7.1.3. Reinforcement of Law-relevant Information Education

North Korean refugees were found to have an extremely limited channel to gain information regarding laws compared to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especially the utilization of legal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Therefore, the provision of proper information education to North Korean escapees can lead to the expansion of their learning channels of legal information. When their competence to utilize computers to gain information is strengthened, damages from cyber crimes and the possibility of cyber criminal occurrence will decrease as well.

7.2. Plans to Enhance North Korean Refugees' Access to Laws

7.2.1. Expansion of Legal Aid and Use of Public Defense System

Legal assistance for North Korean refugees has been provided in various forms in both public and private areas, but a lack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ectors has led to ineffective legal assistance. Furthermore, as legal assistance for North Korean escapees is mainly based on volunteer work,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and expertise with regard to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ways to expand legal assistance in the public sector and make use of court-appointed lawyers at a national level. Also, integrated management schemes should be put in place in an organic collaboration between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Supreme Court. Finally, a national-level relevant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to manage and oversee the overall system of legal assistance.

7.2.2. Strengthening of Legal Aid for Legal Procedures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receive enough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and society when involved in disputes in their real life. It is urgent

and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assistance system in which North Korean escapees are guaranteed assistance with regard to judicial proceedings. To do this, it is required to complement the court-appointed lawyer system dedicated to providing assistance to North Korean refugees.

[부록 1]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연령별, 성별 표집인원

지역	서 울			
	연 령	계	남	여
양천구	20~29세	21(22.0)	8	13
	30~39세	21(22.7)	7	14
	40~49세	26(27.6)	6	20
	50~59세	15(16.4)	5	10
	60세 이상	11(11.3)	4	7
	소 계	94(100.0)	30(31.9)	64(68.1)
노원구	연 령	계	남	여
	20~29세	21(22.4)	8	13
	30~39세	22(23.5)	7	15
	40~49세	25(26.7)	6	19
	50~59세	15(16.3)	5	10
	60세 이상	10(11.1)	4	6
	소 계	93(100.0)	30(32.3)	63(67.7)
강서구	연 령	계	남	여
	20~29세	18(22.0)	6	12
	30~39세	19(22.7)	6	13
	40~49세	23(27.6)	6	17
	50~59세	14(16.4)	5	9
	60세 이상	10(11.3)	4	6
	소 계	84(100.0)	27(32.1)	57(67.9)

지역	경 기			
	연 령	계	남	여
화성시	20~29세	13(18.0)	4	9
	30~39세	21(28.2)	5	16
	40~49세	24(32.1)	4	20
	50~59세	10(14.2)	3	7
	60세 이상	6(7.5)	2	4
	소 계	74(100.0)	18(24.3)	56(75.7)
수원시	연 령	계	남	여
	20~29세	10(18.1)	3	7
	30~39세	17(28.2)	5	12
	40~49세	18(32.1)	3	15
	50~59세	8(14.2)	2	6
	60세 이상	4(7.4)	1	3
	소 계	57(100.0)	14(24.6)	43(75.4)
평택시	연 령	계	남	여
	20~29세	10(18.1)	3	7
	30~39세	15(28.1)	4	11
	40~49세	18(32.1)	3	15
	50~59세	8(14.2)	2	6
	60세 이상	4(7.5)	1	3
	소 계	55(100.0)	13(23.6)	42(76.4)

지역	서 울			
	연 령	계	남	여
양천구	20~29세	21(22.0)	8	13
	30~39세	21(22.7)	7	14
	40~49세	26(27.6)	6	20
	50~59세	15(16.4)	5	10
	60세 이상	11(11.3)	4	7
	소 계	94(100.0)	30(31.9)	64(68.1)
노원구	연 령	계	남	여
	20~29세	21(22.4)	8	13
	30~39세	22(23.5)	7	15
	40~49세	25(26.7)	6	19
	50~59세	15(16.3)	5	10
	60세 이상	10(11.1)	4	6
	소 계	93(100.0)	30(32.3)	63(67.7)
강서구	연 령	계	남	여
	20~29세	18(22.0)	6	12
	30~39세	19(22.7)	6	13
	40~49세	23(27.6)	6	17
	50~59세	14(16.4)	5	9
	60세 이상	10(11.3)	4	6
	소 계	84(100.0)	27(32.1)	57(67.9)

지역	경 기			
	연 령	계	남	여
화성시	20~29세	13(18.0)	4	9
	30~39세	21(28.2)	5	16
	40~49세	24(32.1)	4	20
	50~59세	10(14.2)	3	7
	60세 이상	6(7.5)	2	4
	소 계	74(100.0)	18(24.3)	56(75.7)
수원시	연 령	계	남	여
	20~29세	10(18.1)	3	7
	30~39세	17(28.2)	5	12
	40~49세	18(32.1)	3	15
	50~59세	8(14.2)	2	6
	60세 이상	4(7.4)	1	3
	소 계	57(100.0)	14(24.6)	43(75.4)
평택시	연 령	계	남	여
	20~29세	10(18.1)	3	7
	30~39세	15(28.1)	4	11
	40~49세	18(32.1)	3	15
	50~59세	8(14.2)	2	6
	60세 이상	4(7.5)	1	3
	소 계	55(100.0)	13(23.6)	42(76.4)

[부록 2] 심층면담 질문 목록

1. 자율적 시장경제와 수동적 계획경제의 차이로 인한 법의식 차이

- ①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의 배급이나 분배가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 ①*남한에 와서 모든 사람이 비슷한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 ② 북한에서는 국가가 집과 직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 ②*남한에 와서 집이나 직장을 국가가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 ③ 북한에서는 공동의 일에는 모두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까?
- ③*남한에 와서 직장의 일에 모두가 책임성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 ④ 북한에 있을 때 내 것과 네 것으로 구분되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 ④*남한에 와서 모든 것이 내 것과 네 것으로 구분된 것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 ⑤ 북한에 있을 때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 ⑤*남한에 와서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⑥ 북한에 있을 때 장사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까?
- ⑥* 남한에 와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⑦ 북한에 있을 때 불법이라도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 ⑦*남한에 와서 불법적인 장사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⑧ 북한에 있을 때 장사는 백(힘)이 있어야 잘 된다고 생각했었습니까?
- ⑧*남한에 와서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 백이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⑨ 북한에 있을 때 정직하면 장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까?
- ⑨*남한에 와서 장사를 정직하게 해도 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1인독재 및 집단주의에 익숙한 경험으로 인한 법의식 차이

- ① 북한에 있을 때 집단이익에 개인이익이 희생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 ①*남한에 와서 집단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② 북한에 있을 때 실제로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③ 북한에 있을 때 돈보다 더 소중한 신념이 있었습니까?
- ③*남한에 와서 돈보다 더 소중한 신념이나 신앙이 있습니까?
- ④ 북한에 있을 때 주체사상이 현실에 구현되지 않고 겉돈다고 생각했습니까?

- ⑤ 북한에 있을 때 당과 국가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졌었습니까?
- ⑥ 남한에 와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 ⑦ 북한에 있을 때 조선중앙텔레비전의 보도내용을 믿었습니까?
- ⑦*남한에 와서 텔레비전을 비롯한 언론의 뉴스내용을 믿고 있습니까?
- ⑧ 북한에 있을 때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 ⑨ 남한에 와서 헌법 보다 더 우위에 있는 무엇이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3. 북한의 법문화 권의 영향으로 인한 법의식 차이

- ① 북한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 ①*남한에 와서 법을 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② 북한에서는 법보다 백(힘)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까?
- ②*남한에 와서 법보다 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③ 북한에서는 법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까?
- ③*남한에 와서 법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④ 북한은 법보다 힘이 앞서는 무법천지라고 생각했습니까?
- ⑤ 북한의 간부들과 권력기관은 뇌물로 생활한다고 생각했습니까?
- ⑥ 북한에는 매춘(성매매)이나 얼음(빙두), 남한드라마 시청 등 불법이 주변에 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 ⑦ 남한은 북한보다 준법의식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⑧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보다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⑨ 남한에서는 법을 어기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⑩ 북한에서는 어겨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자유민주주의 무경험으로 인한 법의식 차이

- ①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 ②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 ③ 대통령 위의 상위 권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④ 대통령선거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투표하셨습니까?
- ⑤ 그 대통령에 투표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 ⑥ 북한에서는 고민 없이 투표할 수 있는데 남한에 와서 고민해 투표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지는 않습니까?
- ⑦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무엇이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 ⑧ 자신이 뽑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⑨ 진정한 주권은 무엇으로 행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탈북과정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경험의 영향으로 인한 법의식 차이

- ①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있으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 ② 불법체류자로서의 불이익도 있지만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편리함도 있었습니까?
- ③ 자녀를 낳아도 등록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④ 불법으로 만난 남편이고 등록할 수 없는 부부이기에 쉽게 갈라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까?

6. 대한민국 입국 후, 제한된 경험으로 인한 법의식 차이

- ① 다단계나 네트워크마케팅에 가입해 보셨습니까?
- ② 현재 자율성 보험에 얼마나 가입하고 계십니까?
- ③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장에 다녀보셨습니까?
- ④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7.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태생적 및 구조적 한계로 인한 법의식 차이

- ① 노약자 및 장애인이 많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만족하십니까?
- ② 자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3] 북한이탈주민의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설문대상 북한이탈주민	2016년 북한이탈주민경제 실태조사 대상 북한이탈주민
		빈도 (%)	빈도 (%)
합 계		800(100.0)	11,914(100.0)
성별	남자	222(27.8)	2,997(25.8)
	여자	578(72.3)	8,817(74.2)
연령	10대	-	500(2.9)
	20대	155(19.4)	1,957(18.3)
	30대	217(27.1)	2,559(25.9)
	40대	239(29.9)	3,818(32.0)
	50대	118(14.8)	1,825(12.4)
	60대 이상	71(8.9)	1,255(8.4)
지역	수도권 지역	800(100.0)	6,805(63.5)
	서울	271(33.9)	2,909(26.4)
	경기	372(46.5)	3,128(29.9)
	인천	157(19.6)	768(7.2)
	비수도권 지역	-	5,109(36.5)
남북 통합 학력	무학	16(2.0)	-
	초등학교 이하	7(0.9)	665(5.2)
	중학교 이하	91(11.4)	7,191(59.9)
	고등학교 이하	228(55.1)	
	대학교 이하	228(28.5)	
	대학원 이상	16(2.0)	4,019(34.4)
	기타	1(0.1)	39(0.4)
결혼 상태	미혼	292(36.5)	3,049(27.1)
	기혼	331(41.4)	5,794(48.6)
	동거(사실혼)	40(5.0)	-
	기타(사별/이혼포함)	136(17.0)	2,933(23.6)
	무응답	1(0.1)	78(0.6)
한국 거주 기간	100만원 미만	442(55.3)	3,732(36.5)
	100~200만원 미만	192(24.0)	3,521(34.5)
	200~300만원 미만	98(12.3)	1,473(14.4)
	300~400만원 미만	43(5.4)	739(7.2)
	400만원 이상	15(1.9)	
	무응답	10(1.3)	753(7.4)

출처 :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 p2.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1997년부터 2015년 까지 국내 입국자 중 만 15 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전수조사로 실시.

[부록 4] 서울·경기·인천 지역 일반 국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설문대상 일반 국민	서울·경기·인천지역 일반 국민
		빈도 (%)	빈도 (%)
합 계		100.0(1,004)	19,235,965(100.0)
성별	남자	42.0(422)	9,530,271(49.5)
	여자	58.0(582)	9,705,694(50.5)
연령	20대	13.7(138)	3,312,308(17.2)
	30대	15.6(157)	3,922,411(20.4)
	40대	38.2(384)	4,295,699(22.3)
	50대	17.6(177)	3,863,906(20.1)
	60대 이상	14.7(148)	3,841,641(20.0)
지역	서울	42.1(423)	7,769,514(40.4)
	경기	41.2(414)	9,255,818(48.1)
	인천	16.6(167)	2,210,633(11.5)
남북 통합 학력	무학	0.1(1)	290,133(1.5)
	초등학교 이하	0.6(6)	1,274,413(6.6)
	중학교 이하	1.1(11)	1,382,221(7.2)
	고등학교 이하	31.0(311)	6,132,741(31.9)
	대학교 이하	55.6(558)	8,925,645(46.4)
	대학원 이상	11.7(117)	1,230,812(6.4)

출처 : 서울경기인천 지역 일반 국민 자료 : 2015 인구총조사(<http://kosis.kr/index/index.jsp>)

[부록 5] 국민의 법의식에 관한 설문지

지역번호			고유번호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인식과 법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결과는 여러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처리를 위해서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모두 철저히 보장됩니다. 모든 문항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주관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문의처 : 김수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인턴연구원)

☎ 02-3460-9221

H.P. : 010-4601-1591

<조사표 기입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표하거나 해당되는 숫자 및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I. 다음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법률상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은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해당되는 항목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알지 못한다	② 별로 알지 못한다	③ 대체로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알고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2.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알고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3. 국선번호인 제도를 알고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4.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범죄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II. 다음은 헌법과 관련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해당되는 항목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국가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2.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3.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4. 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할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5. 정부에 비판적인 도서는 출간을 금지해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6. 수사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보아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7. 만약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8. 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9. 신체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10.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11.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투표할 수도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12. 대통령과 모든 법률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III. 다음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에 경험하는 **범죄와 관련된 법**에 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은 각 문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항목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아니다	② 그렇다	③ 모르겠다
(결혼/ 가정)			
1. 위장결혼이나 강제결혼은 무효이다.	_____	_____	_____
(계약)			
2. 돈을 빌려줄 때는 서로 믿고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_____	_____	_____
3. 신체포기각서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지켜야 한다.	_____	_____	_____
4. 돈을 빌릴 때 이자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_____	_____	_____
(사기피해/ 가해)			
5.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6. 가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7.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몸을 다치게 해도 된다.	_____	_____	_____
(개인정보)			
8. 내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_____	_____	_____
9.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_____	_____	_____
(폭행죄/ 상해죄)			
10. 개인 간의 싸움은 처벌 받지 않는다.	_____	_____	_____
11. 상대방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_____	_____	_____
12. 두 명 이상이 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_____	_____	_____
13.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_____	_____	_____

	① 아니다	② 그렇다	③ 모르겠다	
(국가지원금)				
14.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15.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게 되면 다시 반납해야 한다.	_____	_____	_____	
16. 서류를 위조하여 취업장려금을 받게 되면 처벌 받는다.	_____	_____	_____	
(마약범죄/ 성매매)				
17. 한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	_____	_____	_____	
18.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는다.	_____	_____	_____	
19.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해준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	_____	_____	_____	
20. 성매매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 받는다.	_____	_____	_____	
21.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_____	_____	_____	
(교통법규)				
22.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이라도 운전할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23. 한 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지 모두 운전할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24.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가정생활 및 폭력 관련 법의식)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5.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26.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27.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28.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_____	_____	_____	_____
29.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IV. 다음은 **법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은 각 문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항목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법을 꼭 알아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2. 법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3.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4. 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V. 다음은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 문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항목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법은 복잡하고 까다롭다.	_____	_____	_____	_____
2. 법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 다른 경우가 많다.	_____	_____	_____	_____
3. 나는 법이 매우 두렵다.	_____	_____	_____	_____
4. 경찰을 보면 괜히 몸이 움츠러든다.	_____	_____	_____	_____
5. 법은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6. 현실에서는 법보다 주머니나 돈의 힘이 더 세다.	_____	_____	_____	_____
7. 재판의 결과가 불공정한 경우도 많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8.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_____	_____	_____	_____
9. 법은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_____	_____	_____	_____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0.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법을 어길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11.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12. 도둑질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죄가 아니다.	_____	_____	_____	_____
13. 부자들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Ⅵ. 다음은 **법 사용**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여러분은 각 문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항목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할 것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2. 범죄현장을 목격하면 신고할 것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3.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법률전문가를 찾아갈 것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4. 친구나 이웃이 분쟁에 휘말리면 법적 절차를 밟도록 권유할 것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5. 나는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속을 가능성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6.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7. 나는 법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으므로 내가 법의 주인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8. 만약 내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나의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VII. 다음은 여러분이 **북한과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법에 대한 생각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해당되는 항목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법은 나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준다.	북한에서 살 때	_____	_____	_____	_____
	현재 한국에서	_____	_____	_____	_____
2.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북한에서 살 때	_____	_____	_____	_____
	현재 한국에서	_____	_____	_____	_____
3. 법은 잘 알아야 살아가는 데 편리하다.	북한에서 살 때	_____	_____	_____	_____
	현재 한국에서	_____	_____	_____	_____
4. 법은 나의 일상생활과 별 상관이 없다.	북한에서 살 때	_____	_____	_____	_____
	현재 한국에서	_____	_____	_____	_____
5. 헌법보다 높은 권력이 있다.	북한에서 살 때	_____	_____	_____	_____
	현재 한국에서	_____	_____	_____	_____
6. 나는 법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북한에서 살 때	_____	_____	_____	_____
	현재 한국에서	_____	_____	_____	_____
7. 나는 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운 생각이 든다.	북한에서 살 때	_____	_____	_____	_____
	현재 한국에서	_____	_____	_____	_____
8. 나는 법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여 불편하다.	북한에서 살 때	_____	_____	_____	_____
	현재 한국에서	_____	_____	_____	_____
9. 나는 법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고자 노력한다.	북한에서 살 때	_____	_____	_____	_____
	현재 한국에서	_____	_____	_____	_____

VIII. 다음은 **법적인 문제로 인한 경험 및 법률 지원 서비스 경험** 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는 경우, <보기>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모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경험 있음	해당 법률문제	② 경험 없음
1-1. 범죄피해 를 경험한	_____	(_____ , _____ , _____)	_____
1-2. 내가 범법행위를 해서 경찰서 에 갔던 경험이 있음	_____	(_____ , _____ , _____)	_____
1-3. 내가 범법행위를 해서 재판 을 받은 경험이 있음	_____	(_____ , _____ , _____)	_____
1-4. 경찰서에 가거나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법률적 도움 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음	_____	(_____ , _____ , _____)	_____

< 보 기 >

- | | | |
|----------------------|--------------------|-----------------|
| 1) 계약 관련 | 6) 국가지원금 관련 | 11) 세금 관련(관세 등) |
| 2)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 7) 교통법규 | 12) 마약 관련 |
| 3) 가정폭력 | 8) 경제범죄(사기/ 다단계 등) | 13) 성매매 |
| 4) 개인정보 관련(명의 도용 등) | 9) 국가보안법 관련 | 14) 기 타 |
| 5) 폭행 및 상해 | 10) 외환관리(대북송금 등) | (_____) |

2. 그동안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 때 적절한 도움을 받았습니까?

_____ 1) 충분한 도움을 받음 _____ 2) 조금 도움을 받음 _____ 3)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함

- 2-1. 법률적 도움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_____ 1) 신변보호담당관	_____ 5) 변호사
_____ 2) 경찰(서)	_____ 6) 복지관(상담사 등)
_____ 3) 주변 아는 사람	_____ 7) 법률구조공단
_____ 4) 시민단체	_____ 8) 기타(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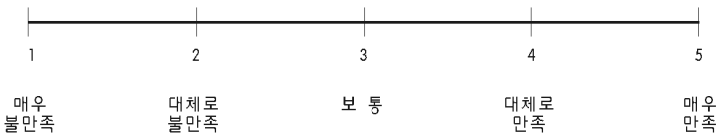
3. 법률구조공단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4.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 교육이 제공된다면 교육을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해당 되는 곳에 모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구 분	법률 교육에 대한 입장		
	① 적극적으로 받을 것임	② 필요하지만 사정상 받기 어려움	③ 법교육이 필요하지 않음
4-1. 하나센터	_____	_____	_____
4-2. 학교(대학 등)	_____	_____	_____
4-3. 지역사회(지자체 등 공공기관)	_____	_____	_____
4-4. 직장	_____	_____	_____
4-5. 시민단체	_____	_____	_____
4-6. 기타 ()	_____	_____	_____

5. 여러분은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정도를 1에서 5까지 해당하는 숫자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㉞.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법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기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총서 17-AA-11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발 행 | 2017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김 진 환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10,000원

인 쇄 | (주)현대아트컴 02-3708-7500

I S B N | 979-11-87160-57-1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